

釜山史料叢書17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1737. 3 ~ 1744. 12)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0. 7.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전객사(典客司)의 업무 기록 중 동래부(東萊府) 소관 대일교섭 업무에 관한 것으로 현존하는 8책(숙종 25년, 1699년 ~ 영조 29년, 1753년) 중 제3책(1737. 3 ~ 1742. 12), 제4책(1743. 1 ~ 1744. 12)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교섭 실무책임자인 동래부사(東萊府使)의 일상적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공문서를 전객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 전객사별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 하되, 외교 및 무역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후기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1737. 3 ~ 1744. 12)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해제 15

제 3 책

□ 정사(丁巳, 1737년, 영조 13년)

- 3월 7일 興揚漂人에 대한 問情을 잘못된 玉浦 倭學 黃再河를 決棍하기로 함 ... 51
- 4월 17일 蔚山 漂泊倭人에 대한 問情을 잘못된 別差 玄泰翼을 決棍하기로 함 ... 51
- 4월 17일 宣祖의 舊諱를 범한 倭 書契를 그대로 捧上하게 함 52
- 5월 27일 中禁徒倭 交代次 倭船이 나옴 53
－ 問情을 잘못된 別差 玄泰翼을 決棍함
- 5월 29일 釜山鎭 年例 倭人禮單雜物價를 附近 邑 儲置米에서 劃給할 것을 廟堂에서 稟處하게 함 53
- 9월 9일 倭料公作米를 기한 내에 入給할 것을 비변사에서 嚴飭하게 함 54
- 9월 12일 釜山鎭 年例 倭人禮單雜物價를 전례대로 東萊부에서 담당하게 함 .. 55
- 윤9월 2일 冬至使行時에 笏箒을 貿來하기로 함 55
- 10월 4일 분부에 의해 을사년 立若君大差出來謄錄과 武 鑑을 들임 56
－ 분부에 의해 을사년 大差倭 出來時 粘理文書를 들임
- 10월 5일 關白 生孫 告慶을 허락하고 大差倭를 접대하기로 함 56
- 11월 7일 倭館에 대한 柴炭 公급을 不勤하게 한 수령, 침시를 비변사에서 申飭하게 함 57
- 11월 30일 漂倭人 入送으로 인한 對馬州 太守 拾遺 平義如의 禮曹大人에 대한 回謝書 契別 57

- 東萊府使, 釜山僉使에 대한 書契 벌쪽
- 각종 回禮雜物을 禮曹, 경상도, 東萊府, 釜山鎭에 措備시킴

□ 무오(戊午, 1738년, 영조 14년)

- 5월 5일 大差倭에 대한 접대를 전례대로 한 사람이 하기로 함 59
 - 두 사람이 접대하는 것을 청한 東萊부산 具宅奎를 推考하기로 함
 - 待奉事로 登聞하는 것을 금지함
- 6월 17일 東萊부산 具宅奎가 올린 東萊邊禁에 대한 節目 60
- 5월 5일 大差倭에 대한 접대를 전례대로 한 사람이 하기로 함(동일 내용 중복 수록)
- 5월 22일 玉浦 漂泊 倭人에 대한 問情을 소홀히 한 倭學 朴震亮 및 烽望軍 監色 등을 決棍하기로 함 67
- 6월 14일 東萊로 내려가던 問慰譯官 金顯門이 가던 도중에 사망 함 67
 - 禮曹의 啓辭로 問慰譯官을 급속히 差出하여 내려 보내게 함
 - 비변사의 啓辭로 渡海譯官을 급속히 差出하여 당일 밤에 내려 보내기로 함
 - 역관 朴春瑞를 堂上으로 陞資하여 渡海譯官으로 差送하고 書契를 고쳐 보내기로 함
- 10월 15일 中禁徒倭가 탄 倭 飛船이 나옴 69
 - 中禁徒倭를 覩禁徒倭로 보고한 玉浦 倭學 朴震豪를 決棍하기로 함
- 11월 15일 번방지역 군기문한 등에 대해 경상우수사 具聖益과 경상좌수사 李 彥燮이 成帖 狀啓함 71
 - 倭館에 잠입하여 交奸한 田才를 효시하고 兩女를 嚴刑 島配하기로 함
 - 東萊府使를 從重推考하고 사건 당시의 東萊府使를 파직하기로 함
 - 체포한 사람에게 論賞하기로 함
- 11월 26일 전 東萊府使 具宅奎를 削職하고 訓導와 別差 이하를 과직하기로 함 72
- 11월 29일 東萊府 訓導와 別差 이하를 의금부에 이송하여 경상도에서 依律 처리하게 함 73
- 12월 3일 일을 마친 후 東萊부에 계속 머무른 差備譯官 黃大逸을 형조에서 懲治 하게 함 73
- 12월 13일 問慰譯官 朴春瑞 일행이 귀환하고 護來裁判差倭 등이 나옴 74
 - 破船과 殞命이 겹쳤을 때만 差价를 定送하라는 問慰譯官의 說話
 - 조선 여인과 潛奸한 罪倭를 대마도에서 減死永遠流配했음을 확인함
 - 倭船이 나온 것을 못 본 活령, 干飛烏봉 담당자를 決棍함
 - 규칙 외에 나온 倭船을 즉시 돌려보낼 것을 館守倭에게 責論함
 - 재판차倭 接慰官을 近邑 수령 중에서 差送하게 함

- 12월 26일 倭館 西伏兵處에 담장을 쌓기로 함 79
 - － 일을 마친 후 東萊부에 머무른 역관을 쇠환하되 京家 없는 자는 제외함
 - － 訓導, 벌차가 관리를 인솔하여 내려가는 것을 금하게 함
 - － 倭館 東行廊을 改建하기로 함

□ 기미(己未, 1739년, 영조 15년)

- 1월 24일 公作米 齋去次 倭船 나옴 81
 - － 倭館에 잠입한 죄인을 체포한 군관에게 시상함
- 1월 25일 倭船問情을 소통사에게 맡긴 통사에 대하여 경상감사가 修啓하도록 함 · 82
- 2월 13일 倭人 潛奸 죄인의 行刑時에 東萊府使가 親觀하지 않는 것을 定式으로 함 83
- 4월 11일 新館守倭 藤方紹의 禮曹 大人에 대한 書契 및 別幅 83
 - － 東萊府使 釜山僉使에 대한 書契 및 別幅
 - － 회답書契를 마련하게 함
 - － 회례지물 別幅 및 그 조비 관서
- 6월 18일 倭 飛船 入歸 84
 - － 강원도 平海 漂民 歸還
 - － 漂民 沙工 良人 崔龍伊 등에 대한 漂泊 경위조사
 - － 漂民領來差倭 對馬島主邊島告知差倭 나옴
 - － 當年條 제1선 나옴
 - － 平海郡守로 하여금 漂民들을 추고하게 함
 - － 문위역관 호송차倭를 오래 머무르게 한 경상감사를 처벌하도록 함
 - － 호송차倭 還送을 申飭하게 함
- 10월 10일 漂民에 殞命者가 있을 때는 兼帶하겠다는 手標를 館守倭로부터 받음 · 90
 - － 倭別使 數來를 막은 문위역관 박춘서 등에 대해 論賞하기로 함
 - － 手標를 東萊부에 留置하여 憑考하도록 함
- 12월 4일 여러 倭船이 돌아가고 나옴 91
 - － 규칙 외의 副特送船을 入送할 것을 責論함
 - － 別差 朴再華가 到任함
- 12월 14일 倭 飛船 2척 나옴 92
 - － 飛船을 失瞭한 다대포 鎭吏를 決棍하고 玉浦 倭學을 治罪하도록 함
- 12월 15일 제주목사가 올린 冬至方物을 內入함 93
- 12월 28일 倭船을 失瞭한 加德 天城 監色과 問情을 못한 玉浦 倭學을 決棍하게 함 · 93

□ 경신(庚申, 1740년, 영조 16년)

- 1월 21일 倭情 所報에 착오가 많은 加德첨사 張孝一 등을 營門에서 決棍하게 함 · 93
- 1월 27일 새로 差送되는 監董堂上譯官 朴春瑞 私禮單雜物을 題給하기로 함 ····· 94
- 1월 30일 監董堂上譯官의 私禮單을 下去時 이미 上下했다는 戶曹의 回關 ····· 94
- 2월 2일 역관 邊榮 대신 差定된 박춘서의 私禮單을 새로 上下할 것을 戶曹에 요청함 · 94
- 2월 10일 사예단이 이미 倭人에게 입급되었으므로 새로 허락할 수 없음을
호조에서 알려옴 ····· 95
 - － 전례에 따라 새예단을 上下해 줄 것을 호조에 요청함
 - － 허락할 수 없음을 호조에서 알려옴
- 2월 19일 비변사의 題辭를 받아 當商譯관 박춘서의 사예단을 상하해줄 것을
호조에 요청함 ····· 96
- 2월 29일 新鑄한 丁銀에 대해 후일 憑據할 수 있도록 倭人으로부터 手標를 받게 함 · 96
- 3월 5일 公作米를 5년에 한하여 다시 許給하기로 함 ····· 97
- 3월 20일 倭船이 나오는 것을 살펴 보고한 釜山僉使 韓啓朝와 다대포첨사 朴道
勉을 罷黜함 ····· 97
 - － 부산 訓導 別差의 처벌을 廟堂에서 稟處하게 함
 - － 送使倭의 書契를 잘못 보고하고 漂倭船의 問情을 잘못된 玉浦
倭學 趙昌基의 처벌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함
 - － 公作米 載持 倭船 등 나옴, 돌아감, 漂泊狀況
 - － 倭船을 상세히 감찰하지 못한 호송장 鄭弼元을 決棍함
- 3월 25일 倭船 問情 내용을 거짓 보고한 玉浦 倭學 조창기를 엄벌하기로 함 ····· 103
 - － 釜山僉使 한계조 등을 勿擺하고 부산 訓導 別差에 대한 勘罪도 安徐함
- 5월 20일 倭船 失瞭와 전통 지체에 대해 釜山鎭 등의 첨사 등을 엄벌하기로 함 ··· 104
- 6월 4일 이떼이양[以酆菴] 送使倭가 나옴 ····· 105
 - － 일본에서 귀환한 전라도 강진 新知島 漂民들의 심문 내용
 - － 漂民領來差倭가 나옴
 - － 諱避로 인해 漂民들의 邑名을 쓰지 않은 書契를 받아들이기로 함
 - － 漂民의 原籍官을 從重推考하기로 함
- 6월 9일 公作米 齎持 倭船 돌아감 ····· 109
 - － 泥匠倭 사망
 - － 竇德 표인영래차倭가 나와 茶禮를 設行함
 - － 재판차倭 上船宴에 쓸 乾物을 入給함
- 6월 22일 倭 飛船 돌아감 ····· 110

- － 特送使 倭船이 다대포에 漂到함
 - － 違格 路引을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 倭船을 失瞭한 干飛鳥 烽軍을 決棍함
 - － 新籌 丁銀이 前日 정은과 다름없고 變品없다는 手標를 받음
- 윤 6월 2일 倭 飛船 돌아감 113
 - － 送使倭에게 應給할 禮單蓼의 부족액을 준비 下送할 것을 호조에 내림
- 윤 6월 12일 漂泊 倭船에 대해 달리 보고한 烽軍을 조사하여 勘處함 114
- 윤 6월 19일 倭語를 몰라 倭人 問情을 잘못된 玉浦 倭學 朴震豪를 水營에서 決棍하게 함 115
- 7월 4일 公作米를 齎持하기 위한 一特送使倭와 飛船 등이 나오고 돌아감 116
 - － 百種節에 館倭들이 舊館 뒷산의 父祖墳塚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함
 - － 萬松院送使倭의 書契에 御諱를 범한 것을 고쳐 呈納하도록 責論함
 -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 등을 決棍함
- 9월 25일 太祖 御諱를 범한 萬松院送使再渡倭의 書契를 고쳐 오게 함 118
 - － 玉浦 漂泊 倭人에 대한 보고에 나온 日時를 빠뜨린 玉浦 色吏를 決棍함
 - － 館倭 등의 父祖墳 往省을 別差가 領率함
 - － 裁判差倭船 등이 다대포에 나옴
 - － 商買 譯官 등을 被執삼사價銀화를 別開市에 捧出함

□ 신유(辛酉, 1741년, 영조 17년)

- 5월 5일 關白 孫의 定名을 朝廷에 傳通한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함 120
- 6월 2일 倭船 問情을 소홀히 한 玉浦 倭學을 水營에서 決棍하게 함 121
- 6월 26일 淸河漂民領來差倭 差備譯官의 回答書契를 改書하여 下送하기로 함 121
 - － 書契를 잘못 관리한 역관 崔壽仁을 일이 끝난 후 科罪하기로 함
- 6월 27일 二特送使의 二號船 등 倭船이 돌아가고 나옴 123
 - － 對馬島主가 江戸에서 환도한 것에 대한 報知差倭船이 나옴
 - － 關白의 母喪 후 일본의 年號가 寬保로 바뀜
 - － 倭船 나옴을 失望한 荒嶺山과 干飛鳥의 烽軍을 所屬處에서 懲治하게 함
 - － 나온 倭船을 還送할 것을 館守倭에게 責論하게 함
- 7월 1일 新館守倭와 漂民領來差倭의 姓名을 착오 啓聞한 監司 沈聖希를 추고하기로 함 127
- 7월 2일 向化 外孫과 外外孫은 禮曹에서 捧布하지 말고 良人으로 應役하게

		하자는 함경감사의 요청을 勿施함	127
○ 9월	4일	副特送使 일행이 漂泊해 옴	129
		－ 萬松院水木船 등의 改書 呈納하라고 館守倭에게 責論함	
		－ 達格 路引을 받아들이자고 東萊府使가 요청함	
○ 10월	3일	對馬島 外洋에 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書契를 退却 不捧하기로 함	132
		－ 書契를 받자고 건의한 東萊府使 金錫一을 推考하기로 함	

□ 임술(壬戌, 1742년, 영조 18년)

○ 1월	21일	北關 移粟事로 인해 漂流한 固城南村鎭 監色을 放送하게 함	133
○ 1월	22일	人蔘價를 改析하기 위해 역관 朴尙淳이 倭館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함	133
○ 3월	22일	漂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懲治하게 함	134
		－ 對馬島 外洋에 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書契를 特令 許捧하기로 함	
○ 4월	10일	公作米 齎去를 위한 以酤菴送使倭 일행 등이 나옴	137
		－ 頭倭 齎來 書契를 許捧 特令에 따라 朝廷에 上送함	
		－ 對馬島 外洋에 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書契의 내용	
		－ 回答書契를 承文院에서 만들어 下送하기로 함	
○ 5월	15일	關東 飢民의 軍布를 탕감하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함	139
○ 8월	20일	癘疫 合沒人의 身布와 還上을 탕감하기로 함	140
○ 8월	23일	饑饉, 癘疫으로 인해 함경도의 戶籍 및 各樣 軍兵案 改修를 보류함	141
○ 9월	11일	東萊부에서 回答書契 改撰의 요청을 불허하고 그대로 入給할 것을 館守倭에게 責論한 사실을 보고함	142
○ 12월	27일	承文院에서 改撰하여 下送하기로 함	144

제 4 책

□ 계해(癸亥, 1743년, 영조 19년)

○ 1월	일	己未條 第十三船 등이 公作米 齎去 등의 목적으로 나옴	146
		－ 漂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治罪함	
		－ 商買譯 등의 被執物貨銀 등을 捧出하고 公作米를 入給함	
○ 1월	11일	己未條 第十五船이 나오니 小通事 金順貴가 問情함	149
○ 1월	14일	從倭 一名이 死亡함	149
		－ 萬松院送使倭 正官 등이 돌아감	
		－ 倭船이 公作米 齎去次 나옴	

		－ 漂倭船을 失望한 干飛鳥 烽軍에 대한 懲治計劃	
		－ 定式에 따라 年終에 倭館 傷毀 有無處를 摘奸함	
○ 1월	18일	己未條 第十二船 등이 公作米 齎去 등의 목적으로 나옴	151
		－ 倭船이 나오는 것을 잘못 보고한 釜山, 多大浦 烽軍과 次知 監色을 決棍함	
○ 2월	7일	知世浦에 漂泊한 倭小船을 多大浦에 越送함	151
○ 2월	10일	天城 磨巨里 漂泊 飛船을 館所로 領付함	152
		－ 知世浦 漂泊 倭大船이 바람이 없어 離發하지 못하는 사정을 査處하게 함	
○ 2월	14일	漂泊 飛船의 問情 내용	153
		－ 己未條 第十五船 등이 公作米 齎去 등의 목적으로 나오다 漂泊함	
		－ 新差 玉浦 倭學 金震赫이 到任함	
		－ 나온 倭人을 定式에 의해 發告할 것을 館倭에게 責論함	
		－ 東西 倭館 및 船着等處를 摘奸함	
○ 2월	15일	위와 같음[上同]	156
○ 2월	18일	倭 飛船을 多大浦로 越船함	156
○ 2월	21일	知世浦 漂泊 倭大船을 一朔만에 領送함	156
		－ 倭船을 누락시킨 知世浦, 助羅浦 등의 次知兵房軍官, 色吏 등을 決棍함	
○ 3월	1일	壬戌條 三特送使倭 등이 돌아감	157
		－ 壬戌條 副特送船 正官倭에게 上船宴 대신 乾物을 入給함	
○ 3월	5일	己未條 一特送使 二號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157
○ 3월	7일	己未條 一特送使 二號船 등 倭船 4척이 公作米 齎去次 나옴	158
		－ 沈水不精한 路引을 改書 呈納하도록 退却 不捧함	
		－ 規定 외에 나온 倭大船을 돌려보내도록 館守倭에게 責論함	
		－ 飛船이 나오는 것을 進告하지 않은 機張懸 鄉色과 烽軍을 決棍함	
○ 3월	16일	己未條 一特送使 二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외 漂泊함	160
		－ 當年條 第一船 送使倭船 正官 등이 나옴	
		－ 規定 외에 나온 特送使船 등의 路引을 退却하고 入送할 것을 責論함	
		－ 舊館 뒷산에 있는 倭人 父祖墳塚을 春社日에 省墓하게 함	
		－ 倭館 船倉 등을 摘奸하여 毀傷 없음을 확인함	
○ 3월	26일	癸亥條 第一送使倭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163
		－ 違船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改書 呈納하할 것을 責論함	
		－ 倭船에 대해 問情을 잘못된 玉浦 倭學 및 잘못 보고한 監色 烽軍을 決棍함	
		－ 規定 외 나온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 不捧하고 斯速 入給 할 것을 責論함	

○ 3월	28일	再渡船에 柴水糧饌을 覓給하도록 분부함	165
○ 4월	3일	當年條 以酤奄送使倭 등이 나옴	166
		－ 規定 외에 나온 副特送使 第一號船의 路引을 退却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漁船을 倭船으로 잘못 분간한 釜山鎭 및 多大鎭의 烽軍과 監色을 決棍함	
○ 4월	10일	己未條 第十三船 등이 돌아감	167
		－ 己未條 副特送使이선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도박함	
		－ 沈水不精한 路引과 違格 路引을 不琫하고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規定 외의 再渡船 路引을 不琫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馳通에 낙서한 加德 色吏를 決棍하게 함	
		－ 倭大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烏의 烽軍을 嚴治하게 함	
		－ 倭人이 나온 명목을 잘못 보고한 玉浦 倭學 金震赫을 통제사가 決棍하게 함	
○ 4월	12일	己未條 副特送使倭 등이 公作米를 齎持하여 돌아감	172
		－ 倭館을 摘奸하여 毀傷處 없음을 확인함	
○ 4월	15일	玉浦에 漂泊한 倭船을 多大鎭에 越送함	173
○ 4월	16일	倭船 2척이 나와 漂泊함	173
		－ 잘못 進告한 釜山鎭 多大鎭의 邊將을 決棍함	
○ 4월	21일	笙簧과 피리 부는 자가 악기를 가지고 文政殿에 들어가게 함	174
○ 4월	22일	執事 典樂을 文政殿에 來待하게 함	174
○ 윤 4월	4일	己未條 二特送使倭一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174
		－ 己未條 第十六船 등이 公作米 齎去를 위해 나옴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烏 烽軍을 懲治하게 함	
		－ 筑前州漂倭人 入送에 대한 對馬島主의 回謝書契 謄本 및 別幅	
		－ 回答書契 및 草稿를 承文院에서 撰黜하고 回禮雜物을 마련하게 함	
○ 윤 4월	12일	倭船이 나와 漂泊함	176
		－ 倭船 失望 한 釜山鎭 多大鎭의 監色을 걸곤하게 함	
○ 윤 4월	15일	己未條 三特送使倭 二號 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178
		－ 慶州漂民船과 함께 漂民領來差倭 島主還島告知差倭 등이 나옴	
		－ 一特送船使 二號船의 路引이 違格하여 退却 不琫하고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漂民 사노 류남이 등의 취소 내담	
		－ 漂民을 道臣이 刑推하고 당시 申飭하지 못한 慶州府尹을 推考하게 함	
		－ 禮曹大人 및 東萊府使 釜山僉使에 대한 對馬島主의 書契와 別幅	
		－ 書契 회답 등의 草稿를 承文院에서 撰黜하고 回禮雜物을 마련하게 함	

		－ 別幅 回禮 物目	
		－ 倭 飛船이 生銅 齎持하여 나옴	
○ 윤 4월 29일		己未條 副特送使倭이호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185
○ 6월 2일		倭 飛船이 나와 漂泊함	186
		－ 別差 李昌基가 準朔하여 대신 李攄이 취임함	
○ 6월 15일		訓導 別差의 잘못은 계문하여 처치할 것을경상감영 統營 좌수영에 분부함	186
○ 6월 18일		禮曹 屬司의 褒貶을 마련하지 못하여 勿論하기로 함	187
○ 7월 7일		義州 訓導 申漢相을 병으로 罷黜하고 金振夏를 差出하게 함	188
○ 7월 17일		대왕대비전 등에 대한 進宴에서 傳敎에 의해 選上을 줄이기로 함	189
		－ 進宴의 選上 妓生의 수를 줄임	
○ 7월 20일		當年條 三特送使一號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190
		－ 當年條 三特送使水木船 등이 나와 漂泊함	
		－ 倭人들에게 白腫節日에 父祖墳塚 往省을 허락하되 扞行하지 못하게 함	
		－ 館守倭가 병으로 館中 凡事를 公幹一代館倭에게 맡김	
○ 8월 21일		東西倭館을 摘奸하여 毀傷處 없음을 확인함	192
		－ 倭 飛船이 나와 漂泊함	
		－ 館守倭에게 舊館 뒷산의 父祖墳塚 往省을 허락하되 扞行하지 못하게 함	
		－ 慶尙道 漂民領送差倭 등이 돌아감	
		－ 規定 외 再渡船의 路引을 不埒하고 斯速 入還할 것을 館守倭에게 責論함	
		－ 館守倭가 병으로 사망하고 新館守 平如亮 일행 등이 나와 漂泊함	
		－ 新館守倭 平如亮이 가져온 對馬島主의 書契謄本 및 別幅들	
		－ 回答書契 및 東萊 釜山の 草稿를 承文院에서 撰黜하게 함	
○ 8월 23일		지박 倭大船을 助羅浦에서 바로 좌도로 영부함	198
		－ 倭船이 나온 상황을 잘못 보고한 釜山鎭 多大鎭의 監色을 決棍하게 함	
○ 8월 28일		倭 飛船 및 舊館倭 시체를 齎持한 萬松院送使再渡船 등이 돌아감	199
		－ 萬松院送使再渡再渡船이 玉浦에 漂泊함	
		－ 玉浦 漂泊 倭船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玉浦留鎭將을 統營에서 처리 하게 함	
		－ 今年度 萬松院送使再渡倭가 齎持한 書契 및 別幅들	
		－ 癸亥條 受圖書萬松院에 대한 回答書契 및 別幅 回禮雜物을 마련하게 함	
		－ 送使倭 正官 및 都船主 押物의 年例 貿易 銅鐵鐵에 대한 贈物의 내역	
○ 9월 27일		當年條 三特送使水木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202
		－ 東萊府 軍官料米 料布의 定式을 마련함	

- 11월 7일 訓導 玄德淵이 瓜滿이나 銅鐵 구매가 끝난 후에 교체하기로 함
倭 飛船이 나와 漂泊한 것을 늦게 보고한 釜山鎭 多大鎭의 변정차
지색리를 중곤함 205
- 11월 25일 倭 飛船이 돌아감 205
 - 下代倭 一名이 병으로 物故하여 왜관 뒷산에 매장함
 - 東西倭館을 摘奸하여 毀傷處 없음을 확인함

□ 갑자(甲子, 1744년, 영조 20년)

- 1월 7일 生銅을 齎持한 倭 飛船 등이 나옴 206
 - 庚申條 第八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 從倭 一名이 병으로 物故하여 왜관 뒷산에 매장함
 - 今年度 公作米 일만유천석을 대관倭처에 입급함
- 1월 10일 訓導 玄德淵을 院籍에서 刊名하여 대신 玄德翼을 催促 下送함 ... 209
- 2월 26일 庚申條 第十六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옴 209
 - 第一送使水木船의 違格 路引을 退却 不琫하고 改書 呈納할 것을 責論함
 - 倭大船 나옴을 늦게 보고한 釜山鎭 多大鎭의 邊情次知監色을 決棍함
 - 問情 내용을 잘못 書報한 玉浦 倭學을 統制使가 사처하게 함
- 3월 3일 問情 내용을 잘못 보고한 玉浦 倭學 金震赫을 경상우수영에서 決棍 함 ... 210
 - 玉浦 知世浦에 分泊한 倭대선을 차차 교부한 상황
- 7월 24일 倭小船이 나와 漂泊하는 것을 간과한 釜山鎭 監色을 경상좌수영
에서 決棍함 211
- 8월 23일 倭 飛船이 돌아감 212
 - 갑신조 일특송사재도이호선 등이 나와서 漂泊함
 - 規定 외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 不琫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倭 漂泊선들의 교부 영에 상황
 - 倭館을 摘奸하여 毀傷을 修補하기로 함
 - 商譯 등물화價銀 구천량을 開市에 捧出함
- 8월 28일 庚申條 일특송사일호선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옴 218
 - 館倭 등에게 父祖墳塚의 秋社日 看望하게 함
 - 館守倭 平如亮이 병으로 사망하여 裁判倭가 館中事務를 專擔함
 - 規定 외에 나온 再渡船의 路引을 不琫하고 사송 입환할 것을 責論함
 - 飛船 등이 돌아감
 - 商譯 등 被執物貨의 價銀을 別開市에 捧出함

○ 9월	10일	當年條 萬松院送使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 219
		－ 水木船 違格 路引을 不捧하고 改書 呈納하게 함
		－ 변정을 소홀히 한 다대포 차지監色을 決棍함
○ 9월	29일	當年條 副特送使일선 등이 나옴 …… 222
		－ 庚申條 以酏庵送使倭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하여 돌아감
		－ 違格 路引을 不捧 退却하고 改書 呈納하도록 責論함
		－ 規定 외 나온 再渡船의 路引을 退却하고 斯速 入送하도록 責論함
		－ 公下代倭 一名이 병으로 物故함
		－ 萬松院送使再渡倭船이 돌아가던 중 漂泊함
		－ 倭船이 나오는 것을 失望한 荒嶺山 烽軍 등을 治罪함
		－ 禮曹 商譯 등 被執物貨價丁銀을 開市에 捧出함
○ 11월	12일	問情을 잘못된 애학 金震赫을 東萊부에서 決棍하게 함 …… 227
		－ 倭供米 料理事의 鄭履儉을 三年定配하기로 함
		－ 十年 동안의 犯科자를 查出하여 勘罪하기로 함
○ 11월	19일	庚申條 一特送使 二號 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하여 돌아감 …… 228
		－ 辛酉條 第五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干飛鳥 烽軍을 所屬處에서 治罪하게 함
		－ 倭館을 摘奸하고 소소한 毀傷處를 修補하게 함
		－ 商譯 등 被執物貨의 價銀을 開市에 捧出함
○ 12월	3일	玉浦 강구 지박 倭船을 관소로 호송하게 함 …… 231
		－ 庚申條 三特送使 一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하여 돌아감
		－ 庚申條 副特送使이호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 規定 외 나온 再渡船의 路引을 不捧하고 斯速 入送할 것을 責論함
		－ 甲子條 第一船送使倭 등의 進上物품 11월 12일
○ 12월	4일	甲子條 副特送使倭 등의 進上物品 …… 233
○ 12월	7일	漂泊 倭船을 늦게 領付한 玉浦 監色 및 烽軍 등을 決棍함 …… 233
○ 12월	15일	倭館 毀傷處를 修補하게 함 …… 235
		－ 當年條 公作米를 入給함
○ 12월	17일	辛酉條 第六船 등이 公作米 齎去次 나와 漂泊함 …… 235
		－ 倭船을 失望한 荒嶺山 烽軍 등을 決棍하기로 함
		－ 倭船이 나온 것을 늦게 통보한 多大浦 監色 등을 決棍하기로 함
○ 12월	28일	庚申條 三特送使 二號再渡船 등이 公作米 齎持하여 돌아감 …… 237
		－ 知世浦에 止泊한 辛酉條 第六船을 館所로 護送함
		－ 中禁徒倭 一名이 병으로 사망함

☐ 影印本 典客司別謄錄 第3冊	241
☐ 影印本 典客司別謄錄 第4冊	347
☐ 찾아보기	461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해제

김 동 철
(부산대 사학과)

차 례

1. 『전객사별등록』 개관
2. 『국역 전객사별등록』(Ⅰ) 개관
3. 『국역 전객사별등록』(Ⅰ)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4.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개관
5.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주요기사 내용 검토

1. 『전객사별등록』 개관

『전객사별등록』은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으로, 현재는 8책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책의 제1책에는 표지에 「별등록 제2(別騰錄 第二)」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원본은 모두 9책인데, 현재 제1책은 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1×26cm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서번호 奎 12961)에 소장되어 있다. 왜선이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일본과 교역한 각종 공사(公私) 무역의 내용,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등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부터 1753년(영조 29) 12월 사이에 일어난, 17~18세기 한일 관계의 제반 업무 및 왕명으로 실시된 다른 부서와의 관련 업무 등을 전객사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전객사는 예조에 속한 관청, 즉 속사(屬司)이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여진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접대와 이들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여진]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8책의 『전객사별등록』 수록 시기를, 원본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 1699년(숙종 25) 윤7월~1718년(숙종 44) 7월

제2책 : 1720년(숙종 46) 7월~1736년(영조 12) 11월

제3책 : 1737년(영조 13) 3월~1742년(영조 18) 12월

제4책 : 1743년(영조 19) 1월~1744년(영조 20) 12월

제5책 : 1745년(영조 21) 1월~12월

제6책 : 1746년(영조 22) 1월~12월

제7책 : 1747년(영조 23) 1월~1750년(영조 26) 12월

제8책 : 1751년(영조 27) 1월~1753년(영조 29) 12월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1699년 윤7월 이전과, 1754년(영조 30) 이후의 일본과의 교섭 내용은 『전객사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제1~3책, 제2권에는 원본 제4~6책, 제3권에는 원본 제7~8책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싣고 있어서, 『전객사별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오수창(吳洙彰)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책의 구성과 체제,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국역 전객사별등록』(1)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1)은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에서 1736년(영조 12, 병진) 11월 22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 1의 1~48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항목수	2	9	13	10	8	4	2	6	0	11
연도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항목수	8	9	7	2	1	0	1	0	13	4
연도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항목수	0	4	6	3	2	3	3	6	4	5
연도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합계
항목수	12	3	5	5	13	15	5	8		212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1699년에서 1736년의 38년 동안, 1714, 1716, 1719년의 4년은 기사항목이 없다. 1건인 해가 2년, 2건인 해가 4년, 3건인 해가 4년이다. 3건 이하인 해가 14년으로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국역 전객사별등록』(I)의 첫 기록은 기묘(己卯, 숙종 25, 1699) 윤7월 18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鄭濤)가 7월 2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정호가 성첩한 장계 내용>은 ㉠ 일본 살마주(薩摩州)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시신과 생존자의 송환 문제, ㉡ 공작미(公作米)와 공목(公木)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정하는 문제, ㉢ 웅천(熊川) 표류민을 데려오는 차왜(差倭) 등정중(藤貞重)에게 보낸 회답서계(書契) 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중심이다. 특히 서계의 수정 문제는 조정에 보고하여 분부를 받아 회답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그들이 청하는 대로 보고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 제주도에 표류한 사람 두 명의 사체(死體)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예조 관문(關文)을 제주목(濟州牧)에 발송, ㉤ 재판차왜를 전례대로 접대하기 위해 접왜관(接倭官)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내용을 경상감사에게 알리고, 증정하는 예단(禮單) 잡물은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 표류민 원적(原籍)의 관원인 웅천현감은 담당 부서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문제,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역 전객사별등록』(I)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 문제

『국역 전객사별등록』(I)의 세 번째 기사인 경진년(1700) 1월 20일조 기사는 새 은화[新銀] 통용에 관한 회답 초고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마도주가 새 은화 일로 보낸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 가운데, 일본에서는 새 은화

를 통용하는 규정에 수량을 더하여 계산하는 일이 없는데, 도주가 조선에서 새 은화 통용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수량을 더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서계 끝 부분에 「품질이 낮은 것은 수량을 더한다[劣品加數]」는 데서부터 「끝내 반드시 가짜가 늘어날 것[終必滋僞]」이라는 등 부분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이번 서계는 고쳐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보고서 조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와 관련된 문제는 「새 은화의 일로 동래부사와 훈도·별차를 잡아와 심문하고 첩시(撤市)함」(1700.5.2), 「새 은화 일 및 개시 일로 여부를 표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는 일」(1700.8.11), 「황력은(皇曆銀)을 재촉하는 일」(1701.8.19), 「보자은(寶字銀)을 통용하자는 대마도주의 서계」(1708.3. 4)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01년 9월 15일, 12월 17일, 1711년 5월 12일, 6월 27일, 7월 2일, 12월 18일, 1731년 12월 12일, 1732년 9월 3일, 1733년 5월 23일, 6월 28일, 12월 22일 기사에도 은화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 산출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 은(銀) 생산에 힘입어 에도(江戸)막부가 처음 주조한 은화인 경장(慶長) 정은(丁銀)은 순도 80%의 고품위 통화였다. 10% 정도는 일본 국내에 유통되고, 90% 정도는 국외로 유출되었다. 일본과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이 은이 통용되었다. 에도막부 5대 장군 쓰나요시(綱吉) 때인 1695년에 화폐 개조(改鑄)를 단행하여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을 새로 주조하였다. 이 은은 경장은과 구별하기 위해 ‘원(元)’자를 찍었다. 그래서 원은(元銀)이라고도 한다. 경장은[古銀]과 원록은[新銀]이 통용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 사용된 은은 순도 80%의 은이었다. 이 경장은(慶長銀)은 1611~1697년에 사용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이 통용되면서 교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대마도는 잠시 이 사실을 조선에 숨기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한계였다. 순도가 높은 경장이 점차 자취를 감추자, 대마도는 악화인 원록은을 교역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700년부터 원록은이 교역은(交易銀)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이 1697~1712년에 양국 교역에 통용되었다. 그런데 1706년에 에도막부는 다시 순도 50% 은화를 만들었다. 1710년, 1711년에 은화의 악주(惡鑄)를 거듭하여 순도가 20%까지 떨어졌다.

순도가 낮은 은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순도만큼 은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록은에 대한 평판이 나빠서 조선상인은 원록은을 받

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교역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마도와 막부와의 끈질긴 교섭 끝에, 「조선의 인삼을 사오기 위하여 특별히 과거와 같은 품위(80%)로 주조한 은」이라는 뜻의 「인삼대 왕고은(人蔘代往古銀)」을 주조하게 되었다. 1710년 9월 27일의 일이다. 이 사실은 극히 일부의 막부관료와 은좌(銀座) 담당자만 알고 있었을 뿐, 일반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조선과의 무역용으로서 대마도에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만들어진 특주은(特鑄銀, 人蔘代往古銀)이 1712~1715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716~1738년에는 순도 80%의 정덕은(正德銀), 향보은(享保銀)이 통용되었다.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은을 수송하는데는 은선(銀船)이라는 작은 전용선을 사용하였다. 이 은선의 움직임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마도에서는 7월과 8월에 조선으로 신고 가는 은을 황력은(皇曆銀), 10월과 11월에 신고 가는 은을 동지은(冬至銀)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수입한 은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은은 중국에 가는 정기사행이 가지고 갔다. 중국의 역(曆)을 받으러 가는 사행인 역자행(曆咨行)은 8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11월에 귀국하였다. 이 역자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황력은이다. 동지행(冬至行)은 11월에 출발하여 신년 하례 등 정례적인 의례를 치른 다음, 이듬해 4월 경에 귀국하였다. 이 동지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동지은이다.

이처럼 은화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조선의 중개무역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은화 관련 기사는 경장은[舊銀]에서 원록은[新銀]으로의 전환, 신은에서 구은으로의 복귀, 순도 50%의 보자은(寶字銀) 통용문제, 황력은 문제 등 왜관에서 이루어진 은화의 통용과 그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마찰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숙종실록』(1675년 5월)의 기록에는 “왜관의 일본인이 마을을 몰래 드나들면서 부녀와 간음하니, 동래와 부산 사람 가운데는 왜산[일본인이 낳은 사람]이 많다(館倭 潛行閭里 奸淫婦女 東萊釜山之民 多倭產)”고 할 정도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 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인이 우리나라 여인을 범하여 간통한 일을 양국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 심문하는 일」(1708.1.16), 「교간한 시골 여인에게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함」(1708.윤3.11), 「우리나라 시골 여자와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중에 서찰을 보냄」(1708.10.5), 「범간왜인을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같이 조사함. 간통을 범한 왜인 관계 서계를 전하지 못한 문위역관을 정배함」(1709.5.7), 「범간왜인에게 아국인과 동률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로 함」(1709.6.5),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1709.7.24), 「서계에 간범왜인 일과 도서 일을 나누어 조사(措辭)하기로 함」(1709.12.11), 「범왜 축송 후 범간죄인을 처단하기로 함」(1710.6.14), 「왜관에 들어가 간(奸)한 순홍(順弘), 선양(善陽)을 효시하기로 하고 그 지포자를 논상함」(1726.6.27) 등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708~1710년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1708년 1월 16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인과 간통한 시골 여인과 동조한 사람 및 죄를 범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초랑왜관의 관수왜(館守倭)는 왜인은 간통을 범한 일이 없는데 조선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707년에 부장(部將) 송중만(宋中萬, 宋仲萬)이 조선인 여인 감옥(甘玉)을 데리고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백수원칠(白水源七)과 매매춘을 한 사건이다.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측 주장에 대하여, 왜관의 관수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는 1708년 최상집을 당상관으로 하는 문위행(問慰行) 때 해결,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위행은 예조 서계를 대마도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마도측의 답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동래부사 권이진(1709.1~1711.4)은 5차례나 장계를 올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1709년 5월에서 1710년 6월까지의 5건 기사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권이진은 양자를 동률로 처단하라는 예조의 서계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답서도 발송하지 않는 대마도측의 변칙적인 대응에 대해, 외교 의례의 기본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당사자의 심문보

다 대마도주의 답서 제출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백수원칠(白水源七)은 1709년 9월 대마도로 보내진 후, 「죄상은 불분명하지만 양국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유죄(有罪) 처리되었다. 그리고 감옥(甘玉)과 송중만은 1710년 7월 왜관의 수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대마도의 답서 불급과 백수원칠(白水源七)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선정부는 「매매춘을 할 경우 양자를 동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약조로 규정하는 것을 1711년 통신사(정사 조태억)의 임무로 삼았다. 통신사는 이 문제를 막부장군에게 직접 탄원하겠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1711년에 대마도와 동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를 체결하였다. 조약은 「대마도 사람이 초량왜관을 빠져나와 여인을 강간한 자는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조선여인을 유인하여 화간한 자 및 강간 미수자는 영원히 유배에 처한다. 왜관에 잠입한 여성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교간한 자는 차를[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726년 6월 27일 기사는 「초량에 사는 사노(私奴) 순홍(順弘)이라는 남자가 부산에 사는 여인 선양(善陽)과 몰래 왜관으로 들어가서 일본인과 간통하고, 쌀 3말 5되와 은자(銀子) 4전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전례대로 효시(梟示)해야 하며, 순홍의 처 박조시(朴早時)는 남편 말만 듣고 데려오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초량에 사는 추순홍(秋順弘)이 처 박조이(朴召史, 박소사)를 시켜 부산에 사는 창녀(娼女) 김선양(金善陽)을 유인한 후 왜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본인 무길작(武吉作), 좌위문(左衛門)과 매매춘한 사건이다. 그 결과 추순홍은 왜관 문밖에서 처형되었다. 김선양은 사형을 감면받고 평안도에, 박조이는 전라도에 유배되었다. 일본인 두 명은 약조에 따라 영원히 귀양 갔다.

1707년에 감옥(甘玉)과 백수원칠(白水源七)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사건 이후 1711년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의 체결까지, 양국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초량왜관 건물의 수리와 조성

「왜관 수리 비용에 대한 논의」(1700.1.20), 「왜관 수리 감동관 김수구(金壽九)가 횡령한 금액을 조사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영문(營門, 경상감영)에서 획급할 것」(1728.7.28), 「왜관 수리 감동인 역관 김

수구와 유극신(劉克愼)의 죄를 논하고 빚진 돈을 징수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함」(1729.10.12) 등 기사 내용이다.

1700년 1월 20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의 서관 삼대청[동대청, 서대청, 중대청]의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삼대청의 좌우 행랑, 동관의 재판왜가 등 건물이 기와를 비롯하여 손상된 곳이 많아 수리해야 되는데, 근래 조선의 사정이 계속된 흉년으로 물자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송사왜(送使倭) 등이 거처할 장소가 없으므로, 올해 구송사(九送使)는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 조태동(趙泰東, 1698.9~1699.4) 재임 때, 관수왜가 왜인 목수를 불러와서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한 뒤에, 조선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인 스스로 맡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때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 그후 관수왜와 대관왜 등이 필요한 물자를 계산해 보니, 은화 7,000여 냥 정도이고, 그밖에 일꾼[役軍], 기와, 산자(撒子), 외목(椶木), 대나무, 쥘[藁草], 새끼줄[藁索], 숙마줄[熟麻索], 산마줄[山麻索] 등 잡물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측 입장은 은화 가격이 너무 많은데다, 일꾼, 기와, 잡물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매우 해괴하므로, 조선인이 힘써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사원(差使員)과 감동역관(監董譯官)을 정한 후, 동래부의 감색(監色)과 공장(工匠) 등을 데리고 가서 수리할 곳을 살핀 후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의 건물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물자의 내용,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과 조선의 입장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728년 7월 28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수왜가(館守倭家)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 개시대청(開市大廳) 60칸, 재판차왜가(裁判差倭家)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등 합계 204칸을 조선 조정에서 지급하는 저치미(儲置米) 1,550석으로 돈 7,000냥을 만들어 조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 등이 맡아 지으면서, 관수왜가 93칸만 조성하였다. 돈 7,000냥으로 93칸만 조성하였다면, 1칸에 75냥 정도의 비용이 든 셈이다. 이처럼 1칸에 75냥이나 비용이 들었다면, 이것은 김수구가 돈을 횡령한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김수구는 새 집을 지으면서 현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여 비용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수구 대신 최대제(崔岱濟)를 시켜 처음 계획했던 204칸 중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비용은 김수구가 횡령한 돈을 추징하고, 부족한 것은 저치미 5,000석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써 충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감사가

각 읍에 저치미를 획급했으나, 각 읍에서 즉시 출급(出給)하지 않고, 시가(市價)도 가감이 없어 비용 마련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대제는 자기 돈으로 먼저 건물을 조성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최대제도 헌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최대제에게 조성 비용을 알맞게 지급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상감영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1729년 10월 12일조 기사는 김수구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일록(甲辰日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수구가 저치미 1,550석으로 돈 6,975냥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비용으로 쓴 돈은 4,035냥 1전 4푼이었다. 그리고 왜장인(倭匠人)의 역가(役價)인 은화 363냥, 양식쌀[糧米] 30석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액수만큼은 김수구에게서 징수하여 최대제(崔岱齊)에게 주어야 했다. 또한 6,975냥 중 쓰고 남은 돈 2,939냥 8전 6푼은 모두 김수구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480냥은 역관 유극신(劉克愼)이 처음 대신 감독할 때 비용으로 쓰고 갚지 아니한 것이다. 이 480냥을 제하면 김수구가 실제 빚진 것은 2,459냥 8전 6푼이다. 이것은 마땅히 징수하고, 그 죄상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중억(韓重億)은 자신이 당상임역(堂上任譯)이면서 모두 김수구에게 위임하여 손실이 일어났으니, 자리만 차지하면서 잃어버린 죄를 면하기 어렵다. 최대제는 김수구가 일을 망친 후에,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큰 역사를 완공하였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3,441냥 1전 1푼인데, 저치미 1,100석으로 돈 3,300냥을 만들어 모두 계산하였다. 부족한 돈 141냥 1전 1푼은 변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수구와 유극신은 국가를 속이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일을 망친 죄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고, 한중억은 당상역관으로서 단속하고 감독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건물 파손이 심하였다. 동관, 서관의 삼대청에 대한 수리는 25년마다 실시하는 대수리[대감동]와, 적절한 시기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소수리[소감동]가 있었다.

1728, 1729년 기사는 그 전에 이루어진 동관 삼대청(관수왜가, 개시대청, 재판왜가) 204칸의 수리 관련 내용이다. 수리공사의 책임을 맡은 감동역관이 직책을 남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중간에서 횡령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관수리등록』(규장각도서 12923), 대마도 중가문서인 『관수옥개시대청재판옥수리기록』,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관 건물을 짓거나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를 위한

비용의 내용과 부담, 건축 자재의 조달 등 왜관 건물의 물리적 관리 실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④ 왜관 조시·개시에서의 동전 사용 문제

「왜관의 조시(朝市)에서 돈을 사용하는 자가 탄로나면 잠상률(潛商律)로 조처함」(1701.6.12). 「일본으로부터의 철물(鐵物) 수입 방식을 변통함」(1708.5.15) 등 기사 내용이다.

1701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김덕기가 조시(朝市)와 관련된 조목 하나를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다. 왜관에는 날마다 조시가 열렸는데, 매매하는 것은 채소 등 잡물에 불과하며, 아침에 열렸다가 곧 파하였다. 돈[常平通寶]을 사용한 이후로는 양국 사람이 항상 돈을 교역의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 왜인들이 전화(錢貨)를 쉽게 위조하고, 또 구리가 왜관에서 나오므로 금지 조목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폐단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률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확정된 다음에야 변방 수령이 의거하여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자는 잠상률(潛商律)로 논단한다는 내용이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한배하가 철물(鐵物)을 변통하는 일로 올린 장계이다. 양국 무역에서 백사(白絲)나 인삼 등 물자를 파는 것은 은화로, 그 밖의 잡화(雜貨) 가격은 철물로 교환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철물을 방색(防塞)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전[상평통보]을 통용한 이후로, 간사한 백성이 사주(私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철물을 방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이 통용되는 길이 막혔다. 철물은 돈을 주조하는 원료일 뿐 아니라 온갖 기물(器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여러 해 방색하면 공사 간에 모두 절실하다. 근래 동전이 천하여 도구를 만드는 이익보다 못하니, 다시 통용을 허락해도 사주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우리 상인이 이문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인이 철물을 버리고 은화로만 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를 면치 못한다. 매번 방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통하도록 했다.」

조시는 왜관의 수문(守門) 밖에 서는 새벽시장이다. 생선, 과일, 채소, 쌀 등 왜관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생필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교환수단은 주로 쌀이었다. 그러나 1678년부터 상평통보가 널리 통용되면서 조시 거래에서도 동

전이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왜관을 통해 일본에서 구리가 많이 수입되었으므로, 동전을 위조하는 사주(私鑄)의 폐단이 심하였다.

『신보수교집록』에 보면, 「1698년 동래에서 구리[銅鐵]를 매매하거나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는 숙종의 전교(傳敎)가 있다. 그후에도 사주의 폐단이 단절되지 아니하자, 김덕기의 장계에 따라 1701년에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잡상의 법률로 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4, 금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덕기는 이러한 금지 내용을 목판에 새겨 왜관 문안에 걸어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1708년 동래부사 한배하는 동전의 유통 때문에 철물[구리]의 수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동전이 너무 흔해 사주의 염려가 없고, 또 우리측 상인의 이문이 없어지고, 모든 거래에 은화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물 수입 금지를 풀어주는 변통책을 주장한 것이다.

왜관의 개시, 조시에서의 상평통보 유통, 사주전의 남발 양상과 이와 연동된 구리 수입의 금지 등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⑤ 왜관 오일개시(五日開市)

「동래왜관의 개시에 잡인의 출입을 엄금함」(1703.11.23),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1.16), 「오일개시의 혁파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5.15), 「왜관 개시를 아침 전으로 한정하고 수세색리를 혁파함」(1709.1.18) 등 기사 내용이다.

1703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인데, 이것은 조정에서 허락한 것이다. 왜인에게 찬(饌)을 보내는 일로 오일일차개시(五日一次開市)하는 잘못된 규정이 있어서, 상고(商賈) 외에 잡인(雜人)과 동래부 관리가 연속하여 출입함으로써 난잡한 폐단이 많고,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 왜인에게 몰래 전달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조정에서 막으려고 해도 동래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폐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는 이를 엄금해야 한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일개시(五日開市)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도, 동래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오일개시는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일개시의 개념은 1708년 5월 15일, 11월 3일 기사에 잘 보인다. 「오일개

시는 미곡 등 긴요한 물자를, 색리(色吏)를 정하여 장부를 두고 세금을 거둔 뒤에 표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이다. 잡류(雜類)가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여러 날 왜관에서 머무는 등 일이 매우 해괴하나, 동래부가 수세하여 경비를 보충하기 때문에 금단하지 못한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상인들이 한 달에 6차례 왜관 안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 혼도. 별차 및 동래부의 군관이 함께 들어가 감독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오에 나오는데 불과하다.」(5월 15일) 「오일개시는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매오일(每五日) 양식과 찬을 왜관에 지급하기 위하여 들여줄 때 물화를 교역하는 사례가 있는데, 색리에게 세금을 지급하면 모두 물화를 통한다고 한다. 색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도록 한다.」(1708년 11월 3일)

왜관 개시대청에서 열리는 개시는 한 달에 여섯 번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개시를 대개시(大開市), 본개시(本開市), 육개시(六開市), 일삭육차개시(一朔六次開市), 육대개시(六大開市), 대청개시(大廳開市) 등으로 불렀다. 이 개시와는 별도로 왜관에서는 오일개시가 열렸다. 이 개시는 ‘일삭육차개시’와는 달리 ‘오일일차개시’라고 불렀다. 오일개시는 왜관에 양식과 찬을 지급할 때 열리는 개시로서,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대개시, 대청개시 때는 왜관의 출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고[수패상고, 도중상고]인 특권상인이 담당한 것과는 달리, 오일개시 때는 ‘잡류, 잡인, 잡상’이라 불리는 비특권적인 영세상인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오일개시의 개념이나 성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시 날짜이다. 개시 날짜를 뜻하는 「오일일차개시」, 「매오일(每五日)」 등 사료적 표현은 ① 한 달에 1번(첫째 5일), ② 한 달에 3번(5일, 15일, 25일), ③ 한 달에 6번(5일마다)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일삭육차개시’와 ‘오일일차개시’의 대비되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달에 한 번 첫 5일날 열린 것 같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1708년 사료를 검토해 보면, 한 달에 6번, 즉 5일마다 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할 경우 오일개시는 ㉠ 대개시 날과 동일 날짜(3일, 8일), ㉡ 대개시 날과 관계 없이 오일마다 한 번의, 두 가지 개시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춘관지』(권3, 개시)에서는 「본개시와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앞뒤로 어긋나기도 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오일개시 기사 내용은 오일개시의 설치, 날짜, 거래 물품, 세금, 폐단, 혁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앞으로 개시, 오일개시, 조시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각의 유형, 개념,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⑥ 왜사의 연향 접대

「왜사의 연향 때 여악을 그대로 쓰기로 함」(1715.6.17), 「왕세자 상중의 왜인을 접대하는 복색과 연향절차를 품쳐하게 함」(1729.2.21), 「왕세자 상중의 왜인 접대를 복이 끝나기 전에는 줄곡전의 복색으로 함」(1729.3.4), 「왕세자 상중의 왜인접대 복색을 마련함」(1729.4.1) 등 내용이다.

1715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사(倭使)의 연향(宴享) 때 여악(女樂)을 폐지하는 조목에 대해 확정된 명이 있었다. 금년조 송사왜(送使倭) 등의 하선연(下船宴)이 6월 4일로 결정되어, 시험삼아 조정의 분부를 왜학역관에게 전하였으나, 왜인들은 백여 년 동안 이미 시행한 예를 갑자기 폐지하니, 이를 대마도주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발이 심하여 1715년 제1, 2, 3선 송사왜 등의 하선연(下船宴)에 여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증정교린지』를 보면, 구례(舊例)에는 소동(小童)이 춤을 추었으나 1612년에 차왜가 기생들의 춤을 고집한 까닭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동래부에서 여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숙종실록』 숙종 40년(1714) 8월 임신조에 의하면, 경상도 암행어사 이병상(李秉常)은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뒤섞어 연향하는 자리에 올리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참으로 해괴하다고 하면서, 여악 폐지를 주장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1715년 기사는 이 『숙종실록』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왜관의 일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다시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1729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왕세자 상중에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과 연향의 절차는 동래부에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오래된 등록을 살펴보았다. 1645년(을유) 소현세자(昭顯世子) 상사 때는 객인에게 권화(勸花)하고 상화(床花)는 사용하지 않았다. 기생과 악공은 진열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연회 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찬품(饌品)은 세 차례 연회 모두 고기를 사용하였고, 복색은 모두 길복(吉服)으로 한 듯하다. 무술년 빈궁(殯宮) 상사 때는 줄곡 전에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고 건물(乾物)을 주었고, 줄곡 뒤에는 연향 절차를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다.」

이에 대해 복이 끝나기 전에는 마땅히 졸곡 이전의 사례대로 하도록 하였다.(1729년 3월 4일) 그러나 이전부터 국홀 시에는 졸곡 뒤에는 왜인의 연향 접대 예를 폐지한 사례가 없는데, 신사년 국홀 때 졸곡 이후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에다 철을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고, 일본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쪽에는 소찬 상을, 상제(祥祭) 뒤에는 길복(吉服)에 고기 상을 사용하였다. 경자년과 갑진년에는 국홀의 졸곡 뒤에는 포사모(布紗帽)와 포단령(布團領)으로 하면서, 권화(勸花)는 객인(客人)에게만 배치하고 상화(床花)와 기악(妓樂)은 사용하지 않았다. 졸곡 뒤에도 이전대로 연향을 베풀되, 피차간에 고기, 소찬의 구분, 권화와 상화, 기악 등의 절차를 경자년과 갑진년 등록대로 하되, 복색은 시복(時服)의 백포단령에 오사모와 흑각대의 제도로 하여 구분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연례송사나 차왜 등 사신이 오면 왜관의 연향대청(연대청)에서 접대 연향이 이루어졌다. 『증정교린지』 「연향의」에 이러한 연향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다. 연향에서 여악 실시를 둘러싼 양국간 생각의 차이, 1714년 여악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1715년 왜관 접대 연향에서 여악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상 때 왜사 접대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⑦ 왜관 난출(闌出)

「동래왜관의 왜인이 난출한 일로 인하여 별차 한찬홍을 파출함」(1710.4.9), 「왜인 난출로 인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곤장을 침」(1710.4.14), 「땀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관 왜인이 난출함」(1736.7.28), 「난출 왜인의 처치를 해아려 첩공(撤供)에 대해 분부함」(1736.9.12) 등 기사 내용이다.

1710년 4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문군관(守門軍官), 복병장(伏兵將)의 고목(告目)과 거리통사(巨里通事)의 진고(進告) 내용에 ‘관왜 57명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각기 미승(米升)을 가지고 사질도(莎叱道) 구덕산(九德山) 길로 갔다’ 는 보고하였다. 그 중 5명이 왜관의 북쪽 담장을 넘어 나갔다. 이를 막기 위해 부산진에서는 장교(將校)를 보냈다. 또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고 신칙하였다. 이들은 구덕산을 넘어서 목장촌(牧場村)으로 돌아왔다.

왜인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모두 공작미(公作米)에서 나온 것이다. 두 해

분을 한꺼번에 다 받은 뒤에 그대로 경인조 공작미를 청하여 가을 사이에 또 받으려고 난출하는 형세를 하여 위협하여, 청하는 바를 모두 이루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별차 한찬흥(韓繼興)이 병을 청하고 녀 달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번 난출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난출의 목적은 공작미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한 조직적 시위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난출을 막지 못한 훈도와 별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경상좌수사 이상집과 동래부사 권이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1710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이상집은 훈도와 별차들이 농간한 실상이 있다고 죄를 청하였으나, 권이진은 왜인이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고 전례에 따라 난출한 것이라면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는 것이 난출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1736년 7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난출한 것이 정축년(1697)에는 200명, 경인년(1710)에는 57명이다. 이번에는 인원수의 다과도 차이가 있고, 정축년, 경인년처럼 소란을 일으킴도 없다. 다만 이번 난출의 변고는 날마다 공급하는 땀감을 때맞추어 계속 지급하지 못한데서 비롯하였다. 경계 밖으로 난출한 자는 일죄(一罪, 사형)로 처단하는 것이 약조[계해약조, 1683]에 실려 있으니, 관수왜에게 따지고 타일러서 대마도주에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한 뒤에 회보(回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첩공(撤供)은 정축, 경인년의 전례가 있으니 동래부가 청한대로 첩공한다고 고하고, 서서히 그들이 하는 바를 보고 조처함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1736년 9월 12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관 관수왜가 난출한 왜인 등을 마땅히 대마도로 잡아보낸다고 하였으니 그 조처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야, 첩공(撤供)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랑왜관 왜인의 난출은 공작미의 원활한 조달, 땀감 지급 요청, 훈도·별차 등 왜학역관의 파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시도되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의 경계 밖으로 난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약조 내용을 적은 약조제 찰비를 1683년 왜관 출입문 안팎에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난출은 계속되었다. 난출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양국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I)에 해당하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표류민, 공작미, 유민(遊民), 피집(被執), 개

시(開市), 잠상(潛商), 다완(茶碗)·도기(陶器)의 번조, 상선연·하선연, 살인, 절도, 조삼(造蔘), 상세(商勢), 매[鷹連], 수포 위조, 왜관 화재, 초량객사 수리 등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4.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Ⅱ)는 1737년(영조 13, 정사) 3월 7일부터 1744년(영조 20, 갑자) 12월 28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3책과 제4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一)의 489~694쪽과 『전객사별등록』(二)의 3~22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2>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도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합계
항목수	14	19	13	23	8	10	55	19	16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특히 1743년은 다른 연도의 2배 이상이며, 전체 항목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1743년의 기사항목 수가 특히 많은 것은 대마도주, 만송원 등과 조선 예조, 동래부사·부산첨사 간에 오간 다양한 서계, 별폭, 별폭회례(물목, 잡물), 증물(내역) 등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국역 전객사별등록』(Ⅱ)의 첫 기록은 정사(丁巳, 영조 13, 1737) 3월 7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가 장계한 내용>과 <3월 5일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한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오명서의 장계 내용은 ㉠ 흥양(興陽) 표류민을 송환하는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玉浦) 경내에 정박함, ㉡ 왜학역관 황재하(黃在河)가 왜선의 표류 내용을 물음,

㉔ 우리 사람이 일본에 표류할 경우, 배와 노가 손상되고 백성들이 빠져 죽어야 차왜를 내어보내는 것인 본래 규례(規例)임, ㉕ 황재하가 표류민의 실태를 소홀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죄상에 대한 조치를 청함 등 내용이 중심이다.

<좌의정 김재로가 계품한 내용>은 표류민의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황재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상좌수영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은화,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국역 전각사별등록』(II)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향화왜(向化倭) 후손의 군역 부담

임진왜란 시기의 항왜(降倭)의 수는 최대 1만명에서 최소 1천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항왜는 요동(遼東)으로 압송하였다가, 그후 경상도 등지의 내륙에 분치하였다. 다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의 해안이 인접한 군현이나 섬으로 이송하였다. 신유년(1741) 7월 2일자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는 향화손(向化孫)의 군역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화왜에 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함경도 내 각 고을의 향화손은 예조에서 1명마다 배 1필을 거둔다.

② 향화손의 외손(外孫)과 외외손(外外孫)도 모두 배를 거둔다.

㉔ 1717년에 마련한 절목 내용에서는, ‘향화한 사람이 공사천(公私賤)에게 장가들면 역노비(驛奴婢)의 사례에 의하여 남녀 각기 부모의 역을 따르고, 향화여인이 공사천에게 시집간 자는 소생 여자는 오로지 예조에 소속된다’고 하였다.

㉕ 향화의 외손과 외외손의 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예조에서 배를 거두는 것은 당초 규정을 정한 본뜻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는 향화 외손과 외외손 가운데 양인(良人)인 자는 예조에서 배를 거두지 말고, 양인으로서 역(役)에 응하도록 하였다.

향화왜인의 손, 외손, 외외손 등의 역의 부담에 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내

용이다. 18세기 함경도 지역에 살고 있던 향화왜인 후손의 군역의 부담 실태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다.

② 왜관에서의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들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음간(淫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관에 잠입하여 교간한 전재(田才)를 효시하고 양녀(兩女)를 엄형 도배(島配)하기로 함」(1738.11.15), 「아국(我國) 여인과 잠간(潛奸)한 죄왜(罪倭)를 도중(島中)으로 감사(減死) 영원(永遠)유찬(流竄)했음을 확인함」(1738.12.13), 「왜관에 잠입(潛入)한 죄인을 포착(捕捉)한 군관 등에게 시상함」(1739.1.24), 「왜인 잠간죄인의 행형시(行刑時) 동래부사가 친관하지 않음을 정식으로 함」(1739.2.13) 등이 관련 내용이다. 내용은 1738년에 발생한 매매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738년 11월, 사비(私婢) 수례(守禮), 양녀(良女) 최애춘(崔愛春)이 전재(田才)의 유인에 의해 담을 넘고 왜관에 들어가 일본인과 매매춘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전재와 두 여인을 빨리 왜관 문 밖에서 효수(梟首)하고,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은 엄중하게 추고(推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영조와 조정 대신들의 논의 끝에, 전재(田才)는 왜관 문 밖에서 효수하고, 두 여인은 경상도에 명령하여 엄중하게 3차례의 형벌을 가한 뒤에 섬으로 유배하고, 동래부사는 파직하고, 사로 잡은 사람은 포상하도록 결말이 났다.

조선인 여인과 몰래 간통하였던 일본인 이우위문(利右衛門)과 원오(源五) 두 사람은 대마도로 이송되어 약조에 따라 사형은 면하고 영원히 유배되었다. 그리고 수례와 최애춘 등을 사로잡은 군관 김윤택(金潤澤)과 김희봉(金熙鳳), 전재를 사로잡은 전진(前前) 수서사(首書事) 심시희(沈始禧) 등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장교 송두성(宋斗星)과 나장철(羅將哲) 등은 동래부에 명하여 쌀과

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4, 잡범(雜犯)] 무오(1738) 11월, 기미(1739) 1월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구관(舊館) 성묘(省墓)

구관, 즉 두모포왜관의 뒷산에는 왜관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었다. 『증정교린지』 [권4, 약조(約條)]에 의하면, 1683년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봄·가을의 사일(社日)과 백종절(百種節)에 일본인들이 초량왜관을 나와 두모포왜관 뒷산에 있는 그들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사일에는 각 7일, 백종에는 4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에 가장 가까운 무일(戊日)을 명절로 삼아, 봄에는 토지신에게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가을에는 추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백종절(百種節)에 관왜(館倭)들이 구관(舊館) 후산(後山)의 부조(父祖) 분충(墳塚)에 왕래하는 것을 허락함」(1740.7.4), 「관왜 등의 부조분(父祖墳) 왕성(往省)을 별차가 영솔(領率)함」(1740.9.25), 「구관 후산에 있는 왜인 부조 분충을 춘사일(春社日)에 왕성하도록 함」(1743.3.16), 「왜인들에게 백종절일에 부조 분충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橫行)하지 못하게 함」(1743.7.20), 「관수왜에게 구관 후산의 부조 분충 왕성을 허락하되 횡행하지 못하게 함」(1743.8.21), 「관왜 등에게 부조 분충의 추사일(秋社日) 간망(看望)을 하게 함」(1744.8.28)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0~1744년에 성묘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초량왜관에 있는 일본인들 부조(父祖)의 무덤이 구관(舊館) 뒷산에 있어서, 매년 봄과 가을 사일(社日) 및 백종(百種) 명절에 성묘하는 전례가 있었다. 왜인들의 풍속에 백종 명절은 큰 명절이나, 금년(1734)에는 일본쪽과 조선쪽의 역서(曆書)가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윤월(閏月)은 곧 6월이지만, 일본의 윤월은 7월이므로, 왜인들이 7월 13일부터 전례대로 왕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래를 허락하되, 별차와 소통사가 영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1743년 3월 춘사일(春社日) 때도 전례에 따라 성묘를 가게 하되, 왜인들이 출입할 때는 별차와 소통사가 데리고 내왕하여 함부로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 백종절 때도, 전례대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

묘하되, 왜인들이 왕래할 때 별차와 소통사 등이 영솔하여 왕래하고 횡행해서
는 안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훗날 뒤의 일이지만, 1806년에 소천차랑우위문(小川次郎右衛門)은 특송사(特
送使) 정관이 되어, 왜관으로 건너와 가을 피안일(彼岸日)에 고관에 있는 무덤
에 성묘를 갔다. 그는 그때의 정경을 『우진토상(愚塵吐想)』이라는 책에서 글로
남겼다. 이에 의하면 무덤은 고왜관 근처에 24기가 있었으며, 세내(笹内)라는
곳에도 3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내는 고관 근처에 있던 개운포
(開雲浦) 마을을 가리킨다.

④ 왜관 별개시(別開市)

왜관의 개시일은 3과 8이 들어가는 날짜로 월 6회 정하였다. 즉 3일, 8일, 13
일, 18일, 23일, 28일 개시가 열렸다. 단 물건이 많이 모아지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별시(別市)를 인정하였다.

『증정교린지』[권4, 개시(開市)]에 의하면, 옛날에는 한달에 3번 개시가 열렸
는데, 1610년에 추가하여 6번 개시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물화가 쌓여 있을 때는 별도로 개시하였다(若倭人有請 或物貨委積之時 則
別開市)”고 하여, 별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별개시는 대개 왜인의 요청이나, 물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또는 곳은 날씨
나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으로 지정 날짜에 정식 개시가 열리지 못할 때 별도
로 열린 개시를 말한다. ‘별도로 열리는 시장’이란 뜻으로, 별개시(別開市), 별
시(別市)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라서는 ‘대신 여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대시(代
市)’라고도 하였다. 1809년 6월 4일의 한 자료에 의하면, “훈도가 왜관에 들어
왔으며, 대시(代市)가 있다고 소통사가 알려졌다.”라고 하였다.

「상역(商譯) 등의 피집(被執) 삼사가(蔘絲價) 은화를 별개시에 봉출(捧出)함」
(1740.9.25), 「상역 등 피집물화의 가은(價銀)을 별개시에 봉출함」(1744.8.28)이
관련 내용이다.

상역들이 왜관에 금년(1740년)조로 피집(被執)한 인삼과 실[생사(生絲)]의 대
가인 은자(銀子) 21,100냥을 1740년 9월 15일 별개시(別開市)에 받아내었으며,
1744년에는 상역 등이 피집한 물화 값으로 은화 12,150냥을 8월 27일 별개시에
서 받아 내었다고 하였다.

두 별개시의 내용에서는 인삼과 생사 등을 상역들이 미리 일본인에게 지급하였지만, 그 대가를 즉시 받지 못하고, 별개시 때 은화로 받았다는 것이다. 별개시 때 받은 은화가 각각 21100냥, 12150냥이어서 별개시의 규모도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개시가 열린 날을 개시일과는 다른 15일, 27일 열렸다. 별개시의 단면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생동(生銅)과 동전(銅錢) 구조

17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국내의 은(銀) 생산이 줄어들자, 덕천막부(德川幕府)는 장기(長崎)를 통한 은 수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은 대신 구리로 수출의 주력이 바뀌었다. 무역상한제는 장기 뿐만 아니라 대마도(對馬島)에도 적용되었다. 1686년에는 대마도에 의한 조선과의 무역 한도액은 연간 1080관목(貫目)으로 제한되었다.

1684년 일본이 조선에 수출한 사무역[개시무역] 총거래량 가운데 은이 70% 정도 차지하였다. 구리는 황동(荒銅)이 8% 정도, 도동(棹銅)과 연동(延銅)이 1% 정도였다. 일본이 수출하는 구리는 황동과 취동(吹銅)으로 구분되었다. 황동은 채굴한 구리를 광산에서 정련한 것, 취동[도동, 연동 등]은 이 황동을 대판(大坂)의 취옥(吹屋)에서 다시 정련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황동을 생동(生銅), 취동을 숙동(熟銅)이라 불렀다. 대마번은 공무역·사무역[개시무역] 등으로 수출하는 동을, 대판번저(大坂藩邸)를 중심으로 동취옥(銅吹屋)·동문옥(銅問屋) 등에서 매입하였다. 당시 동은 거의 대부분이 대판에 모여 있었다.

「왜 비선(飛船)이 생동(生銅) 재래(齎來)하여 출래함」(1743.윤4월.29), 「송사와 정관 및 도선주 압물(押物)의 연례 무역 동납철(銅鑢鐵)에 대한 증물(贈物)의 내역」(1743.8.28), 「훈도 현덕연(玄德淵)이 과만(瓜滿)이나 동철(銅鐵) 구무(求買)가 끝난 후에 교체하기로 함」(1743.9.27)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43년 윤4월 29일조 내용을 보면, 비선(飛船) 제1선은 생동 13칭(稱), 제2선은 12칭, 제3선은 12칭을 싣고 왔다. 1칭은 100근이다. 이 별무(別買) 생동 5000근(50칭)은 모두 대판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서 생동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생동 수입이 지연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대마도측은 동래부사로부터 자주 재촉을 받았다. 생동 수입의 지연으로 왜학역관(倭學譯官)들이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공작미(公作米) 수출을 보류하겠다면써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생동은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동전을 주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생동의 조달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생동을 즉시 무역하여 들이지 않은 일로 부산 훈도 현덕연(玄德淵)이 경상감영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현덕연에서 현태익(玄泰翼)으로 훈도가 교체되기도 하였다.

⑥ 별폭(別幅)과 회례(回禮) 물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 통교(通交)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교린(交隣)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다. 서계는 외교 실무부서, 즉 조선의 예조·동래부사·부산첨사와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訖庵) 등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별폭은 국가간에 주고받는 예물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통교의 내용을 적은 본문, 즉 본서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별폭은 국서에 딸린 별폭과 서계에 딸린 별폭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전자를 국서별폭, 후자를 서계별폭이라 부른다.

「표왜인(漂倭人) 입송으로 인한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의 예조 대인에 대한 회사(回謝) 서계·별폭/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별폭/ 각종 회례 잡물을 예조·경상도·동래부·부산진에 조비(措備)시킴」(1737.11.30), 「신관수왜 등방소(藤方紹)의 예조 대인에 대한 서계 및 별폭/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서계 및 별폭/회답서계를 마련하게 함/회례지물 별폭 및 그 조비 관서」(1739.4.11), 「대마도 외양(外洋)에 부류(浮留)한 배를 체포해 달라는 서계의 내용/회답서계를 승문원에서 찬출(撰出) 하송하기로 함」(1742.4.10), 「축전주(筑前州) 표왜인 입송에 대한 대마도주의 회사 서계 등본 및 별폭/회답 서계 및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 잡물을 마련하게 함」(1743.윤4.4), 「예조대인 및 동래부사·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와 별폭들/서계 회답 등의 초고를 승문원에서 찬출하고 회례잡물을 마련하게 함/별폭 회례 물목」(1743.윤4.15) 등이 관련 내용이다.

1737년 11월 30일조에 기록된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 대신 합하게 답장을 올립니다. 전번에 보내주신 서찰에서는 귀국의 화평함을 반잡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방(本邦)에서도 잘 있습니다. 본방의 능등주(能登州) 봉지군(鳳至郡) 윤도(輪島)의 배에 탄 14구(口)가 지난 해 귀국 장기(長鬢) 경내의 조암(鳥巖) 바깥 바다에 표류하다 도착하여, 배는 이미 파선이 되고 2구는 물에 빠져 죽었고, 살아 있는 이들은 다행히도 구제의 혜택을 입어 옷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여, 우리 관으로 부쳐 보내어 저희 고을에 도착하였으며, 2구의 시체 역시 끌어내어 관 속에 넣고 관(館) 뒷산에 매장하였으니, 감사의 감정은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동무(東武)에 아뢰었더니 감탄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진실로 이웃나라의 화목한 우의가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모두 역관의 말에 부쳐두었으며, 별록(別錄)의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애오라지 정성을 펼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삼가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 정사(1737) 10월 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영공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멀리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생각 어찌 그치겠습니까? 본방(本邦)의 능등주(能登州)의 주민이 14일 지난해 귀국 경내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다가 배가 홀연 파손되어 2구(口)가 빠져죽고 살아남은 자를 돌려보내주시니, 이웃끼리 우호하는 도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회답 서찰을 귀하께서 남궁(南宮)에 올려 말씀을 올리면서 거친 물품으로 신의를 표합니다. 삼가 즐거움이 많기를 바라오며, 짐짓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1737) 정사 10월 일.

이 두 서계는 1737년 10월 대마번주 평의여(平義如)가 각각 조선의 예조 대신과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답장 서계이다. 두 서계에는 각각 별폭이 첨부되어 있다. 별폭의 예물 목록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별폭 회례(回禮)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3> 대마도주가 예조, 동래부사, 부산첨사에게 보낸 서계 별품(1737년)

	채화대층갑 (彩畵大層匣)	수랍대청 (粹蠟大淸)	채화오촌럼경 (彩畵五寸匳鏡)	적칠대 (赤漆臺)	적동소약관 (赤銅小藥罐)	채화환황대 (彩畵鬘摐臺)	흑칠중층갑 (黑漆中層匣)	적동약관 (赤銅藥罐)
예조 대인	1비(備)	40개	2면(面)					
동래부사	1비			1개	10개			
부산첨사						1개	1비	5개

<표 4>조선측의 별품 회례(1737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白綿紬)	백저포	백목면	황모필 (黃毛筆)	화석 (花席)	사장부유둔 (四張付油菴)	진묵 (眞墨)
예조 대인	1근	1장	1장	5필(匹)	5필	10필	20병(柄)	3장	2부	20홀(笏)
동래부사				3필	3필	5필				
부산첨사				3필	3필	5필				
비고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대마도주가 보낸 별품 예물은 층갑(層匣), 경대(鏡臺), 약관(藥罐) 등이 중심이다. 예물의 비중은 예조 대인,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순서이다. 조선에서 답례로 보낸 별품 예물은 인삼, 피물(皮物), 직물(織物), 모필(毛筆), 화문석, 유둔(油菴), 참먹[眞墨] 등이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보낸 예물은 동일하다. 화문석·유둔·참먹은 경상도에서, 나머지는 예조에서 마련하였다.

대마도주가 예조나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낸 별품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선측의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예조 대인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품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1비			
수랍대청명(粹蠟大淸皿)	40개(箇)		10개			
채화오촌럼경(彩畵五寸匳鏡)	2면(面)		2면			
수랍루삼청발(粹蠟累三淸鉢)		1부(部)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1개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10개				10매
혁과수주래연(革裹垂珠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3근(斤)				
주간연기(朱竿烟器)		20악(握)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脚)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10매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20개		
채화침괘연(彩畵枕掛硯)					1비	
채화반탁(彩畵飯桌)					10매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1圍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채화육촌림경(彩畵六寸匳鏡)						1면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표 6> 동래부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		1비			
적칠대(赤漆臺)	1개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10개		10개		5개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				
황색괘연(黃色掛硯)		1비				1비
황련(黃蓮)		2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채화삼촌림경(彩畵三寸匳鏡)		2면				2면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개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10개		

채화화사갑(彩畵華篩匣)					1비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흑칠누합연갑(黑漆累合硯匣)						1비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

<표 7> 부산첨사에 대한 대마도주의 별폭 내용

물 품	1737.10	1739.	1743.2	1743.4	1743.4	1743.7
채화환황대(彩畵鬘荒臺)	1개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		1비		1비	
적동약관(赤銅藥罐)	5개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10매	10매		10개
적동화로(赤銅火爐)		2위(圍)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10개	5개			
황련(黃蓮)		1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수랍대명(粹蠟大皿)				10매		
흑칠중원분(黑漆中圓盆)					10매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3개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2위
청패간연기(靑貝竿烟器)						20악

층갑, 문갑, 화장 거울, 편지함, 서가, 벼루, 벼루집, 약탕기, 화로, 접시, 쟁반, 담뱃대, 황련, 갓끈 등 다양한 물품이 별폭의 내용이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별폭의 내용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마도주의 별폭에 대하여, 조선측이 지급한 회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예조의 회례 별폭

물 품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비고
인삼(人蔘)	1근	2근	1근		1근	2근	예조 마련
호피(虎皮)	1장(張)	1장	1장	1장	1장	1장	
표피(豹皮)	1장	1장		1장	1장	1장	
백면주(白綿紬)	5필(匹)	5필	5필	5필	5필	5필	
백저포(白苧布)	5필	5필	5필	5필	5필	5필	
백목면(白木綿)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10필	
흑마포(黑麻布)		3필		3필	3필	3필	
황모필(黃毛筆)	20병	30병	20병	20병	30병	30병	경상도 마련
화석(花席)	3장	3장	3장	3장	3장	3장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部)	2부	2부	2부	2부	2장	
진묵(眞墨)	20홀(笏)	30홀	20홀	20홀	30홀	30홀	

<표 9> 동래부사, 부산첨사의 회례 별폭

물 품	1737	1739	1743	1743	1743	1743	
백면주(白綿紬)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예조 마련
백저포(白苧布)	3필	3필	3필	3필	3필	3필	
백목면(白木綿)	5필	7필	5필	5필	5필	7필	
흑마포(黑麻布)		2필		2필	2필	2필	
황모필(黃毛筆)		20병		10병	20병	20병	
화석(花席)		2장				2장	경상도 마련
사장부유둔(四張付油氈)		2부				2부	
진묵(眞墨)		20홀			20홀	20홀	

조선측의 회례 물품은 인삼, 호피, 표피 등 고가품과 함께 각종 직물, 황모필, 화문석, 기름종이, 참덕 등이다. 이 가운데 인삼, 호피, 표피 3종류는 예조에서만 지급하고,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화석, 사장부유둔, 진묵의 세 종

류는 본도 제급(題給) 즉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본조 조비(措備) 즉 예조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대마도주의 별폭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사이에 약간의 차등이 있었지만, 별폭 회례는 양자가 동일하였다. 회례 별폭의 내용상에서는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1743년(영조 19) 8월 28일조에는 1743년 6월 대마도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낸 서계와 별폭, 그리고 이에 대한 회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만송원(萬松院)의 별폭(1743년)

호초(胡椒)	단목(丹木)	명반(明礬)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500근	700근	200근	1쌍(雙)	1부(部)

<표 11> 만송원에 대한 별폭 회례(1743년)

인삼	호피	표피	백면주	백저포	흑마포	백목면	황모필	화석	진목
2근	1장	1장	3필	3필	3필	5필	20병	5장	20홀
예조 마련								경상도 마련	

만송원의 별폭 물품을 앞에서 본 대마도주의 별목 물품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의 회례 내용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⑦ 1738년 변문절목(邊門節目)

『증정교린지』 [권4, 금조(禁條)]에 의하면, 1738년에 “변금(邊禁)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절목을 마련하였다(以邊禁解弛 多有作奸犯科者 更申節目).”고 하였다.

『변례집요』 (권5, 금조)에는 “1738년 5월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 때 변금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정립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해오는 등록(謄錄) 중에서 시행할 만하나 지금은 폐지된 것과 신절목에 따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사정과 민속을 참고하여 먼저 쉽게 시행할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외람되게 천총을 번거롭게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침삭하도록 분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마련한 항목은 총 31개이며, ‘변문절목(邊門節目)’이라는 절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 무오(1738) 6월 17일조에도 ‘변문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항목은 모두 30조이다. 『전객사별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각 문헌에 남아 있는 邊門節目의 내용

변례집요		전객사별등록	증정교린지
우동(右同)	1	왜방(倭房) 출입금지, 개시(開市) 장소 재확인, 잡상(雜商)의 개시 참여	좌동(左同)
우동(右同)	2	향소중군(鄉所中軍)의 왜방 출입 감시, 개시군관의 개시 통제	
우동(右同)	3	장교는 잡물 매매 금지, 상한(常漢)만 잡물 거래 허용, 장교의 밀무역에 대한 경계	좌동(左同)
우동(右同)	4	직역자들의 수문(守門) 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 출입례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수문군관)	좌동(左同)
우동(右同)	5	설문(設門) 왕래 전면 금지. 다대진(多大鎭), 서평진(西平鎭)에는 공무로 가는 자, 농부 외에는 왕래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6	신구초량촌민(新舊草梁村民)의 설문 내, 왜관 서쪽 담장 주변에서 땔감 구하기나 나물캐기 금지, 농민범금례(農民犯禁例)에 따라 처벌 / 불고지죄 적용[복병장(伏兵將), 군관]	
우동(右同)	7	한잡인(閑雜人) 왕래 금지, 설문과 서남북병소의 경계 강화, 불고지죄 적용(서남북병소와 설문의 장교)	
우동(右同)	8	군관에서 소통사(小通事)까지 설문~수문 사이에서의 사사로운 접촉 통제 왜방출입례에 따라 처벌, 불고지죄 적용[훈도, 별차, 거리통사(巨里通事), 설문장(設門將), 수문장(守門將)]	좌동(左同)
우동(右同)	9	조시(朝市) 거래 물품 규제, 조시 참여 상인 통제, 조시 때 수문 안에 들어가는 것 통제, 난입변문지률(闖入邊門之律)로 처벌 / 불고지죄 적용(수문장)	좌동(左同)
우동(右同)	10	부산 영선감색(營繕監色)과 시탄운급부지군(柴炭運給負持軍)에 대한 출입 규제 /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1	입직통사(入直通事) 외의 소통사 설문 출입 통제	좌동(左同)
우동(右同)	12	관직(館直)의 수패제(受牌制) 실시	좌동(左同)
우동(右同)	13	첩분(帖文)을 가진 부산진 사환의 왜관 출입 내용을 수문과 설문에서 동래부에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14	입번(入番)하는 통사(通事), 소동, 사령은 입번 5일 안에는 설문 출입 금지	좌동(左同)
우동(右同)	15	연향을 준비하는 잡색인(雜色人)에 대한 서북병장, 동북병장, 북문통사의 출입 보고	
우동(右同)	16	수문과 설문 근무 인력의 인원 축소, 세 곳 북병장의 선임, 인원 충원 때 해당 진(鎭)의 감색(監色) 처벌, 수문통사가 설문 출입 때 수검(搜檢)	

우동(右同)	17	운미감관(運米監官), 운미군(運米軍)의 왜선소(倭船所) 출입 규제, 왜관 체류 시간 등 보고, 왜관 선소에 머문 운미선(運米船) 수검	좌동(左同)
우동(右同)	18	운미감관(運米監官) 임의 왕래 금지/勿禁帖 소지자만 출입 허용, 발각되면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把守) 처벌	
우동(右同)	19	동래부, 각진(各鎭) 소속들의 연향, 왜관 수리 때 수검	
우동(右同)	20	조시(朝市) 때 수문군관이 거래 현황을 보고	
우동(右同)	21	훈도·별차출사역관(出使譯官)의 노자(奴子)들의 집에 대한 수검, 수검 방법 강화, 수검을 담당한 군관의 처벌 규정 강화	좌동(左同)
우동(右同)	22	일본인의 역관가(譯官家)(훈도, 별차, 출사역관) 왕래에 대한 보고[거리통사((巨里通事)-수문군관-상부 보고]	좌동(左同)
우동(右同)	23	훈도·별차출사역관의 노비가 부산 조시에 왔다가 다시 설문으로 들어갈 때 특별 수검	
우동(右同)	24	일본인의 청직가(廳直家) 출입 통제, 일본인과 사사로이 접촉한 청직은 벌역(罰役)으로 처벌	좌동(左同)
우동(右同)	25	연향의 숙공(熟供) 때 복문의 개폐 권한 지정. 개폐 상황을 동복병장, 수문통사, 부산감관이 연명으로 보고, 발각되면 복병장, 담당통사, 운미감관과 수문 파수 처벌	
우동(右同)	26	수문군관, 별기위(別騎衛)에서 차출(6명) 급료 외 목면 지급 / 설문군관, 해사근신자(解事謹愼者)에서 차출(12명) 급료 외 쌀 지급/목면과 쌀은 입번 때의 찬비(饌費)로 사용케 함 / 타 잡역 출입	
우동(右同)	27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에 장(醬)을 지급(입번 때 반찬 보조) / 보고에 쓸 붓, 종이, 먹 지급	
우동(右同)	28	수문과 설문에 고목식례(告目式例) 지급(동래부 보고용)	
우동(右同)	29	수문군관과 설문군관의 범죄가 있을 때 관문입직(官門入直) 천별장(千別將)을 보내어 처리	
우동(右同)	30	연향 때 준비하러 가는 역인(役人)의 수는 모두 사후 보고, 출입시간 등 보고	
미진한 것은 추후 마련	31		

<표 12>를 보면, 『전객사별등록』에는 30조, 『변례집요』에는 31조, 『증정교린지』에는 15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증정교린지』는 변문절목의 내용을 절반 정도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객사별등록』과 『변례집요』는 내용이

동일하다. 마지막 조항인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未盡條件 追後 磨鍊爲白齊).”는 조항만 『전객사별등록』에는 없다. 다만 양자는 22조와 23조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

비변사에서는 이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니, ㉠ 왜인의 방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거듭 밝히고, ㉡ 예전 규약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 두 문의 방금(防禁)을 별도로 거듭 엄중하게 하였는데, 모두 긴요한 것으로서 실효를 거둘만 하므로 지금부터 한결같이 절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국역 전객사별등록』(II)의 주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연례송사 예단잡물가(年例送使禮單雜物價), 공작미(公作米), 문위역관(問慰譯官), 왜관 서북병소(西伏兵所), 왜관 토목공사, 표류민, 동래부 세삼(稅蔘), 잠상(潛商), 책문개시(柵門開市) 등 조선 후기 교류사,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객사의 일상 사무와 그에 따른 각종 문식(文式), 의례 등을 망라한 자료로는 『전객사일기』가 있다. 이 책은 『전객사일기초본』, 『전객사등록』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1640년(인조 18)에서 1886년(고종 23)의 약 250년 동안의 전객사에 관한 총 99책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各司謄錄)』(92~101, 1999~2006년)으로 활자화하여 간행한 바 있다. 『전객사별등록』의 내용은 『전객사일기』,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더욱 구체적인 조선 후기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의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상당 부분 인용,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V),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8.
- 김동철, 「국역 전객사별등록(I) 해제」 『국역 전객사별등록』(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전객사일기』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2호, 2006.
-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0.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의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민과 왜관 공간의 이용」 『역사와 세계』 37집, 효원사학회, 2010
- 오수창, 『전객사별등록』 해제, 『전객사별등록』 (一), 서울대 규장각, 1992.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제임스 루이스, 「조선후기 부산 왜관의 기록으로 본 조일관계-『폐·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한문중,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국역 전객사별등록(Ⅱ)

국역 정 경 주(경성대 한문학과)

감수 이 원 균(전 부경대 사학과)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3책

정사(1737) 3월 초7일

이번 3월 초5일 시임(時任)¹⁾ 대신과 비국(備局 : 비변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²⁾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啓稟)한 바, “이는 곧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³⁾의 장계인데, ‘왜선이 표류(漂流)하여 옥포(玉浦)⁴⁾ 경내에 정박하자, 왜학역관(倭學譯官) 황재하(黃再河)가 가서 문정(問情)하였더니, 홍양(興陽)에서 표류한 백성을 데려오는 차왜(差倭)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백성이 그들의 땅 안으로 표류하여 배와 노가 손상되고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있는 뒤에 차왜(差倭)를 내어보내는 것이 본디 규례(規例)이거늘, 이제 이번 황재하의 문정 가운데는 홍양 백성이 표류해 들어간 깊고 얕음과 배의 손상 여부를 거론하지 않아 극히 소홀하기에, 그가 관소(館所)에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상세히 사정을 물어 장계로 알릴 계획이니, 황재하의 죄상을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정한 바가 이렇게 분명치 못한 것을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해당 수영(水營)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사(1737) 4월 17일

이번 4월 16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이는 곧 동래부사 오(吳)의 장계입니다. 왜선이 나오면 제2선과 3선의 정관왜(正官倭) 등이 간혹 본선을 타기도 하고 혹 수목선(水木船)을 타기

1) 시임(時任):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2) 유사당상(有司堂上): 특정 사무를 전담하는 당상관.

3) 오명서(吳命瑞, 1688-1740): 자는 신경(信卿), 해주 오씨로 숙종 때 음사(蔭仕)로 출사하여 합천군수, 선산부사를 역임하고, 1735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승지를 거쳐 병진년(1736) 5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무오년(1738) 정월에 나포되어 교체되었다가, 경상도 관찰 사, 병조와 예조의 참의,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4) 옥포(玉浦): 현재의 거제시 옥포동.

도 하는 것은, 비록 전례와 요즈음의 규정이 같지 않으나, 당초 표류하여 울산(蔚山)에 정박하였을 때 별차 현태익(玄泰翼)⁵⁾이 문정한 내용 가운데, 단지 ‘제1선, 2선, 3선의 정관왜 등이 두 배에 나누어 탔다’고만 일컫고, 격왜(格倭)의 명수(名數) 및 본선과 수목선은 전혀 자세히 살펴 구별하지 않고 몽롱하게 수본(手本)⁶⁾하였습니다. 신해년(辛亥年, 1731)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물종(物種)과 명수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누락한 훈도 별차는, 작게는 본부에서 추고하여 다스리고, 크게는 장계로 알려져 죄를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현태익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라는 일로 우러러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문정할 때 몽롱하게 수본한 것은 아주 매우 놀라우니, 해당 본부(本府)에 명하여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사(1737) 4월 17일

이번 4월 16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동래부사(東萊府使)의 장계 말단에, ‘또 왜인의 서계(書契) 가운데 선조(宣祖)의 구휘(舊諱)⁷⁾를 범한 것이 있어서 놀랍고 분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천계(天啓)⁸⁾ 병인년(1626) 이후로 서계에 이 휘(諱)를 범한 것이 그 수를 모를 만큼 많으나, 그 사이에 또 탈을 잡아 다투지 말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기에, 이제 이번 서계는 신이 또한 한결같이 전례대로 받아 올려야 하겠으나, 혹시라도 조정에서 좋은 조처 방도가 있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초휘(初諱)는 정휘(正諱)와 달라서 왜인이 반드시 알지는 못할 것이라, 이전부터 이미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다투어 물리치기도 어려우니, 예전대로 그냥 둬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5) 현태익(玄泰翼, 1701-?):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중거(仲舉). 왜학 훈도 현덕윤(玄德潤)의 아들로 경종 임인년(1722)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6) 수본(手本): 공사(公事)에 대한 자필 보고서.

7) 구휘(舊諱): 조선왕조 14대 국왕 선조(宣祖)의 처음 이름을 말함이다. 선조의 처음 이름은 균(鈞)이었으나 뒤에 연(昡)으로 고쳤다.

8) 천계(天啓): 명나라 희종(熹宗, 1621-1627재위)의 연호.

정사(1737) 5월 27일

동래부사 오명서가 5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8일 유시(酉時)에 황령산 봉군(荒嶺山 烽軍)의 진고(進告)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부산첨사(釜山僉使)의 치통(馳通)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구봉(龜峰)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哨探)하기 위하여 2선장(二船將) 유동휘(柳東輝)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19일 축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초탐장(哨探將)의 치보(馳報)에,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館所)에 왔다’고 하기에, 이에 근거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任譯)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즉각 훈도 김정균(金鼎均)⁹⁾과 별차 현태익(玄泰翼) 등의 수본 내용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飛船) 한 척에는 두왜(頭倭) 1인, 격왜(格倭) 6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路引)과 관수왜(館守倭)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노인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전례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위의 노인 한 통을 감봉(監封)하여 해조(該曹)¹⁰⁾로 올려보냄. 방금 도부(到付)한 본부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備邊司)의 복계(覆啓)하여 회관(回關)한 내용에, “해당 왜학 별차 현태익의 문정에는, 왜선이 나왔을 때 제1선 2선 3선 정관왜 등이 두 배에 나누어 타고 나왔다고만 일컫고, 격왜의 명수 및 본선과 수목선을 전연 구분하여 살피지 않은 구차하고 몽롱한 수본은 아주 매우 놀라우니, 본부에 명하여 곤장을 치라”는 일로 관문(關文)하였기로, 동 별차 현태익을 이달 17일에 신의 동래부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쳤다는 일임.

정사(1737) 5월 29일

이번 5월 28일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지사(知事) 송진명(宋眞明)¹¹⁾이 계품하기를, “부산진의 연례왜인예단잡물가(年例倭人禮單雜物價)¹²⁾를

9) 김정균(金鼎均, 1682-?):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태구(台九)이며, 사역원 봉사(奉事) 김상윤(金尙潤)의 아들로, 숙종 경인년(1710) 증광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10) 해조(該曹): 담당 관청. 왜인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해당 관청은 예조(禮曹)이다.

당초에는 본진에서 담당하여 책응(責應)¹³⁾하였는데, 정묘년(1687)에 도신(道臣)이 부근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로 획급(劃給)하도록 청하자, 그 때 비국에서는 동래부의 세은(稅銀)¹⁴⁾ 가운데 매년 250냥을 떼내어 지급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준행하였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세은으로 거두는 수량이 많게는 만여냥, 작아도 수천 냥을 밀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수량을 잘라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는 동래부의 세은이 끊어져서, 한 해에 거두는 것이 겨우 백여 냥에 그치니, 이렇게 소략한 수량으로는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은화를 실로 추이(推移)¹⁵⁾하여 획급(劃給)¹⁶⁾할 길이 없으므로, 혹은 본조(本曹)에 보고하고 혹은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속히 변통하도록 청하였으나, 실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만약 본진에서 처음처럼 스스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인근 고을의 저치미를 참작하여 획급하는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다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사년(1737) 9월 초9일

이번 9월 초4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왜료(倭料) 공작미(公作米)를 기한에 맞추어 왜관에 들여주는 일은 전에 신칙한 일이 있어서 애초에는 그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근일에 와서는 점차 해이해져서 기한 전에 들여주는 것이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비국에서 이치를 따져 관문(關文)을 발송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 11) 송진명(宋眞明, 1688-1738): 자는 여유(汝儒), 호는 소정(疎亭)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숙종 갑오년(1714)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쳐 평안·황해·경기 관찰사를 지내고, 호조와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 12) 연례왜인예단잡물가(年例倭人禮單雜物價): 해마다 무역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오는 왜인들이 가져오는 예물에 대하여 답례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예물 목록[禮單]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의 값.
- 13) 책응(責應): 책임을 지고 이에 응함.
- 14) 세은(稅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은화. 동래부에서는 상인들이 왜관에 물자를 공급하고 대금으로 지급받는 은화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1년에 4·5천 냥에서 많게는 만 냥에 이른다는 말이 전객사등록 제2책 갑인년(1734) 8월 21일 조에 보인다.
- 15) 추이(推移):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
- 16) 획급(劃給):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함.

정사년(1737) 9월 12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일찍이 지사 송진명이 계품한 바, 부산진의 연례왜 인예단가를 인근 고을의 저치미(儲置米)에서 참작하여 획급하는 일로, 묘당에서 품의 조처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동래부의 세은(稅銀)이 줄어든 뒤로부터 이전에 획급하던 250냥의 수량을 채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인근 고을의 저치미로 지급하는 것 또한 계속할 만한 방도이지만, 세은이 비록 줄어들었더라도 잘 거두어 모으면 또한 어찌 이 수량을 못채우는 지경에 이르기야 하겠습니까? 본부에 명하여 짐짓 전례대로 담당하여 획급하게 하고, 꼭 부득이하다면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좋은 방도를 생각하고 구분 조처하여 장계로 알려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정사년(1737) 윤9월 초2일

장악원(掌樂院)의 첩정(牒呈) 내용에, 본원에 소속된 좌방(左坊)¹⁷⁾ 악사(樂師) 김해담(金海淡)의 수본 내용에, ‘사직(社稷)과 대보단(大報壇)¹⁸⁾과 여러 산천의 제향 때 사용하는 생황(笙簧)을 무역하여 온지 이미 오래인데, 생황의 혀[篋葉]¹⁹⁾가 떨어져나가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 때문에 사용하기가 극히 미안하니, 이제 이번 동지사(冬至使) 사행(使行) 때 생황 2부를 무역해 와 달라’고 수본 하였는데, 동 생황을 가져와서 살펴보니 그 손상 파괴된 것이 과연 수본의 사연과 같으니, 전례대로 무역해 오는 일로 입계하여 분부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啓目)을 첨부하여 첩정(牒呈)하였음. 제향 때 사용하는 생황을 무역하여 오는 것은 이미 오래 되었고, 생황의 혀가 떨어져나가 소리가 나오지 않기에 이 때문에 사용하기가 극히 미안하다 하였는 바, 동 생황 2부를 첩보한 대로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이번 동지사 사행에 부쳐 보내어 무역하게 오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²⁰⁾ 2년(1737) 윤9월 2일 동부승지 윤득화(尹得和)²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7) 좌방(左坊): 조선조 궁정 음악의 전습과 연주를 담당하는 편제 조직인 교방(敎坊)의 하부 조직.

18) 대보단(大報壇): 임진왜란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원조한 중국 명(明)나라의 신종(神宗)을 모신 제단. 1704년에 건립하였다.

19) 혀[篋葉]: 피리 같은 악기의 부리에 끼워 소리를 내는 얇고 가름한 조각. 피리청.

20) 건륭(乾隆): 청(淸)나라 고종(高宗)의 연호.

정사(1737) 10월 초4일

一,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을사년(1725) 관백(關白)이 약군(若君)²²⁾을 세우면서 대차(大差)가 나왔을 때의 서계(書契)를 예조에 분부하여 들이고, 무감(武鑑)²³⁾을 사역원에 분부하여 아울러 들이라.”고 하였음. 을사년 저군(儲君)을 세웠을 때 대차왜(大差倭)의 등록을 입계(入啓)하였다가 해가 저문 뒤에 되돌려 내림.

一. 전교에 이르기를 “을사년(1725) 대차왜(大差倭)가 나왔을 때 첨부한 문서를 예조에 분부하여 내일 문을 열도록 기다렸다가 들이라”고 하였음. 첨부 문서는 괴원(槐院 : 승문원)에 있기에 찾아다가 입계(入啓)하였음.

정사(1737) 10월 초5일

이번 10월 초4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동래에서의 장계로 왜인을 접대하는 일을 하교(下敎)한 바 있는데, 이 일은 장차 어떻게 조치할꼬?” 하시자, 영의정 이(李)가 말하기를 “신 등이 밖에 있으면서 비국과 예조의 등록을 가져다 보니, 왜국(倭國)에서 경사를 고하는 것은 3차에 불과한데, 첫째는 관백이 아들을 낳았을 때이고, 둘째는 관백이 저군(儲君)²⁴⁾을 세울 때이지만, 손자를 낳았을 때 경사를 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찍이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을 동래부사가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防塞)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극히 미안하거니와, 훈도 별차가 책망하여 타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서 여러 당상(堂上)과 상의하니, 모두들 이 일은 시행을 허락해야 할 듯한데, 허락할 것 같으면 당초에 상쾌하게 허락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심이 어떠할지?”라고 하였고, 이조판서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이런 일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길을 열어주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이것은 뒷날 참조하여 사례로 인용할 폐단이 없을 듯하니, 끝에 가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허락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감께서는 “관백이 아들을 낳은 것이 승

21) 윤득화(尹得和, 1688-1759):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덕휘(德輝)로 영조 을사년(1725) 증 광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대사성, 관찰사, 도승지, 대사헌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22) 약군(若君): 일본 에도막부 시대 관백(關白)의 아들을 일컫는 말.

23) 무감(武鑑): 일본 막부(幕府)시대 무가(武家)의 가문 문장(紋章)과 성명, 직급, 영지(領地)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

24) 저군(儲君): 군주의 지위를 계승할 후계자.

습(承襲)하기 전에 있었으니, 이제 이번에 손자를 낳아 경사를 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8대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경사라 말을 하니, 내가 만약 접대하여 위로하는 일이 없으면 이웃나라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닌 점도 있으니, 그 대차왜(大差倭)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을사년(1725)의 사례대로 접대하는 일로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비변사. 호조, 사역원. 승문원.

정사(1737) 11월 초7일

이번 11월 초7일 입직(入直)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나라에서 이웃나라와 사귀는 데는 그 신의가 소중한데, 근래에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 접대하는 도리가 극히 소홀하기에 일찍이 이미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그 효과를 모르겠다. 정당한 조세²⁵⁾를 하납(下納)²⁶⁾이라 일컬어 구획한 데는 그 의도가 어떠한데, 수령된 자가 그 명령을 가볍게 보는 것은 극히 태만하다 하겠거니와, 왜관에 지급하는 땀감과 숯 또한 소략하게 한다 하므로 일찍이 아울러 하교(下敎)하였는데, 과연 신칙하여 받들고 있는지? 비국에 분부하여 본도(本道)에 삼가 시행하지 않는 수령과 첨사를 물어보고, 아울러 비국에 명하여 경중을 분간하여 신칙하게 하라.”고 하였음.

정사(1737) 11월 30일

一.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禮曹) 대인(大人) 함하(閤下)께 답장을 올립니다. 전번에 보내주신 서찰에서는 귀국이 화평하다는 소식을 받잡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방(本邦)에서도 잘 있습니다. 본방의 능등주(能登州) 봉지군(鳳至郡) 윤도(輪島)의 배에 탄 14구(口)가 지난 해 귀국 장기(長鬢) 경내의 조암(鳥巖) 바깥 바다에 표류하다 도착하여, 배는 이미 파선이 되고 2구는 물에 빠져 죽었고, 살아 있는 이들은 다행히도 구원의 혜택을 입어 옷과 식량을 넉넉하게 지급하여, 우리 관

25) 정당한 조세[惟正之供]: 백성이 국가에 정상으로 납부하는 바른 명목의 조세.

26) 하납(下納): 세입(稅入) 중 조정에 납부하는 상납(上納)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 사용하게 하는 재원. 조선후기 영남의 세미(稅米) 3만여섬 가운데 그 절반 이상을 왜료(倭料), 공무역(公貿易) 등의 명목으로 동래부(東萊府)에 하납(下納)하였다.

으로 부쳐 보내어 저희 고을에 도착하였으며, 2구의 시체 역시 끌어내어 관(棺) 속에 넣고 관(館) 뒷산에 매장하였으니, 감사의 감정은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동무(東武)²⁷⁾에 아뢰었더니 감탄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진실로 이웃나라의 화목한 우의가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모두 역관(譯官)의 말에 부쳐두었으며, 별록(別祿)의 보잘 것 없는 예물로 애오라지 정성을 펼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삼가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元文) 2년 정사(1737) 10월 일. 별폭: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채색 그림을 그린 여러 층의 큰 문갑) 1틀[備]. 수랍대청(粹籙大清) 40개. 채화오촌렴경(彩畵五寸廩鏡: 채색 그림의 5치 화장 거울) 2면(面). 정(整).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분 영공(令公)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멀리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생각 어찌 그치겠습니까? 본방(本邦)의 능등주(能登州)의 주민이 14일 지난해 귀국 경내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다가 배가 홀연 파손되어 2구(口)가 빠져죽고 살아남은 자를 돌려보내주시니, 이웃끼리 우호하는 도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회답 서찰을 귀하께서 남궁(南宮)²⁸⁾에 올려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친 물품으로 신의를 표하오니, 삼가 즐거움이 많기를 바라오며, 짐짓 이렇게 하여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원문 2년(1737) 정사 10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別幅) :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틀[備]. 적칠대(赤漆臺) 1개.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구리로 만든 작은 약탕기) 10개. 정(整).

부산영공 : 채화환□대(彩畵鬘攄臺) 1개.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흑칠을 한 가운데 크기의 문갑) 1틀. 적동약관(赤銅藥罐: 구리 약탕기) 5개. 정.

이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번에 능등주에서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면서 회유한 일로 바친 서계(書契)의 회답 및 동래와 부산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시고, 별폭의 회례(回禮)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을 후록(後錄)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27) 동무(東武): 무장국(武藏國)의 동쪽.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의 별칭.

28) 남궁(南宮): 예조(禮曹)의 별칭이다.

후록: 별폭의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 명주 5필. 흰 모시베 5필. 흰 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문석 3장. 녁장 붙인 유둔(油屯) 2부. 참먹[眞墨] 20홀(笏).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 명주 3필. 흰 모시베 3필. 흰 무명 5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건륭 2년(1737) 12월 초1일 동부승지 신 조상명(趙尙命)²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738) 5월 초5일

금년 5월 초1일 대신과 비국(備局)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하기를,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대차왜(大差倭)가 장차 나오는데 전일의 장계를 마땅히 즉시 회계(回啓)하여 내려보내야 하나, 당초 회계 초고가 신에게 왔는데 신이 그 때 병이 중하여 일을 살피지 못하고 범연히 보고 지나쳤다가, 병이 차도가 있는 뒤에 다시 회계 초고를 보니 의도와는 크게 다른지라, 장차 영의정에게 의논하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의 지극히 어려운 곳은, 시봉(侍奉) 1인이 이미 약조에 있고, 계유년(1693) 이후로 조정에서 1인으로 시행한 것이 이제 거의 50년인데, 이제 어찌 가벼이 2인을 허락할 수 있을런지? 왜인(倭人)은 청인(淸人)과 다름이 있어서, 혹 규정 외에 허락하는 바가 있더라도 은덕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또 다시 허락하기 곤란한 일에 마음을 내니, 이것은 결코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으로 방색하려고 하면, 그들의 말로는 ‘두 사람으로 시행한 것이 이제 거의 50년이라’고 하니, 지금 와서 형세를 다투면 저들로서는 말이 정직하고, 우리로서는 꼴림을 면치 못하니, 끝내 이기지 못하고 부질없이 더욱 난처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변신(邊臣)의 도리로 말하자면, 이미 시봉 1인이 조정의 명령이고, 2인을 접대한 것이 본부의 그릇된 사례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힘을 스스로 헤아려 1인을 감하여야 할 것 같으면 편의대로 다투어 조정의 명령을 펼쳐 종전의 잘못된 사례를 혁파하거나,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약조를 벗어나 2인을 허락하도록 청하기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사례 대로 함이 오히려 조정의 명령을 엄중

29) 조상명(趙尙命, 1687-?): 자는 자휴(子休), 본관은 풍양으로, 경종 계묘년(1723)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하게 여겨 두려워함이거늘, 이제 문득 2인을 허락하도록 청하였으니, 허락하지니 모욕을 당하고, 막자니 죽기살기로 달려들어, 조정에서 난처한 사단은 참으로 극히 편치 못합니다. 사사로운 시봉 한 절목이 이미 적발되었으면, 일의 체면에 있어서, 전후의 변방 신하가 1인으로 한다는 조정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지 못한 것은, 사뭇 이전의 회계(回啓)에 의하여 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다, 조정에서는 단지 전에 시봉을 1인으로 한다는 명이 있는지 이제 50년인데, 변방 신하가 어찌 감히 2인으로 말을 하는지? 전례에 의거하여 조정 명령을 거행하는 것은 책임이 변방 신하에게 있으니,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³⁰⁾를 엄중하게 추고하고, 장계를 되돌려 내려보내어, 다시는 시봉의 일로 조정에 번거롭게 알리지 말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판윤(判尹) 김시형(金時炯)이 말하기를 “50년 동안 접대한 일을 하루 아침에 비록 다투려고 하더라도 필경에는 무익하고 도리어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구택규의 장계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호조판서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전후 부사(府使)가 또한 어찌 몰랐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매양 전례에 따라 간편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구택규의 의도는 바로잡아 고치려는 데 있어서 이런 장계를 하였으나, 앞으로의 일이 실로 대단히 난처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체가 옳다. 대신이 주달(奏達)한 바대로 하면 되겠다. 전후의 부사와 접위관은 그냥 두라.”고 하셨음. 비변사.

무오(1738) 6월 17일

비변사의 감결(甘結)³¹⁾ 내용. 동래부사 구택규의 장계에 운운한 **변문절목(邊門節目)**.

一. 왜관 가운데서 매매할 때 왜인의 방에서 매매하는 자는 일죄(一罪 : 사형)를 시행한다는 사항은 약조(約條)가 명백하니, 지금 이후로 크고 작은 매매를 막론하고 개시(開市)하는 날 훈도(訓導) 별차(別差)가 착실히 살펴서, 한 사람이라도

30) 구택규(具宅奎, 1693-1754): 자는 성오(性五), 호는 존재(存齋), 본관은 능성이다. 숙종 갑오(1714)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진주목사를 지내고 동지사의 서장관을 거쳐 무오(1738) 정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동년 9월에 교체되었다. 뒤에 공조와 형조의 참판과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31) 감결(甘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일의 처리를 지시하는 공문.

잠깐이나마 왜인의 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매매할 때는 반드시 대청(大廳)의 여러 사람이 앉은 가운데서 가격을 따져서 매매하며, 잡상(雜商)들도 개시 때에 대청에서 굽어볼 수 있는 곳에서 매매하게 하여, 훈도 별차가 담당하여 검찰하게 하며, 혹 물종(物種)을 운반하여 준다고 말을 하면서 왜인의 방에 출입하여도 역시 일죄로 논단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으며, 훈도 별차 또한 장계로 알려 죄를 논함.

一. 개시하는 날 향소(鄉所)³²⁾의 중군(中軍) 이하의 청렴하고 조심스러운 자를 임시로 보내어 불시에 매매하는 곳에서 적간(摘奸)하게 하되, 만약 사사로이 왜인의 방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그 즉시 결박하여 본부에 올리며, 개시에 군관이 내려갈 때 만약 관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면 일체 사사로이 적간하지 못함.

一. 개시 때 상한(常漢: 상놈) 외에는 읍이나 촌락을 막론하고 장교(將校)로 행세하는 자가 잡물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할 듯한데, 간혹 무명필[木疋]이나 벚짚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는 극히 수상하니, 이런 무리는 각별히 발가벗겨서 수색 검사하고, 그 중에 행동이 황당하여 탄로된 자는 그대로 즉시 잡아 관부(官府)로 보낼 것.

一. 무릇 왜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통사(小通事)나 관리(官吏)나 관직(館直)이나 수리장교(修理將校)나 읍리(邑吏)를 막론하고, 왜인과 몰래 혼자 수문(守門) 안의 은밀한 곳에서 수작하는 자는, 훈도 별차 및 수문군관(守門軍官)이 담당하여 엄금하여 일일이 관에 보고하고, 범한 자는 왜방에 출입한 사례에 견주어 2등을 감하여 논단하고, 훈도 별차 및 수문군관으로서 알고 고하지 않으면, 훈도 별차는 장계하여 알려져서 처치하고, 군관은 곤장 30대를 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함.

一. 설문 안에는 왕래하는 행인을 일체 금단하되, 다대진(多大鎭)과 서평진(西平鎭) 두 진관(鎭官)에서 시행하는 변방 보고를 가져오는 자만은 금하지 말며, 설문(設門) 안쪽 및 왜관의 서쪽 담장 바깥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전답이 있는 주민으로 경작하러 왕래하는 자는 농기구나 소를 표지로 하여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하지 말고, 모내기를 할 때만은 농녀(農女)는 금하지 말며, 모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출입의 한도로 하며, 벼 곡식을 간수하거나, 물을 대기 위해 논둑을 보는 일로 해가 저물거나 밤중에 왕래하는 자는 일체 금지하되, 범한 자는 곤장 10대를 엄하게 쳐서 단연코 용서하지 않음.

一. 신초량(新草梁)과 구초량(舊草梁)에 거주하는 주민이 나무를 하거나 나물을 캔다고 설문 및 왜관 서쪽 담장 가까운 곳에 출입하는 자는, 이전부터 간사한 일

32) 원본의 ‘鄉市’는 ‘鄉所’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향소는 지방 수령을 자문 보좌하는 지방자치기관이다.

을 함부로 하는 폐단이 많이 있었으니 각별히 엄금하여, 범한 자는 농민이 금령을 범하는 사례에서 2등을 더하여 처치하며, 만약 적발하여 관에 고하지 않으면 수문군관 및 복병장(伏兵將) 등에게 곤장 20대를 침.

一. 한인(閑人)과 잡인이 왕래하며 넘어간 자가, 설문(設門)에서 들여보내어 서남복병소(伏兵所)에서 잡히면, 설문 군교(軍校)에게 곤장 30대를 엄하게 치며, 서남복병소에서 들여보내어 설문에서 잡히면 또한 그 규율대로 하며, 두 곳 장교가 함께 동조하여 숨겨서 보고하지 않으면, 두 곳 장교에게 모두 20대씩 친 다음 군보(軍保)³³⁾로 강정(降定)³⁴⁾함.

一. 설문(設門) 안에서 수문(守門) 바깥까지와, 왜관 서쪽 담장 근처의 산골짜기 술밭 등에서 우리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몰래 수작하는 자는, 받은 패(牌)의 유무를 막론하고 위로는 군관(軍官)에서부터 아래로 소통사(小通事)에 이르기까지, 사사로이 왜방에 들어가는 사례에 견주어 또한 2등을 감하여 처치하며, 훈도 별차 및 거리통사(巨里通事)³⁵⁾와 두곳 수문장(守門將)이 알고서 고하지 않는 자도 함께 같은 죄로 함.

一. 조시(朝市) 때 생선과 채소 이외에 혹 다른 잡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잡아 보내며,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는 것은 바다 남쪽의 상한(常漢)이 하는 일에 불과한데, 그 중에 혹 행동이 수상하여 생선과 채소 판매하는 일이 합당치 않음에도 뒤섞여 들어가는 자가 있거든, 설문(設門) 및 서복병소(西伏兵所)에서 통렬히 금하되, 금령을 어기는 자는 잡아보내며, 간혹 저들이 사들인 생선과 채소를 그 판 사람을 시켜 그대로 들고 왜관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우니, 만약 이런 폐단이 있으면 위의 사람을 결박하여 본부에 올려 곤장 20대를 치게 하며, 왜인은 훈도 별차로 하여금 관수(館守)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각별히 징계하게 하며, 조시(朝市)는 수문(守門) 밖에 여는 것이 전례인지라, 혹 한 사람이라도 설문의 한계 안으로 넘어 들어가면 변문(邊門)을 난입(闌入)한 형벌로 처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알고서 고하지 않은 수문장은 일체 논죄할 것.

一. 부산(釜山)의 영선감색(營繕監色)이 매달 여섯 차례 왕래할 때 및 땔감과 숯을 운반하여 주는 지계꾼 4명이 매일 출입할 때는, 부산진에서 낙패(烙牌)³⁶⁾를 지급하여 설문에서 탈이 있고 없음을 검사하되, 들어간 뒤에 시간이 넘도록 나

33) 군보(軍保): 정병(正兵)으로 역을 지는 대신에 군포(軍布)를 바치는 양민(良民).

34) 강정(降定): 직급을 낮추어 잡역에 종사하게 하는 처분.

35) 거리통사(巨里通事): 왜관과 관련하여 급료를 받고 근무하는 왜학(倭學) 소통사(小通事)의 하나로, 왜인의 왕래를 검속하는 통역관.

36) 낙패(烙牌): 불에 달군 쇠도장을 찍어 용무를 표시한 패.

오지 않거든 이름을 지적하여 첩보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매일 들어가는 감색(監色)과 시군(柴軍 : 나뭇군)의 성명을 고목(告目)에 적어 올릴 것.

一. 입직(入直) 통사 외에 다른 통사가 훈도 별차의 집안이나 관청 일을 핑계하여 설문에 출입하는 자는 일체 엄금하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즉시 결박하여 관에 올릴 것.

一. 관직(館直)이 왕래할 때 패가 없으면 증거로 삼을 것이 없으니, 지금 이후로는 관직으로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자는 설문 밖에 머물러 두고, 설문직(設門直)에게 훈도 별차의 집에 둔 패를 받아 와서 수량을 헤아려 나누어 주어 들여보내고, 나온 뒤에 그 패를 훈도 별차 집에 되돌려 바치며, 패가 없는 자는 일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

一. 부산진(釜山鎭) 사환(使喚)이 혹 체자(帖子)³⁷⁾를 가지고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 명색의 사람이 아무 시각에 무슨 일로 설문을 들어갔다가 아무 시각에 되돌아 나왔다고 수문과 설문이 동일하게 고목(告目)할 것.

一. 입번(入番)³⁸⁾하는 통사와 소동(小童)은 설문 안에 이미 청사(廳舍)가 있어서 밥을 지어 먹는데, 밥먹을 때라고 하면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극히 수상하니, 입번한 5일 내로는 왕래하지 못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여, 혹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곤장 30대를 칠 것.

一. 연향(宴享) 때 출입하는 잡다한 명색의 사람들 중 서북병소(西伏兵所)에서 들어오는 무리는 서북병장(西伏兵將)이 담당하여, 아무 아무 명색의 사람이 아무 시각에 연향청(宴享廳)에 들어갔다가 아무 시각에 나왔다고 각색 명색의 인원수를 일일이 적어서 설문에 전하여, 아무 날짜의 고목(告目) 가운데 적어 넣도록 하며, 동북병장(東伏兵將) 및 북문통사(北門通事)도 숙공(熟供)³⁹⁾할 때 북문으로 각색 사람들이 출입한 시각을 또한 수문(守門)에 적어 넣어서 고목(告目)하도록 하되, 혹 한 명이라도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한 뒤에 죄를 주어야 할 자는 곤장 20대를 칠 것.

一. 수문과 설문의 군관(軍官)과 문직통사(門直通事)와 도장(都將), 부장(部將) 등의 명목이 매우 많아서 간사한 폐단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군관과 문직통사에게 명하여 수직(守直)하게 하고서 또 도장 부장이란 것을 첨가하는 것은 극히 긴요하지 않고 또한 간사한 폐단이 많으니,, 이제부터 정식을 고치

37) 체자(帖子): 체(帖) 자 관인을 찍은 공문서.

38) 입번(入番): 당번 차례에 따라 입직(入直)하여 근무함.

39) 숙공(熟供): 음식을 익혀 장만하여 접대하는 절차.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마른 양식을 제공하여 스스로 지어먹게 하는 것은 건공(乾供)이라 한다.

되, 수문(守門)의 군관 2인 중에 1인은 본부(本府)에서, 1인은 부산에서 이전대로 차출하여 보내며, 통사 2인과 문직 2명은 이전대로 입역(立役)하고, 이 밖에는 모조리 줄이지 않으며, 통사(通事)는 각별히 신중하게 가려뽑되, 그 성명을 입번 하는 첫날 군관이 담당하여 관에 보고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며, 설문(設門)의 군관 1인과 통사 1인을 그대로 두고, 도장 부장은 또한 수문의 사례대로 줄이며, 설문직(設門直)은 항시 문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각별히 수직하며, 세 곳 복병소(伏兵所)의 장졸(將卒)도 각별히 선별하여 보내되, 매일 성명을 책으로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고, 만약 혹시라도 구차하게 충원하여 일이 생기면 해당 진의 감색(監色)을 잡아와서 곤장을 치며, 수문(守門) 통사가 왜인이 사례대로 하는 일로 부산진 변진(邊鎭)에 알리려 가면 들어올 때 설문에서 문을 조사할 것.

一. 운미감관(運米監官)이 왜미(倭米)를 들여줄 때, 이미 배에 싣고 들어갔으면 쌀을 지급한 뒤 그대로 그 배를 타고 나오는 것이 편리한 일인데,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청탁하여 그대로 왜관 가운데 머물면서 진작 나오지 않는 것은 극히 해괴한 일이니, 일체 이전처럼 지체하여 명령으로 독촉하여 나오지 말도록 하며, 만약 혹 바람의 기세가 불순하여 배를 타고 나오기 어렵거든 수문(守門)으로 내보내도록 하며, ‘아무 날 바람의 기세가 불순하여 감관 몇 사람과 운미군(運米軍) 몇 명이 아무 시각에 수문으로 나왔다’고 고목(告目)에 주를 달며, 쌀을 지급한 뒤 청탁하여 나오지 않는 자는 또한 즉시 고목하여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며, 운미감관 등이 혹 바람의 기세가 불순하여 배를 버리고 나왔으면, 다음날 아침 배를 끄는 선군(船軍)이 선소(船所)로 들어갈 때 ‘운미군 몇 명이 아무 시각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나왔다’고 또한 상세히 고목하고, 운미선(運米船)이 정박한 뒤에 각별히 조사할 것.

一. 운미감관 등이 혹 수표(手標)가 맞는가 살펴본다고 칭하거나, 혹 두량(斗量)이 줄어들어 맞는가 살펴본다고 칭하면서 간혹 왕래한다고 하는데, 왜관의 출입은 대소 인원을 막론하고 모두 임의로 오고가지 못하니, 운미감관이 무시로 왕래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지라, 지금 이후로는 이전대로 관의 물금체(勿禁帖)⁴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머물러 두었다가 적발되는 바가 있으면 운미감관과 수문(守門) 파문(把門) 등을 한가지로 논죄할 것.

一. 본부와 각 진 소속을 막론하고 혹 연향(宴享)을 청탁하거나 혹은 수리한다고 칭하면서 왜관에 들어가는 자는, 이전대로 특별히 조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역사(役事)의 다소와 출입 시각을 일일이 상세히 보고할 것.

40) 물금체(勿禁帖): 특별 통행증. 금지된 장소의 통행을 허락하는 체자(帖子).

一. 조시(朝市)에서 매매할 때는 이미 장교(將校)가 없어서 장차 판매하려는 수효를 또렷이 알기가 어려우니, 수문(守門) 군관(軍官)이 매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고목을 이전대로 닦아 올릴 것.

一. 훈도 별차 및 출사역관(出使譯官)⁴¹⁾의 노자(奴子)가 의복이라 하면서 혹은 말에 싣거나 혹은 등에 지고 출입하는 자는, 각별히 조사하여 터럭 하나라도 미진한 폐단이 없도록 하며, 듣자하니 조사하는 방법이 극히 허술하여, 무릇 물건과 관계되는 것은 바깥으로 더듬기만 할 뿐 원래 열어서 꺼내어 두루 살펴보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 뒤로 혹 이전과 같은 폐단이 있으면 군관으로서 처음 범하는 자는 곤장 30대를 치고, 재범하는 자는 군뢰(軍牢)로 강정(降定)하여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

一. 훈도 별차와 출사역관이 있는 곳에는 왜인이 항상 왕래하여 비록 금할 만한 형편이 아니지만, 그 출입의 다소는 보고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지금 이후로는 아무 명색의 왜인이 아무 시각에 나와서 아무 역관 집에 갔다가 아무 시각에 되돌아갔다고, 거리통사가 일일이 수문군관에게 전하여, 다음날 아침 고목에 주를 달아 관에 고할 것.

一. 훈도 별차 및 출사역관의 노비 등이 부산의 조시에서 설문으로 되돌아 들어갈 때 각별히 수검할 것.

一. 왜인이 훈도 별차의 집에 왕래할 때 금할 방책이 없으나, 혹 청직(廳直)의 집에 난입하면, 훈도 별차가 각별히 책망하고 타일러 이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며, 난입할 때 더불어 수작하면서 즉시 거절하여 보내지 않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일일이 잡아 올려보내어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린 뒤에, 10일에 한하여 문벌(門罰)로 일을 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함.

一. 연향(宴享)의 숙공(熟供)이 출입할 때 북문(北門)의 개폐는 동복병장(東伏兵將)과 수문통사와 부산 감관(監官)의 담당으로 개폐한 뒤 이름을 나열하여 고목하되, 만약 혹시 위반하여 삼가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가 적발되는 바 있으면, 복병장과 담당 통사는 곤장 30대를 칠 것.

一. 수문군관은 예전 사례대로 별기위(別騎衛) 중에서 6인을 선발하되, 매달 원래의 급료 외에 한 사람마다 각기 무명[木] 1필씩을 유포(留布)⁴²⁾ 중에서 내어 주어 5일씩 윤번으로 하며, 설문군관은 각청(各廳)을 막론하고 그 중 일을 알고 근신한 자 12인을 선발하여 매달 요포(料布)⁴³⁾로 6말[斗]씩 본부에서 통털어 지

41) 출사역관(出使譯官): 왕명을 받고 사신으로서 외지에 나간 역관.

42) 유포(留布): 군사들에게 급료로 지급한 외에 남겨 놓은 베.

43)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되는 무명 베.

급하여 입번(入番)할 때의 음식 비용으로 분배해서 계속 사용하게 하되, 먼저 들어간 자가 낭비하여 범죄의 책임을 지는 걱정이 없게 하며, 선발된 자는 관청의 잡역에서 면제하여 전심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할 것.

一. 수문과 설문의 군관이 번(番)을 들어 지키는 곳은 이미 객지(客地)인데 조식의 반찬을 마련할 길이 없기로, 매년 두 곳에 각기 훈조(燠造 : 메주) 7말에 소금 5말로 본관에서 장을 담가 공급하며, 매달 두 문에 붓 한 자루와 별고목지(別告目紙) 감으로 백지(白紙) 5장 및 두 달에 각기 먹 한 자루, 5일마다 고목식(告目式) 인지(印紙) 5장을 지급할 것.

一. 두 문의 군관이 혹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관문(官門)에 입직(入直)하는 천별장(千別將) 이하를 선발하여 보내어 교대한 뒤 잡아올 것.

一. 각기 연향 때의 차비(差備)⁴⁴⁾ 인원의 수는 한결같이 후록(後錄)에 따라 시행하고, 출입하는 시각 또한 즉시 고목하되, 정원 외의 사람은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건륭 3년(1738) 6월 초3일 비변사에 계하한 내용에 근거하여 비변사의 계목에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의 장계를 보면, 부임한 지 제법 오래 되어 변방 금령(禁令)의 득실을 자못 헤아린 바 있어서, 그 중 전해오는 등록(謄錄) 가운데서 시행할 만하지만 지금까지 폐기하여 둔 것과, 새 절목으로서 마땅히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을, 참조 연구한 사정을 후록(後錄)으로 치계하여, 조정에 명하여 상의 확정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 바, 동래 변방의 금령이 엉성하여 식전 있는 자가 우려한지 이미 오래인 가운데, 이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니, 왜인의 방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거듭 밝히고, 예전 규약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 두 문의 방금(防禁)을 별도로 엄중하게 신칙하였는데, 모두 긴요한 것으로 실효를 거둘 만한 지라, 지난번에 장계로 인하여 장계로 알려져 청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한결같이 절목대로 시행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건륭 3년(1738) 6월 17일 우부승지 신 이익정(李益炅)⁴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44) 차비(差備): 특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하는 인원.

45) 이익정(李益炅, 1699-1782): 자는 명숙(明叔), 본관은 전주이며, 영조 병진년(173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경기관찰사, 대사헌, 대사간, 우참찬,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무오(1738) 5월 초5일

[앞서 나온 5월 5일 조와 내용 동일.]

무오(1738) 5월 22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구성익(具聖益)이 5월 13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8일에 나오다가 옥포(玉浦)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과, 왜인의 작은 배 한 척, 및 5월 초1일에 나오다가 동 포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문정(問情)한 사연은 치계하였거니와,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3척을 차례차례 예인하여 초9일에 무사히 다대포(多大浦)에 교부(交付)⁴⁶⁾하였는데, 부산첨사 이징서(李徵瑞)의 치보 내용에, “4월 28일 왜선 4척이 일시에 발선하였는데, 2척은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고, 2척은 곧바로 관소(館所)에 도착하였다고 훈도 별차가 이미 문정하였다” 하였거늘,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하여 치통한 내용 가운데는 3척의 배가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였다가 나뉘어 표류한 것으로 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래 부산으로 가는 서계(書契) 별폭(別幅) 운운’하는 것이 곧 전례인데, ‘서(書)’자를 또한 빠뜨렸는 바, 동 왜학이 문정을 소홀하게 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우니, 위 왜학 박진량(朴震亮) 및 옥포와 지세포(知世浦)⁴⁷⁾ 봉수의 망군(望軍) 및 담당 감색(監色)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뒷날을 경계하는 일임.

무오(1738) 6월 14일

一. 경기감사의 관문(關文)에 첨부된 음죽(陰竹) 현감의 첩보에, “동래로 내려가는 문위역관(問慰譯官) 김현문(金顯門)⁴⁸⁾의 종 학립(鶴立)이 와서 고한 내용에, ‘그의 상전(上典)이 이달 11일 이천부(利川府)에 숙박한 뒤, 12일 아침 전에 출발하여 이천 성황당 고개에 이르러 갑자기 서독(暑毒)⁴⁹⁾에 걸려 점차 혼미하여 숨

46) 교부(交付): 인원이나 물자 등을 서로 인계함.

47) 지세포(知世浦): 현재의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48) 김현문(金顯門, 1675-?): 우봉김씨로 자는 양보(揚甫)이다. 숙종 28년(1792)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이 막히는데, 달리 다급한 사정을 구할 약물이 없는지라, 병을 무릅쓰고 나아가 10여리 쯤 가서 겨우 본 음죽현의 경계로 들어갔으나, 길 위에서 전연 지각(知覺)이 없는지라, 급히 동변(童便)⁵⁰⁾ 등을 먹여보았지만 넘기지 못하고, 당일 오시(午時)에 이미 초상이 났다'고 하기로,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고 별도로 감색을 정하여 각별히 호상(護喪)하게 하였으며, 실어 오던 예단(禮單)은 그 가져오던 하인 및 본현의 장교(將校)로 하여금 함께 지키도록 하였다"는 일로 입계하기 위한 문서가 도부하였거니와, 주어야 할 예단은 각별히 지켜서 분부를 기다리는 일로 회이(回移)함.

一. 예조의 계사(啓辭). “방금 경기감사의 관문에 침부된 음죽현감의 첩보를 접하니, ‘동래로 내려가던 문위당상역관(問慰堂上譯官) 김현문이 이달 11일 이천부에서 숙박한 뒤, 12일 아침에 출발하여 갑자기 서독(暑毒)이 들어, 병을 무릅쓰고 전진하다가 겨우 본현의 초입에 들어가서는 전연 지각이 없다가 오시에 그대로 죽었고, 실어오던 예단은 그 가져오던 하인 및 본현의 장교로 하여금 함께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데, 문위역관이 중도에 죽은 것은 극히 놀라우나, 그 대신을 즉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차출하여 불일 내로 사조(辭朝)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一. 비변사의 계사. “방금 들으니 도해역관(渡海譯官)이 출발한 뒤 도중에 죽었다고 하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이미 기일이 있고, 가지고 가던 물건 역시 허술할 염려가 있으니, 그 대신을 급급하게 차출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품지(稟旨)로 변통하고 선발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무오(1738) 6월 15일

사역원의 계사.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방금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도해역관이 출발한 뒤 중도에 죽어서, 그 대신을 즉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히 품지(稟旨) 변통하여 밤낮없이 출발하여 보내는 일로 명이 내렸는데, 도해역관은 당상(堂上)과 당하(堂下) 각 1인을 정하여 보내는 것이 사례입니다. 지금은 왜학(倭學) 당상(堂上)이 없어 단지 김현문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차출

49) 서독(暑毒): 더위로 인해 두통 및 어지러움과 체온 상승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까무라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병.

50) 동변(童便): 12세 이하 사내 아이의 오줌.

하여 보냈는데, 이제 또 뜻밖에 죽어서 달리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만약 당상이 없으면 간혹 다만 명망과 이력이 맞는 사람을 취하여 곧바로 품계(稟啓)하여 자급(資級)을 올려 보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왜학 박춘서(朴春瑞)⁵¹⁾는 이전의 부산별차(釜山別差)로서 서관(西館)을 수리할 때와 팔송사(八送使)를 책망하여 감한 것과, 평암환(平巖丸)의 아명(兒名) 도서(圖書)를 저들이 차사(差使)를 보내어 바치려고 하자 책망하여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 뒤 대마도에 문위(問慰)할 때 평미일(平彌一)의 아명 도서와 평의방(平義方), 평방희(平方熙) 도서 등 함께 세 개를 한꺼번에 손수 가지고 왔으니, 위 몇 가지 사항은 국가의 이해에 크게 관계되어 그 공이 작지 않으므로, 작년에 역관으로서 가자(加資)하는 데 공적이 합당한 자를 비국에서 초계(抄啓)하는 일로 경연에서 확정된 뒤, 박춘서 역시 초계에 들어갔으나, 신 김재로(金在魯)⁵²⁾가 마침 인견하여 들어갔다가 그대로 체직(遞職)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덮어 두고 아직 계하(啓下)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형편으로 보아 특별히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 되거니와, 춘서의 사람됨이 또한 선발하여 차출하는데 적합하니, 특별히 자급을 올려서 대신으로 차출하여, 많지 않은 시일 내로 출발하여 보내게 하고, 서계(書契) 가운데도 또한 달과 날짜를 고쳐 넣어야 마땅하니, 해조에 명하여 즉시 속히 고쳐 써서 부쳐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습니다.

무오(1738) 10월 15일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⁵³⁾이 10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신시(申時)에 부산첨사 이징서가 치통한 내용에, 가덕 전통(傳通)⁵⁴⁾에 의거하여 다대

51) 박춘서(朴春瑞, 1687-?): 무안박씨로 자는 화중(和仲)이다. 숙종 40년(1714) 역과에 올라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52) 김재로(金在魯, 1682-1759): 청풍김씨로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와 대사간, 전라도관찰사, 대사성, 대사간, 개성유수, 충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53) 정형복(鄭亨復, 1686-1769): 동래정씨로 자는 양래(陽來)이며, 영조 을사년(172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무오년(1738) 9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기미년(1739) 8월에 나포되어 교체되었다가, 강원·전라·황해 관찰사와 대사간, 대사성, 형조와 호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54) 원본의 ‘魚’는 ‘通’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포에서 치통하기를, “지난 30일 옥포(玉浦)에 옮겨 정박한 왜선 1척은 바람이 불 순하여 그대로 동일한 곳에 머물렀다” 하였음. 초5일 미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9월 27일 나왔던 왜선 1척에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6명,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館守倭)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사시(巳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 하였고, 술일(戌日)⁵⁵⁾에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의 치통에 옥포에서 옮기는 왜선 1척은 사시(巳時)에 출발하여 차례차례 예인하여 본진에 교부하였기에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로, 즉시 임역(任譯) 등에게 명하여 문정(問情)하게 하였는데, 수본(手本) 내용에 ‘무오조(戊午條) 만쇼오잉[萬松院]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15명과 교대차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路引) 및 남초(南草 : 담배) 1칭(稱)⁵⁶⁾을 싣고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하여 지난 24일 나오다가, 바람에 표류하여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및 전면에는 ‘각도 각관 방어소’라고 써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다”고 하였음.

이제 훈도 별차 등이 문정한 사연을 보니 중금도왜가 1인인 바, 당초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도금도왜로 문정하여 써서 보고한 것은 매우 소홀한 것인데, 위사항의 나온 왜선의 격식에 어긋난 노인으로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옥포왜학(玉浦倭學) 박진호(朴震豪)는 중금도왜를 도금도왜로 잘못 칭하였는데, 막중한 문정을 이렇게 잘못된 것은 경계하여 책망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석도(石島)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왜학 박진호가 중금도왜를 도금도왜로 잘못 일컬었는데, 막중한 문정을 이같이 착각한 것은 경책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불가하기에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선의 문정은 지극히 가볍지 않은데, 옥포왜학(玉浦倭學) 박진호가 흐리멍덩하여 살피지 않은 것은 매우 극히 놀라우니, 통제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뒷날을 경계하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3년(1738) 10월 23일 우승지 신 정필녕(鄭必寧)⁵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55) ‘술시(戌時)’의 오기인 듯하다.

56) 칭(稱): 무게 단위. 약 9kg, 15근(斤)이 1칭이다.

57) 정필녕(鄭必寧, 1677-?): 자는 밀경(謚卿) 본관은 해주로, 숙종 갑오년(1714) 증광 문과에 급

무오(1738) 11월 15일

一. 경상우수사 신 구성익(具聖益)이 11월 초2일 성첩한 장계는 위와 같음.
 一. 경상좌수사 신 이언섭(李彦燮)이 11월 초5일 성첩한 장계는 위와 같음.
 一. 이번 11월 14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함에, 판부사 김(金)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인데, 왜관에 몰래 넘어 들어 가 서로 간통한 한 남자와 두 여인을 잡아서 자백의 공초를 받은 뒤에, 사유를 갖추어 위에 알리고 그대로 묘당에 품의 조치하도록 청한 것입니다. 근래 금령(禁令)이 해이해져서 서북 변방 및 남쪽 변방에서 매양 이런 간통의 폐단이 있는데, 남쪽 변방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이미 항상 머물고 있어서 더욱 더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병신년(1716)과 병오년(1726)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창녀였기 때문에 비록 유배로 감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변방을 엄중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매양 이렇게 방금(防禁)이 흔들리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재(田才)가 왜관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고 핑계하였으나, 이미 알고 난 뒤에도 또 다시 몰래 들어간 것은 더욱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재와 두 여인을 빨리 왜관 문 밖에서 효수(梟首)하여 보이고, 동래부사 정형복이 법에 의거하여 죄를 청하지 않고, 또 병신년(1716)과 병오년(1726) 두 해의 사례를 인용하여 말을 한 것은, 일의 체면이 매우 미안하니, 엄중하게 추고해야 합니다. 8월에 몰래 들어갈 때 발각하여 살피지 못하였기에 잇달아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그 때 부사를 파직함이 마땅하고, 사로잡은 사람들은 해조(該曹)에 명하여 사례를 살피 중하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원임(原任) 대신과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하자, 판부사 김이 말하기를 “이전 을묘년 무렵에 북로(北路)의 여인이 호인(胡人)과 교통하여 간통한 일에는, 특별히 선양(善陽)의 사례에 의거하여 관대하게 유배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제 이번 동래부는 북로와는 달리 교활한 왜인 수백 명이 항상 왜관에 머물러 있으니, 간통을 방지하는 방도에 있어서 엄하게 살피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제 여인이 담장을 넘어 출입한 것이 재차에 이른 것은, 한 때 우연히 왜인의 협박을 당한 따위가 아닌지라, 단연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이조판서 조(趙)는 말하기를 “국가의 체면이 있는 바라, 변방의 금령이 지극히 엄중한데, 어찌 창녀 때문에 그 법률을 올리거나 내리겠습

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니까? 전재와 두 여자는 단연코 살릴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병조판서 조(趙)는 말하기를 “그 여인이 부동하여 담장을 넘은 것은, 대개 전일 죽음을 용서한 관대한 은전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고의로 범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죽이거나 살리는 것은 모두 공정한 마음인데, 공정한 마음 가운데 나로서는 그 사람 목숨을 아끼노라. 저들이 비록 초개와 같이 미미하지만 한꺼번에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찌 거둬 어렵지 않겠느냐? 전재가 없었다면 두 여인에게도 분명 죄가 있었지만, 이는 전재의 죄가 무겁고 두 여자의 죄는 조금 가벼운 것이다.”고 하셨음. 우상(右相)이 말하기를 “만약 효수하여 보이지 않으면 왜인이 반드시 형벌을 잘못했다고 웃을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간 뒤에 또 들어갔으니, 이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요순(堯舜)같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도 또한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적형(賊刑)을 가한다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변방 금령은 더욱이 엄중하게 금하여 이방인이 길이 움추리도록 해야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세 사람을 효수하여 보이는 것은 단연코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죄를 청하되 밝히기 어려운 곳은 참으로 관대하게 해주어야 마땅하나, 죄를 범한 뒤에야 이미 일체의 법이 있거늘 어찌 경중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신과 여러 신하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나,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세 사람을 죽이겠는가? 전재는 추순홍(秋順弘)의 사례에 의하여 왜관 문 밖에 효수하여 보이고, 두 여인은 본도에 명하여 엄중하게 3차례의 형벌을 가한 뒤에 섬으로 유배함이 좋겠다.”라고 하였음. 우상이 말하기를 “동래 부사는 엄중하여 추고해야 하나, 이 일이 당초 8월에 나왔는데 그 때 수령이 검속하여 살피지 못했으니 파직하여야 마땅하고, 사로잡은 사람은 또한 상을 논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모두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무오(1738) 11월 26일

지평 김상구(金尙耆)⁵⁸가 계품한 바, “변방 금령이 지극히 엄중하여 대론(臺論)⁵⁹을 기초해야 하는데, 엇그제 헌장(憲長 : 대사헌)이 동래부의 금령을 범한

58) 김상구(金尙耆, 1704-?):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사담(士聃)이다. 영조 갑인년(173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일로 그때 변방 신하의 벼슬을 깎도록 청하여, 성상께서는 부사(府使) 이하를 비국(備局)에서 품의 조처하게 하라고 비답(批答)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이 법을 관장하는 관원이고, 일이 금법에 관계된 것이데, 비국에서 품의 조처하라는 명은 끝내 법 집행을 존중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전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는 곧장 삭직(削職)토록 명하시고, 훈도 별차 이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에 “계품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오(1738) 11월 29일

이번 11월 28일 초복(初覆)⁶⁰으로 입시하였을 때 형조판서 박사수(朴師洙)⁶¹가 계품한 바, “지평 김상구의 계품으로 말미암아 동래부의 훈도 별차 이하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정하라는 일로 신의 형조(刑曹)에 명이 내려왔는데, 이전부터 훈도 별차에게 죄가 있으면 곧장 변방 일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왕부(王府:의 금부)에서 조처하였으니, 이 또한 의금부(義禁府)로 이송하고, 훈도 별차 이하는 본도 사람인지라 본도에 명하여 법률대로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오(1738) 12월 초3일

동래부사 정형복(鄭亨復)이 11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3척이 각기 공작미(公作米)를 싣고 당일 사시(巳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합니다. 출입역관(出入譯官)은 일이 끝난 뒤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일은 법령으로 명시하여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연전에 이 일로 인하여 경연가운데서 하교하신 것이 준엄할 뿐만이 아니기로, 신이 도입한 이후로 특별히 더 신칙하였는데, 금년조 1특송선 송사왜(送使倭)의 예단(禮單)을 가져오는 차비역관(差備譯官) 황대일(黃大逸)⁶²이 공무를 이미 마치고 송사(送使)가 돌아들어

59) 대론(臺論):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탄핵 논의.

60) 초복(初覆): 범죄를 심리할 때 처음 행하는 심리. 범죄 심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의 심리 과정을 거쳤다.

61) 박사수(朴師洙, 1686-1739): 본관은 반남, 자는 경로(景魯), 호는 내헌(耐軒)으로, 경종 계묘년(172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거쳐, 대사간, 대사성, 황해와 경기 관찰사 등을 거쳐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간 뒤에, 신이 즉시 전례에 의하여 보낸다는 뜻으로 해조에 첩보하고 즉시 올라가도록 신칙하였더니, 대일이 온갖 탈을 핑계하여 여러 날 지체하면서 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조금도 꺼리는 생각이 없으니 이것이 한심하거니와, 엇그제 신이 거느린 군관이 개시(開市)를 검찰하러 왜관 밖으로 나갔더니, 이른바 대관왜(代官倭)가 그 역왜(譯倭)를 시켜서 군관(軍官)에게 말을 전달하여 황대일이 머무르도록 청하면서 수삼차 오고가며 자꾸 청하여 마지않고, 심지어는 스스로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간청하려 한다고 하는 바, 이는 필시 황대일이 사주한 소치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 왜인이 어떻게 황대일에게 관청에서 돌아가라 독촉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청을 하겠습니까? 그 사이 사정은 또렷이 알지 못하지만 이런 길을 한번 열어준 뒤로는 대일과 같은 무리들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필시 반드시 저쪽 사람들을 지휘하여 관가와 겨루어서 제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니, 그 폐단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일이 변방의 금령에 관계되는지라 부득이 사실을 거론하여 치계하오니, 위 역관 황대일의 죄상을 그 관청에 명하여 엄중하게 품의 조치하시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도록 하시며, 신은 외람되이 중대한 책임을 맡고 위엄으로 누르지 못하여 전에 없었던 해괴한 일이 있게 되었기에 황공하여 죄를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음. 형조(刑曹)에 내림.

무오(1738) 12월 13일

동래부사 정형복이 12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2일 유시 쯤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로부터 불을 들고 나왔는데, 구름과 안개가 낀 먼 바다인지라 척 수와 향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였고, 한 척은 또 등불을 매달고 나와서 관소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온 부산첨사의 치통도 한가지였음.

초3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2일 유시에 나와서 관소로 향하는 듯하다는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오늘 묘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신영래(愼榮來)⁶³와 별차 박상순(朴尙淳)⁶⁴ 등에게 명하

62) 황대일(黃大逸, 1710-?): 본관은 창원이며 자는 화수(華叟)이며, 영조 임자년(1732)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고 첨정을 역임하였다.

63) 신영래(愼榮來, 1694-?): 거창신씨로 자는 달부(達夫)이다. 숙종 43년(171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64) 박상순(朴尙淳, 1700-?): 밀양박씨로 자는 자순(子淳)이며, 경종 신축년(1721)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路引)⁶⁵⁾ 및 은화 3,000냥을 실어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 큰 배 한 척, 재판차왜의 배 한 척, 문위역관(問慰譯官)의 배 한 척, 도합 4척이 동시에 나오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이 가늘어 각자 뒤쳐지고, 저희들의 비선(飛船)⁶⁶⁾만 먼저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하며, 소지한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노인 한 통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초3일 미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탐장이 치보하기를 ‘왜인의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은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고, 도해선(渡海船) 한 척은 두모포(豆毛浦)⁶⁷⁾ 앞바다에 이르러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전진하지 못하고 닻을 내리고 떠 있다’고 하였으며, 유시에 초탐장이 치보하기를 ‘도해선(渡海船)에 예선군(曳船軍)을 많이 배정하여 유시에 개운포(開雲浦)⁶⁸⁾ 선창에 와서 정박하였고, 역관 이하의 원역(員役) 각 사람들은 전례대로 육지에 내려 돌아가게 하였다’고 하며, 동시에 도부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왜인의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이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재판차왜가 수질(水疾:배멀미)로 육지에 내리지 못하였기에 육지에 내리는 대로 문정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초4일 측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3척에서 재판차왜가 육지에 내리는 즉시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관수왜 평방태(平方泰)가 탄 배로서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과 별금도왜 1인이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으며, 제2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호송하여 오는 재판차왜(裁判差倭)의 배로서 정관(正官) 평여구(平如矩)와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종(伴從) 10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해조(該曹)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2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왔으며, 문위역관이 탄 배에는 중금도왜 1인과 소금도왜 1명, 통사왜 1인,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으며, 제3척에는 문위역관을 호위하여 온 비선으로 두왜 1인,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재판차왜가 말하기를 가져온 서계 별폭 등은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

65) 노인(路引): 입국 증명서.

66) 비선(飛船): 빨리 운행하도록 설계된 작은 배.

67) 두모포(豆毛浦): 현재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68) 개운포(開雲浦): 현재의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정공단(鄭公壇) 부근.

칠 계획이라고 하기로 등본을 올려보내며, 관수왜가 탄 배가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규정 외에 해당하기에 소지한 노인을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일렀고, 비선의 노인 한 통을 받아서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서계 별폭 등본 및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문위역관 박춘서(朴春瑞)와 김정균(金鼎均) 등의 수본 내용에는, “비직(卑職) 등 일행은 바람이 불순하여 오래도록 악포(鰲浦)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정박하여 지체하다가, 이달 초3일에 비로소 순풍을 얻어 진시(辰時) 쯤에 발선하여 미시(未時) 쯤에 무사히 부산으로 되돌아 건너왔기로, 가져온 서계 별폭을 우선 올려보내며. 비직 등이 대마도로 들어갈 때 전임 부사 사또께서 분부하시기를, ‘이제 보건대 두 나라 사이에는 달리 대단하게 변통할 일은 없으나, 다만 배가 파손되어 목숨을 거둔 차왜 한 가지 사항으로 매양 서로 버티고 있어서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이치가 없지 않고,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불가함이 있으니, 이번에 바다를 건너가는 걸음에 그들이 둘로 나누어 내어보내는 차사(差使)는 약조에 어긋남이 있다는 뜻과, 매양 서로 버티는 것은 성신(誠信)의 도리에 손상이 있다는 뜻으로 일일이 분석하여 언급함으로써, 약조를 다시 준수하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제거하라’고 하였기로, 비직 등은 비록 미관 말직이지만 또한 이 일에 항상 민망하여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번 타일러 변통하여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려고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그 방편을 얻기 어려워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는데, 이 분부를 받고 난 뒤로는 더욱 조심하여 생각해야 하겠기에, 대마도에 도착하는 즉시 재판왜에게 자세하게 타일러서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또한 9월 초9일 명을 전달받을 때 도주의 말씨가 자못 조정의 은덕에 감축하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낮빛이 있었으며, 물러나 여러 봉행왜(奉行倭)들과 접촉하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관백(關白)이 손자를 낳은 것은 저희 나라의 막대한 경사이므로 과연 귀국에 경사를 알렸는데, 귀국에서 특별히 이웃 나라와의 우의를 진념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허락하여, 이렇게 전례에 없는 성대한 은전이 있게 되었으니, 저희 대마도로서는 그 감축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니와, 더구나 관백께서 이 하서(賀書)를 받아보고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회포가 또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며 같은 소리로 칭송하는 것이 실제 감정임이 뚜렷하거늘, 비직 등이 또한 ‘조정의 은전이 평상시보다 훨씬 벗어났다’는 뜻으로써 갖가지로 즐겁게 하고는, 이에 배가 파손되어 목숨을 잃은 일을 제기하여 말하기를, ‘당초의 약조로는 배가 파손된 것과 목숨을 잃는 일이 함께 일어나 두 사건을 겸한 다음에 차사(差使)를 정하여 보내지만, 배가 파손되거나 혹 목숨을

잃은 것이 각기 한 사건이면, 표류한 주민과 서계를 순부(順付)⁶⁹⁾하여 내어 보내는 것이 옛날부터의 규정이었거늘, 귀도에서는 이것을 준행하지 않고 매양 잘못된 사례를 끌어와 돌로 나누어 내어보내는 것은 대체 무슨 도리인지, 끝내 용서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나, 조정에서는 특별히 다른 나라 차사가 해를 넘기면서 객관에 머물며 죽을 지경이 되어 애절하는 그 상황을 염려하여, 차마 관시하지 못하고 매양 관대한 은전을 써서 접대하도록 허락하였거늘, 귀도에서는 이런 일시의 특별한 은전을 잘못된 사례로 끌어와서는 반드시 서로 버티다가 계획을 이루고야 말려고 하니, 두 나라 사이의 약조가 성신(誠信)을 근본으로 하는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이후로는 이전의 잘못된 사례를 개혁하여 한결 같이 예전 규정대로 시행하면, 이웃나라 우호의 돈독함은 기약하지 않아도 오래 갈 것이다. 또한 조정에서 일마다 돌보아 주는 도리 또한 합당하다고 할 만 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모름지기 이런 뜻을 상세히 도주(島主)에게 고하여, 목숨을 잃고 배가 파손된 것이 함께 일어나서 두 사건을 겸한 경우라면 전례대로 차사를 정하여 보내고, 혹 배가 파손되거나 혹 목숨을 잃거나 단지 한 가지 사건이라면, 서계와 표류민을 순부하여 내보냄으로써 후일 시끄러운 폐단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잠잠히 듣다가 답하기를, '이 일은 매양 서로 버티서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폐단이 있는 것은 과연 침지 등이 말하는 바와 같으나, 목숨을 잃는 한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인명이 어찌 소중하지 않은가? 별도의 사자를 정하여 보내는 것이 이웃나라의 우의로 합당하고, 또한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고쳐 정하기는 어렵거니와, 과연 침지 등이 말하는 바가 이미 두 나라 사이에 뒤에 잘하자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저희들도 또한 굳게 고집하여서는 안되니, 조용히 태수에게 잘 말씀드린 뒤에 회답할 계획이라 운운'하였다가, 지난 달 19일에 회답서계(回答書契)를 관소에 가지고 나온 수봉행왜(首奉行倭)가 말하기를, '저번에 침지 등이 말한 바 배가 파손되고 목숨을 잃은 일로 말을 만들어 태수에게 고하였더니, 이 일은 이미 에도[江戸]에 관계되어 여기서 편리한 대로 조처하기는 어려우니, 이번 에도의 행차에 관백에게 품의드린 연후에,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대마도로 돌아오는 즉시 그 여부를 회보하겠다고 하였다고 운운'하거늘, 비직 등이 그 회보가 기회를 잃는다는 뜻으로 재삼 부탁하였거니와, 대저 일의 성취 여부는 명년에 도주가 되돌아온 뒤에라야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왜인의 정상이 비록 변화와 속임수가 무상하다고는 하지만, 도주가 답한 바 및 봉행왜 등의 말 뜻이 이미 이렇게 그다지 전혀 벗어나지는 않으니, 거의 그러리라는 가망은 이미 반을 넘은 듯한 바, 비직 등이 이번에 바다

69) 순부(順付): 이미 예정된 인편에 덧붙여 부침.

를 건너간 걸음이 다행히도 국가의 성덕에 힘입어 저들의 심정을 움직인 것이 짐짓 이와 같기로 연유를 우선 수본한다”는 수본이었음. 추후에 도부한 훈도 신영래와 별차 박상순 등의 수본 내용에는, “어제 나온 왜선에 문정하였더니 우리나라 여인과 몰래 간통하였던 죄왜(罪倭: 죄수왜인) 등의 죄를 확정하는 사유를 관수왜에게 상세히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동 죄왜 기꾸고에몬[利右衛門] 및 겐고[源五] 두 왜인은 저번에 묶어서 도중(島中)에 보낸 뒤에 도중에서 다시 엄하게 심문하니, 거기에서 받은 자백이 왜관에 있을 때 공초를 바친 것과 다름이 없기로, 약조에 의거하여 사죄를 감하여 영원히 유배 보내었으며, 도주가 마침 에도에 있기로 즉시 도주가 있는 곳에 통보하여 회보가 나왔으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합하께 고해 달라’고 하기로, 다시 말로 타이르기를, ‘죄왜를 유배 보내는 등의 일은 굳이 아래에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도주가 이미 에도에 있다면 죄왜의 처결은 어떤 사람이 주관하여 도주에게 통보하였는가?’ 하였더니,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이전부터 에도에 들어가면 대개 1주년이 된 뒤에야 되돌아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 모든 일은 모두 봉행이 결정하는 바, 저희 대마도에서는 대개 여섯 봉행이 있어서, 도주가 본도에 부재할 때 시행되어야 할 사무를 주장하여 거행한 뒤에 도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본디 규정이며, 만약 그것이 특별한 사건이면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도주에게 통보하여 그 회보를 듣고서 거행하지만, 이런 죄왜 등의 일은 이미 약조 가운데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도중에서 봉행 등이 전례대로 거행한 뒤에 즉시 도주가 있는 곳에 통보하는데, 봉행 등이 회보가 나왔다고 하였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한다” 하였는 바, 문위역관이 방금 이미 되돌아 건너왔으니, 동 죄왜의 죄를 확정하였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아야 마땅한데, 이제 이 수본 가운데는 이 한 조목을 원래 거론하지 않았거늘, 매우 괴이하여 엄한 말로 전령하여 위 사항을 역관 등에게 곡절을 조사하여 물어 보라고 하였더니, 다시 바친 수본 내용에, “전령이 있었으나, 이번 간통을 범한 왜인 등의 죄를 확정하는 한 조목에 대하여는 비직 등이 대마도에 들어갈 때 이미 아는 바가 없었던 일이므로, 대마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과연 전혀 몰랐는데, 대마도를 떠나 중간에 머물다 지체하면서 간통을 범한 왜인 2인을 왜선에 묶어 싣고 지나가거늘, 우리나라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통사왜에게 그 간통을 범한 곡절 및 필경 도중(島中)에서 확정하는 죄의 경중에 대한 일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간통을 범한 왜인 등의 죄상은 이전부터 사형을 감하여 멀리 유배하는 것이 법률인 바, 이번에도 도중에서는 아마도 이전대로 죄를 확정할 듯하다’고 하거늘, 문답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간통을 범한 왜인 등의 일의 실상은 비직 등이 당초 이미 알았던 바가 아니

고, 오는 중간에 간통을 범한 왜인을 실어가는 일을 맡은 것일 뿐이니, 길에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수본 가운데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기로 과연 거론하지 못하였다”고 수본을 치통하였음. 위 사항의 배 등이 나올 때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이 전혀 관측하지 못한 것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고, 문위역관이 가져온 서계 별폭 각 한 통 및 비선의 노인 2통, 재판차왜가 가져온 서계 별폭 등본 한 통은 감봉(監封)⁷⁰⁾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즉시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 이르게 하였거니와, 재판차왜가 이미 벌써 나왔으니 전례에 따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로, 접위관(接慰官)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속히 차정(差定)⁷¹⁾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는 바, 연회에 증정하는 예단(禮單)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역시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시며,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은, 그 배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문정하여 추후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당년조 공작미(公作米) 16,000섬은 대관왜(代官倭)에게 지난달에 이미 모두 다 들여주었다는 일임.

이에 의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를 보면, 재판차왜(裁判差倭)가 이미 벌써 나왔기에 전례대로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겠기로 접위관은 가까운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는 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고, 연회에 증정하는 예단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또한 속히 마련하게 하라 하였는 바, 차왜의 접대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회례(回禮)의 물품과 각 연회에서 증정하는 예단(禮單)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들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3년(1738) 12월 16일 동부승지 윤휘정(尹彙貞)⁷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무오(1738) 12월 26일

一. 이번 12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일전에 경연(經筵) 가운데서 이조판서가 왜관 서북병소(西伏兵所) 근처의 작은 길에 담장을 쌓아서 막는다는 뜻으로 진달하여, 다시 의논하여 품의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이 전 부사 구택규에게서 왜관 지도를 가져다 살

70) 감봉(監封): 내용을 감독 조사하여 봉인함.

71) 차정(差定):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인원을 차출하여 정함.

72) 윤휘정(尹彙貞, 1676-?): 파평윤씨로 자는 언길(彦吉)이며, 경종 임인년(172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참판을 역임하였다.

펴보니, 왜관 밖의 설문 서쪽 복병소 근처에는 모두 바깥담장을 쌓았고, 그 중 아직 담장을 쌓지 않아서 통로가 되는 곳은 축사지지(築使之地)⁷³⁾에 불과한데, 이곳을 막지 않으면 간사한 폐단을 참으로 금하기 어려운지라 모두 담장을 쌓게 하여야 마땅합니다. 관왜(館倭)가 설혹 어렵다고 버티더라도 이번 여인의 일로 다시 할 말이 있으니, 이대로 거행하라는 일로 본부에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변사와 예조로.

一. 이번 12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출사역관(出使譯官)이 일을 마친 뒤에 그대로 동래부에 머물러 있기에 전후로 무단히 일어난 각종 간사한 폐단이 모두 여기서 나오는지라, 종전부터 쇄환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끝내 거행하는 실효를 거둔 것이 없어서 일이 실로 극히 한심합니다. 왜역(倭譯)으로서 공무 외에 본부에 머물러 접대받는 자는 일체 모두 쇄환하는 일로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하고, 그 중 서울에 집이 없어서 처소를 잃고 떠돌아다닐 형편에 있는 무리는 구별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또한 반드시 각별히 엄중하게 조사하여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본사(本司)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고, 또한 서도와 남도 양쪽 변방에는 비록 관장(官長)이라도 권속(眷屬)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은 법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듣자니 왜역 중에 훈도 별차가 된 자는 모두 권속을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이 왜관의 왜인 가운데 섞여 거처한다고 하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이 뒤로 이런 무리 또한 권속을 데려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을 정하여 신칙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모두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사역원, 예조.

一. 이번 12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입니다. 왜관의 동쪽 행랑이 불탄지 이미 7년인데, 관왜(館倭)가 매양 고쳐 짓기를 청하였으나 계속된 흉년으로 방색(防塞)하다가, 이번 여름에 전 부사가 장계로 요청하고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가을을 기다려 다시 품의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왜가 또 다시 청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 영남 각 고을이 이미 재해를 입었으니, 이런 때 토목 공사는 극히 거둬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시행해야 할 일인지라 매양 핑계하여 미루는 것은 불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야 일마다 저들에게 책

73) 축사지지(築使之地): 축사지지(築舍之地). 길가에 집을 지으면서 오가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 지으려면 의견이 분분하여 이루지 못하듯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진작 건축을 하지 못하는 곳을 가리킨다.

망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재해를 입은 고을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으니, 즉시 고쳐 지으라는 뜻으로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한 다음에 저쪽을 책망할 수가 있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위 감결(甘結)에 계하한 사연을 첨부하여 상고할 일. 동 감동역관(監董譯官) 등의 직책과 성명을 급속히 첩보할 일. 사역원에서 감결을 받음.

기미(1739) 정월 24일

동래부사 정형복이 정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초10일 거제도도 표류하여 갔던 왜선 1척 및 다대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문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12일 유시에 부산첨사 이징서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본진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은 오늘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서평만호(西平萬戶)⁷⁴⁾가 호송하여 관소에 영솔하여 부쳤다’고 하여, 이에 의거하여 미시(未時)에 바친 왜학 혼도 박상순(朴尙淳)과 가별차 박재화(朴再華)⁷⁵⁾의 수본 내용에, ‘문정하러 갔더니, 제1척은 병진조 제5선으로 격왜 3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담배 1칭(稱)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초4일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가덕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제2척은 병진조 제17선인데 격왜 20명,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노인을 가지고, 이번 초1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다대포로 옮겨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여, 두 배의 노인을 받아 올려보내며, 무오조 제1선의 격왜 1명이 12일 병으로 죽어 그쪽에서 나와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노인 2통을 이전대로 보낸다” 하였음. 13일 신시의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가덕도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에, 초10일에 나오던 왜인의 큰 배 한 척을 11일 진시에 서로 만나 영솔하여 이끌고 옥포(玉浦)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박진호(朴震豪)와 소통사 등이 문정하러 갔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병진조 제7선에 격왜 30명과 별금도왜 1인, 중금

74) 서평만호(西平萬戶): 서평포만호. 서평포는 현재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일대임.

75) 박재화(朴再華, 1700-?): 밀양박씨로 자는 군실(君實)이며, 영조 병오년(1726)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고 봉사(奉事)를 역임하였다.

도왜 3인, 하대왜(下代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번 초10일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눈비가 내리고 해가 저물어 표류하다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문정하였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14일 미시(未時)의 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도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옥포에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을 차례차례 예인하여 닻거리[碇巨里]에 옮겨 정박하여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하였음. 15일 유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닻거리에 옮겨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을 금일 진시에 출발하여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즉시 가훈도와 가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뒤 수본 내용에는, '병진조 제7선에 격왜 30명,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3인,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하며,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소지한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위의 노인 2개를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도부(到付)한 본부의 장계로 인한 병조(兵曹)의 복계(覆啓) 회관(回關)에 근거한 본도 관찰사의 관문(關文) 내용에, "왜관에 잠입한 죄인 수례(守禮)와 애춘(愛春) 등을 사로잡은 군관 김윤택(金潤澤)과 김희봉(金熙鳳), 전재(田才)를 사로잡은 전전(前前) 수서사(首書事) 심시희(沈始禧) 등에게 모두 가자(加資)의 은전을 베풀고, 그 장교(將校) 송두성(宋斗星)과 나장철(羅將哲) 등은 본부에 명하여 쌀과 배를 제급(題給)⁷⁶⁾하라"는 일의 관문에 대하여는, 관문대로 거행하고 쌀과 배 등을 지급하였다는 일임.

기미(1739) 정월 25일

이 일로 동래 장계는 형조에 내림.

一. 경상감사 이기진(李箕鎭)⁷⁷⁾이 지난달 19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좌도수군우후(左道水軍虞侯) 윤동로(尹東老)의 첨정(牒呈) 내용에,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고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운운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로 13일 신시(申時)에 부산첨사 이징서가 치통한 내용에는, "11일 도부한 동래부사의 이문(移文) 내용에, '어제 나온 왜선 1척을 유시(酉時)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훈도 별차 등이 즉시 문정하였다고 하였는 바, 훈도 별차 등이 본부에 올

76) 제급(題給): 제사(題辭)를 매겨 지급함.

77) 이기진(李箕鎭): 무오(1738) 9월 초9일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기미년(1739) 4월에 전임지인 함경도관찰사 때의 일로 파직되었다.

라와서 해시(亥時)에 본부에서 독촉 명령을 받아 내려갔으니, 유시(酉時)에 문정할 이치가 만무한데, 이는 필시 통사들이 문정한 소치이거니와, 왜선의 문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통사들이 대신 행하는 것은 실로 전에 없었던 해괴한 일인지라, 변방의 사정을 엄중하게 하고 뒷날의 폐단을 우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결코 용서하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니, 해당 훈도 별차 등에게는 지금 바야흐로 장계로 알려 죄를 청하였으며, 소통사 등은 본부에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뒷날을 징계하는 뜻을 거론하였고, 구류한 통사를 즉시 잡아 보내라'는 일로 이문(移文)하였기로, 소통사 김세정(金世貞), 박춘원(朴春元) 등을 잡아 본부로 보낸다"고 하였음. 가훈도(假訓導)와 가별차(假別差) 등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을 제멋대로 떠나 진작 문정하지 않은 것이 이미 극히 해괴하고, 소통사 등이 막중한 문정을 그들이 이미 대신 행하고서는 훈도 별차가 문정한 모양으로 수분을 만들고 허위로 서명하여 와서 바친 것은, 변방 정세를 엄중하게 하는 도리로 해아리건대 또한 극히 해괴하니, 동 가훈도 가별차 소통사 등의 죄상을 사또께서 참조 상량하여 장계를 올리라는 일로 첩정하였다는 일임.

기미(1739) 2월 13일

비변사의 계목에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를 보면, 죄인에게 형벌을 시행할 때 부사가 친히 살펴보지 않는 전례를 묘당에 명하여 논의 확정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전례 뿐만 아니라 관왜와 교제하는 사이에 체면을 깎아 굽히는 혐의는 참으로 장계의 말과 같은 점이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도록 분부함이 어떠할지?” 라고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기미(1739) 4월 11일

一. 신임 관수왜(館守倭) 등방소(藤方紹)가 가져온 서계(書契) 등본.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받들어 올리는 서찰. 운운. 별폭. 수랍루삼청발(粹獵累三清鉢)⁷⁸⁾ 1부. 흑

78) 수랍루삼청발(粹獵累三清鉢): 순수한 납으로 만들어 세 겹을 겹칠 수 있게 한 중발.

칠화전갑(黑漆華箋匣)⁷⁹⁾ 1개.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10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가죽으로 싸고 구슬을 드리운 괘연) 1비(備). 황련(黃蓮)⁸⁰⁾ 3근(斤). 주간연기(朱竿烟器: 붉은 칠을 한 담뱃대) 20줌[握].

一. 일본국 대마주 습유 평의여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분 영공(令公) 각하께 올리는 서찰. 운운.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서가(彩畵書架: 채색그림을 그린 책꽂이) 1각(脚), 황색괘연(黃色掛硯: 황색의 괘연)⁸¹⁾ 1비(備), 황련 3근,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검은 칠을 한 중간 크기의 벼루집) 1비(備),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匣鏡: 채색그림을 넣은 3치 크기의 화장 거울) 2면(面).

부산영공 별폭.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채색그림을 넣은 중간 크기의 분) 10매(枚), 적동화로(赤銅火爐: 구리 화로) 2위(圍),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중간 크기의 구리 약탕기) 10개, 황련(黃連) 1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에 신임 관수왜 등방소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 및 동래 부산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라고 하였는데, 회례(回禮)하는 물건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급급하게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별폭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검은삼베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녁장 불인 유둔(油氈)⁸²⁾ 2부, 화석(花席) 3장, 참먹[眞墨] 3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곳의 회례. 각각. 흰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검은삼베 2필, 흰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녁장 불인 유둔 2부, 화석 2장, 참먹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건륭(乾隆) 4년(1739) 4월 11일 입계함.

기미(1739) 6월 18일

동래부사 정형복이 6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6일 오시에 부산첨사 김

79)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검은 옷칠을 한 편지함.

80) 황련(黃蓮): 깻깻이풀의 뿌리. 눈병과 설사 등의 약재로 사용됨.

81) 괘연(掛硯): 겹쳐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벼루집을 갖춘 벼루.

82) 유둔(油氈): 비올 때 비를 가리는데 사용하기 위해 종이를 여러 겹으로 이어붙여 기름을 먹인 두꺼운 유지(油紙).

영(金泳)의 치통 내용에, “이번 5월 초8일에 나온 비선 1척이 관수왜의 사신을 가지고 당일 진시(辰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초8일 오시(午時) 쯤에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 등이 진고하기를, “어제 해시(亥時) 밤중의 어두운 가운데 불을 들고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 1척은 과연 왜선으로 해운대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2척은 좌도(左道)의 먼 바다 가운데 잠시 머물고 있으며, 1척은 우리나라 배인듯하다”고 하였음. 추후에 온 부산첨사의 치통 내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해운대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선에 문정(問情)하기 위해 별차 박상순(朴尙淳)을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초8일 해시(亥時)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해운대에 정박하였던 왜선은 이미 관소로 들어왔기에, 별차에게 되돌아오라는 일로 분부하였다”고 하였으며, 미시(未時)에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오늘 사시(巳時)에 분간되지 않는 배 한척이 바다 가운데 잠시 머물고 있다”고 하였기에, 구봉 봉군(龜峰 烽軍)이 2척을 관측한 곡절을 조사하여 물었음. 유시에 훈도 홍성구(洪聖龜)가 바친 수본 내용에, “왜선 1척이 오시(午時)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다고 알리는 차왜(差倭)의 배에 정관 평상창(平尙昌)과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5명, 격왜 40명,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각 2통 및 진상 물건을 갖고, 어제 아침 일찍 귀국의 표류민의 배 1척과 영솔하여 오는 차왜의 배 1척이 대마도에서 동시에 나오다가, 물마루에 못미쳐 역풍을 만나, 표류민의 배 및 영솔하여 오는 차왜의 배는 뒤에 떨어지고, 저희들은 표류하여 해운대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관소에 정박하였으며, 소지한 서계 등은 다례(茶禮)하는 날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으며, 등본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예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시각 기장현감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선으로 기장현의 경계로 향하는 듯하다”고 하였음. 지난 달 28일 수문(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 및 병진조 제5선 1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초9일 진시(辰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초9일 사시(巳時)에 동 첨사의 치통과 기장현감의 치통에, “초8일 미시에 우리나라 표류민의 배 1척이 무지포(武知浦)⁸³⁾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왜선 1척도 기장현의 경계의 두모포(豆毛浦)에 정박하였는데, 양식 반찬과 땔감과 물을 전례

83) 무지포(武知浦): 현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와 대변리 일대. 무지포(無只浦)라고도 표기함.

대로 들여준다고 하기로,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당년 초 제1선 2선 3선의 송사왜(送使倭) 원역(員役)⁸⁴ 등의 상선연(上船宴)을 초9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신병(身病)이 더욱 위중하여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부산 첨사가 혼자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베풀었음. 같은 날 신시(申時)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별차 박상순의 수본 내용에, ‘초8일 무지포로 달려가니 우리나라 표류민의 배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강원도 평해(平海)의 표류민 8명 및 지로사공왜(指路沙工倭) 1명과 통사왜(通事倭) 1인, 중금도왜(中禁徒倭) 2인 등이 함께 타고 길을 인도하였으며, 표류민 9명 중 1명은 차왜의 배에 함께 타고서 이번 초7일 이른 아침에 차왜의 배 1척, 고지차왜(告知差倭)의 배 1척과 더불어 함께 3척이 동시에 발선하여 나오다가, 차왜의 배 2척은 혹 앞서기도 하고 혹 뒤쳐지기도 하여 간 곳을 모르고, 표류민의 배는 바람이 시들하고 안개가 가득하여 배를 운행하기 어렵기에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초8일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두모포에 정박한 왜선 1척 역시 문정하였더니, 「평해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오는 차왜선으로 정관(正官)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표류민 1명 등이 함께 타고,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초7일 고지차왜의 배 1척과 표류민의 배 1척이 더불어 함께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저희들의 배는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초8일에 표류하여 여기에 도착하였고, 그 나머지 2척은 향한 곳을 모른다고 운운」 하였으므로,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였음.

초9일 유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에, “미시에 초탐장(哨探將) 및 기장 대장(代將)⁸⁵이 치보하기를, ‘표류한 왜선 1척과 우리나라 표류민의 배 1척이 묘시에 출발하여 오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문정하고, 공초를 받기 위하여 표류민 등과 배는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임역(任譯) 등에게 분부하였으며, 미시에 구봉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로부터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는데, 오늘 돌아 들어가던 왜선 2척이 도리어 표류되어 왔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초10일 묘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그믐날 술시에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표류한 왜선 1척과 표류한 백성의 배 1척을 진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84) 원역(員役):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관원과 구실아치의 총칭.

85) 대장(代將): 본군의 장수를 대신하여 임시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관(軍官).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강원도 평해에서 표류한 백성을 영솔하여 오는 차왜선으로, 정관 원겸치(源兼治)와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우리나라의 표류민 1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진상 물건 등을 가지고, 초7일 이른 아침에 표류민의 배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왔다고 알리는 차왜의 배와 더불어 대마도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나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각자 표류하여 흩어졌는데,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고, 소지한 서계와 별폭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면서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을 올려보냈으며, 제2척은 우리나라의 배인데 표류한 백성 8명 및 지로사공왜 1명, 통사왜 1인,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초7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길을 인도하여 나오다가 바람에 표류하여 기장 경계로 간 사연은 별차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표류한 백성 등은 당초 왜국의 경계로 표류해 들어간 곡절의 공초를 받기 위하여 배와 함께 내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서계와 별폭 등본 및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표류한 백성 등은 추고하기 위하여, 기미 6월 초9일에 사공(沙工) 양인(良人) 최용이(崔龍伊), 격군(格軍) 양인 진수명(陳守明), 김순산(金順山), 김일룡(金日龍), 사노(私奴) 김흥선(金興善), 안선이(安先伊), 양인 조충이(趙忠伊), 박돌이(朴丕伊), 이준신(李俊臣) 등에게 각기 호패(號牌)를 직접 바치게 하고는, '너희들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무슨 일로 어느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바람에 표류하는 폐단이 있었는지, 당초에 바람에 표류한 근본 원인 및 저쪽에 도착한 사정을 모두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하라'고 추문하였더니, '저희들은 모두 강원도 평해 동면(東面)에 거주하여 사는 백성으로, 장사를 하여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사서 지니고 호조(戶曹) 소속의 선주 김동선(金東善)의 배에 사공과 격군 모두 9명이 함께 타고, 지난 해 10월 11일 해가 뜰 때 본토에서 배를 타고 12월 초4일에 전라도 낙안군(樂安郡)으로 돌아가, 쌀 115섬과 벼 17섬을 무역하여 그대로 보관하여 싣고, 같은 달 28일 낙안군에서 출발하여 전진하다가, 금년 정월 16일 오시에 장기(長鬐) 경계로 돌아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서북풍을 만나 선미(船尾)와 돛이 부러져서 손상되어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실었던 곡물은 반이 넘게 물에 던지고 바다 가운데로 표류하여 다니다가, 9일 밤낮을 지난 뒤 같은 달 25일에 표류하여 한 섬에 도착하니, 곧 일본국 범전주(帆前州) 약송포(若松浦)라 하였습니다. 그곳 왜인들이 비로소 표류해온 상태를 알고는 보는 즉시 구원하여 2일을 머문 뒤에, 같은 달 27일 본 배를 타고 왜인 등이 차례차례 영솔하여 2월 17일에 나가사끼시마[長崎島]에 도착하니, 때마

다 음식을 공급하고 5일씩 건너 술을 주었으며, 작은 식통(食桶) 3개 중에 물통이 2개이며, 소반(小盤) 9넝, 사발(沙鉢) 18넝, 사기접시 9넝, 사귀[沙耳] 1넝, 냄비 2개, 초둔(草菴: 거적) 40번(番), 풍석(風席: 돛) 1부(浮) 등을 내어 주었고, 손상된 배와 삿대를 훼손된 대로 수리하여 주었습니다. 46일 머문 뒤 4월 초4일 나가사키시마에서 그대로 본 배를 타고 왜인들이 차례차례 영솔하여 같은 달 22일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하였더니, 음식을 공급하고 술을 먹이는 등의 일은 나가사키와 다름이 없었으나, 띠를 갖춘 저고리[襦衣] 각기 한 벌씩과 단목(丹木) 각기 2근, 지삼초(枝三草) 각 10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4일을 머문 뒤에 5월 초7일에 차왜의 배와 더불어 부중에서 출발하여 전진하다가, 6월 초6일 좌수포(佐須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렸는데, 같은 달 초7일 차왜의 배 및 다른 배 1척과 더불어 발선할 즈음에, 그 무리 가운데 박돌이(朴丌伊)는 다른 차왜의 배를 옮겨 타고 나오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하여 각기 표류하여 흩어졌는데, 그들이 탔던 배는 돛을 내리고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초8일 미시에 표류하여 기장 무지포에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거니와, 호패는 당초 바다로 나갈 때 집에다 버려 두어 모두들 찾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정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나머지 살아난 무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상고하여 처치하시기 바란다고 각 사람들이 공초하였기로, 표류한 백성들은 전례 대로 다시 문초하기 위하여 도부장(都部將)에게 명하여 압송하게 하였으며, 표류한 사람들의 직역(職役)과 성명, 거주지를 성책하여 만들어 보낸다”고 하였음.

초10일 미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진고(進告)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2선장(二船將)을 정하여 보냈더니, 과연 왜선을 유시에 영솔해서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이에 의거하여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가서 문정하게 한 수본에, ‘당년조 제1 송사의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15명과 별금도왜 4인,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노인 전면에 「각도(各道) 각관(各官) 방어소(防禦所)」라고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 함.

11일 인시(寅時)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진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대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표류하여 옥포(玉浦) 경내로 향하여 만호(萬戶)가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평해 표류민 9명은 부산에서 전례대로 공초를 받은 뒤에 본부로 압송하여 다시 문목(問目)을 물어서 추문(推問)하였더니, 동 부산진의 공초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그들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바람에 표류한 죄는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조처해야 마땅한바, 사공(沙工)과 결꾼(格軍: 노 젓는 사람) 등은 한결 같이 모두 엄하게 가두고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거행할 계획이거니와, 직역과 성명과 나이와 거주지를 성책하여 비변사(備邊司)로 올려보내며, 대마도 도주가 예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나왔고, 표류민 등이 표류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차왜가 또한 영술하여 나온 일은 마땅히 전례대로 접대해야 하겠기로, 접위관(接慰官)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으니, 두 차왜에게 증정하는 예단(禮單)의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동 차왜 등이 소지한 서계와 별폭은 뒤에 다례를 행하면서 받아 올려 보낼 계획이고, 등본 1통 및 표류민의 노인 1통을 우선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이번 초9일 우도를 향하여 표류하여 갔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그들이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형복의 장계를 보면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나왔고, 표류민 등이 깊은 곳으로 표류하여 들어갔다고 차왜가 또한 영술하여 나온 일은 사례대로 접대하여야 마땅한데, 접위관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출할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고, 두 차왜에게 증정할 연례의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두 차왜를 접대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별폭의 회례 및 연례(宴禮)의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겠거니와, 무릇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고 일찍이 금령이 있었거늘, 위의 상한(常漢) 등이 거주하는 지방관이 평소에 신칙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 경계로 표류하여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었는지라, 경계하여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당해 원적(原籍)의 지방관인 평해군수(平海郡守)는 담당 관청에 명하여 엄중하게 추고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함이 어떠할지? 건륭 4년(1739) 6월 20일 동부승지 신 송징계(宋徵啓)⁸⁶⁾의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一. 이번 7월 초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송(宋)이 계품하기를, “호송한 차왜가 왜관에 머무는 것은 50일로 한정하는 것이 사례인데, 근래에는 오랫동안 머무르기 위하여 곧장 재판차왜(裁判差倭)라고 이름을

86) 송징계(宋徵啓, 1690-?): 여산송씨로 자는 계인(季仁)이며, 경종 계묘년(172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한성좌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칭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와서 머무른 것으로 가장 오래된 자는 6달에 불과하였는데, 작년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호송한 차왜가 지금까지 왜관에 머물러 거의 8달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으니, 이는 이전부터 없었던 일이라, 도신(道臣)과 동래부사가 한결같이 그가 오래 머물도록 맡겨두는 것은 참으로 극히 미안하니, 도신을 추고하고 동래부사를 되도록 엄중하게 추고하며, 훈도 별차는 본도에 명하여 순영(巡營)에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그대로 신칙하여 깨우치게 하고, 되도록 가까운 시일에 되돌려 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미(1739) 10월 초10일

一. 비변사의 계목에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⁸⁷⁾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1통의 수표(手標)를 쓰고 도서(圖書)⁸⁸⁾를 찍어 내어서 대면하여 전하므로 그 수표를 살펴보았더니, 사연은 곧 종전에 선박이 파손되고 인명이 죽으면 차사를 징발하여 보내는 것이 본디 이웃나라의 교제를 신중히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이런 미세한 일로 해를 넘기도록 서로 다투어 피차간에 성신(誠信)의 기상이 손상됨을 면치 못하니, 이후로는 본주에 표류하여 오는 사람 중에 목숨이 끊어져 죽은 자가 있으면, 배가 파손되거나 파손되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이전대로 차사를 보내고, 오직 배만 파손되는데 그쳤으면 겸대(兼帶)⁸⁹⁾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이 뒤로는 이것을 영원한 정식으로 한다고 하였다’고 하였기로, 그 수본을 가져다 보니, 관수왜가 대마도 도주(島主)의 통유(通諭)를 베낀 것이고, 또 도서를 찍은 것은 곧 하나의 미더운 문서이거니와, 문위역관 박춘서(朴春瑞)와 김정균(金鼎均) 등이 왕명을 받들고 대마도에 가서 이 일을 겸하여 위촉하여 이미 수궁하는 허락을 얻었으며, 김정균은 거듭 차왜에게 책망하여 수표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목숨이 죽은 경우도 함께 한가지로 차사를 보내는 것을 방색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배가 파손된 사람을 별도의 차사가 영솔하여 오는 폐단은 이제 영구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87) 박사창(朴師昌): 영조 기미년(1739) 8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신유년(1741) 정월에 파직되었다.

88) 도서(圖書): 인장(印章) 즉 도장(圖章).

89) 겸대(兼帶): 이미 맡은 직책 외에 다른 직책을 겸함. 여기서는 이미 일정한 직책을 띄고 왕래하는 선박 편에 표류선박과 인원을 겸하여 데리고 온다는 의미이다.

두 역관이 힘을 다해 이룬 것이 아님이 없으니, 격려하여 권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할 듯한데, 아래에서 감히 우러러 청하는 것은 불가하여, 동 수표를 올려 보내는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라”고 하였는 바, 이 일은 분명히 임술약조(壬戌約條)에 근거가 있는데, 왜인이 그 접대를 이롭게 여겨 매양 배가 파손되고 목숨이 죽는 것을 둘로 나누어 번번이 별도의 차사를 보내다가, 이제 이번 문위역관 등이 국가를 위하여 힘을 바쳐 이렇게 폐단을 제거한 것은 참으로 매우 가상하지마는, 그 제거한 폐단이란 것이 단지 배가 파손되었을 때의 송사(送使) 한 조목이고, 목숨이 죽었을 때 차사를 보내는 것을 아울러 한가지로 방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 왜인들은 본래 번복이 많아서, 이 뒤로 영구히 준행할지도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 없으니, 가벼이 상 주기를 논의하는 것은 신중한 도리가 아니니, 짐짓 앞으로 오래도록 각별히 준수하는지를 살펴본 뒤에 다시 논의하여 조처하시오며, 수표는 이미 서계와는 절로 구별되는 것이라 올려보낼 필요가 없고, 본부에 놓아 두어 뒷날 상고할 근거로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4년(1739) 10월 초9일 우부승지 신 황정(黃正)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미(1739) 12월 초4일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이 11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7일 미시(未時)에 부산첨사 한계조(韓啓朝)의 치통에, “10월 초10일에 되돌아온 당년조 부특송 수목선(水木船)에 격왜 2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갔으며, 10월 15일에 나온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별대관왜(別代官倭) 1인과, 11월 초5일에 나온 비선의 두왜 1인,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하대왜(下代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당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 하였음. 19일 오시(午時) 쯤 황령산 봉군과 간비오 봉군 등의 진고 및 부산첨사의 치통에, “왜선 2척이 물마루로부터 나오다가 표류하여 좌도(左道)로 향하기에, 문정하기 위해 별차를 정하여 보냈으며, 10월 초10일에 나온 당년조 3특송 2호선에 격왜 30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20일 진시(辰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해시(亥時)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에, ‘19일에 나온 왜선 2척 중 1척은 무지포(武知浦)에 정박하였기에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주었고, 1척은 바다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해가 저물어 향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하였다” 하였음. 신시(申時)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별차 박상순(朴

尙淳)의 수본에, 무지포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한 곳을 문정한 일은, 관소(館所)에 있는 훈도 별차에게 문정한 것이라” 하였음.

21일 진시(辰時)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초탐장 및 기장현감이 치보하기를, ‘화살포[火士乙浦]⁹⁰⁾에 머물던 왜선 1척을 영솔하여 끌어다가 무지포에 정박한 뒤 땀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전례대로 들여주었고, 별차가 문정한다’ 하였다” 하였음. 신시(申時)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을 차례차례 영솔하여 끌어다가 유시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에,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은, ‘병진조 11선 부특송 2호가 재차 건너온 것으로 별차가 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치통한다” 하였음. 11선의 노인(路引)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부특송선은 규정 이외로 나왔으니 속히 들여보내라는 일로 책망하였으며, 별차 박재화(朴再華)의 수본에 “소인(小人)은 이번 22일에 도입하여 구 별차 박상순과 함께 왜관 건물 여러 곳을 같이 적간(摘奸)하여 손상된 곳이 없고 탈없이 전수하였다”고 수본하였다는 일임.

기미(1739) 12월 14일

경상좌수사 백수일(白守一)이 12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11월 26일 술시에 부산첨사 한계조(韓啓朝)가 치보하기를, “왜선 3척이 물마루로부터 나오다가 1척은 돌아서 우도(右道)로 향하고, 2척은 관소로 향하여 오기에, 초탐하기 위하여 두모포 만호를 정하여 보내며 치보하였고, 유시(酉時)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자(銀子) 5,000냥을 실었고, 제2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자 5,000냥을 실어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소지한 노인 3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이전대로 동래부로 보낸다”고 하였음.

지난 달 26일에 나온 비선 2척은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였고, 1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2척을 전혀 관측하지 못한 것은 극히 놀라운 일인지라, 다대포 병방(兵房) 군관(軍官)과 색리(色吏)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가덕진(加德鎭)은 조사하여 물은 뒤에 끝내 회첩(回牒)하지 않았고, 옥포왜학의 문정 가운데는 모

90) 화살포[火士乙浦]: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두 거론하지 않은 죄상을 조사하여 다스리라는 뜻으로 통영(統營)에 첩보하였다는 일임.

기미(1739) 12월 15일

예조단자. 이제 이번 동지(冬至)의 각도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목사 조동점(趙東漸)이 대전(大殿)에 진상하는 궁대통개(弓岱筒箇) 4부, 활을 묶는 노루가죽[結弓獐皮] 10장, 털로 짠 말장식[織毛馬粧] 1부 대신으로 활에 쓰는 노루가죽[弓獐皮] 5장, 세자궁(世子宮)에 진상하는 털로 짠 말 장식 1부 등의 물건이 이제 비로소 올라왔으므로, 전례대로 품질을 살펴서 안에 들인다는 일로 계품함.

기미(1739) 12월 28일

경상우수사 조정(趙儼)이 12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26일 왜인의 큰 배 1척이 가덕도 닻거리[碇巨里]에 정박하였고, 동시에 나온 비선 2척은 다대포와 가덕진과 천성진(天城鎭)에서 관측하지 못한 채 범연히 보고하고, 옥포왜학(玉浦倭學)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으니, 변방의 정세로 헤아리건대 모두 극히 몽매하니, 가덕진과 천성진 감색(監色)과 옥포왜학(玉浦倭學)을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다대포 감색은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좌수사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다는 일임.

경신(1740) 정월 21일

이번 정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유(兪)가 계품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의 장계입니다. 가덕첨사 장효일(張孝一)과 다대포첨사 박도면(朴道勉)과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趙昌基)가 왜인의 정세를 보고한 데 착오가 많은 죄를 유사(攸司)에게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는 청인데, 범한 죄가 대단한 것이 아니니 모두 경상좌수사가 영문(營門)에 잡아다가 경중을 분간하여 곤장을 치라고 명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병조.

경신(1740) 정월 27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왜관을 고쳐 지을 때의 감동역관(監董譯官) 변계(卞檠)가 죽어서 대신으로 절충 박춘서(朴春瑞)를 차출하여 보내라고 계하하였는데, 이전부터 감동 당상역관이 왜인과 서로 접촉할 때는 전례에 따라 사사로운 예단(禮單)을 주는 규정이 있는데, 증정하는 예단 잡물은 한결같이 병오년(1726) 수리할 때의 전례를 상고하여 급히 마련하여 지급하는 일임.

경신(1740) 정월 30일

호조의 회관(回關) 내용. 왜관을 고쳐 지을 때의 감독하는 당상역관의 사사로운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지급하라는 관문이 있었고, 감동역관의 사사로운 예단은 당초 내려갈 때 이미 지급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런 이문(移文)을 하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경신(1740) 2월 초2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운운한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을사년(1725) 왜관을 수리할 때 당상역관 최상집(崔尙堦)⁹¹⁾이 동년 10월 예단을 받았으나, 병오년(1726) 9월 병으로 바뀌어 대신으로 한중억(韓重億)⁹²⁾을 차출하여 보낼 때, 귀조(貴曹)에서 또한 사사로운 예단을 지급하였지만, 이제 이번 왜관을 고쳐 지으면서 기미년(1739) 2월에 역관 변계(卞檠)가 예단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지난 금년 정월에 이미 죽었고, 그 대신으로 역관 박춘서(朴春瑞)를 차출하여 보냈으니 병오년(1726)의 전례와 다름이 없기로, 이전에 이렇게 이문(移文)하면서 병오년 전례를 상고하여 지급하라 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니, 다시 을사년과 병오년 전례를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임.

91) 최상집(崔尙堦, 1664-?): 무주최씨로 자는 연보(延普)이다. 숙종 13년(1687)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92) 한중억(韓重億, 1660-?): 신평(新平) 한씨로 자는 시중(時仲). 숙종 8년(1682)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다가 통정대부 절충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경신(1740) 2월 초10일

一. 호조에서 회이(回移)한 관문 내용에, “해당 왜관 수리 때의 감동역관의 사사로운 예단은 을사년(1725)과 병오년(1726)의 전례를 다시 상고해서 마련하여 지급하라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수리하는 일로 명을 받들어 내려가면서 사사로운 예단을 이미 왜인에게 들여 주었으면, 뒤에 가는 자가 얼굴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감독을 맡은 일은 한가지인데, 어찌하여 얼굴이 바뀔 때마다 바꾸어 주어야 되겠는가? 이른바 전례는 분명히 잘못된 사례이니 시행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일로 문서가 도부(到付)한 뒤에, 역관의 소지(所志)⁹³⁾로 인하여 다시금 논하여 이문(移文)함.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왜관을 고쳐 지을 때의 감동 당상역관 변계가 죽어서 대신으로 박춘서를 차출하는 일을 계하한 뒤에, 사사로운 예단을 을사년(1725)과 병오년(1726)의 최상집과 한중익의 사례에 의하여 지급하라는 일로 이문(移文)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관문의 내용에는, ‘수리하는 일로 명을 받아 내려가서 사사로운 예단을 왜인에게 이미 들려주었으면 뒤에 가는 자는 얼굴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감독을 맡은 일은 한가지인데, 어찌하여 얼굴마다 바꾸어 주는가? 이른바 전례는 분명히 잘못된 사례이니 시행을 허락할 수 없다’고 회이(回移)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쳐온 감동역관 박춘서의 정장(呈狀) 내용에는, ‘무릇 당상 역관이 왜관에 내려가면 예단을 관왜(館倭) 등에게 주는 것이 곧 백여 년 흘러내려온 규정이고, 을사년(1725)과 병오년(1726)에 이미 재차 증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관왜 등이 또한 받아먹으려고 기대하고 있거늘, 만약 전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시 장차 떠들 것입니다. 저 자신이 비록 미천하고 낮아도 이미 조정에서 차출하여 보낸 왕인(王人 : 관원)이니, 모욕을 모면하려고 설혹 사사로이라도 마련할 것이지만, 예단의 물건은 조정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어떻게 장만하여 얼버무릴 수 있겠으며, 하물며 을사년(1725)과 병오년(1726)에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저 쪽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폐기하여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동 예단을 전례대로 지급하여 기일에 맞추어 내려보내는 일로 다시 이문해 달라’고 정장(呈狀)하였음. 비록 근년의 일로 말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잘못된 사례라고 지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핑계하여 말하면, 그들이 억울하다 칭할 것은 분명한 형세이니, 한결같이 전례대로 급속히 마련하여 지급하여 진작 즉시 내려가도록

93) 소지(所志): 관아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할 일.

一. 호조의 회이(回移) 내용. 운운한 일로 관문을 하였는데, 전에 이미 논하여 회관(回關)하였으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제사(題辭) 없이 그대로 둬.]

경신(1740) 2월 19일 호조로.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왜관을 고쳐 짓는 일로 감동당상역관 박춘서가 사사로운 예단을 받아 가는데 대한 사례를 상고하여 지출하는 일로 비국에 바친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봉감(捧甘 : 공문을 받아 결재함)한 제사 내용에, “인용한 바 전례가 이러하고, 사리로 헤아려보아도 또한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는 뜻으로 결정을 받았으니, 제사의 사연을 상고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지급할 일.

경신(1740) 2월 29일

비변사의 계목. 이전에 동래부사의 보고로 말미암아, 왜관에 피집(被執)⁹⁴한 백사(白絲)의 대가로 받는 은화를 새로 주조한 곡절을 다시 더 상세히 살핀 뒤에 계문(啓聞)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는데, 이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의 장계를 보면, 임역 등의 수본 내용을 낱낱이 열거하여 말하기를, “새로 주조한 정은(丁銀)⁹⁵을 시험삼아 취련(吹鍊)하였더니, 산출된 천은(天銀)⁹⁶의 성수(成數)가 예전 정은에 비하여 더함이 있었지 감소는 없는데, 이는 모자랄 때마다 더 주조한 소치라고 하였는 바, 은화를 새로 주조하는 것은 대단한 변통 절차로서, 이번의 취련에는 비록 더함은 있으나 모자람은 없다고 하나, 왜인의 정상이 본래 송곳끝 만큼 조그만 이익도 교묘하게 속여 피를 흘리며 다투는데, 이제 이번에 내어보낸 새 은화 12,000여 냥에서 추가된 수량[剽數]⁹⁷이 130여 냥에 해당한다고 하나, 필시 공연히 수량을 더하여 주조할 리는 없다”고 하는 바, 지금은 짐짓 가표

94) 피집(被執): 일종의 선매(先賣) 제도로써, 대금을 먼저 주고 후일에 물품 수령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

95) 정은(丁銀): 은의 함유량이 70%인 칠성은(七成銀).

96) 천은(天銀): 은의 함유량이 100%인 순은(純銀).

97) ‘剽數’의 ‘剽’는 추가한다는 뜻의 ‘俵’를 바꾸어 쓴 듯하다. ‘加俵’는 전곡(錢穀) 등의 수량을 추가한다는 뜻으로 더러 사용하는 용어이다.

(加勲)의 이익으로 기만하였다가 뒤에 몰래 그것을 감하는 꾀를 이루려고 할지 어찌 알겠으며, 더구나 취련하여 간품(看品)할 적에 그 임역들이 차왜(差倭)와 함께 취련하여 조사했는지 알지 못하니, 끝에 가서 폐단이 생긴 뒤에 근거로 하여 다룰 문서 흔적이 없을 듯하여, 대개 임역들에게 명하여 왜인이 새로 주조한 곡절의 수표를 받게 하여 뒷날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찌할지? 건륭 5년(1740) 2월 27일 동부승지 신 김정윤(金廷潤)⁹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신(1740) 3월 초5일

이번 3월 초7일 시임(時任)과 원임(原任)⁹⁹ 대신을 인견하여 입시할 적에 **우의정 유(兪)가 계품**한 바, “저번에 동래부사 박사창의 장계로 말미암아 ‘공작미(公作米)’를 또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임역들에게 명하여 차왜를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는데, 어제 그 장계를 보니, 차왜가 누누이 애걸하여 마지 않고, 또한 그 공궤(供饋)의 비용이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1,000섬이라고 하는데, 매양 기한을 물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실로 더욱 어렵거니와,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곡식 생산이 지극히 어렵기로, 종전에 허락한 일을 이제 갑자기 방색하기는 어려우니, 짐짓 5년으로 한정하여 지급을 허락함이 어찌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경신(1740) 3월 20일

一. 통제사(統制使)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啓下)하시기를. 이 통제사 조경(趙敬)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표류한 왜선 4척이 나올 때 천성진(天城鎭)과 가덕진(加德鎭)에서 12일 유시(酉時)에 관측하고, 부산(釜山)에서는 13일 묘시(卯時)에 관측하였으며, 다대포(多大浦)에서는 같은 날 진시(辰時)에 관측하였다고 치보하였는데, 동 왜선이 가덕(加德)에 정박한 2척에는

98) 김정윤(金廷潤, 1676-?): 원주김씨로 자는 군중(君重)이며, 숙종 갑오년(1714)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99) 원임(原任): 전임(前任).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하였더니, 왜인의 말이 ‘12일 사시(巳時)에 발선하여 비선 1척은 표류하여 좌도(左道)로 향하고, 2척은 뒤에 떨어졌다가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내고 13일에 배를 운행하여 각자 표류하여 흩어졌다’고 하였으며, 부산첨사의 치보 내용에는, ‘먼저 관소(館所)에 도착한 비선에 훈도 별차 등이 문정하였더니, 왜선 4척이 12일 미시에 나오다가 물마루를 지나지 못하여 큰 배 2척은 바다 가운데서 뒤에 떨어졌고, 비선 1척은 밤이 깊도록 노를 저어 먼저 관소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로써 본다면 동 왜선 4척이 12일에 물마루를 넘은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고, 천성과 가덕 두 진의 봉군이 이미 유시에 관측하였으면, 부산진과 다대진의 봉군들이 범연하게 넘기는 사이에 미처 관측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가 저서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일의 형편이 혹 그렇다 하더라도, 어두워져 잘못 관측한 흔적을 엄폐하려고 끝내 엄하게 조사하지 않고, 부질없이 훈도 별차가 꾸며대는 말과 봉군이 기만하여 보고한 공초에만 의지하여, 감히 물마루를 지나지 못하고 떠 있다가 밤을 새운 뒤 13일 날이 밝아서 비로소 나뉘어 표류했다는 설로써 두루 막아 꾸민 것은 매우 놀라우니, 부산첨사 한계조(韓啓朝)와 다대포첨사 박도면(朴道勉)이 어두워 관측을 잘못된 것을 기만하여 보고한 죄는 법의 사례대로 파직하여 내쫓으며, 부산 훈도 홍성귀(洪聖龜)¹⁰⁰⁾와 별차 박재화(朴再華) 등은, ‘물마루를 지나지 않았다[未過水旨]’는 녀자를 문정(問情)의 수본(手本)에 만들어 넣고, 또 발선한 사시(巳時)를 미시(未時)로 고쳐 부산진과 다대진을 옹호한 흔적이 뚜렷하여, 역관들이 그 사이 조종하는 버릇이 매우 놀라우니, 그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엄중하게 심문하여 조처하라” 하였는 바. 부산과 다대포첨사 등은 이미 파직하여 내쫓았으며,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은 왜선의 문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물마루를 지나지 않았다’는 녀자를 만들어 넣고 사시에 발선한 것을 미시로 고쳐 그 신중하게 조처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나,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5년(1740) 3월 20일 우승지 신 이세진(李世璣)¹⁰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비변사로 이송함.

一.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 운운. 이 동래부사 박사창의 장계를 보면, “연례송사왜(年例送使倭)가 예조(禮曹) 서계(書契)를 가져 오

100) 홍성귀(洪聖龜, 1698-?): 남양홍씨로 자는 대년(大年)이며, 경종 신축년(1721)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고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101) 이세진(李世璣, 1669-1749): 벽진이씨로 자는 명서(明瑞)이며, 영조 을사년(172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는 것은 본디 규정이지늘,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趙昌基)의 문정(問情)에는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져왔다’고 운운 한 것은 허황하기가 막심하고, 표류한 왜선에 문정할 때 왜인의 명색(名色)이 대단히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난달 12일 미시에 출발한 왜선을 함부로 사시라고 하여, 전후로 어긋난 것이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아서 실로 뒤의 우려가 있으니, 그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 바, 왜선에 문정하는 것은 엄중하여 가볍지 않거늘, 이제 이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의 전후로 왜선에 문정한 것이 이렇게 어긋나니, 직분을 지키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5년(1740) 3월 20일 우승지 신이세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비변사(備邊司)로 이송함.

一. 경상감사 정익하(鄭益河)¹⁰²가 3월 13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좌도수군 우후(左道水軍虞侯) 박한영(朴漢英)의 첩정(牒呈) 내용임. 이달 초3일 해시(亥時)에 부산첨사가 치보하기를, “오늘 돌아들어간 왜선 1척이 바다 반쯤 이르러 바람을 만나 되돌아 와서 관소에 정박하였다”고 하였고, 초4일 오시에 동 첨사가 치보하기를,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초3일 돌아들어가다가 되돌아와서 정박한 왜선 1척 및 기미년(1739) 12월 12일에 나왔던 병진조 제13선 격왜 20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함께 2척이 당일 진시에 돌아들어갔다’고 한다” 하였으며, 미시에 동 첨사가 치보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선박 4척이 물마루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며, 진시에 다대포첨사가 치보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6척이 바다 가운데서 선후로 나누어 나오다가, 4척은 먼저 관소로 향하고 2척은 바다 가운데서 뒤에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해시에 부산첨사가 치보하기를 “오늘 선후로 나오던 분간되지 않는 배 6척 중 4척은 관소로 향하고, 2척은 바다 가운데서 뒤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방금 초탐장 두모포 만호가 치보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은 과연 왜인의 송사선 2척과 작은 배 2척인데 우선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의 수본한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선은 정사조 제13선으로 격왜 20명과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반중 3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담배[南草] 1칭을 실어 가졌으며, 제2척은 정사조 제14선으로 격왜 20명과 대관왜 3인, 소금도왜 1명

102) 정익하(鄭益河, 1868-?): 연일정씨로 자는 자겸(子謙)이며 호는 회와(晦窩)이다. 경종 신축년(1721)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기미(1739) 9월 29일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신유(1741) 6월 초4일에 파직되어 떠났다.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魚油)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3척은 비선으로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화 4,000냥을 실어 가졌으며, 제4척은 비선으로 두왜 1인과 격왜 6명,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화 4,000냥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소지한 노인 4통을 받아 올려본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이전대로 동래부로 보낸다"고 하였음.

초5일 해시에 첨사가 치보하기를, “방금 가덕진의 전통(傳通)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보 내용에, ‘초4일 물마루 가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2척을 상세히 관측하니, 1척은 돌아서 거제도도로 향하고, 1척은 본도로 향하여 오기로, 두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전진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를 술시에 만났으나, 그대로 물살이 역류하여 대항(大項) 앞바다에 정박하여 지킨다’ 하였다”고 하였고,

초6일 오시에 동 첨사가 치보하기를, “가덕진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대항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을 초6일 묘시에 영술 예인하여 닻거리[碇巨里]에 정박하여 지킨다’고 하였다” 하였으며,

초8일 자시에 동 첨사가 치보하기를, “가덕진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보 내용에, ‘옥포(玉浦) 양주(楊洲)로 표류하여 온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5일 진시에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고, 왜학 조창기는 통영으로 달려갔다가 도중에 병을 얻어 미처 문정하지 못하고, 소통사(小通事) 이승담(李承淡)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제1선 송사 1호선으로, 정관 1인, 도선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1봉을 가지고, 초4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과 비선 2척이 대마도에서 우선 출발하였고, 큰 배 2척은 검사한 뒤에 같은 날 사시에 대마도에서 일시에 출발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고 또 해가 저물어서 1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는지 가덕도로 향하였는지 간 곳을 모르겠고, 저희들의 큰 배 1척은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문정했다 하였고, 옥포만호의 치통 내용에는, 옥포 경내의 양주령(楊州嶺)으로 표류하여 향한 배를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초5일 사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다고 하여 차례 차례 치통하였으며, 가덕 닻거리에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6일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어 지키고 있다'고 치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는, “방금 도부한 가덕 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는, ‘이제 이 번 본진 경내의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와 소통사 이승담 등이 이

번 초6일 유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 조 제2선에 정관 1인, 반중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격왜 40명 및 제3선의 정관 1인, 반중 1명 등이 함께 타고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찰과 별폭을 아울러 각기 1봉(封)을 가지고,

이번 초4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과 비선 2척이 대마도에서 먼저 발선하였고, 큰 배 2척은 검사한 뒤 같은 날 사시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저희들 큰 배 1척은 초4일 해시에 표류하여 대항 앞바다에 이르러 떠서 머무르며 밤을 지낸 뒤 초5일 묘시에 이곳에 정박하였다」고 문정하였다고 차례 차례 치통하였다' 하였는데, 무릇 연례송사는 원래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이번 제2선과 3선의 정관왜 등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모두 각기 1봉씩 가지고 온 것은 매우 괴이한 일이니, 동선박이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상세히 문정한 뒤에 상세히 알리겠다"고 치통하였고, 초10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미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전통 내용에, '옥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한 가덕 첨사의 전통 내용에, 「옥포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 및 가덕 경내의 닻거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번 초7일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지킨다」고 하였는데, 동 전통에는 바람과 파도가 극히 험하여 육지를 통해 전한다고 하여 차례 차례 전통하였기에, 위의 닻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 사시에 출발하여 호송장으로 동 진의 2선장(二船將) 안수억(安壽億)이 영솔하여 오시에 본진에 교부하였거늘,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면서 호송장으로 본진의 이장(二將) 정필원(鄭弼元)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도부한 동 선장 정필원의 치보 내용에는, '왜인의 큰 배 1척을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2선에 정관 심번차(深繁次)와 반중 1명, 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격왜 40명 및 제2선의 정관 청정(淸貞)과 반중 1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각 1통, 별폭 각 1통과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이달 초4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과 비선 2척이 대마도에서 먼저 발선한 뒤에, 제1선 송사선과 함께 2척은 검사한 뒤에 같은 날 사시 쯤에 뒤따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저희들은 초4일 해시에 표류하여 가덕 경내의 대항 앞바다에 이르러 바다에 떠서 머물며 밤을 지낸 뒤에 초5일 묘시에 닻거리에 정박하였다가, 먼저 관소로 돌아

와 정박하였고, 가져온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고 수본한다'고 하였다" 함. 이제 문정 내의 사연을 보면, 당초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였고, 호송장인 다대 2선장 정필원은 오시에 다대포에 왜선을 교부하였는데,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한 것은 또한 매우 해괴한 일이라고 치보하였음.

11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보 내용에는, “방금 도부한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번 초9일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초10일 사시에 출발하여 조라포(助羅浦)¹⁰³⁾ 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오시에 장목포(長木浦) 별장(別將)에게 교부하고, 동 별장이 영술 예인하여 미시에 천성만호(天城萬戶)에게 교부하고, 동 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신시에 본진 경계인 율구미(栗仇味) 앞바다에 도착하여, 호송장으로 신문별장(新門別將) 김두악(金斗喔)에게 교부하였기로, 그대로 영술하여 보낸다’고 전통하였으며, 동 왜선 1척을 동 별장이 영술하여 와서 유시에 본진에 교부하거늘, 그대로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호송장으로 서평포만호 이동량(李東亮)을 차출하여 그로 하여금 영술하여 보내게 하였다가, 바람과 물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유시 현재 본진 앞 바다에 정박한 뒤 수호장으로 동 만호를 그대로 차정하였다”고 치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해서 속히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음. 미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 묘시에 출발하기에, 호송장으로 서평포만호 이동량을 그대로 차출하여 보냈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만호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큰 배 1척을 진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1선 송사왜의 배인데 정관 숙직정(櫺直政)과 도선주(都船主) 평수신(平守信),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이번 초4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과 비선 2척이 대마도에서 먼저 발선하였고, 큰 배 2척은 검사한 뒤에 같은 날 사시 쯤에 뒤따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정박하고, 저희들은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한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연례송사왜(年例送使倭)는 이미 동래 부산

103) 조라포(助羅浦): 지금의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규정이 없는데,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가 문정한 가운데 예조로 보내는 서계를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범연히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기로, 전례대로 죄를 정하여 다스리라는 뜻으로 통영에 보고하였으며, 호송장인 다대 2선장 정필원은 초10일 오시에 다대포에 교부한 왜선 1척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같은 날 사시에 관소에 영술하여 부쳤다고 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또한 소루한 일이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보하오니, 호송장 정필원은 사또께서 참작하여 처분하신 뒤 사또의 감영에서 전례대로 장계를 닦아 올리라고 첩정(牒呈)한다고 하였음. 좌수사 백수일(白守一)이 이미 자신이 죽었고, 우후 박한영이 이렇게 날 날이 거론하였기로, 신(臣)이 순찰하다가 막 동래부에 도착하여, 동 호송장 정필원은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뒷날을 징계하였으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경신(1740) 3월 25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운운. 이 통제사 조경(趙敬)의 장계를 보면, “부산첨사 한계조(韓啓朝)와 다대포첨사 박도면(朴道勉)이 어두워 관측을 잘못된 것을 기만하여 보고한 죄는, 법과 사례에 의거하여 파직하여 내쫓고, 부산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이 부산과 다대의 자취를 옹호하고 그 사이에 조종한 버릇은 또한 매우 놀라우니, 해조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라” 하였으며, 동래 부사 박사창의 장계를 보면,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가 문정한 내용 가운데, 동래 부산으로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잘못 말한 것은 허황하기 막심하고, 전일 문정할 때 왜인의 명색이 대단히 어긋났으며, 지난달 12일 미시에 출발한 왜선을 함부로 사시라고 일컫는 등, 전후로 어긋난 착오가 한 두 번이 아니니,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하였기로,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계하하였으며, 경상감사 정익하(鄭益河)의 장계에는, “부산과 다대 두 진의 13일 관측은 과연 실상이고, 관수왜의 등록 책 가운데 12일 미시에 발선하였다고 써 넣었으니, 훈도 별차 등이 시각을 바꾼 사실은 없고,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未及水湄]」라는 네 글자는 이미 왜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훈도 별차 등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닌데, 이로써 말하자면 부산 다대 두 진에서는 이미 잘못된 바가 없어 그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훈도 별차 등도 역시 죄를 줄 만한 단서가 없어서 통영에서 장계로 청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조사하여 조치한다는 한 조목은 그냥 두고, 옥포왜학

(玉浦倭學) 조창기는 왜어(倭語)를 알지 못하여 일의 처리가 생소하고 전후 문정이 허황하기 막심하여 일마다 착오가 생긴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아, 또한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특별히 골라 차출하여 보내라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던 바, 당초 왜선이 표류하여 가덕에 도착하였을 때는 12일 사시에 발선하였다는 설이 당초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의 문정 수본에서 나왔는데, 부산 다대 두 진에서 보고한 바가 이것과 어긋나고, 동래의 훈도 별차가 고한 것 또한 부산 다대 두 진과 서로 부합하니, 통제사가 장계로 알려 죄를 청한 것은 법과 사례의 당연함이나, 이제 도신 및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면, 조창기가 유감을 품고 죄를 돌리며 말을 꾸며서 기만하여 보고한 사정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데, 이미 그 실상이 이러한 줄 안다면, 부산 다대 두 진은 당초 파직할 단서가 없고, 훈도 별차 등도 역시 죄를 줄만한 단서가 없으니, 부산첨사 한계조와 다대포첨사 박도면은 모두 도신(道臣)이 청한 바대로 파직하지 말고,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에게 죄를 취조하여 처분하는 한 조목 역시 그냥 두도록 하며, 옥포왜학(玉浦倭學) 조창기가 전후로 문정을 허황하게 하여 착오를 저지른 이외에, 유감을 품고 죄를 돌리고 말을 꾸며 기만하여 보고한 죄는 또한 파직하여 내쫓는데 그쳐서는 안되니,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하며,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진작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건륭 5년(1740) 3월 25일 우부승지 신 한덕후(韓德厚)¹⁰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신(1740) 5월 2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운운. 전에 통제사 조경(趙敬)과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과 경상감사 정익하(鄭益河)가 왜선을 어두워 관측하지 못한 일로 올린 장계로 말미암아, 부산 다대 두 진의 첨사를 아울러 도신(道臣)이 청한 바대로 파직하지 말고, 훈도 별차의 조사를 그냥 두며, 옥포왜학(玉浦倭學)을 잡아다 조처하는 일을 복계(覆啓)하여 분부하였는데, 이 통제사 조경의 장계를 보면, “가덕진에서 왜선을 2월 12일에 어두워 조망을 못하였다는 전통(傳通)은 분명하여 의심이 없고, 바다에 머무르고 있다고 관측한 두 번의 전통과, 바람에 막혀 지체되고 있다는 사유 및 부산 다대 두 진에서 13일 4척을 동시에 관측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104) 한덕후(韓德厚, 1680-?): 곡산한씨로 자는 치규(稚圭)이며, 숙종 기해년(1719)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의주부윤, 강릉부사를 역임하였다.

상황이니, 청컨대 묘당에 명하여 다시 더 엄중하게 재조사하게 하라”고 하였는 바, 당초 통제사와 동래부사와 경상감사의 장계가 차례로 도착하여, 부산과 다대와 가덕에서 어두워 관측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잘되었는지를 논하면서, 혹은 가덕에서 관측이 어두었다거나, 문정을 늦게 전하였다거나로 귀결하여, 통제사와 도신(道臣)과 동래부의 장계가 서로 같지 않지만, 도신의 장계는 친히 그곳에 가서 조사한 것으로, 수신(帥臣)이 단지 문서에 의거하여 단정한 것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도신이 청한 바대로 가덕 외에 부산과 다대 두 진은 파직하지 말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이 통제사의 장계 가운데, 부산 다대 두 진에서 보고한 바 4척의 배를 동시에 흐릿하게 관측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세 진에서 보고한 날짜와 그 일의 형편을 참작하건대, 이른바 4척을 동시에 흐릿하게 관측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고, 가덕에서 전통을 지체한 것 역시 바람에 막혔다고 하여 용서할 수 없는 바, 왜선이 오고가는 것을 관측하고 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렇게 바꾸고 둔갑하여 끝내 그 실상을 모르는 것은 극히 놀라우니, 당해 부산과 다대포와 가덕 세 진의 첨사를 아울러 잡아다 심문하여 확정 조처하며, 훈도 별차는 짐짓 세 진의 첨사를 잡아 조사한 뒤에 조처함이 어떠할지? 건륭 5년(1740) 4월 20일 좌부승지 신 홍성보(洪聖輔)¹⁰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신(1740) 6월 초4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5월 26일 성첩한 장계. 당년조 이폐이양[以酺菴] 송사왜 및 제4선 송사왜의 원역 등의 다례를 이달 19일로 정하였는데, 부산첨사 한계조가 갑자기 지금 병이 있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하므로 신이 홀로 가서 배풀어 행한 뒤, 동 왜인이 바친 서계와 별폭 각 2통 및 겸대(兼帶)하여 가져온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각 13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23일 미시쫄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로로 나온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부산첨사가 치통하기를, “구봉 봉군의 같은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만호를 정하여 보냈더니, 위의 분간되지 않는 배 3척 가운데 2척은 왜인의 큰 배이고, 1척은 우리나라 표류민의 배로 이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문정하라 하였으며, 표류민 등은 공초

105) 홍성보(洪聖輔, 1685-1742); 경종 1년(1721)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갑진년(甲辰, 1724)에 경상도 도사(都事)로 동래를 다녀갔으며,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를 받기 위하여 선박과 아울러 내보내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였다”고 하였음.

24일 진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의 수본에, ‘어제 술시에 왜선 2척과 우리나라 배 1척이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전라도 강진에서 표류한 백성을 영솔하여 온 차왜선으로 정관 굴실(橘實)과 봉진압물 1인, 반종¹⁰⁶⁾ 3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표류민 1명을 볼모로 잡아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별폭 2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정사조 제17선으로 격왜 20명, 중금도왜 1인¹⁰⁷⁾과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였으며, 제3척은 전라도 강진의 표류민 3명과 여인 6명이 탄 것으로, 우리나라 배를 영솔하여 온 중금도왜 2인과 지로사공왜 1명,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있거늘, 표류민인 사공 사노(私奴) 김만년금(金萬年金)에게 그 바람에 표류한 사유를 물었더니, 고한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강진에 사는 주민인데 지난해 12월 초10일에 진상(進上) 생복(生鰯)을 잡기 위해 남녀 모두 10명이 함께 배 하나를 타고 바다의 섬 가운데로 나갔다가, 같은 달 22일 되돌아올 즈음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돛대[帆竹]와 미목(尾木: 키)이 부러지고 손상되어 배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대로 표류하여 26일 일본국 오도(五島)에 표류하여 도착하였고, 금년 정월 11일 오도를 떠나 25일 나가사키[長崎島]에 도착하였으며, 2월 30일 떠나서 3월 21일 영솔하여 대마부(對馬府) 가운데 부치고는 각기 옷과 식량 단목(丹木) 등의 물건을 지급하였고, 4월 24일 대마도를 떠나서 5월 15일 좌잡포(佐連浦)의 대풍소(待風所)에 도착하고, 23일 저희들의 배와 차왜의 배 2척이 동시에 발선하여 나왔다」고 하였으며, 표류민 남녀 10명은 공초를 받기 위하여 수문직(守門直)이 감독하여 배를 영솔하여 내보냈으며, 차왜가 가져온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하기로, 서계 등본 및 노인 2통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전례대로 보냄. 공초를 받기 위해 경신년(1740) 5월 24일 사공인 사노(私奴) 김만년금(金萬年金)과 격군(格軍)인 양인(良人) 김연재(金連才), 김산(金山), 김노랑(金老郎), 양인 신인도(申仁道), 문분향(文分香), 김유월향(金六月香), 사비(私婢) 임도례(林道禮), 김송덕(金崇德), 송늦질(宋蒞叱) 등에게 알리기를 ‘각기 현신(現身)¹⁰⁸⁾하여 호패(號牌)를 들여놓으라’ 하고는,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인

106) 원본의 ‘尺津’ 두 글자는 ‘一人伴’ 세 글자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07) 원본의 ‘大’ 한 글자는 ‘一人’ 두 글자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 갔다가 이렇게 바람에 표류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며, 또한 여인이 함께 타고 표류하여 다른 나라로 표류하여 들어간 것은 극히 괴이한 일이니, 그 사이 곡절과 저쪽에 도착하고서의 사정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곧바로 고하라'하고 추문하였더니, '저희 남녀 모두 10명은 모두 전라도 강진 신지도(薪智島)에 사는 해부(海夫: 어부)로서, 정월령(正月令)의 진상 생복(生鰯)과 해의(海衣: 김)를 채취하기 위해 본현 소속의 선주 김검동(金檢同)의 배를 관에서 배정받아, 저희 남자 4명과 여자 6명이 함께 타고 지난해 12월 초10일에 발선해서 서도(西島)에 도착하여 유숙하면서 채취하다가, 같은 달 20일 되돌아올 무렵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돛대와 미목이 일시에 부러져 손상되어 배를 통제할 수 없어서, 바람에 맡겨 표류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사흘 낮과 네 밤을 지낸 뒤 26일 표류하여 한 섬에 도착하였는데, 곧 일본의 오도(五島) 사가도[佐賀島]라 하였고, 그곳 왜인들이 처음 표류해 온 사정을 알고는 보는 즉시 다급하게 구조하여, 다음날 오도 영주(領主)가 거주하는 곳에 도착하니 때마다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14일을 머문 뒤 금년 정월 11일 본 배를 타고 왜인들이 영솔하여 25일 나가사키섬[長崎島]에 교부(交付)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음식을 공급하고 5일마다 술을 먹여주었으며, 손상된 배의 짐물을 일일이 수리하여 주고, 매 사람마다 십반(十盤) 1넝[立]과 사기중발 2넝, 사기 접시 1넝씩 나누어 주었고, 작은 밥술 2틀[座]과 작은 물통 3틀, 작은 초둔(草蓆) 30번, 짚새끼줄 1장(張), 노목(櫓木) 1자루를 또한 내어주었습니다. 33일 뒤인 2월 30일에 나가사키[長崎]에서 발선하여 왜인이 영솔하여 3월 21일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하니, 때마다 음식을 공급하고 술을 공급하는 등의 일은 나가사키[長崎]와 다름이 없었고, 매 사람마다 목면(木棉:무명) 겹옷에 띠를 갖춘 것 각기 1벌과 단목(丹木) 각기 2근, 지삼초(枝三草) 각 10갑을 나누어 주었고, 짚으로 된 풍석(風席: 돛) 1부(浮)와 새끼줄 1장을 또한 내어 주었습니다. 32일을 머문 뒤인 4월 24일 왜선 2척과 동시에 발선하여 5월 15일 좌수포(佐須浦)의 대풍소(待風所)에 도착하였는데, 김연재(金連才)는 차왜(差倭)의 배로 옮겨 타고 이달 23일 3척이 일시에 발선하여 나왔으며, 여인이 함께 탄 일은, 전복을 채취하는 일은 전라도에서는 남녀가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바람에 표류하였으며, 호패는 집안에 놓아두어서 모두 차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정은 한번 죽을 고비에 살아남은 무리가 무지하니 상고하여 처치하여 주시라'고 하였으며, 표류민의 성명과 거주를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24일 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금년 4월 24일 나온 당년조 이폐이양[以

108) 현신(現身): 당사자가 직접 현장에 몸을 나타냄.

酤菴] 송사선에 격왜 40명과 기미(1739) 5월 초10일 나온 서승왜(書僧倭)¹⁰⁹⁾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오시에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다”고 하였음.

25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하였으며, 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구봉 봉군이 진고한 것은 한가지이기로,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 만호를 정하여 보내었더니 왜인의 작은 배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자 30냥을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하여 노인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치통하였는데, 표류민 등은 부산진에서 공초를 받아 보냈기에, 다시 문목(問目)을 물어서 추문하였더니, 부산진에서 공초한 바와 다름이 없기로, 직역 성명, 거주를 책으로 다듬어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오며, 표류민 등이 표류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차왜가 이미 영솔하여 나온 일은 사례대로 접대하여야 마땅하므로, 접위관을 인근 고을 수령 중에서 차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거니와, 서계 등본을 살펴보니, 표류민이 거주하는 고을 이름을 적지 않았기에, 역관들에게 명하여 조사하여 물어라는 뜻으로 부산에 이문(移文)하였더니, 방금 도부한 동 진의 회이(回移) 내용에, “이것으로 훈도 별차에게 전령하여 수본 내용을 차왜에게 따져 물었더니, ‘서계 가운데 고을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강진(康津)과 강녕(康寧)은 곧 저희 나라 앞 시대 관백(關白) 이에야스[家康]의 이름 글자라 피하여 고을 이름을 적지 않았으며, 일찍이 을미년(1715)과 정유년(1717)과 무술년(1718)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서계에도 또한 고을 이름을 적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하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회이한다” 하였기로, 서계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을미년(1715) 강진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서계에는 고을 이름 강진과 강녕을 적지 않아, 과연 저들 나라에서 꺼리는 글자를 피하여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괴이하지 않으니, 지금 탈을 잡는 것은 불가하기로, 원 서계와 별폭을 추후에 다례를 베푸는 날 받아 올려보낼 계획이오며, 등본 1통과 노인 3통 등은 우선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차왜에게 증명하는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표류민 등이 금령을 무릅쓰고 바람에 표류한 죄는 이미 정식(定式)이 있으니, 아울러 엄하게 가둔 뒤에 형벌로 추고하고 징배하는 한 조목은 본도에 알려 거행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박사

109) 서승왜(書僧倭): 부산 왜관 내에서 일반 문서, 특히 국교상 왕복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

창의 장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류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차왜가 이미 영솔하여 온 일은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하므로, 접위관은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는 바, 연회에 증정할 예단(禮單) 잡물은 사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표류민들이 금령을 무릅쓰고 바람에 표류한 죄는 이미 정식이 있으니 본도에 알려 거행하라 하였는 바,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접대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별폭의 회례(回禮) 및 연례의 예단 잡물은 전례를 상고해서 마련하여 들이고, 표류민의 죄를 처리하는 한 조목은 본도에서 정식대로 거행하겠거니와, 배가 외양(外洋)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일찍이 금령이 있었거늘, 위의 상한(常漢)들이 거주하는 관에서 평상시에 신칙하지 못한 소치로 이렇게 표류하여 다른 나라 경내로 들어간 일이 있게 되었으니, 당해 원적(原籍)의 관원은 유사에 명하여 엄중하게 추고해서 뒷날의 폐단을 막음이 어떠할지? 건륭 5년(1740) 6월 초6일 행도승지¹¹⁰⁾ 신신만(申晩)¹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신(1740) 6월 초9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6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 달 28일 오시에 부산첨사 한계조가 치통하기를, “경신년(1740) 5월 23일에 나왔던 정사조 제17선의 격왜 20명과 통사왜 1인, 별금왜(別禁倭) 4명¹¹²⁾과 소금도왜 5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경신년(1740) 2월에 나왔던 이장왜(泥匠倭)¹¹³⁾ 1인이 오늘 병으로 죽어서 왜관 뒷산에 나와 매장하였다”고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김리만(金履萬)¹¹⁴⁾의 이첩(移牒) 내용에, “초순(初巡)¹¹⁵⁾으로 영덕에서 표류한 사람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정일(藤正一)의 인원과 역군 등에게 다례(茶禮)를 지

110) 행도승지(行都承旨): 관직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품계의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 행(行) 자를 붙이니, 여기서는 실제 도승지의 품계보다 높은 품계를 가진 사람이 도승지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11) 신만(申晩, 1703-1765): 평산신씨로 자는 여성(汝成)이며, 영조 병오년(1726)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112) 원본의 ‘月’은 ‘名’을 잘못 옮겨 쓴 듯한다.

113) 이장왜(泥匠倭) “미장 일을 하는 왜인.”

114) 김리만(金履萬; 1683-1758): 자는 중수(仲綏), 호는 학고(鶴皐), 예천인이다. 숙종 39년(1713) 증광시에 급제하여 양산군수, 사간원 사간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15) 초순(初巡): 한 가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될 때 그 중 맨 처음에 시행하는 일.

난달 29일 사례대로 베풀어 행하였고, 동 왜인이 가져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등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 및 선창(船倉) 등의 곳을 부산진 감색(監色)과 같이 적간(摘奸)하였더니, 짐짓 훼손된 곳은 없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다시 더 살펴 보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으며, 동 훈도 별차 등이 또 바친 수본 내용에 “재관차왜 통구성광(樋口誠匡)의 원역(員役) 등이 상선연을 베풀어 행하는 것을 없애고 건물(乾物)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기로, 동 연회의 물자를 건물로 초2일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고, 표류민을 영술하여온 차왜가 바친 서계 2통과 별폭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경신(1740) 6월 22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6월 13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6일 오시에 부산첨사 한계조가 치통하기를, “올해 5월 14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소금도왜 2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같은 날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표류하여 다대포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해 별차를 차정(差定)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해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다대포첨사가 치통하기를,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오다가 본포(本浦)로 향하기에 초담하기 위해 서평포만호를 정하여 보냈더니, 과연 왜선과 서로 만나 영술하여 본포 앞바다로 예인해서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초7일 사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다대포 및 서평포만호가 치보하기를 표류한 왜선 2척을 별차가 문정하였으며, 동 별차의 수본 내용에는 ‘초6일 술시에 다대포의 왜선 2척이 정박하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1특송사왜 1호선인데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¹¹⁶⁾ 각 1통 및 겸대 2특송 3특송사왜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2통을 전례대로 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당년조 1특송 수목선으로 노인을

116) 원본의 ‘各’은 ‘別’을 잘못 쓴 듯하다.

가지고 초6일 묘시에 대마도에서 같은 시각에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다가 홀연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고,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상세히 문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술시에 다대포에서 치통하기를 ‘본포(本浦)에 정박하였던 왜선 2척이 당일 신시에 발선하여 되돌아 가기에 호송장으로 서평만호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고, 서평만호의 치보에 ‘왜선 2척을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으며, 같은 시각의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왜선 2척이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정관왜는 멀미[水疾]로 육지에 내리지 않았고, 관문이 이미 닫혔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문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였음.

초8일 사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가덕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이번 6일 신시 쬼에 비가 잠시 그치고 구름과 안개가 장차 걷히려는데, 상세히 관측하니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2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고, 1척은 본도로 향하여 오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2선장(二船將)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오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어제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왜선 2척에 오늘에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1특송사왜의 배로 정관 굴보두(橋保頭)와 도선주 등시서(藤時紱), 봉진압물 1인과 시봉 1인, 반중 4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진상물건 및 2특송 3특송사왜의 예조로 보내는 서계 및 별폭 각 2통, 진상물건을 전례대로 가져왔으며, 제2척은 당년조 1특송 수목선으로 동 송사의 이선주(二船主) 굴정차(橋正次)와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중 3명, 격왜 15명,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도구와 잡물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소지한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으며, 수목선의 노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신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즉각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초7일 자시에 성첩한 가덕의 전통 내용에 본도에 표류하여 온 배 1척은 과연 왜선인데 당일 술시에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서 자시에 본진의 대항 앞바다에 정박하여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가덕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에서 치통하기를 ‘대항에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을 초7일 유시에 영솔 예인하여 해시에 닻거리[碇巨里]에 정박하여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하였음.

초9일 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즉각 가덕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에

서 치통하기를, ‘닷거리에 정박하였던 왜선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소통사가 초8일 오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1특송 2호선이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큰 배 3척이 이번 초6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2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저희들의 배 1척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문정하였으며, 초8일 동일한 곳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음. 이제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한 사연을 보면 왜인의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 왜선 2척이 표류하여 다대포에 도착하였을 때 별차 박재화가 문정한 수본 및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 훈도 홍성귀와 함께 문정한 가운데는, 원래 3척이 일시에 발선하였다는 말이 없는 바, 서로 어긋난¹¹⁷⁾ 곡절을 훈도 별차 및 옥포왜학에게 조사하여 물어라고 치통하여 두었고, 위에 나온 당년조 1특송이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면서 받아 올려 보내겠으며,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가덕에 정박한 왜선 1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왜선이 나올 때 간비오 봉군이 관측을 못한 것은 소속된 곳에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엄하게 징계하겠음. 당년조 이때이양 송사왜의 원역(員役) 등의 하선연은 초9일로 정하였는데, 부산첨사 한계조는 신병으로 참석하러 가지 못하고 신이 홀로 초량객사(草梁客舍)에 가서, 송사왜 등이 전례대로 진상(進上)하고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下船宴)을 그대로 베풀었으며, 방금 도부한 자인현감(慈仁縣監) 심약로(沈若魯)¹¹⁸⁾의 이첩에는 “강진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굴정방(橋正房)의 원역 등에게 다례를 이달 12일에 베풀 뒤 동 왜인이 바친 서계 2통과 별폭 3통을 받아서 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이전에 도부한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회관(回關)한 내용은, 임역(任譯)에게 전령하여 수표(手標)와 함께 받아내게 하였는데, 동 수표 1장을 가져왔기에 받아 내었다고 임역 등이 와서 바쳤는데, 수표에 사용한 말은 “새로 주조한 정은(丁銀)을 계속 주조하여 차례 차례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전일의 정은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단연코 품질을 바꿀 다른 의도가 없다”고 운운하였으며, 원 수표(原手標)는 본부에 보관하고, 등본 1통을 비변사로 올려보냄.

117) 원본의 ‘在’는 ‘左’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118) 심약로(沈若魯, 1679-?): 청송심씨로 자는 득보(得甫)이며, 영조 무신년(1728) 춘당대시에 급제하여 만경, 자인 등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경신(1740) 윤6월 초2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6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0일 미시에 부산첨사 한계조가 치통하기를, “금년 5월 25일 나온 비선의 두왜 1인과 격왜 6명, 기미년(1739) 12월 20일에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방금 도부한 접위관 양산군수 김리만의 이첩 내용에는, “초순(初巡)으로 영덕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정구(藤正久)의 원역 등에게 이달 22일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었다”고 하였음. 당년조 제1, 제2, 제3 송사왜의 원역 등의 상선연은 베푸는 것을 없애고 당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건물로 들여주었음. 근래 인삼 상품이 매우 귀한지라 본부의 세삼(稅蔘)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족하여, 왜인의 예단도 구차하게 소략하고 장사꾼들에게 빌린 것도 갚기가 어려운 상태인지라, 지난해 8월 이미 문제를 열거하여 따져 장계로 알리고 이미 여러 차례 해조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변통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지금 일의 형편으로 더욱이 심분 민망한 점이 있는 것은, 금년조로 이미 나온 송사왜 등에게 지급해야 할 예단 인삼은 정해진 격식이 있어서 그 수량이 적지 않고, 또 왜관 수리의 감동역관(監董譯官)이 예단으로 전례에 따라 주는 수량이 있으며, 이 밖에도 일찍이 예측 못하였던 배에 영덕과 강진의 두 표류민을 데려온 차왜가 연속으로 나왔는 바, 지금까지 나오지 아니한 송사왜의 예단 인삼까지 아울러 계산한다면 그 수량이 24근이 되어야 마땅하나, 본부에 현재 있는 세삼(稅蔘)은 단지 3근이라, 감당해야 할 것이 21근에 이르는데, 금년 인삼이 유통되는 길이 더욱 귀하여 장사꾼들의 자취가 끊어졌으니, 앞으로 비록¹¹⁹⁾ 혹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납세의 양이 적을 것임은 미루어 알 수가 있고, 금년 예단의 수가 이미 이렇게 이전에 비하여 더함이 있는데도 세금으로 거두는 것은 장차 전에 비하여 줄어드는 일이 있을 것이니, 저쪽 사람들에게 예물로 증정하는 인삼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할지? 만약 특별히 변통하여 진작 마련해 두지 않으면 그 궁색하고 다급할 우려가 반드시 닥칠 형편이라, 본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조정에서 먼 나라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참으로 모자라는 바가 있는데, 본부에서는 실로 주선하여 변통하기 어려워 일의 형편이 매우 민망하기로, 부득이 이렇게 삼가 진술하오니, 동 부족한 인삼 21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수시로 선물로 싸줄 수 있게 하여, 지금을

119) 원본의 ‘難’은 ‘雖’를 잘못 옮겨 적은 듯하다.

결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도록 하실 일. 호조(戶曹)에 내림.

경신(1740) 윤6월 12일

경상좌수사 정사빈(鄭賜賓)이 윤6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초6일 왜선 3척이 대마도에서 나올 때 좌도와 우도 봉군의 진고 및 훈도 별차와 왜학 등이 문정한 것이 서로 어긋난 곡절을, 한 곳에서 대질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를 치계하였는데, 위 좌도와 우도 각 진의 변정(邊情) 담당 감색(監色)과 봉군들을 신의 수영(水營)으로 잡아와서 반복하여 조사하였더니, 우도 가덕진과 천성진 등의 봉군은 “초6일 신시 쯤에 바다 가운데서 왜선 3척이 흑 앞서고 흑 뒤쳐져 나오기로 과연 본 바대로 일시에 관측하여 진고하였다”고 하고, 좌도의 부산과 다대포 두 진의 봉군들은 “초6일 미시 쯤에 왜선 2척이 물마루로 나왔고, 같은 날 술시에 또 바다 가운데서 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왜선이 표류한 듯하여, 과연 앞뒤로 나누어 진고한 것은 관측할 때마다 그대로 보고한 소치이다”라고 하였으며, 좌우도 각 진 감색들은 한결같이 “그 봉군의 진고대로 치보하였다”고 하며, 서로 미루어 끝내 귀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의 형편으로 추리하면, 그날 바다 안개 가운데 좌도 각 진에서 관측하던 놈들은, 흑 앞서고 흑 뒤쳐진 3척의 배를 다행히도 일시에 볼 수가 있었고,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봉군들은 뒤에 온 1척의 배는 아마 미처 관측하지 못한 소치인 듯한데, 이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 잘못 관측했다고 귀결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며, 가덕진과 천성진 등으로 말하자면, 2척의 표류하는 배를 또한 3척이라 지적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훈도 별차 및 왜학 등이 왜관에 가서 대질한 뒤에 동래부사 박사창에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당초 다대포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던 2척 왜선의 두왜(頭倭) 및 가덕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던 1척의 두왜 등을 일대관왜(一代官倭)가 거주하는 곳으로 불러왔더니, 거제 소통사 조존근(曹存根)은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이미 먼저 도망하였고, 옥포왜학(玉浦倭學)이 홀로 감당하여 통사왜로 하여금 중간에 넣어서 그 선후로 발선했던 여부 및 동시에 발선했던 진위를 묻게 하였더니, 다대 경내로 표류한 왜선 2척의 도선(都船) 두왜는 그 말이, ‘초6일 묘시에 2척만 동시에 발선했어 물마루를 지난 뒤에 비바람이 심해져서 신시 쯤에 표류하여 다대포에 도착하였다’고 하였으며, 가덕 경내로 표류한 왜선 1척의 도선 두왜는 그 말이, ‘과연 초6일 묘시에 1특송

사가 탄 2척이 먼저 발선한 뒤에, 저희들이 탄 배 1척은 처음에는 아직 검사를 마치지 않아서 지체하다가, 미시에 발선하여 술시 쯤에 비로소 물마루를 지나고, 그날 밤 자시에 표류하여 앞바다에 도착하여,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떠 있으면서 그대로 밤을 지낸 뒤, 초7일에 가덕진에서 영솔 예인하여 들어갔다'고 운운하였다고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으며, 옥포왜학(玉浦倭學)의 수본 내용에는 '그날 표류한 왜선이 과연 앞뒤로 나왔는데, 3척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치료한 것은, 과연 병으로 쇠잔한 사람이 옥포에서 가덕으로 넘어올 때 풍파에 넘나들면서 산기(疝氣)¹²⁰와 수질(水疾)이 극심하여, 단지 소통사의 말에만 의지하여 문정을 써서 보고하였기로 소루함을 면치 못했다'고 아울러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료한다." 하였는 바, 이로 보면 3척의 배가 앞뒤로 나뉘어 나온 것이 과연 참된 말이거니와, 옥포왜학(玉浦倭學) 박진호(朴震豪)는 그가 스스로 바친 수본에 당초 문정을 소홀히 하였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고, 가덕과 천성 등 진의 봉군들도 또한 범연히 보고 고한 실수가 없지 않으니, 한가지로 확정하여 조처하라는 뜻으로 영(營)에 알린다는 일임.

경신(1740) 윤6월 19일

이번 윤6월 18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하기를, "이것은 곧 동래부사 박사창의 장계인데, 그 내용에 '왜선 3척이 대마도에서 나와 좌도와 우도로 표류할 때, 부산진과 다대포진에서는 2척이 먼저 표류하고 1척은 뒤에 표류했다 하고, 가덕진과 천성진 및 옥포왜학(玉浦倭學)은 3척이 일시에 함께 표류했다고 하므로, 옥포왜학(玉浦倭學) 박진호 및 천성가덕 두 진의 감색을 왜관으로 보내게 하여, 훈도 별차와 부산 다대 두 진의 감색을 한 곳에서 대질하게 하였더니, 박진호는 이에 「왜어(倭語)를 알지 못하고 또한 신병이 있어서 잘못을 면치 못했다」는 등의 말로 꾸며서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불가하나, 일일이 교체하여 바꾸는 것도 또한 매우 폐단이 있으니, 그 죄상을 본도에 명하여 엄중하게 죄를 따지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동래부는 대개 그 교체가 빈번한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장계로 청하였으니 시행을 허락하고, 수영에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120) 산기(疝氣): 산증(疝症). 불알이 붓고 아픈 병.

경신(1740) 7월 초4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윤6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저포(這浦)에 정박한 왜선 1척이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문정한 것을 장계로 알린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13일 신시에 부산첨사 조덕중(趙德中)이 치통하기를, “방금 가덕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을 접하니, ‘동 왜선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으며, 6월 초6일 나왔던 당년조 1특송사와 2호선의 격왜 30명과 중금도왜 1인, 23일 나왔던 동 수목선의 격왜 20명과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함께 2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오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으며, 방금 도부한 동 첨사 및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의 부조(父祖)의 무덤이 구관(舊館)¹²¹⁾ 뒷산에 있어서, 매년 봄 가을 사일(社日)¹²²⁾ 및 백종(百種)¹²³⁾ 명절에 가서 살펴보는 전례가 있는데, 왜인의 풍속에 백종 명절은 큰 명절이나, 금년에는 저쪽과 우리쪽의 역서(曆書)가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윤월(閏月)은 곧 6월이지만 저 나라의 윤월은 7월인지라 왜인이 이른바 백종절은 이 달에 있기에, 관왜(館倭) 등이 이번 13일부터 시작하여 전례대로 왕래하는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 바, 우리나라 윤6월은 과연 저들 나라의 7월이고, 또한 백종절이 큰 명절이니, 그 원하는 대로 왕래를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별차와 소통사가 영술하여 왕래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척하였음. 같은 날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신시에 부산첨사의 치통 내에, “미시의 구봉 봉군의 진고 및 유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다” 하였음. 15일 사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접한 가덕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에 ‘13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기에 옥포만호가 배를 타고 탐지하였더니, 과연 왜선이기에 유시에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 옥포의 왜학 박진호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만쇼영[萬松院] 송사와의 배로 정관 1인과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통사와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모두 1통 및 동래로 보내는 부서(副

121) 구관(舊館): 숙종 4년(1678) 왜관이 당시의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옮겨 가기 이전의 두모포(豆毛浦) 왜관을 가리킴.

122) 사일(社日): 입춘 또는 입추가 지난 뒤 다섯 번 때의 무일(戊日).

123) 백종(百種): 백중(百中). 불교의 명절인 음력 7월 보름날.

書) 1통을 가지고, 이달 1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 한다'고 했다" 하였음.

16일 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접한 가덕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저포(這浦)에 표류한 왜선 1척을 차례 차례 영술 예인하여 닻거리로 옮겨 정박했다'고 했다" 하였음. 17일 해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가덕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로 표류하였던 왜선 1척은 16일 출발하여 저포로 옮겨 정박하였다'고 했다" 하였으며, 일시에 다대포첨사가 치통하기를 "닻거리에 옮겨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은 진시에 출발하고 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음. 18일 오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어제 밤에 도착하여 정박한 표류한 왜선 1척에 오늘 아침 문정하였더니, 당년조 3특송사와 1호선으로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魚油)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초9일에 나오다가 표류하여 저포에 정박하였다가 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하며, 소지한 노인은 받아 올려 보낸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21일 해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구봉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로로 나온다'고 하기에,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 만호를 정하여 보냈더니,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이기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고,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가서 문정하게 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으며, 소지한 노인은 받아서 올려 보낸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23일 오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6월 24일 나온 당년조 3특송 2호선의 격왜 30명과 기미년(1739) 7월 초3일에 나왔던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1인, 도금도왜 1인, 종왜(從倭) 3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당년조 1특송사와의 원역(員役) 등에게 하선연(下船宴)을 이달 24일에 신이 부산첨사와 더불어 전례대로 베풀었으며, 초순(初巡)으로 영덕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 굴정구(橋正久)의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은 베풀어 행하지 않고, 건물(乾物)을 받기를 원하기에 24일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음. 미시에 부산첨사가 치통하기를, "초4일 나왔던 비선의 두왜 1인과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사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해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로 옮겨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은 차례 차례 영술하여 와서, 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

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의 배로 정관 도산정(陶山定), 도선주 등직친(藤直親), 봉진압물 1인, 반종 3봉, 격왜 40명,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부서(副書)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13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서계 가운데 한 글자가 잘못되어 우리 태조대왕의 어휘(御諱)를 범하였기로, 속히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 및 차왜에게 각별히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3특송의 노인과 비선의 노인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만쇼잉 송사 차왜의 서계 가운데 잘못하여 어휘 글자를 범한 것은 속히 고쳐 와서 바치라는 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엄하게 더 관수왜 및 동 차왜에게 책망하게 하였음. 동 13일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 등이 모두 관측을 놓침을 면치 못하였기에 각자 소속된 곳에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임.

경신(1740) 9월 25일

동래부사 박사창이 8월 18일 성첩한 장계. 당년조 만쇼잉[萬松院]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한 글자가 잘못되어 우리 태조대왕의 어휘를 범하였기로, 고쳐 와서 바치라는 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고, 초7일 오시에 부산참사가 치통하기를, “전일 수문(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1척은 오늘 진시에 발선하였다”고 하였음. 초9일 인시에 동 참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이 당초 나온 일시를 누락한 곡절을 차례 차례 조사하여 물었더니, 옥포 색리(色吏)¹²⁴가 누락하여 적은 것이 적실하기에, 가덕에서 곤장 15대를 쳤다”고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홍성귀와 별차 박재화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이 부조(父祖)의 분묘에 이번 가을 사일(社日)에 전례대로 가서 살피겠다고 운운” 하였으므로, 별차가 영솔하라고 하였음.

초10일 오시에 동 참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은 초9일 출발하여 유시에 닻거리에 정박하였다”고 하였음. 초10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

124) 색리(色吏): 해당 사무의 담당 아전.

도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온 부산첨사의 치통도 한가지였음.

11일 묘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어제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5척 가운데 4척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고, 1척은 다대포로 향하여 오기에 문정하기 위해 별차를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방금 다대포의 전통을 접하니, 초10일 향하여 왔던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데, 초탐장과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본진에 정박한 뒤, 별차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두왜 1인과 격왜 6명, 하대왜(下代倭)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은화 5,000냥을 실어가지고 대마도에서 발선하였다가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운운하였다”고 하였음. 신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어제 일전에 늦게 관소에 온 배는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측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이 문정하게 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와 전일에 물리쳤던 만쇼잉의 고친 서계를 가지고 대마도에서 발선하였다가, 역풍을 만나 겨우 노를 저어서 관소에 도착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12일 미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이번 8월 초10일 나왔던 비선이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으며, 오시에는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뒤쳐졌던 분간되지 않은 배 3척을 탐지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데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닻거리에 정박하였다고 했다’ 하였음.

13일 진시에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가덕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3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박진호 등이 달려 가서 물었더니, 비선 3척이 각기 노인 및 은화 5,000냥씩 가지고 초10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하였다’고 하였으며, 동 비선 3척은 12일 다대포에 교부하여,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관소에 이르게 하고,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그 내용은 옥포왜학(玉浦倭學)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동 노인 3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13일 해시에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에서 치통하기를, ‘닻거리에 정박하였던 왜선 2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다대포에 교부하였고, 오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제1척은 재판차왜가 탄 배로 격왜 40명,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으며, 제2척은 경신조 만쇼잉 수목선으로 격왜 15명과 별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노인과 어유 3통을 가지고 공

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오다가 바람이 없어서 옥포로 표류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재판차왜가 탄 배는 규정 밖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고, 만쇼잉 수목선의 노인 전면에서 써 넣은 것 역시 격식이 어긋났으니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고 치통하였음. 위의 규정 외의 배는 들여보내고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명하여 책망하여 타이르고, 비선의 왜인 노인 5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장사꾼과 역관 등이 왜관에 금년조로 피집(被執)한 인삼과 실의 대가 은자 21,100냥을, 이번 15일 별개시(別開市)에 받아내었으며, 만쇼잉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는 이미 고쳐왔기에, 원역 등에 대한 다례를 이번 16일로 정하여 행하였으나, 첨사 조덕중이 마침 휴가로 참여하러 가지 못하여, 신이 홀로 가서 접대한 뒤에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받아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신유(1741) 5월 초5일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소인 등을 만나기를 요구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에 나온 배 편에 무오년(1738)에 고경(告慶)하였던 관백(關白)의 손자를 가치(家治)라고 이름을 정하였다고 저에게 전통(傳通)하였는데, 임관(任官) 등이 이 뜻을 동래부사 영감 전에 고하여 조정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기에, 연유를 수본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관백의 손자 이름을 정한 것을 통보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지 않은 일로 되, 훈도 별차 등이 이미 관수왜의 말이라고 이렇게 수본하였으나,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일인지라, 이 일은 비록 감히 장계로 알리지는 않더라도, 본조에는 보고해야 마땅할 듯하기로 연유를 첩보하는 일임.

이에 의거한 제사 내용. 관백의 손자 이름을 정한 것은 원래 조정에 전통(傳通)할 일이 아닌데, 임역(任譯) 등이 도리에 의거하여 방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미 해괴하고, 만약 변방 정세와 관계된 사실이라면 수신(帥臣)이 마땅히 장계로 알려야 하거늘, 이렇게 하지 않고 본조에 낱낱이 보고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유(1741) 6월 초2일

이번 6월 초1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이 동래부사 김석일(金錫一)¹²⁵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나왔을 때 옥포 역학(譯學) 유극신(劉克愼)의 문정이 소루하니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이전부터 문정이 소루한 자는 모두 수영에서 곤장을 쳤고, 옥포는 곧 수영(水營) 소관이라 통영(統營)에 잡아다가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유(1741) 6월 26일

동래부사 김석일이 6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초순으로 청하(淸河)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差倭)의 차비역관(差備譯官) 최수인(崔壽仁)¹²⁶이 이달 14일 비로소 내도하였거늘, 예단 잡물 및 해조의 회답 서계 등을 들여놓고 점점 대조하다가, 동 서계의 전면 몇 첩에는 흐려져 깨끗하지 않은 곳이 있기에, 불려서 최수인에게 곡절을 물었더니, 고한 내용에, ‘길을 떠난 뒤 연일 장마비가 물동이를 뒤집은 듯 크게 쏟아져서, 곳곳마다 냇물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많이 떠내려가고 길도 막히고 끊어졌는데, 막중한 예단을 도중에서 지체하는 것이 불가하기로,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길을 서둘러 전진할 즈음에 습기에 젖는 우려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였는 바, 왜인들이 무릇 서계 가운데 조금이라도 종이 색깔이 깨끗하지 않거나 자획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곧장 고쳐 주기를 청하는 것이 그들의 재주인데, 이렇게 흐려진 서계를 필시 순순히 받을 리가 없는 바, 이제 만약 들여주었다가 물리게 되면 도리어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있으니, 차라리 당초부터 고쳐 주는 것이 낫겠기에, 별폭은 본부에 놓아두고 원 서계만 도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차왜의 날짜 기한이 이달 27일에 끝나니, 동 서계를 속히 고쳐 써서 밤낮 없이 기일에 맞추어 발송하여 오래도록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는 일로 해조에 분부하시며, 당해 역관 최수인도 장마비 가운데 짐이 젖은 것

125) 김석일(金錫一, 1694-1742): 청풍김씨로 자는 수언(壽彦), 호는 허주와(虛舟窩)이며, 영조 신해년(1731)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과 정언을 거쳐 신유년(1741) 3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임술년(1742) 9월에 사퇴하여 교체되었다. 『허주와유고』가 있다.

126) 최수인(崔壽仁, 1701-?): 무주최씨로 자는 성겸(聖謙)이며, 경종 신축년(1721)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으며 직장(直長)을 역임하였다.

은 비록 스스로 만든 일은 아니지만, 서계가 이미 벌써 비에 젖어 흐려져서 고쳐 주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져온 자 역시 삼가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오니, 위의 최수인의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 석일의 장계를 보면, 초순으로 청하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차비역관 최수인이 지난달 14일에 내도하였거늘, 예단 잡물 및 회답 서계 등을 대조 점검 하였더니, 동 서계의 전면 몇 첩이 많이 흐려져 깨끗하지 못하기에 불려서 곡절을 물었더니, 연일 장마비로 길이 막히고 끊어졌으나, 막중한 예단을 지체하는 것이 불가하여,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길을 서둘러 전진할 즈음에 습기에 젖는 것을 면치 못했다고 하였는 바, 왜인들은 무릇 서계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끗하지 않거나 자획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문득 고쳐 주기를 청하는 것이 본디 재주인데, 이렇게 색깔이 흐려진 서계는 필시 순순히 받을 리가 없고, 이제 만약 들려주었다가 저지 당하면 도리어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니, 차라리 고쳐 주는 것이 나은지라, 별폭은 그대로 본부에 놓아두고 원 서계는 되돌려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차왜가 왜관에 머무는 날짜 기한이 이달 27일에 끝나게 되니, 동 서계를 고쳐 써서 밤낮 없이 발송하여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고, 당해 역관 최수인은 장마비 가운데 짐이 젖은 것이 비록 스스로 만든 일이 아니지만, 서계가 이미 비에 젖어 색깔이 흐려져서 고쳐 주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라 또한 삼가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최수인의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하였는 바, 막중한 서계가 이렇게 습기에 젖어 색깔이 흐려져 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왜인들이 필시 순순히 받을 리가 없고, 들려 주었다가 물리게 되면 부질없이 국가 체면만 손상되니, 장계에 청한 대로 고쳐 써서 특별히 금군(禁軍)을 정하여 주어서 가지고 내려보내며, 차비역관 최수인은 장마비로 습기에 젖은 것이 비록 스스로 지은 일은 아니라도 삼가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돌아온 뒤 유사(攸司)에 명하여 죄를 정하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6년(1741) 6월 27일 우승지 신 이도겸(李道謙)¹²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27) 이도겸(李道謙, 1677-1728): 전주이씨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구봉(九峰)이며, 영조 17년(1725)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와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구봉선생일기』가 전한다.

신유(1741) 6월 27일

동래부사 김석일이 6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 첨사 조덕중(趙德中)의 치통 내용에, “당일 미시 쯤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구봉 봉군이 진고하러 왔다”고 하였고,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신시 쯤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기장현 경계로 향하는 듯하다고 운운하기로, 정박하는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문정하기 위해 별차 정도행(鄭道行)¹²⁸을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초8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묘시에 도부한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축산만호(丑山萬戶)¹²⁹ 김광옥(金光煜)의 치보 내용에, ‘좌도 경내로 표류한 왜선 2척을 초탐하기 위하여 이번 초7일 술시에 출발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기장현 경내로 표류하여 온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선으로, 초7일 유시에 1척은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현감이 달려가서 수호하였고, 1척은 두모포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부사(副師) 대장(代將) 이우성(李友星)으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으며, 모두 땀감과 물을 들여주었다”고 하였기로,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음. 같은 날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5월 13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과 경신년(1740) 12월 2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명, 경신년(1740) 11월 초4일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사시에 곧바로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훈도 현덕연(玄德淵)이 수본하였으며, 방금 접한 초탐장 축산만호의 치보 내용에, ‘어제 해시에 기장현 경내로 달려갔더니 왜선 2척이 과연 무지포와 두모포에 나누어 정박하였고, 무지포에 정박한 배는 동 현의 현감이 수호하고, 두모포에 정박한 배에는 만호와 동현의 부사 대장이 같이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는 “당일 미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하고 있는 왜선 1척은 병폐 없이 밤을 지내고, 별차가 오늘 인시에 달려가서 문정한다’ 하였으며, 같은 시각에 도부한 초탐장 축산만호의 치보 내용에 ‘두모포에 정박해 있던 왜선 1척 역시 병폐 없이 밤을 지내고

128) 정도행(鄭道行, 1694-?): 하동정씨로 자는 여일(汝一)이며, 숙종 갑오년(1714) 증광시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고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129) 축산만호(丑山萬戶): 축산포 만호. 축산포는 원래 현재의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은 뒤 현재의 부산시 남구 감만동으로 옮겼다.

별차가 당일 묘시에 달려가서 문정하였으며, 두 곳 표류 왜선에 양식과 반찬, 땀감을 전례대로 들여주었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별차 정도행의 수본 내용에, '무지포의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곳에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구 관수왜 등방소(藤方紹)의 배가 재차 건너온 것으로,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번 초7일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함께 2척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나오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역풍을 만나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하며, 그대로 두모포의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한 곳에 가서 또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2특송사왜 1호선인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다고 운운」 하였으며, 그 밖의 사연은 무지포로 표류한 왜선의 문정과 한가지이기로, 동 왜선 등이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며, 영솔해온 차소통사(次小通事) 김원경(金元景)은 뒤쳐졌다'고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초9일 미시 가령에 황령산 봉군 박시동(朴時同)과 간비오 봉군 박태순(朴太純) 등이 진고한 내용에, "오늘 아침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미시에 도부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두모포의 표류 왜선 1척은 어제 진시에 무지포로 옮겨 정박하였다가 병폐 없이 밤을 지낸 뒤 오늘 묘시에 출발하였기로 부사(副師) 대장(代將)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보내게 하였는데, 진시에 경계를 지났다'고 하였으며, 방금 구봉 봉군의 진고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기로,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二船將) 이영장(李榮將)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유시에 도부한 축산포 만호 및 기장 부사 대장의 치보 내용에, '나오던 분간되지 않는 배는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로,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왜관에 가서 문정한 수본 내용에, '좌도로 표류한 왜선 2척은 타고 있는 왜인의 인원 수 및 노인을 가진 것과, 나오다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별차가 당초에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어유(魚油) 3통과 술 4통을 또한 나누어 실었고, 대마도에서 곧바로 나온 왜선은 당년조 2특송사왜 2호선인데, 격왜 30명과 별일대관왜 1인, 종왜 7명,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소금 10섬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오늘 이른 아침에 발선하여 나왔다고 운운하였는데, 구 관수왜의 배가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규정 이외에 해당하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

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그 나머지 노인 2통만 받아서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12일 진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초10일 술시에 구봉 봉군이 진고한 내용에,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듯 내려 바다 입구가 짝 뒤덮여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데, 유시 쯤에 비가 잠시 그치고 희미한 가운데 겨우 관측하니, 배 하나의 형체가 파도 사이에 잠깐 보였으나, 비가 한결같이 내려서 또렷이 알 길이 없다'고 하였는 바, 막중한 변방 정세를 봉군의 뚜렷하지 않은 진고로 대범하게 치통하는 것이 불가하기에, 우선 전로(前路)에 탐문하라 하였더니,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10일 유시 쯤에 구름과 비가 희미한 가운데 물마루 가에서 배 한 척의 형체가 갑자기 언뜻 보였으나, 구름과 비가 다시 막혀 그 배의 형체를 또렷하게 분간할 길이 만무하여, 밝기를 기다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관측하니, 원래 떠서 머무를 일이 없으므로 혹 표류하여 우도 경내에 도착하였는지 차례 차례 탐문하여 치통하겠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 내용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초10일 유시에 거제도로 표류하여 향하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옥포만호가 배를 타고 탐지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같은 날 술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해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동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劉克愼)과 소통사 추오을만(秋五乙萬)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대마도 도주(島主)가 예도로부터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의 배인데, 정관 1인과 봉진압물 1인, 반종 5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3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이번 초1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에,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척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동 선장의 치보 내용에, '위 사항의 표류한 왜선 1척을 미시에 영술해서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대마도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의 배인데, 정관 등신구(藤信久)와 봉진압물 1인, 반종 5명, 격왜 40명, 소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별폭 3통 및 진상 물건을 가지고, 이번 초10일 이른 아침에 나오다 바람에 표류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고, 동 서계와 별폭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고 운운하였하므로, 위 사항의 서계와 별폭 등본을 올려보내는데, 서계 가운데 원문(元文) 연호를 쓰지 않고 관보(寬保) 원년(元年)이라고 적어 넣었거늘, 차왜 및 관수왜에게 따져 물었더니, 「저희 나라에서 연호를 고쳐 일컫는 것은 왜황(倭皇) 자신이 죽은 뒤에 새 왜황(倭皇)이 계승하여 즉위하거나, 관백 자신이 죽은 뒤에 새 관백이 계승하여 세습하거나, 그 밖에 나라 안의 크고 작은 길흉사 및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반드시 연호를 바꾸는 것이 본디 그 사례가 있고, 이제 이번 관백이 계승하여 세습한 이래로 나라 안이 무사한 것이 이미 수십 년이나 오래 지났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 2월 28일에 관백이 그 모친의 상을 당하고, 이칠일(二七日)을 넘겨서 복을 벗은 뒤에 왜황(倭皇)이 관백을 위하여 4월 초2일부터 시작하여 연호를 관보(寬保)라고 고쳐서 나라 안에 반포하였기로, 과연 이렇게 써 왔다」고 운운 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서계와 별폭 등본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치통하였음.

이번 초7일 왜선 2척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할 때 및 초10일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의 봉군들이 모두 관측을 놓친 것은 각자 소속한 곳에서 징계하여 다스려야 마땅하며, 규정 밖에 나온 왜선은 속히 되돌려 보내는 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왜인 등이 그 길흉사나 풍년 흉년에 따라 곧장 연호를 고치는 것은 과연 저들 나라의 평소 규정이고, 관백의 모친이 지난 2월에 죽은 뒤 4월에 비로소 그 연호를 고쳤기로, 이제 이 서계 가운데 관보원년(寬保元年)이라 써 넣었다고 하며, 대마도 도주가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전례대로 접대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기로, 동 차왜(差倭)의 접대관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으며, 가져온 서계와 별폭 등은 추후에 다례를 베푼 뒤에 받아 올리겠고, 등본 1통 및 당년조 2특송사왜의 1호선 2호선의 노인 각 1통만 감봉하여 먼저 해조로 올려보내는 바, 연례에 증정할 예단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해서 내려보내어 기다리는 폐단이 없게 하고, 당년조 이폐이양[以酏養] 송사왜 및 제4선 송사왜의 원역(員役) 등의 하선연은 이달 13일에 부산첨사와 함께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였으며, 초순으로 청하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원역 등의 하선연은 같은 달 16일에 접위관 자인현감(慈仁縣監) 심약로(沈若魯)가 베풀었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석일의 장계를 보면,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되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한 일이기로, 접위관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한다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고, 증정할 연례(宴禮)의 예단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에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달라고 하였는 바, 고지차왜(告知差倭)를 접대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별폭의 회례(回禮) 및 연례(宴禮)의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고, 급속히 준비하여 내려보내라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6년(1741) 6월 27일 우승지 신 이도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유(1741) 7월 초1일

예조의 계사(啓辭). 전 경상감사 정익하(鄭益河)가 재임할 때 청하(淸河)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평명칙(平明則)의 향접위관(鄕接慰官)으로 울산부사 이의종(李義宗)¹³⁰을 차정하는 일로 지난 5월 초3일 치계하였고, 재순(再巡)으로 청하 표류민을 영솔해온 차왜 굴상구(橋尙久)의 향접위관은 자인현감 심약로를 차정하여 접대하는 일로 같은 달 초7일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또 청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성구(藤成久)의 향접위관으로 자인현감 심약로를 차정하는 일로 치계하였으나, 등성구는 곧 새 관수왜(館守倭)의 성명이고, 청하의 표류민이 또 3차로 영솔하여 온 일이 없으니, 막중한 장계에 이렇게 착오가 생긴 일은 매우 소홀하니, 감사 심성희(沈聖希)¹³¹를 추고하여 경고하여 책망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신유(1741) 7월 초2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함경감사 박문수(朴文秀)¹³²의 장계에 운운하기를, “도

130) 이의종(李義宗, 1685-?): 전주이씨로 자는 득지(得之)이며, 숙종 계사년(1713)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역임하였다.

131) 심성희(沈聖希, 1684-1747): 청송심씨로 자는 이천(而天)이며, 영조 을사년(172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충청, 경상 관찰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32) 박문수(朴文秀, 1691-1756): 고령박씨로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며, 경종 계묘년(1723)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 함경, 경기 관찰사와 대사성, 대사간, 도승지, 병조, 호조, 예조의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내 각 고을의 향화손(向化孫)¹³³⁾은 예조에서 매 명마다 배 1필을 거두고, 향화손의 외손(外孫)과 외외손(外外孫)에 이르러서도 일체로 배를 거두기 때문에, 이른바 향화손(向化孫)에게서 거두는 배가 날로 점차 넓어지고, 한정(閑丁)¹³⁴⁾이 그 가운데로 귀속되는 것이 많아, 정군(正軍)을 충당하여 정하기가 극히 어렵기로, 간간히 향화(向化)한 시대가 오래된 외손과 외외손을 충당하여 정하는데, 예조의 관문 내용에 ‘정유년에 정탈(定奪)¹³⁵⁾할 때, 향화한 여인으로 공사천(公私賤)에게 시집간 무리의 소생 자녀도 오로지 본조에 소속시키는 일로 이미 정탈하였으니, 그 소생이 비록 외손이라 하더라도 향화(向化)로서 역에 응하여야 마땅하다’ 하였던 바, 향화의 외손과 외외손의 대수를 한정하지 않고 예조에서 한결같이 배를 거두는 것은 결코 당초 규정을 정한 본뜻이 아니고, 만약 예조의 관문 내의 사연대로 한다면, 향화 외손과 외외손은 1대 2대부터 비록 여러 대에 이르더라도 또한 장차 향화손으로 모두 배를 바치면서 한정(閑丁)이 되지는 못하니, 묘당에 명하여 예조에서 고찰할 만한 문서를 상고해 내어, 지금부터 시작하여 향화 외손과 외외손으로 양인(良人)인 자는 예조에서 배를 거두지 말고, 한결같이 양인으로서 역(役)에 응하는 일로 품의 조처하라” 하였던 바, 향화 자지(子枝)¹³⁶⁾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귀부(歸附)한 백성이라, 전후로 조정에서 돌보아 보호하느라 감면하고 보살피는 것이 자별하였으나, 외외손에 이르기까지 군역(軍役)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의의가 없는데, 이에 정유년(1717)에 중신(重臣)이 진달(陳達)할 때 유청군(有廳軍)¹³⁷⁾의 사례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단속하여 배를 거두는 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였고, 또 그 때 계하한 절목 내용에, ‘향화한 사람이 공사천(公私賤)에게 장가들면 역노비(驛奴婢)의 사례에 의하여 남녀 각기 부모의 역을 따르고, 향화 여인이 공사천에게 시집간 자는 소생 여자는 오로지 본조에 소속된다’고 해조의 등록에 뚜렷이 실려 있으니, 이미 유청군의 사례에 의해서 단속하여 배를 거둔다면, 이는 군역에서 누락되거나 면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고, 향화 여자의 소생 자녀는 이미 해조의 수포안(收布案)에 수록되어 역노비의 사례와 같다면, 그 외손과 외외손이 저절로 당초 정해진 규정에 들어감이 마땅하며, 또 해조의 수포도안(收布都案)을 살펴보면 육거(陸居: 내륙거주)의 향화 자손으로 각도 각읍에 징발되어 있는 자가 300여 명에 불과하여,

133) 향화손(向化孫):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사람의 후손.

134) 한정(閑丁): 국가의 부역에 나가지 않는 장정.

135) 정탈(定奪): 임금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

136) 자지(子枝): 갈래지어 벗어나간 자손.

137) 유청군(有廳軍): 정군(正軍) 외의 남은 인원을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충장위(忠壯衛)에 소속시켜 포(布)를 내게 하는 군사.

지금 비록 모조리 털어서 확정하더라도 양정(良丁)의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되기에 부족한데, 앞서 조정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 일을 계속 변통하는 것은 부당하니, 장계로 알린 내용의 사연을 그냥 둬서 어떠할지? 건륭(1741) 6년 7월 초2일 우부승지 신 민통수(閔通洙)¹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유(1741) 9월 초4일

경상좌수사 정양빈(鄭暘賓)이 8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3일 유시에 간비오 봉군 서만재(徐萬載)가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좌도로 표류하여 갔다”고 하거늘, 초탐하기 위하여 칠포만호(漆浦萬戶)¹³⁹⁾ 황정창(黃廷昌)을 정하여 보냈으며, 문정하기 위해 별차를 보내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조덕중(趙德中)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더니, 술시에 도부한 동 첨사 조덕중의 치보 내용에, “즉각 구봉 봉군의 진고 내용에, ‘당일 신시 썸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로부터 나오다가 좌도로 향하여 표류하였다’고 하기로, 문정하기 위해 별차 정도행(鄭道行)을 정하여 보냈다”고 치보하였거늘, 정박한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비보(飛報)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별차 정도행(鄭道恒)의 수본 내용에, “이번 22일 유시에 부산진의 전령에 의거하여 밤을 무릅쓰고 달려가 남천(南川)에 이르니 왜선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그대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부특송사(副特送使)의 수목선(水木船)인데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도금도왜(都禁徒倭) 1인, 별금도왜(別禁徒倭) 1인, 중금도왜(中禁徒倭) 2인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하거늘, 당초 그들이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번 22일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탄 배 1척과 4척의 큰 배가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남풍이 크게 일어나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같은 날 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고, 4척의 배는 좌도로 향하여 표류하였다’고 하기로, 우선 수본한다” 하였으며, 또한 “문정하기 위하여 방향을 돌려 각 포구로 향한다”고 수본하

138) 민통수(閔通洙, 1696-1742): 여흥민씨로 자는 사연(士淵)이며 영조 갑인년(173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 승지, 광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139) 칠포만호(漆浦萬戶): 칠포는 만호영(萬戶營) 소재지로 원래 현재의 포항시 흥해에 있었으나 임진란 뒤에 현재의 부산시 남구 민락동으로 옮겼다.

였음.

일시에 도부한 별차 정도행의 수본 내용에는, “남천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1척에 문정한 연유는 이미 수본하였거니와, 즉시 배에 타고 기장 경내의 가이천포(加伊川浦) 가로 방향을 바꾸어 갔더니,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거늘 가서 문정하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부특송사 1호선인데 정관 1인과 도선주 1인,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시봉 1인, 반종 4명, 격왜 40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 나왔다’고 하거늘, 당초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물었더니, 정관왜의 말이 ‘이번 22일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탄 배가 큰 배 4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남풍이 크게 일어나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제 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고, 1척은 표류하여 남천에 도착했고, 3척은 밤이 깊었을 뿐 아니라 바다 안개가 사방에 깔려 간 곳을 모른다’고 하기로 우선 수본하며, 그대로 배를 타고 차례차례 각 포구로 방향을 바꾸어 그들이 표류하여 정박한 곳을 탐문하겠다”고 수본하였음.

24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 조덕중의 치보 내용에, “당일 자시에 도부한 훈도 현덕연(玄德淵)과 별차 정도행(鄭道行) 등의 수본 내용에, ‘좌도로 표류한 왜선 4척이 관소에 도착 정박하였기에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도 부특송사 2호선인데, 동 송사 부관 등척신(藤則信)과 이선주(二船主) 등이엽(藤以葉), 유선주(留船主) 등승지(藤勝之), 봉진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기용(器用) 잡물을 실어 가지고 있고, 제2척은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인데 격왜 20명 및 두왜(頭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 2통과 노인 1통을 지녀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3척은 당년 만쇼잉 차사의 수목선인데,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고, 제4척은 당년조 부특송사 1호선인데, 정관 등유승(藤惟勝), 도선주 굴상덕(橋常德), 사복압물 1인, 시봉 1인, 반종 4명, 격왜 40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 가지고, 이번 2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5척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자 남풍이 크게 일어나 1척은 표류하여 남천에 이르렀다가 먼저 이미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고, 1척은 기장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고 3척은 큰 바다 가운데 떠 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정박하였으며, 소지한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할 계획이라 운운」 하였으며, 동 송사 2호선 및 3특송사 수목선과 만쇼잉 송사의 수목선 합계 3척이 소지한 노인은, 모두 그 앞에 「각도 각

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이 격식이 어긋나는 것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관수왜의 말이, 「이제 이 3특송사 수목선에 탄 두왜(頭倭)가 예조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2통을 가지고 와서는, 대신 나를 시켜서 귀국의 예조 및 동래부사에게 드리도록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지난번에 배 한 척이 저희 대마주 바깥 바다에 떠서 머무르는데, 그 일과 사정이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여, 필시 이익을 쫓아서 금령을 범하는 간민(奸民)이 아니라고 못할 것인지라, 간절히 바라건대 귀국 바닷가의 도서 등에 엄중하게 더 신칙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대조하여, 혹시라도 표문(標文)이 없고 종적이 이상한 자가 있으면 속히 체포하여 관수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빈다고 하면서, 이에 오로지 이 일을 위한 차사를 보내어 특별히 구구한 뜻을 진술하는데, 지금 방비를 게을리하면 뒤에 반드시 온갖 큰 폐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원컨대 임관(任官)들은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고, 이 서계는 지체 없이 위에 전달하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거늘, 이치를 들어 책망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이런 규정 외의 서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도리에 있어서도 품달(稟達)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서계는 되돌려 들여 보내고, 감히 번거로운 이야기로 다시는 재삼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운운 하였더니, 관수왜가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답하기를, 「지난번 정유년(1717)에 귀국의 표류민이 저희 나라 나가사키섬[長崎島]에서 소란을 부릴 적에, 이 소란의 사단으로 인하여 귀국의 예조 및 동래부에 문서를 순부(順付)¹⁴⁰하여 왕복한 일이 있거늘, 이제 와서 어떻게 규정 밖이라고 하며, 또한 성신(誠信)으로 교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혹시라도 뜻밖의 사단이 있으면 서계를 통하여 변통하는 것이 사례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제 임관(任官)이 전혀 방색하는 것은 실로 그 뜻을 모르겠다」고 하거늘, 다시 말을 만들어 끊으며 책망하기를, 「귀국 사람과 바다 밖 남방 나라 주민들은 오로지 배를 집으로 삼아, 바다와 파도를 건너 다니며 장사를 생업으로 하여 돛에 바람을 받아 홀연 사라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그런 배를 의심하여 이렇게 규정 밖의 서찰을 보내는 것은 극히 불가하며, 우리나라 경내의 연해(沿海) 각처에는 원래 다른 나라 상선이 사사로이 오고가는 자가 없어서, 이들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단히 엄하게 방색하여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관수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일의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고는 논할 것 없이, 이미 저희 고을에서 내보낸 서계를 끝내 전달하지 못하고 맨손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받을 죄가 어떤 지경에 이르겠으며, 이 서계는 차개(差价)를 통하여 내보내

140) 순부(順付): 별도로 인편을 정하지 않고 이미 예정된 인편에 부쳐 전달함.

야 마땅한 것이나, 귀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이렇게 순부(順付)하여 저에게 주어 위에 전달하여 변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 나라가 이미 귀국과 수호하였으니 무릇 사례를 한 가지로 고집하여 고수하여서는 불가하며, 더구나 이한 조목은 실로 대단히 구애되는 곳이 없고, 단지 귀국 연안 변방에 명령을 신칙하여 표문이 없는 선박을 검찰하는 것일 따름이라. 대개 일을 우려하는 도리로는 미미할 때 방비하여야 반드시 뒤의 폐단이 없고, 이미 이로 인하여 나온 서계를 결코 도중(島中)으로 되돌려 보내기는 어려운데도, 임관(任官)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색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반드시 품고(稟告)하여 속히 처분을 내리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 바, 동 서계는 물리쳐서 받지 않았으나,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 바라 아래에서 다투기는 어렵다'고 수분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규정 외의 서계는 물리쳐서 받지 말라는 뜻을 부산첨사 조덕중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엄하게 신칙하였거니와, 이제 이번에 나와서 동래 경내의 남천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한 배 1척에 별차가 문정할 때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의 도(都)자를 두(頭)자로 잘못 적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로 조사를 그냥 두었으며, 이제 이번 4척의 배가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뒤로 훈도 별차의 문정 수분 가운데, '저번에 1척 배'라고 운운한 것은 그것이 어느 나라 배인지 상세하지 않기로, 다시 물어서 조사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조덕중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더니, 동 첨사가 물어서 조사하여 회보한 내용에 '이른바 1척의 배는 실로 일본배'라고 하였는 바, 이렇게 물어서 조사하느라 왕복하는 사이에 날짜가 지연되었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신유(1741) 10월 초3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사 김석일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이제 이번 3특송 두왜가 가져온 '표문(標文)'이 없고 종적이 수상한 선박을 체포하여 잡아보내라는 일'의 서계는, 정유년(1717)의 사례에 의거하여 받아들이기를 허락하여도 방해될 바 없을 듯한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 바, 우리나라 표류민이 만약 혹시라도 저들의 국경을 범하여 정박해서 소란을 부린다면, 도중(島中)에서 서계를 바쳐 금하도록 청하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여, 바치는 서계를 즉시 받아서 올려보내어 회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곧 정유년(1717)의 사례이거니

와, 이제 이번 서계 가운데 ‘한 척의 배가 떠돌아 다닌다’고 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고 과연 왜국(倭國)의 배라고 하였는데, 왜국의 배가 왜국 국경 안에 떠돌아 다니는 것이 무슨 의심스럽고 괴이한 일인지, 그 하는 말이 이미 의아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연해 도서 등지는 우리나라에서 본디 스스로 엄하게 신척하는 것이지, 도중에서 서찰로 위촉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스스로 국경 안쪽을 신척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나라에 금하도록 청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이며 도리인지? 이제 이번 서계는 규정 외에 관계되고, 정유년의 일은 결코 사례로 인용해서는 안되거늘, 변방 신하가 엄하게 물리치지 않고, 인용해서는 부당한 사례를 억지로 인용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청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 동래부사 김석일을 추고(推考)하여 정책(警責)하고, 서계는 물리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척함이 어떠할지? 건륭 6년(1741) 10월 초2일 우부승지 신 오수채(吳遂采)¹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742) 정월 21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석일의 장계를 보면 “고성 남촌진(南村鎭) 감색(監色) 등이 북관(北關)¹⁴²⁾으로 곡식을 옮기는 일로 공문을 받고 나갈 때 이렇게 바람에 표류하는 일이 있었으니, 함부로 외양(外洋)으로 나가서 금령을 무릅쓰거나 일부러 표류한 자와는 다름이 있으나, 죄를 단정하는 한 조목을 북과 남에서 거론하였기에, 이미 정한 격식이 있으므로 짐짓 구속하여 가두었으니, 유사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치하도록 분부하시라”고 하였는 바, 이제 이번 표류민은 이미 공무로 인한 것이어서, 금령을 무릅쓰고 고의로 표류한 자와는 다름이 있으니, 임자년(1732)의 사례대로 죄를 단정하지 말고 한꺼번에 놓아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7년(1742) 정월 11일 우부승지 신 이세진(李世璣)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시행함.

141) 오수채(吳遂采, 1692-1759): 해주오씨로 자는 사수(士受), 호는 체천(楝泉)이며, 영조를 묘년(1736)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대사성, 개성유수,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2) 북관(北關): 함경도의 군사상 지역을 구분하여 마천령(摩天嶺)을 경계로 그 북쪽 지방을 북관이라 함.

임술(1742) 정월 22일

비변사의 감결 내용.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이제 이번 인삼 값으로 나온 은화는 전에 비하여 너무 줄어들어 피집(被執)한 사람들이 본전을 잃은 것이 8,000여 냥이나 되는데, 당장 그들이 억울하다고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일 매매하는 길이 참으로 매우 우려되어, 역관 박상순(朴尙淳) 등이 간쟁(諫爭)해서 고집하여 가격 결정을 고치는 일로 사역원에서 말미를 받았다고 어제 내려왔는 바, 간쟁하며 고집할 즈음에는 반드시 관중에 들어가야만 왜인과 대면하여 상의할 수 있는 바, 역관은 공무가 아니고서는 왜관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런 일로 출입하는 것은 근래에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변방 신하된 도리에 있어서 감히 갑자기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못하여 첩보하니,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지휘하여 달라”고 하였음. 제사(題辭) 내용. “이미 전례가 있으니 허락하여 들어가게 함이 마땅한 일임.”

임술(1742) 3월 23일

동래부사 김석일이 2월 초8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하기를 동 표류한 왜인의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당초 나오면서 바람에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의 봉군들이 모두 관측하지 못함을 면치 못하여 각자 소속된 곳에서 징계하여 마땅히 다스릴 것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해 모일에 비국(備局)에서 하관(下關)한 관문 내용 및 본부 전령 내의 사연에 의거하여, 관수왜에게 엄하게 더 책망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이른바 표문(標文)이 없고 행적이 이상한 배는 곧 일본 배이고, 일본 바다 가운데 떠돌아 다니는 것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간에 굳이 의심할 것이 없는데, 무슨 연유로 몰래다니는 것을 금한다고 지적하여, 이에 감히 이웃나라에 거듭 청하여 체포하여 관수에게 보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일이 매우 부당하고 또한 괴이한 일이며, 서계도 비록 순부(順付)한다 하였으나 이미 정유년(1717)의 사례와는 크게 서로 같지 않아서, 결코 사례로 원용하여 왜곡하여 청하여서는 불가한 것이 분명하니, 그 서계를 속히 되돌려 보내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운운하였더니, 이 뒤로 관수가 매양 요청하여 말하기를, ‘회하(回下)한 관문 및 본부 전령 내의 사연이 이미 이렇게 엄격하여, 도리에 있어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지만, 저희 대마주 한 섬이

다행히도 가까이 있어서 은덕을 받아 먹고 살아 숨쉬는 것이, 곧 귀국에서 국경을 지켜주고 덮어주는 지극히 무겁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히 바다의 풍속이 다른 지역이라 하여 스스로 외면하지 않고, 성심으로 보답해 온 것이 이제까지 100여 년이라, 일의 긴급하고 느슨한 것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대조정(大朝廷)에 달려가 하소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인데, 지난번에 이른바 정유년(1717)의 사례는 단지 그 순부한 것만 근거하여 발설한 것이고, 지금의 일은 정유년(1717)의 사례와 다름이 있다고 엄하게 배척하시니, 그 정유년(1717)의 조례는 고사하고 지난 병오년(1726)에 대차왜(大差倭)가 나오는 것을 거듭 금하면서 접대할 때, 이 뒤로는 무릇 사단의 경중을 막론하고 차개(差价)를 보내지 말고 단지 서계만 순부하여 내보내도록 하여 명확한 처분이 있으셨는데, 그때 조목으로 정한 사례를 다시 영갑(令甲)¹⁴³으로 하면 이제 이 일도 반드시 규정 외로 가져왔다고 할 것은 아닌데, 임관 등이 그 사이에서 방색하는 것은 실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거늘, 다시 여러 말을 더하여 말하기를, '지난번 회하(回下)하여 분부한 내용에, 너희 나라에서도 스스로 그 국경 내에서 신칙하지 못하면서 이제 감히 이웃 나라에서 금지해줄기를 청하는 것은 격식 밖으로 어긋남이 있는 것이라 하여 이런 뜻으로 책망하여¹⁴⁴ 타일러 물리쳤는 바, 순부한 전례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긴요하지 않고 부당하기 막심하여, 비록 한 해가 다 가고 해를 넘기도록 버티더라도 조정에서는 전혀 시행을 들어줄 리가 없으니, 너희의 도리로서는 마땅히 교령(敎令)을 받들어 준수하여 그 서계를 되돌려 보내도 모자라는데, 이제 감히 갑자기 시일을 가지고 매양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은 더욱 극히 타당치 못하니, 동 서계를 속히 돌려 넣어 보내는 외에는 따질 일이 없다'고 엄한 말로 준절하게 배척하였더니, 동 왜인이 머리를 숙이고 한참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가 물러나며 말하여 답하기를, '저는 비록 늙고 병들어 저희 고을이 귀국에 특별히 후한 은혜를 입은 지가 오래 되었음을 깊이 알고 있는지라, 오늘 대조정(大朝廷)의 명령을 어찌 감히 어겨서 거역할 생각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희 나라에서는 이미 귀국과 관시(關市)의 매매를 통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몰래 다른 길로 간사하게 속이는 버릇이 있으면, 또한 장차 두 나라 사이에 폐단이 있을까 하여, 이제 서계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거듭 신청하는 것은, 그 뒷날의 병폐를 미리 방지하려는 데 불과하고 굳이 다른 의도는 없거늘, 이제 만약 그 서계를 없는 것으로 하여 답을 받지 못하면, 당초 두 나라 사이의 간사한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의도는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143) 영갑(令甲): 법령.

144) 원본의 '責'는 '責'을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까? 또한 병오년(1726)에 순부하기로 정한 규정이 뚜렷하게 있는데, 서계가 나온 지 이제 이미 해가 지나도록 임관이 한결같이 굳게 막으니, 실로 민망하고 절박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애걸하기를 또 날마다 하면서, 동 서계를 끝내 들여보내지 않고는 결단코 회답할 뜻이 없어서, 변방 정세에 있어서 황공하고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고 연유를 감히 이렇게 수본으로 한다”고 하였다는 일로 수본을 하였음. 병오년(1726)에 대차왜(大差倭)가 나오는 것을 신척하여 금하였을 때 해조의 회답 서계 등록을 보니, ‘이 뒤로는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을 일체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하여 별사(別使)를 보내지 말고 재판(裁判)에게 순부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는 바, 이제 이번 서계를 두왜(頭倭)가 가져와서 보낸 것은 비록 순부하기는 하지만, 그 재판(裁判)이 순부하는 전례와는 차이가 있기로, 다시는 무익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엄하게 더 책망하여 타이르기 하였거니와, 다만 엎드려 생각건대 동 서계는 변방을 금지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니, 나라를 가진 자로서는 그만 두지 못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별로 이해가 없으니, 받아서 답하는 것이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에 합당할 듯한데, 저들이 이미 병오년(1726)의 정식을 구실로 하여 재판과 두왜가 균등하게 순부하는 것이라 하니, 이렇게 사소한 차이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여 서로 버티는 것은 자잘한 일이고, 이제 이번에 가져온 두왜는 단지 그로 하여금 왕래하게 하는데 그칠 뿐 우리로서는 공역(供億)¹⁴⁵⁾할 폐단이 없으니, 이제 지금 그 서계를 받아 들여서 말을 만들어 회답하는 것이 먼 나라 사람들을 회유하는 도리에 무방할 듯함. 신은 전에 이 일로 이미 엄중한 추고를 받았기에 오직 조정의 명령대로 책망하여 보내는 데도 겨를이 없으나, 일에 변방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또한 의견이 없지 않아서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이를 덧붙여 진술하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석일의 장계를 보니, 훈도 별차 등의 수본을 열거하면서, “이제 이번 서계를 두왜가 가져와서 보낸 것은, 재판왜가 순부하는 전례와는 다르기로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들에게 명하여 엄하게 더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다만 엎드려 생각건대 동 서계는 변방의 금지로 이야기를 하니 나라를 가진 자로서는 마지 못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별로 이해가 없으니 받아서 답하는 것이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우의에 합당한데, 저들이 이미 병오년 정식이라고 구실을 달아서 재판과 두왜가 균등하게 순부하는 것이라 하나, 그 서계를 받아들

145) 공역(供億): 필요한 물자와 비용을 제공함.

이고 말을 만들어 회답하는 것이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무방할 듯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해서 분부하여 달라” 하였는 바, 이번 이 서계를 조정에서 이미 규정 밖이라고 엄한 말로 물리쳐 배척하였으나, 관수왜가 맞지도 않는 전례를 빙자하여 누누이 거듭 청하는 것이 비록 놀랍기는¹⁴⁶⁾ 하지만, 대개 그 본디 정상은 바다 가운데 사람의 간사한 꾀단을 우려하여 변방에서 물래 교통하는 길을 금하고자 하는 데 불과하고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없으니, 이렇게 사소한 곡절로 해를 넘기도록 서로 버티며 한갓 책망하여 타이르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일이 자질구레할 뿐 아니라 또한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그 바친 서계를 특별히 받아들이도록 허락하고 이치에 의거하여 회답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7년(1742) 3월 19일 우부승지 신 유(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742) 4월 초10일

一. 동래부사 김석일이 이달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30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덕중(趙德中)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1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신유년(1741) 7월 19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같은 달 2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금년 3월 초5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신유년(1741) 7월 19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같은 해 8월 초4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탄, 합계 2척의 배가 각기 관수왜의 사서(私書) 및 별대관왜(別代官倭)의 짐을 가지고 당일 진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덕연과 가별차 박종대(朴宗大)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라 하였음. 이달 초1일 신시 쫓에 황령산 봉군 황수명(黃守命)과 간비오 봉군 성담사리(成淡沙里) 등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누어 나온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앞뒤로 나누어 물마루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 유진장(留鎭將) 강치백(姜致白)을 정하여 보냈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 3척과 작은 배 2척인지라, 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다”고 운운 하였음. 초2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

146) 원본의 ‘該’는 ‘駭’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에, “어제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등은 수문(守門)을 이미 잠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비로소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금년조 이때 이양[以酌菴] 송사왜의 배에 정관 등상영(藤尙盈),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과, 동년조 제4선의 정관 굴정관(橘正寬)과 반종 1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3통 및 진상물건을 겸대(兼帶)하여 가지고 왔으며, 기미조 제6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종왜 3명, 중금도왜 2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기미조 제7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서승왜(書僧倭) 1인, 종왜 1명, 대관왜 3인,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이상의 큰 배 3척은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먼저 발선하였고, 비선 2척에 두왜 1인, 격왜 12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와 별대관왜(別代官倭)의 짐을 가지고 어제 대마도에서 추후에 발선하여 나왔거니와, 송사왜 등이 소지한 서계와 별폭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므로 노인 4통만 받아서 올려보낸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기에, 위 사항의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고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며, 기미조 제6선과 7선 및 비선의 노인 모두 4통만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초하루 동서 왜관(倭館)과 선창(船倉) 등의 장소를 부산진 감색(監色)과 함께 적간(摘奸)하였더니, 별로 훼손되어 상한 곳은 없다”고 하기로, 다시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음. 방금 도부한 본부의 장계로 인한 비변사의 복계(覆啓) 회관(回關) 내용에 “전일 두왜가 가져온 대마도주가¹⁴⁷⁾ 바친 서계를 특별히 받아들이도록 허락하게 하고, 도리에 의거하여 회답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고 하였기로, 원 서계는 추후에 받아 올릴 계획이고, 등본 1통을 해조로 우선 올려보내는 연유의 일임.

一. 두왜가 가져온 별서계(別書契)의 등본.¹⁴⁸⁾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대인(禮曹大人) 합하게 받들어 올립니다. 여름철 5월에 멀리 생각건대 귀국에서도 편안하실 줄 생각하며 즐겁고 위로되는 마음 한량 없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147) 원본에 ‘對馬島主前呈書’라 되어 있으나 ‘前’ 한 글자는 앞뒤 사정과 문맥으로 보아 잘못 들어간 글자로 보임.

148) 원본의 ‘勝’은 ‘騰’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임.

것은, 두 나라가 예로부터 잠상(潛商)을 금하는 것이 엄중하였음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근래 한 척의 배가 저희 대마주의 바다를 떠돌아 다니는 폐단이 있는데, 그 일이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여, 필시 이익을 쫓아 금령을 무릅쓰는 간민(奸民)이 아니라고는 못하겠기에, 간절이 바라오니 귀국 연해의 도서 등 장소에 엄중하게 더 신칙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대조하여, 혹시라도 표문(票文)이 없으면서 종적이 이상한 자가 있으면, 속히 체포하여 묶어서 관수(館守)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전담하는 심부름꾼을 차출하여 특별히 구구한 소회를 진술하오니, 바라건대 양찰(諒察)하시기를.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寬保) 원년(1741) 신유 5월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에 두왜가 가져와서 특별히 바친 서계를 특별히 받아주도록 허락하고 도리에 의거하여 회답하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복계하여 윤허가 내렸는데, 동 회답 서계를 즉시 승문원에 명하여 도리에 의거하여 지어 내어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7년(1741) 4월 11일 동부승지 신 홍상한(洪象漢)¹⁴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술(1742) 5월 15일

이번 5월 14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지난번에 관동(關東)의 기민(飢民)¹⁵⁰ 가운데 스스로 본토(本土)로 돌아가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고 하여 상감으로부터 금년의 신포(身布)를 탕감한다는 명이 있었으니, 지금 진휼(賑恤)하는 일을 이미 끝내어 기민들은 또한 본토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들과 전일에 귀농(歸農)하기를 권유한 자들의 금년 신포를 일체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만, 들으니 진휼하는 곳에서 기민 가운데 신역(身役)이 있는 자를 별도로 뽑아 내어 성책(成冊)을 한단데, 관동의 군액(軍額)은 본디 삼남(三南) 지방처럼 많지 않으므로 기민 가운데 신역이 있는 자는 매우 드무니, 지금 비록 감면을 허락하더라도 그

149) 홍상한(洪象漢, 1701-1769): 풍산홍씨로 자는 운장(雲章)이며, 영조 을묘년(1735)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전라감사, 도승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정혜공유고 『정혜공유고(靖惠公遺稿)』가 있다.

150) 기민(飢民):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

다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겨우 구제받아 살아난 백성에게 또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것이 어찌 왕자(王者)의 정치이겠는가? 금년의 신포는 일체 탕감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임술(1742) 8월 20일

이번 8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금년 역병(疫病)의 참혹함은 서울과 지방이 같아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자가 간간이 많은데, 이런 무리는 별도로 관대한 구휼의 은전이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해서백(海西伯)¹⁵¹⁾이 전 가족이 죽은 사람의 신포(身布)와 환상(還上)¹⁵²⁾을 탕감하라는 일을 장계로 청하였는데, 이는 한 도만 보살피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한번 품신(稟申)하여 통털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도록 청하고자 하여, 해서백의 장계를 짐짓 두게 하였습니다. 해서와 경기, 호서, 관동 네 도의 역병의 참혹함은 모두 더욱 심하니,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사람의 신포와 환자를 아울러 탕감하되, 우선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사람의 성책(成冊)을 해당 각도에 명하여 사실대로 다듬어 올려 보내게 하고, 본부에 지금 당장 비치해 둔 사망성책(死亡成冊)을 일일이 상고 대조하면 함부로 끼어드는 폐단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우참찬 서종옥(徐宗玉)¹⁵³⁾이 말하기를, “금년의 역병으로 팔도에서 죽은 자는 거의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는 왕정(王政)에 있어서 우선하여 진휼하는¹⁵⁴⁾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한꺼번에 죽은 사람을 감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나, 만약 각 도에서 성책을 마쳐서 받아들이는 뒤에 거행한다면, 가을 수확이 멀지 않아 필시 때가 늦을 가망이¹⁵⁵⁾ 없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덕음(德音)을 내려 민간으로 하여금 모두 감면하는 뜻을 알게¹⁵⁶⁾ 하고, 함부로 뒤섞이는 폐단에 있어서는 오직 묘당에서 신칙

151) 해서백(海西伯): 황해도 관찰사.

152) 환상(還上): 환자(還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들에게 꾸어주었다가 가을에 반아들이는 곡식.

153) 서종옥(徐宗玉, 1688-1745): 달성서씨로 자는 온숙(溫叔), 호는 인재(認齋) 또는 학서(鶴西)이며, 영조 을사년(1725) 정시에 급제하여 대사성, 대사간, 전라도와 함경도와 평안도 관찰사, 대사헌, 이조와 호조의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154) 원본의 ‘軫恒’은 ‘軫恤’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55) 원본의 ‘朔’ 한 글자는 ‘望’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56) 원본의 ‘至’ 한 글자는 ‘知’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영의정 김(金)은 말하기를, “무술년(1718) 역병은 금년처럼 심하지 않았으나 또한 한꺼번에 죽은 데는 탕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금년에 어찌 이런 은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삼남에는 역병이 조금 덜하였으니 한꺼번에 죽은 무리가 아마도 꼭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왕자가 백성을 보살피는데 팔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없으면 그냥 두고 있으면 감면하여 보살피는 것을 다른 도에도 일체로 시행함이 옳다”고 하셨음.

임술(1742) 8월 23일

이번 8월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계품한 바, “이는 곧 함경감사 윤용(尹容)¹⁵⁷⁾의 장계입니다. 본도의 기근과 역병을 잔뜩 진술하고 나서는, ‘일체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정사를 제거하고 무마하는 도리에 전념해야 하는데, 신유(1741) 식년(式年) 호적(戶籍)은 잇따른 기근과 흉년으로 조정에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다듬어 올리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 유망(流亡)이 매우 많아서 소요의 사단만 일으킬 뿐이고, 또한 비록 다듬는다 하더라도 이 뒤로 사망자가 또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 병자년(1696) 호적에도 또한 통털어 3년을 기다렸다가 기묘년(1699)에 이르러 합하여 시행하였으니, 지금 역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각종 군병안(軍兵案)과 각시노비안(各寺奴婢案)과 역노비형지안(驛奴婢形止案)¹⁵⁸⁾ 및 선원록(璿源錄)¹⁵⁹⁾과 충찬위(忠贊衛) 충익위(忠翊衛) 단자(單子)를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는 것 또한 극히 폐단이 있으니, 아울러 묘당에서 품의하여 분부하시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작년과 금년 본도의 흉년은 이전에 없었던 바로서, 이미 병자 식년의 전례가 있고 또 지금은 1년이 지난 뒤에 마땅히 호적을 다시 수정해야 하기에 한갓 번거로움만 중첩되니, 짐짓 정지를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고, 그 밖의 소청 또한 아울러 시행을 허락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157) 윤용(尹容, 1684-1746): 과평윤씨로 자는 수보(受甫)이며, 경종 임인년(1722)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황해감사, 수원부사,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8) 원본의 ‘形正案’은 ‘形止案’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59) 선원록(璿源錄): 왕실의 족보.

임술(1742) 9월 11일

동래부사 김석일이 이달 초3일 성첩한 장계 내용.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작은 배 1척에 문정 운운한 것은 우수사(右水使)의 장계와 한가지이고, 우암(牛巖)에 머물러 정박하였던 지꾸마에[竺前州]에서 표류하여온 왜선과, 나왔던 왜선 등이 돌아들어갔다고 운운한 것은 좌수사(左水使)의 장계와 한가지이며,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의 원역 등에게 다례를 지난달 28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신병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이시성(李時聲)이 홀로 가서 배풀어 행한 뒤에, 송사왜가 바친 해당 서계 별폭 각 1통을 받아 올렸기로, 동서계와 별폭 및 위 사항에 나왔던 비선의 노인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당년조 1특송사왜의 원역 등의 하선연은 이달 초1일로 정하여 부산첨사가 역시 홀로 초랑객사(客舍)에 가서 동 송사왜가 전례대로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을 배풀어 행하였으며, 지난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 및 선창 등의 장소에는 짐짓 훼손이나 손상이 없다고 운운하였고, 전에 표문(標文)이 없는 이상한 선박을 체포하는 일로 대마도 도주가 순부하여 바친 서계는,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복계(覆啓)하여 회관(回關)한 내용대로 동 서계(書契)를 받아서 해조로 올려보냈는데, 동 회답 서계가 내려오면 즉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들려줄 것임.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소인들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귀국의 해조에서 순부하여 돌아온 서찰의 사연 등본을 먼저 대마도에 들여보냈더니, 어제 비선편에 회보가 나왔는데, 「동 서계 상단의 말 뜻은 특별히 시행을 허락한다고 하여 매우 기쁘지만, 하단의 두 조목 말의 내용 중 하나는, 도리어 이웃 나라에다 거둬 금하도록 청하는 것은 전혀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고, 또한 재판(裁判)에게 순부한다는 정식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 뒤로는 일체 약조에 의거하여 비록 긴급하게 관계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사 재판에게 순부하라 하였으며, 둘째는 변방 수령이 굳게 고집하여 아뢰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근거한 바가 있거니와, 왔던 차사가 돌아가서 품신하려 들지 않고 오래도록 지체하며 버티는 것은, 임시로 회복(回覆: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 바, 무릇 저희 나라에서 불시에 품고(稟告)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재판에게 순부하여 내어보내기를 기다린다면, 이른바 재판이란 때도 없이 차출하여 보내는 자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경위가 어그러질 걱정을 면치 못하여 극히 난처하며, 이전의 서계도 관수에게 내보내어 거둬 청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순부한 것으로 본디 차개(差价)가 없었거늘, 온 차사가 돌아가려 들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그 처분의 지시

의도가 분명치 않으니, 동 하단의 두 조목 말뜻을 다시 품의하여 고쳐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 바, 회보가 이미 이러하므로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이렇게 우러러 그 사유를 진술하니, 간절히 바라건대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품달(稟達)하여 편리한대로 고쳐 지어 넣어 주도록 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엄하게 더욱 간절히 책망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 서계의 일은 당초에 비록 번거롭고 외람스러웠지만, 조정에서 그 누누이 거듭 청하는 간절함을 생각하여, 이미 표문이 없는 선박을 잡아서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연변 각 읍과 진보(鎭堡)에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내렸는데, 이렇게 회서(回書) 가운데 두 조목의 말을 흠으로 잡아서 감히 고쳐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또한 도리에 있어서도 결코 품고(稟告)할 수 없다'고 하여 엄하게 물리쳤거니와, 변방 정세에 관련된 바라 연유를 부득이 하여 이렇게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는 수본에 의거하였기에, 전령하기를 "조정의 서계가 얼마나 엄중한지, 글자와 구절의 말뜻에 원래 미진한 곳이 없거늘, 이렇게 말을 하며 즉시 받아 보내지 않는 것은 극히 미안하고, 훈도 별차 등이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일러 즉시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 것 역시 일의 체면을 엄중하게 하는 도리가 아니니, 다시 책망하여 타일러 서로 버티지 못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였더니, 훈도 별차 등이 다시 바친 수본 내용에, "전령을 받자옵고 관수왜에게 가서 말하기를,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서계는 이 얼마나 중대한 절차인데, 이번에 순부한 회서(回書) 가운데 자구의 말뜻에는 원래 미진한 곳이 없고, 저쪽으로서도 또한 편치 못할 일이 없거늘, 동 서찰 가운데 하단의 두 조목의 말을 대마도에서 어찌하여 말을 잡아 또 관수에게 부탁하여 감히 번거롭게 고쳐 지어 달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그 일의 체면에 있어서 매우 타당하지 못한데, 이는 임역 등이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지 못하여서 다시 이렇게 서로 고집하는 폐단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분부가 극히 엄하고 준절하니, 동 회답 서계를 속히 들여보내어 다시는 잡담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이 서계가 나온 것이 해가 지나기에 이르도록 시행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밤낮으로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며 거의 죄책을 받을 즈음에, 다행히도 허락을 받아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전례대로 우선 등본을 대마도로 들여보냈더니, 천만 뜻밖에도 동 하단의 두 조목의 말을 잡아 말하기를, 다시 거듭 청하여 고쳐 지어 보내도록 하라고 하는바, 이 뒤로 저는 마음이 놀라고 기운이 없어져서 잠자고 먹는 것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정(大朝廷)의 처분이 이미 이렇게 내렸고, 본부의 전령 내의 말뜻이 또한 이렇게 엄한데, 대마도의 회보가 이러하니 저는 제 마음대로 그 회보를 들여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사정과

형편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만약 조정에서 관대하게 베푸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받는 죄와 벌의 경중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르니, 오직 임관 등이 모름지기 이 뜻을 일일이 품달하여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거늘, 다시 더 엄하게 책망하여 말하기를, '많은 말을 할 것 없이 처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네가 이미 천 마디 만 마디를 한다고 해도 헛고생이요 이익이 없다. 동 회답서를 속히 들여보내라'고 엄하게 물리쳤으며, 형편을 감히 이렇게 수분으로 하는 바"라고 수분하였음. 위 사항의 회답서계에 쓴 말이 저들에게 본디 장애가 될 사단이 없는데도. 왜인들이 평소 매우 교묘하게 속여 이렇게 번거롭게 떠드는 일이 있게 되었기에, 그 정상이 매우 아프고 미워서, 엄한 말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러 기어코 들여주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각별히 신칙하였다는 연유임.

임술(1742) 12월 27일

이번 12월 23일 대신과 각 도의 구관당상(句管堂上)¹⁶⁰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재로**가 계품한 바, "이는 동래부사 정리검(鄭履儉)¹⁶¹의 장계입니다. 상단에는 '왜인이 회답서계를 고쳐려고 한결같이 굳게 청하여 들어 줄 형편이 만무하다'고 말하였고, 하단에는 자기 견해로 논의를 벌였는데, '왜인의 서계 가운데는 단지 「간절히 원하건대 귀국의 연해 도서 각처에 거둬 신칙하고 증거를 살펴서, 혹시라도 표문¹⁶²이 없거나 종적이 이상한 자는 속히 체포하여 묶어서 관수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당초에 금지를 청한다는 말은 없었음에도, 회답 가운데는 「도리어 이웃나라에 거둬 금하기를 청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어찌된 것인 듯하고, 이른바 재판차왜는 상시로 나오는 자가 아니고, 반드시 대단한 일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나오며, 이 왜인이 한 번 오면 폐가 적지 않아서 미곡 소비가 수천 섬이나 되기까지 하는데, 회답 가운데 「재판에게 순부하게 한다」고 한 것은 비단 왜인이 말꼬리를 잡을 뿐만이 아니라, 실로 후일 빈번한 내왕을 열어주는 우려가 있으며, 이전에는 서계를 두왜가 나오는 편에 관수왜에게로 부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지, 원래 이 일 한 가지로 오

160) 구관당상(句管堂上): 어떤 특정한 정무를 관장하는 당상관.

161) 정리검(鄭履儉): 임술년(1742) 9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계해년(1743) 6월에 교체되었다.

162) 원본의 '稟文'은 '票文'을 잘 못 옮겨 적은 듯하다.

로지 차왜를 보내어 왜관에 머무는 일은 없었는데, 회답 가운데 「온 차사[來使]가 되돌아가려들지 않고 오래도록 지체하여 버틴다」는 등의 말은 또한 벗어나는 것이며, 이 일은 본디 미세한 일로서 한결같이 억지로 다룰 필요가 없으니, 「도리어 거둬 금지해 주기를 청한다[反請申禁]」는 이하 구절의 말은 고쳐주겠다고 허락하여도 무방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저들 나라에서도 또한 잠상(潛商)의 폐단이 있는데, 잠상에게는 도중(島中)에서 세를 거두지 못하기에 이해에 크게 관계되므로, 이렇게 이 서계를 보내면 두려워하여 조금이라도 그치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일 따름 다른 사정은 없는 듯합니다. 이제 이번 변방 신하가 회답 서계의 말뜻을 열거하여 논한 것도 또한 모두 성실함이지만, 그러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모두 고쳐 보내도 무방합니다”라고 하였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¹⁶³은 말하기를 “왜서 가운데 ‘그대로 전담 심부름꾼[端伴]을 차출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술관이 전송차개(專送差价)로 오인하여 그 답서 가운데 운운한 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고치기를 청하는 것도 께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이번 12월 23일 대신과 각 도 구관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두왜가 가져온 회답서계를 고쳐 보내는 일로 명이 내렸는데, 회답서계를 즉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고쳐 지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지녀 가지고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운허한다” 하셨습니다. 같은 달 27일 계하(啓下)함.

163)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숙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영조 경술년(1730)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다. 문집으로 『귀록집(歸鹿集)』이 전한다.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4책

계해(1743) 정월 일

동래부사 정리점이 임술년(1682) 12월 24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10일 미시 쯤에 황령산 봉군 한두가리(韓斗加里)가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부산첨사 이시기(李時鬐)의 치통 사연도 한가지임.

11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해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으며,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다’고 하기로, 정박하는 곳을 탐지하여 알리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12일 진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초10일 거제도로 향하여 표류한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같은 날 술시에 옥포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동 옥포의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유극신(劉克愼)과 소통사 김순귀(金順貴)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제13선인데 격왜 20명 및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각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있으며, 동년조 제14선에 격왜 20명 및 교대차 나온 하대왜(下代倭)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2척의 배가 동시에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하였다고 문정하였다’고 운운하였다” 하였음. 12일 사시에 도부한 구봉의 진고 내용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유시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누어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의 사연도 한가지이다”라고 하였음.

13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11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1척은 표류하여 거제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였는데, 동 거제도로 향하여 표류하던 배는 과연 왜인의 큰 배이므로, 옥포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해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소통사 등이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이페이양[以酇菴] 송사왜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른 아침에 다른 왜선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는데, 역풍을 만나 1척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고 1척은 뒤에 떨어져서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가덕도로 표류한 배도 역시 왜인의 큰 배인데 본진의 침사가 영술 예인하여 12일 진시에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했다” 하였음.

14일 사시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2월 12일에 나왔던 기미조 제10선에 격왜 30명 및 금년 6월 24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이번 12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李昌基) 등의 수본 내용에 의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金重呂)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1척이 오늘 묘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다”고 하였음.

15일 사시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침사의 전통에 의거한 대대포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선 1척에 옥포 왜학(玉浦倭學)은 병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소통사만 이달 14일 축시에 달려가서 문정한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제15선에 격왜 20명 및 교대차 나온 하대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11일 이른 아침에 다른 왜선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역풍을 만나 나뉘어 표류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이른바 다른 왜선 1척은 곧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배이기로, 각처에 표류한 왜선 등을 빨리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척하였다”고 하였음. 17일 해시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 앞바다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은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청천별장(晴川別將) 손준만(孫俊萬)이 영술하여 와서 유시에 본진 앞바다에 정박하였으므로, 즉시 서평포만호 염처인(廉處仁)에게 명하여 수호하는 일’로 치통하였다” 하였음.

19일 해시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도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선 3척이 어제 미시에 출발하여 각 진 포구로부터 차례 차례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해시에 환포(還浦)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는 일’로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21일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던 왜선들을 맞이해 오기 위해, 당일 오시에 왜관에 머무는 금도왜 등이 작은 배 1척을 타고 이전대로 다대포로 나가기에 소통사 2명이 압송(押送)하였고,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은 오늘 미시에 출발하였으므로 예전 그대로 서평포만호가 관소로 호송하였고, 우도로 표류한 왜선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 관소에서 금도왜가 탄 작은 배 1척이 미시에 본진 앞바다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로, 2선장(二船將) 문중발(文重發)을 차출하여 수호하게 하였으며, 환포(還浦)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선 3척이 오늘 진시에 출발하여 각진 포구에서부터 차례차례 영솔 예인하여 진시에 본진에 교부하였거늘, 금도왜의 작은 배와 아울러 또한 2선장에게 명하여 관소로 호송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22일 유시에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던 표류 왜선 1척을 어제 해시에 영솔 예인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서평포만호가 치보하였으며, 우도로 표류한 왜선 3척 및 금도왜의 배 1척은 어제 해시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그 나머지 표류한 왜선 2척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장후(牆後)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표류하며 머물렀는데, 오늘 오시에 또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다대포 2선장의 치통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 등에게 다시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기미조 이때 이양 송사왜의 배에 담배 2칭, 동년조 제13선 및 제15선에 각기 술 3통, 제14선에 어유 3통 등을 실어가지고 있으며, 타고 있는 왜인의 색목(色目)과 명수(名數) 및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당초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이때이양 송사 왜선이 재차 건너 나온 것은¹⁶⁴⁾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그 나머지 3척의 노인 3통만 받아서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규정 외로 나온 배는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일로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달 초10일 왜선 2척이 바람에 표류할 때 간비오 봉군이 관측을 못한 잘못을 면치 못하였고, 11일 왜선 2척이 바람에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 봉군 등이 모두 관측을 잘못하였는 바, 각자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서 후일을 경계함이 마땅함. 올해 조의 상인과 역관 등이 왜관에 피집(被執)한 물화(物貨)의 은화 25,600냥을 이달 13일 개시(開市)에 받아내었으며, 당년조 공작미(公作米) 16,000섬을 이달 15일에 수량에 맞추어 대관왜에게 들여주었다는 일로 치계하는 일임.

164) 원본의 ‘依’ 한 글자는 ‘係’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계해(1743) 정월 11일

경상우수사 송(宋)이 임술년(1682) 12월 28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11일에 나오다가 가덕 경내의 닛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달려가서 문정하라는 뜻으로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에게 전령을 발송하여 분부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만호 홍식(洪湜)의 치보 내용에, “본진의 왜학(倭學)¹⁶⁵이 갑자기 상한증(傷寒症)¹⁶⁶을 얻어서 여러날 크게 아픈 가운데, 이달 11일 문정할 때 병중에 억지로 거동하다 바람에 저촉되어 손상이 심해져서 말을 하지 못하고 증세가 심분 위중한지라, 부득이 소통사 김순귀(金順貴)를 대신 보내어 문정하였더니, ‘동 왜인의 큰 배 1척은 기미조 15선이라 하는데,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하대왜 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거늘, 그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큰 배 두 척이 이달 11일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이 불순하고 날이 이미 어두워져 한 척은 거제도도로 표류하였고, 저희들은 둔치(鈍致)에서 표류하여 가덕도에 도착하였는데,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닛을 내려 떠다니며 머물면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이달 12일 이곳에 와서 정박하였다」 고 하였으며, 병폐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고, 동 왜선이 일시에 나오다가 옥포에 정박한 배 한 척은 건너 보내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치계할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는 일임.

계해(1743) 정월 14일

동래부사 정(鄭)이 정월 초7일 성첩한 장계 내용. 지난 달 26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올해 4월 초1일 나왔던 종왜(從倭)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로 그들이 전례대로 왜관 뒷산에 내어다 매장하였다는 훈도 현덕연(玄德淵)과 별차 이창기(李昌基)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고 하였음. 30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10월 19일 나온 관수왜의 배에 격왜 40명과 및 올해 8월 초3일 나왔던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 정관 평구룡(平久隆), 도선주 등칙등(藤則滕),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올해 7월 초3일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올해 11월 14일 나온 기미조 제11선 격왜 20명이

165) 원본에 ‘倭’ 한 글자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 ‘倭學’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66) 상한증(傷寒症): 감기 등 추위에 손상되어 생긴 병.

함께 탄 배 함께 두 척이,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 이영휘(李榮輝)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두 척이 오늘 묘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수호장이 치보하였다”고 하였음. 이달 초2일 미시에 황령산 봉군 김귀(金貴)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 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부터 앞뒤로 나누어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며, 추후에 도부한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도 한가지임.

초3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부터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기에, 정박한 곳을 탐문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동 5일 축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는,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두 척 중 한 척은 역시 왜인의 큰 배인데,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머물다가 초3일 진시에 또한 지세포(知世浦) 강 입구에 정박하여 동 지세포만호가 아울러 수호하고 있다’고 운운하였다” 하였음.

초6일 사시에 도부한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지세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하고 있는 왜선 2척에는, 옥포왜학 유극신이 통영으로 달려갔으므로 소통사 김순귀(金順貴)가 이번 초3일 진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19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크고 작은 배 모두 2척이 초2일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역풍을 만나 비선은 같은 날 해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정박하였고, 큰 배는 초3일 진시에 또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하였다”고 치통하였음. 동 표류 왜선 등이 관소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며, 당초 바람이 표류할 때 간비오 봉군이 잘못 관측함을 면치 못하였기에, 소속된 곳에서 징계하여 다스림이 마땅하며, 왜관 여러 곳의 손상 유무를 매 달 초하루에 적간(摘奸)하지 못하였는데, 한 해가 마칠 때 다시 별도로 적간하여 장계로 알리는 일은 이미 정식 절목이 있어서, 지난달 28일에 본부 감색과 부산진 감색 임역 등을 보내어 함께 적간하였더니, 왜관 건물 여러 곳에 짐짓 손상된 일은 없다고 하여, 다시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각별히 신칙하였다는 일임.

계해(1743) 정월 18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정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2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李時馨)의 치보 내용에, “구봉 봉군 박옥석(朴玉石)의 진고 내용에, ‘당일 미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라 하였고, 해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 이보신(李輔臣)의 치보 내용에, ‘당일 신시에 응봉(鷹峯) 봉군 안재백(安再白)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우도로 향하였다고 치보하였고, 차례 차례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지세포의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에 소통사 김순귀가 이달 초3일 인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있다」 하였으며, 추후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3일 진시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제12선에 두왜 1인, 격왜 19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했다” 하였음. 위 사항의 왜선 2척은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영술하여 관소에 부칠 계획이고, 동 왜선 2척이 나올 때 부산과 다대포 등의 봉군이 동시에 나오는 배를 이순(二巡)으로 나누어 진고한 것은 착오임을 면치 못하여, 당해 봉군과 차지 감색을 잡아다가 신의 수영에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일.

계해(1743) 2월 초7일

경상우수사 송(宋)이 정월 25일 성첩한 장계. 이달 23일 지세포만호 김려징(金麗澄)이 치보한 내용에, “본포(本浦)의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이 이달 24일 축시에 즉시 문정하였더니, 두왜 1인과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관수의 사서 및 노인 1통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는데, 그 사정과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 배 1척은 이달 23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하기에, 비선 1척에 땀감과 물과 양식 반

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거제부사 이창기(李昌基)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다대포로 건네 보낸 형지(形止)는 추후에 치계한다는 연유임.

계해(1743) 2월 초10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2월 초5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초2일 나와서 지세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 및 천성진 경내의 마거리(磨巨里)로 옮겨 정박하였던 비선 한 척 등은,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렸다가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치계할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초10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천성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비선 한 척은 초9일 묘시에 출발하여, 동 보(堡)의 만호가 사시에 영솔 예인하여 가덕에 도착하여서 장차 제포(齊浦)로 보내려고 하는데, 동풍이 크게 불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같은 날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다가, 당일 진시에 출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지세포에 이르렀고, 저희들의 배가 먼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한 수본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13일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번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은 이번 초8일에서 초10일까지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고 치보하였다 하였음. 부산과 다대포 두 진에서는 지난 정월 23일 신시에 나온 왜선을 24일 진시에 비로소 치보하였는데,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지극히 늦게 알린 것이나, 봄이 시작된 이래로 장마비가 지루하여 구름안개가 사방을 막았으니, 먼 바다를 관측하여 진고하는 사이에 시각이 조금 지체되는 것은 그 형편이 그러한 듯하고, 같은 달 초2일 나와서 가덕 경내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또 가덕도에서 다대포로 전진하다가 끝내 떠났다는 보고가 없어서 매우 해괴하기로, 지금 막 부산진에 조사하여 물었고, 큰 배는 작은 배와 다름이 있어서 역풍이 잇달아 불어 같은 곳에 그대로 머무르

고 있는데, 동 선박이 표류하여 정박한 것이 꼭 한 달이 되도록 이렇게 지체하여 머무는 것은 사목(事目)을 크게 어기는 일이라, 옥포와 가덕 등의 변정 담당 감색을 조사 조치하라는 뜻으로 통제사에게 보고하고, 동 선박이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고 문정한 사이의 일자가 지연된 연유를 아울러 먼저 치계하는 일임.

계해(1743) 2월 14일

동래부사 정(鄭)이 2월 초7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초10일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무르고, 비선 1척은 이번 초4일 신시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였다가, 초6일 유시에 옥포에서 또 천성 경내의 마거리(磨巨里)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초10일 닻거리에서 출발하여 제포만호 염처인(廉處仁)이 관소로 호송하였다’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동 만호의 치통 내용에 ‘당일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즉시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 내용에,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하였고, 큰 배는 배가 크고 바람이 거슬러 같이 오지 못하고, 우리들의 배가 먼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고 운운하여,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달 15일 술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보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 내용에, ‘지세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이달 13일 신시에 출발하여 각 진포의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해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 하였다” 함. 일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임술년(1682) 12월 11일에 나왔던 기미조 이페이양 송사왜의 재차 건넌 배에 격왜 40명 및 □년 8월 초1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뒀으며, 임술년(1682) 12월 11일 나온 기미조 제15선에 격왜 20명 및 동년 8월 초6일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함께 2척의 배가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金重呂)를 정하여 보낸다” 하였음. 17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이 오늘 묘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호송장이 치보하였고, 임술년(1682) 11월 30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및 동년 8월 34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오늘 진시에 관소에서 또한 발선하여 돌아들어간 일로 훈도 별차 등이 수본하였다” 하였음. 23일 신시에 황령산 봉군 이두정(李斗正)과 간비오 봉군 김귀삼(金貴三)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고 하였으며, 24일 진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오늘 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구봉 봉군이 진고하였고,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표류 왜선 1척은, 이달 22일 묘시에 출발하여 조라포만호 및 장목포 별장 등이 차례 차례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술시에 환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다’고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였고, 다대포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의 연유’와 구봉봉군의 고한 바는 한가지였다”고 하였음. 26일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3일 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오기에, 지세포만호가 배를 타고 탐지하러 가서, 왜인의 작은 배를 같은 날 해시에 영술 예인하여 정박하였고,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과 소통사 김행남(金行男) 등이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를 떠나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운운했다’ 하였다” 함. 29일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저포(這浦)에 정박한 표류 왜선 1척은, 이달 28일 사시에 출발하여 유시에 가덕 경내의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28일 묘시에 출발하여 유시에 또한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모두 각 진포에서 영술하여 왔다’고 하였다” 함. 이달 초1일 해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비선 1척은 오늘 진시에 먼저 출발하여, 가덕진 2선장 박지웅(朴枝雄)이 영술하여 와서 사시에 본진에 교부하였으므로, 그대로 본진 2선장 문중발(文重發)에게 명하여 관소로 호송한다 하였는데, 추후에 도부한 동선장의 치보 내용에, ‘동왜선 1척을 당일 신시 쫓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여, 즉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연은, 당초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왜학이 문정한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로, 노인 1통을 받아 이전대로 보

낸다” 하였음.

초3일 묘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닷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어제 진시에 출발하여 신문별장(新門別張) 김명한(金鳴漢)이 영솔하여 오다가, 몰운대 앞바다에 이르러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닻을 내리고 떠서 기다리고 있어서, 서평포만호 염처인이 함께 영솔 예인하게 하여 같은 날 술시에 본진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동 왜선이 몰운대 바깥 바다에서 출발할 때 쇠닻[鐵碇]¹⁶⁷⁾ 1틀[坐]이 암초에 걸려서 들어내어 신지 못하고 표를 하여 두고 막 건져내어 줄 계획이라는 일로 다대포 첨사가 치통하였다” 고 하였음. 초5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에, ‘물에 빠진 쇠닻[鐵碇]을 어제 이미 건져내어 표류 왜선에 주었으며, 동 표류 왜선은 오늘 사시에 관소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므로 그대로 서평포만호가 호송하였고, 가덕 첨사의 전통 내용에,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이 기한이 되어, 대신으로 새 왜학 김진혁(金震赫)이 지난 정월 29일 임소(任所)에 내도하였다」 고 운운하였다’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서평포만호의 치보 내용에 ‘위 사항의 표류 왜선 1척을 미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고, 당초에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소통사가 문정하 가운데, 두왜 1인, 격왜 19명이 함께 탔다고 하였던 것은 전례와 어긋남이 있어서, 그 사이 곡절을 상세히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방금 보낸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기미조 제12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담배 1칭을 가지고, 「지난달 초2일 이른 아침에 비선 1척과 더불어 함께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에 정박하였고, 비선은 먼저 돌아와 정박하였으며, 저희들의 배는 바탕이 둔하여 뒤에 쳐졌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 고 운운하였으며, 당초 지세포에서 문정할 때 격왜 등의 명수(名數)가 격식에 어긋난 곡절을 다시 따져 물었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한 내용에 「격왜 20명 내에 사공왜가 1명인데 20명으로 수를 갖추어 정직하게 말하여야 마땅하나, 별도로 두왜라고 칭하여 이렇게 문정이 서로 어긋나게 된 것이라」 하여, 극히 해괴하다는 뜻으로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고,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이 전대로 보낸다”고 치통하였음. 동 왜선이 당초 표류하여 지세포에 정박하였을 때, 옥포왜학(玉浦倭學) 유극신은 통영에 나가고 소통사 김순귀가 대신으로 문정하였는데, 혼미하고 못난 소치로 한결같이 왜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하여 착오가 생기는 폐단이 있는 것은 매우 극히 해괴하나, 원래 20명의 인원수는 별

167) 원본의 ‘碇’은 문맥으로 보아 ‘碇’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임.

로 가감이 없으니, 후일 문정할 때 반드시 정식에 의거하여 묻고 고하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 등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전후로 나온 왜선 대소 3척의 노인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지난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 및 선착(船着)¹⁶⁸⁾ 등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짐짓 훼손된 곳은 없다”고 하였기에, 다시 더 살펴보라고 각별히 신칙한 일임.

계해(1743) 2월 15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2월 초6일 성첩한 장계. 위와 같음.

계해(1743) 2월 18일

경상우수사 송(宋)이 2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3일 나온 왜인의 비선 1척을 차례 차례 영솔하여 부쳐서 폐단 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냄. 위와 같은 일.

계해(1743) 2월 21일

경상우수사 송(宋)이 2월 11일 성첩한 장계. 지난 정월 초2일 나왔던 왜인의 비선 1척과 초3일 나온 왜인의 큰 배 1척이 지세포 강 입구에 선후로 정박하여, 합계 2척이 선후로 강 입구 한 곳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는데, 비선은 그 덩치가 가볍기 때문에 같은 달 초10일에 먼저 다대포에 교부하였으나, 큰 배는 비선과는 빠르고 둔하기가 전혀 다른지라 과연 미처 비선과 함께 영솔하여 보내지 못한 것은 비록 이치와 형편이 굳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도로 표류하여 도착한 지 꼭 한 달을 채우고 이달 초2일에 비로소 건너 보냈으니, 이는 비록 동풍이 잇달아 불고 먼 바다의 바람과 파도로 능히¹⁶⁹⁾ 바다를 넘지 못한 소치이나, 그 변방 정세를¹⁷⁰⁾ 엄하게 신칙하는 도리에 있어서 결코 전연 책망하지 않아서는 불가하

168) 원본의 ‘船着’은 앞에서는 ‘船倉’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이후로는 이 글자를 사용하였기에 의심스러우나 그대로 둠.

169) 원본의 ‘免’ 한 글자는 ‘克’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니, 당해 지세포(知細浦)와 조라포(助羅浦), 장목포(長木浦), 천성(天城), 가덕(加德), 신문(新門) 등 진(鎭)의 변정(邊情) 차지 병방(兵房) 군관(軍官)과 색리(色吏) 등을 아울러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는 일임.

계해(1743) 3월 초1일

동래부사 정(鄭)이 2월 24일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임술년(1742) 11월 30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및 임술년(1742) 9월 초7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10일 사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고, 임술년(1742) 8월 초3일 나왔던 임술조 3특송사왜 1호선에 격왜 40명 및 임술년(1742) 9월 초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11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1척은 14일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간 일로 수호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임술조 부특송사왜 원역 등의 기한이 이미 임박하여 상선연을 마땅히 배풀어 행하여야 하나, 정관왜의 병세가 매우 중하여 결코 연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건물(乾物)로 들여주기를 원하여, 동 연회의 물품을 건물로 이달 23일 전례대로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준 일임.

계해(1743) 3월 초5일

경상감사 김(金)¹⁷¹⁾이 2월 29일 성첩한 장계 요약. 도부한 기장현감 정수방(鄭壽邦)의 첩정 내용에, “2월 24일 진시에 기장현 남산(南山) 봉군 김순남(金順男)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기장현 경계로 향한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동 현감이 첩정한다”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2월 25일 축시에 별차 이창기(李昌基)와 소통사 박재휘

170) 원본의 ‘遠政’ 두 글자는 ‘邊情’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71) 김(金): 임술년(1742) 9월 26일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갑자년(1744) 5월 13일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떠난 김상성(金尙星)을 가리킨다.

(朴再輝) 유세덕(劉世德) 김명남(金明南) 등이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척은 기미조 1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것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별대관왜 1인,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땀고, 제2척은 기미조 2특송사와 2호선이 재차 건너온 것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땀고, 제3선은 기미조 3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온 것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함께 땀으며, 그 도중의 사정과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 4척의 배는 모두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비선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여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갑자기 역풍을 만나 비선은 간 곳을 모르겠고, 저희들이 탄 배 4척은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어제 유시 쫘에 도착하였다’고 문정하였고,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들여준 뒤에 수호하고 영솔하기 위해 통사 유세덕 김명남 등이 뒤에 처졌으며, 동 왜선 4척은 폐단 없이 밤을 지내고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을 연속하여 들여준다”는 일임.

계해(1743) 3월 초7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성첩한 장계.¹⁷²⁾ 이달 24일 술시에 도부한 기장현감 정수방의 치보 내용에, “당일 신시에 현(縣)의 남산 봉군 김순남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4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기장현의 경계로 향한다’고 진고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해 별차 이창기를 정한다”고 치보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용에, “구봉 봉군 허막남(許莫男)의 진고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또 물마루에서 나와 관소로 향한다’고 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영휘를 정하여 보냈다” 하였음.

25일 초탐장 이영휘의 치보 내용에, “위 사항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선인데 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 하였는데, 동 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

172) 이 사이에 월일과 ‘成貼狀啓’라는 등의 말이 있어야 하나, 원본에는 이 말이 없고, 문서의 문장 앞뒤에도 생략되거나 빠진 글자가 많다. 이 무렵 작성된 앞뒤의 여러 문서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의 정상 격식에서 터무니 없이 생략하거나 빠진 말이 많고 틀린 글자도 적지 않아,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다.

용에, “방금 훈도 현덕연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비선 1척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24일 큰 배 4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였다가, 물마루에서 바람이 불순하여 큰 배 4척은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였고, 저희들은 겨우 노를 저어서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고 운운 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물에 빠져 깨끗하지 않기에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초탐장 축산포만호 이덕량(李德良)과 기장의 주사(舟師)¹⁷³⁾ 대장(代將)¹⁷⁴⁾ 이우성(李友星) 등의 치보 내용에, ‘위 사항의 왜선 4척은 당일 묘시에 출발하여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 등이 문정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기미조 1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별대관왜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담배 1칭을 실어가지고 있고, 제2선은 기미조 2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술 3통을 실어가지고 있고, 제3선은 기미조 3특송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있고, 제4척은 기미조 1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등이 함께 타고 토막목물(土莫木物)¹⁷⁵⁾을 실어가지고, 함께 4척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였으며, 당초 나오다가 표류하여 간 연유는 별차가 기장현 경계에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고, 동 4척의 배가 소지한 노인은 재차 건너온 것이 모두 규정 외이기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에 나온 4척의 왜인의 큰 배는 모두 규정 밖으로 나왔기에,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이시형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24일 동 왜인의 큰 배 4척 및 비선 1척이 대마도에서 일시에 발선하여 나오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큰 배 4척은 표류하여 기장현 경계로 향하고, 비선 1척은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였는데, 기장현의 봉군이 비선 1척이 나오는 사정을 진고하지 않은 것은 극히 해괴하고, 평상시 삼가 신척하지 않은 동 현의 향색(鄕色)¹⁷⁶⁾ 및 봉군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

173) 주사(舟師): 수군(水軍)의 별칭.

174) 대장(代將): 본군의 주장(主將)을 대신하여 임시로 직책을 수행하는 군관(軍官).

175) 토막목물(土莫木物): 토막 토막 잘라 놓은 나무.

다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신칙하는 일임.

계해(1743) 3월 16일

동래부사 정리검(鄭履儉)이 3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4일 신시 쯤에 황령산 봉군 정재무(鄭再武)와 간비오 봉군 윤일삼(尹日三)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4척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고, 1척은 관소로 향한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4척에 문정하기 위하여 별차 이창기를 정하여 보내고, 관소로 향하는 배 한 척을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의 2선장 이영휘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선박 한 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지라, 당일 술시 쯤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여, 즉시 훈도 현덕연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 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2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큰 배 4척과 함께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자 바람이 불순하여 큰 배는 표류하여 좌도로 향하고, 저희들의 비선은 겨우 노를 저어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물에 젖어 깨끗하지 않기에 받지 않고, 고쳐 적어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으며,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기장현 경내로 향한다’ 하였기에 정박하는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고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5일 진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및 좌수영에서 차출하여 보낸 초탐장 축산만호 이덕량의 치통 내용에, ‘어제 신시에 표류하여 오던 4척의 배는 과연 왜선인데, 기장현의 경계 무지포 앞바다에 정박한 뒤 그대로 수호하고, 별차 이창기가 소통사 3명을 거느리고 오늘 축시에 내도하여 문정한 뒤에 되돌아가고 소통사 2명이 왜선을 영솔하여 가기 위해 뒤처졌으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고, 양식과 반찬, 땔감과 물은 전례대로 들여주었다’고 하였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별차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오늘 축시에 기장현 경내의 무지포로 달려갔더니, 왜선 4척이 과연 표

176) 향색(鄉色): 향청(鄉廳)의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및 색리(色吏) 등의 총칭.

류하여 정박했는지라 차례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기미조 1특송왜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별대관왜 1인,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탔으며, 제2척은 기미조 2특송사왜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탔고, 제3선은 기미조 3특송사왜 1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탔고, 제4선은 기미조 1특송사왜 1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24일 이른 아침에 저희들 배 4척이 비선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갑자기 역풍을 만나 비선은 간 곳을 모르겠고, 저희들 배 4척은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어제 유시에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 하였으며,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문정할 계획'이라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6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과 초탐장 축산만호의 치보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왜선 4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어서 수호하면서 양식과 반찬, 땀감과 물은 연속하여 들여주고 있다' 하였기에, 조금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렸다가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다" 하였음.

27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감의 치통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4척이 당일 묘시에 발선하기에, 주사 대장 이우성(李友星) 및 축산포만호 이덕량(李德良)이 호송하게 하였다' 하였고, 동시에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 내용에, '동 왜선 4척을 당일 사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제1척은 기미조 1특송사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술 3통을 실었으며, 제3척은 기미조 1특송사왜의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어유 3통을 실었고, 제4척은 기미조 1특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토막목물(土莫木物)¹⁷⁷⁾ 등을 실었으며, 왜인의 명색과 인원 수 및 바람에 표류한 사연은 당초 무지포에서 별차가 문정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동 배 등이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8일 오시에 황령산 봉군 이태삼(李太三)과 간비오 봉군 김중창(金仲昌) 등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온

177) 토막목물(土莫木物): 토막을 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목재.

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의 사연은 한가지인데, “동 배 등의 초탐장으로 두모포만호 우석구(禹錫龜)를 정하여 보냈더니, 위 사항의 분간되지 않는 배는 왜인의 큰 배로 당일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제1선 송사왜의 배인데, 정관 등정혜(藤正惠) 도선주 등정웅(藤正雄)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진상물건을 실어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당년조 제2선 송사왜의 배로 정관 굴방지(橘房之) 반중 1명, 격왜 40명 및 제3선 정관 굴정신(橘正信) 반중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진상물건 및 일상 도구 잡물을 실어가지고 있고, 제3척은 기미조 제2특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로서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제1, 2, 3선의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 별폭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는데, 기미조 2특송사왜 1호선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 일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9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말하기를 「왜인들의 부조(父祖) 분묘가 구관(舊館)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춘사일(春社日)을 당하여 전례대로 살펴보러 가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왜인이 출입할 때는 별차와 소통사가 데리고 내왕하여 함부로 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하였음. 이달 초4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정월 초2일에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과 임술년(1742) 11월에 나왔던 대관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신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규정 외로 나온 배 5척을 속히 들여보내고, 비선이 소지한 물에 젖은 노인은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아울러 임역 등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제1, 2, 3송사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한 뒤에 받아 올릴 계획임.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과 선착 등의 장소를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각별히 살펴보라는 뜻으로 다시 신칙한 일임.

계해(1743) 3월 26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3월 18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10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당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는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즉각 가덕첨사가 전통한 내용에, ‘초9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로 향한다’고 전통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표류하여 오기에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술하여 유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金震赫)과 소통사 김행남(金行男)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초9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하였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고, 초10일 나온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배 1척이 본포(本浦)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중혁과 소통사 김행남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계해조 제1선 송사 수목선으로,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공간(公幹) 2대관왜 1인과 하대왜 3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서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함. 2척의 큰 배가 이미 함께 나오다가 나누어 가덕 두 곳으로 표류하였으니, 이제 이번 문정 가운데 피차의 간 곳을 거론해야 마땅한데, 범연히 두 척의 배가 표류한 곳만 거론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고, 동 왜선이 소지한 노인 역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변방 정세에 있어서 더욱 극히 소홀하여, 곡절을 물어 조사하게 하였음.

15일 도부한 동 첨사 이시형의 치보에,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우도로 표류한 왜선 1척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제1선 송사 수목선에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3대관왜 1인, 종왜 3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과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10일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도착하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가 지금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 하였음. 왜선이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을 때,

왜학의 문정에는 ‘공간 2대관왜 1인과 하대관왜 3명이 함께 탔다’고 하였고, 혼도의 문정에는 ‘3대관왜 1인과 종왜 3명이 함께 탔다’고 하여, 왜인의 명수에는 비록 가감이 없으나, 옥포왜학(玉浦倭學)이 3대관을 2대관으로 하고, 종왜를 하대왜로 하여 명색이 이렇게 어긋난 것은, 신중하게 묻지 않은 실책을 면하기 어려움. 가덕 첨사가 전통하기를, ‘이달 15일 신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왔는데, 오늘 진시에 서로 만나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혼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남초 1척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동시에 발선하였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날이 저물어 3척은 뒤에 처지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물리치고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음. 위 사항의 왜선 1척을 신시에 영술하여 동암(東巖) 앞바다에 정박하고, 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데 의거하여, 즉시 혼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부특송사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서승왜(書僧倭) 1인,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과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 10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자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였다가 먼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고, 저희들의 배는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는데, 그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음. 왜인의 큰 배 2척은 과연 표류하여 오다가

16일 진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오시에 본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행남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이페이양 송사왜 1호선으로 정관 1인과 반중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과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1통과 동래로 보내는 서계 1통을 가지고 있으며, 제4선 정관 1인, 반중 1명이 또한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제5선에서 17선에 이르는 서계를 전례대로 겸대(兼帶)하여 가졌으며, 제2척은 기미조 부특송

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15일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밤을 지낸 뒤 고생하며 바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표류하다가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의 문정에 의거하여 치보하였음.

초9일 나온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 및 초10일 나온 왜인의 큰 배 2척 중, 1척은 가덕 경내의 닻거리에 정박하고 1척은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배 함께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문정한 뒤에, 재차 건너나온 배는 속히 되돌려 보내는 일로 부산첨사 이시형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음. 2척의 큰 배가 함께 나오다가 나뉘어서 옥포와 가덕 두 곳으로 표류하였으니, 옥포왜학(玉浦倭學)이 가덕에 표류한 왜선에 문정하면서, 피차 배가 간 곳 및 동 왜선이 소지한 노인을 거론하지 않았고, 같은 날 미시에 천성의 유진장(留鎭將)에게 차례 차례 교부하면서 그 시각이 도착됨을 면치 못하여, 가덕진에 물어서 조사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부산진첨사 이시형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더니, 물어서 조사한 회보 내용에, “본진 소재의 왜학이 문정한 초본을 상고하니, 두 척의 배가 나뉘어 표류한 사연 및 노인 두 글자가 또한 명백하게 있으나, 황급하게 적어 전할 즈음에 색리가 과연 시각을 누락하여 잘못 쓴 것을 알지 못한 것은 극히 놀랍기에, 해당 감색에게 각별히 곤장을 쳤다”고 회통하였음. 이에 의거하면 치보는 잘못 관측한 것과 전혀 다른데, 이미 본진에서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였으면 죄를 중첩하여 받지 못하나,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음. 옥포왜학(玉浦倭學)이 초10일 표류한 왜선에 문정한 가운데, 3대관왜를 대관왜로, 종왜를 하대왜로 소홀히 문정하여 명색이 어긋난 것은, 극히 놀라워 조사하여 다스리라는 뜻으로 통제사에게 첩보하였고, 부산과 다대포 두 진에서는 초9일 나온 비선이 바다 안개에 가려 참으로 지적하기 어려움에도, 때때로 드러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봉군이 이미 진고하였는데도 분명하지 않다고 핑계하였다가, 초10일 사시에 비로소 보고하여 온 것은 극히 소홀히하여 늦춘 것이니, 두 진의 감색을 신의 수영에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신칙한다는 일임.

계해(1743) 3월 28일

경상우수사 송(宋)이 3월 일에 성첩한 장계. 위와 같음. 왜선에 뿔감과 물과

양식, 반찬을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 거제부사 이창기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한 일.

계해(1743) 4월 초3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3월 25일 성첩한 장계. 이달 18일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닻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을 호송장 신문별장(新門別將) 김명환이 영솔하여 사시에 본진에 교부하였기에,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박창순(朴昌淳)과 별차 이창기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도 이때이양 송사선으로 정관 굴정일(橋定一)과 반종 2명, 격왜 40명, 제4선 정관 등풍고(藤豊高), 반종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각기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제5선에서 17선까지의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진상물건을 또한 겸대하여 가지고 왔는데, 원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고, 제2척은 기미조 부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15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함께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먼저 도착하여 관소에 부치고, 저희들의 배 2척은 밤을 지낸 뒤에 표류하여 옥포에 이르렀다가 지금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기미조 부특송사 1호선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을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재차 건너온 배는 즉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이시형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음. 이달 18일 술시에 물마루 가에 불을 들고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오가며 머물기에, 좌우에 물어 조사하였으나 원래 표류하여 도착한 곳이 없는데, 봉군들이 아마도 어선(漁船)의 불을 오인하여 진고한 소치인지라,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봉군 및 차지 감색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해(1743) 4월 초10일

동래부사 정리검(鄭履儉)이 3월 29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 사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李時馨)의 치통 내용에, “임술년(1742) 12월 초10일 나온 기미조 제13선 14선 합계 두 배에 격왜 각 20명과 임술년(1742) 4월 26일 나온 별금도왜 1인, 동년 7월 초3일 나온 소금도왜 3명이 나누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水門)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두모포만호 우석구(禹錫龜)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오늘 묘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난 일로 동 수호장이 치보하였다” 하였음.

초10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미시에 구봉 봉군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한다’ 하였고, 당일 오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또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는 일로 구봉 봉군이 진고하였다” 하였음.

11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초9일 표류하여 온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이므로, 같은 날 유시에 옥포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동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행남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 왜 1인과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9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하였으며, 위 사항의 2척 배 가운데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1척은 초10일 미시에 표류하여 가덕 경내에 도착하였는데, 과연 왜인의 큰 배인지라, 같은 날 유시에 가덕 2선장 박지웅(朴枝雄)이 영술 예인하여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했다” 하였음. 13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초10일 거제도도로 표류한 왜선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같은 날 유시에 옥포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동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왜학소통사가 가서 문정하였더니, 「계해조 제1선 송사왜의 수목선으로 격왜 15명과 교대차 나온 공간이대관왜(公幹二代官倭) 1인과 하대관왜 3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초10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역풍을 만나 1척은 뒤에 처져 간 곳을 모르고, 저희들의 배는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에 동 왜학¹⁷⁸⁾소통사가 이달 12일 사시에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기미조 부특송사와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인, 서승왜(書僧倭) 1인, 별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나오다가 바람에 표류하였다」고 운운하였다' 한다" 하였음. 두 척의 배가 나뉘어 표류하였는데, 한 척의 노인의 유무를 상세히 묻지 않은 것은 매우 소홀하여 곡절을 조사하여 물었더니, 13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당일 유시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비선 1척은 이달 11일 사시에 먼저 출발하여 각 진과 포구에서 차례차례 영솔 예인하여 같은 날 해시에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오늘 오시에 출발하여 청천별장(淸川別將) 손준만(孫俊萬)이 영솔하여 와서 미시에 본진에 교부하였으므로, 그대로 본진 2선장 문중발에게 명하여 관소로 호송하여 동 비선을 신시 쯤에 관소에 영솔하여 부쳤다'고 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의 사연은 당초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왜학소통사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동 소지한 노인은 바람에 표류할 때 물에 젖어 깨끗하지 않기에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14일 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기를,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2일 미시에 출발하여 각진 각 포구에서 차례로 영솔 예인하여 13일 자시에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 하였다"고 하였음.

15일 신시에 황령산 봉군 함만강(咸萬江)과 간비오 봉군 이만석(李萬石)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추가로 도부한 구봉 봉군의 진고와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의거하여, 부산첨사가 치통한 사연은 한가지임. 16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2척 가운데 1척은 어제 오시에 먼저 출발하여 제포만호(濟浦萬戶) 신상휘(辛尙輝)가 영솔하여 와서 같은 날 유시에 서평포만호 염처인(廉處仁)에게 교부하였고, 동 만호가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해시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뒤에, 훈도 별차가 다시 문정한 수본 내용에, '당년조 제1선 송사와의 수목선에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삼대관왜 1인, 종왜 3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과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이 함께 나

178) 원본에 '倭船小通事'라 하였으나, '船'은 '學'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오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나뉘어 표류하다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지한 노인의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한 것은 격식에 어긋난 것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 하였음. 동 왜선을 당초 옥포왜학이 문정한 가운데 '공간 2 대관왜(公幹二代官倭)와 하대왜(下代倭)가 함께 탔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 훈도 별차의 문정에는 '3대관왜(三代官倭)와 종왜(從倭)가 함께 탔다'고 하였으니, 왜인의 명수는 비록 가감이 없으나 옥포왜학(玉浦倭學)이 삼대관을 이대관이라고 하고, 종왜를 하대관이라고 한 것은 살필 적의 실책을 면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조사하라고 거듭 신칙하였음. 16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포첨사가 치통하기를, '어제 나온 분간되지 않는 배 3척 중 2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였고, 1척은 두송(頭松) 앞바다에 떠서 머무르기에, 가서 살펴보니 과연 왜인의 큰 배이므로, 다대포 2선장이 영솔 예인하여 전진한다고 운운'하였는데, 당일 사시에 관소에 와서 정박한 뒤 훈도 별차가 문정한 수본 내용에, '기미조 3특송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남초 1칭을 싣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어제 이른 아침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날이 저물어, 2척은 뒤에 처지고 저희들의 배는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는 바, 그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자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닷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1척은 어제 사시에 출발하여 가덕 2선장이 영솔 예인하여 오시에 서평포만 호에게 교부하고, 동 만호가 그대로 영솔 예인하여 술시¹⁷⁹⁾에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다'고 한 뒤에, 훈도 별차가 다시 문정한 수본 내용에, '기미조 부특송사왜 2호는 재차 나온 배로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및 서승왜와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과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번 초10일 이른 아침에 큰 배 2척이 함께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나뉘어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에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음. 17일 미시에 황령산 봉군 김귀역(金貴亦)과 간비오 봉군 한계한(韓戒汗)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같은 날 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당일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179) 원본에 '戊申'이라 되어 있으나 아마도 '戌時'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경신조 제5선에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다고 운운하여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18일 진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15일 표류하여 온 분간되지 않은 배 2척은 모두 왜인의 큰 배인데, 16일 진시에 옥포만호와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오시에 동 포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소통사가 가서 문정하였더니, 「당년조 이떼이양 송사왜 1호선에 정관 1인,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있으며, 동년조 제4선 정관 1인, 반종 1명이 함께 타고 서계와 별폭 및 제5선에서 17선의 겹대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있으며, 제2척은 기미조 부특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로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15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나오다가 역풍을 만나 나뉘어 표류한 사정’이라 하였다” 함. 21일 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달 20일 진시에 출발하여 각진 각포에서 차례 차례 영술 예인하여 유시에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하였으며, 훈도 현덕연은 공간으로 통영에 갔기에 출사역관(出使譯官) 박상순(朴尙淳)을 임시로 차출하여 살피게 하였다”고 함. 21일 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금년 2월 24일 나왔던 기미조 1특송사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 1척과 2특송사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 1척, 합계 2척에 격왜 각 30명 및 신유년(1741) 3월 18일 나온 별대관왜 1인, 임술년(1742) 4월 초1일 나온 별금도왜 2인, 같은 달 29일에 나온 소금도왜 8명이 나누어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이기 위해 오늘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및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24일 유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오늘 묘시에 출발하여 신문별장 김명한(金鳴漢)이 영술하여 와서 사시에 다대포 2선장에게 교부하고,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오시에 관소에 와서 정박한 뒤에 가훈도 및 별차가 다시 문정한 수본에, ‘당년조 이떼이양 송사왜 정관 굴정일(橋定一), 반종 2명, 종왜 1명, 격왜 40명 및 제4선 정관 등풍고(藤豊高), 반종 1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각기 서계와 별폭 각 2통

과 진상물건, 제5선에서 17선까지의 서계와 별폭 함께 각 13통을 또한 겸대하여 가졌으며, 기미조 부특송사와 1호가 재차 나온 배에 격왜 4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15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나오다가 나뉘어 표류하여 차례 차례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서계와 별폭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고, 재차 건너온 배는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이달 초10일 닷거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옥포왜학(玉浦倭學)의 문정 가운데 동시에 나온 두 척의 배가 나뉘어 표류한 한 조목 및 노인의 유무를 거론하지 않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 조사하라 하였더니, 이제 도착한 회통(回通)에, 가덕의 색리(色吏)가 말한 곡절을 치통하면서 '당시 누락한 글이 있다'고 하였기에, 해당 진에서 각별히 곤장을 치라고 하였음.

그 뒤 27일 사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22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은 어제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가다가, 역풍을 만나 1척은 바다 가운데서 만나절을 표류하다가 해가 저문 뒤에 그대로 돌아들어갔고, 1척은 바람을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왜선이 소지한 노인이 물에 젖은 것은 격식에 어긋난 것이기에 고쳐 써서 바치고, 규정 외로 나온 배는 즉시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임역 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이때이양 제4호선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한 뒤에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며, 경신조 제5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이번 초9일 비선 1척이 바람에 표류할 때 및 초10일 큰 배 2척이 바람에 표류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 봉군이 모두 관측을 놓친 것은 마땅히 각기 그 소속된 곳에서 엄하게 징계하여 다스리고, 그 뒤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1척은 그 배가 돌아들어간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고, 당년조 제1선, 2선, 3선 송사왜의 원역에 대한 다례는 이달 15일로 정했으나, 신병이 갑자기 중하여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홀로 가서 베풀어 행한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해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3통은 받아서 해조로 올려보냄. 이전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순부한 별서계(別書契)의 회답서계를 고쳐 내려왔기에, 동 해조의 회서 1통 및 본부의 회서 1통 함께 2통을 이달 18일 병폐없이 관수왜에게 들여주었음. 이달 초10일에 나온 왜선에 옥포왜학이 문정할 때 왜인의 명수를 비록 잘못 보고한 일은 없으나, 3대관을 2대관으로 하고 종왜를 하대왜라 한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인지라, 경계하여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동 왜학 김진혁의

죄상을 유사(攸司)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리점의 장계를 보면 지난 초10일 나온 왜선에 대한 옥포왜학(玉浦倭學)의 문정에는 왜인의 명수는 비록 잘못 보고한 일은 없으나, 3대관을 2대관이라 하고 종왜를 하대왜라고 한 것은 매우 소홀하여, 경책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동왜학 김진혁의 죄상을 유사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왜선에 대한 문정은 도저히 가볍지 않은데,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이 몽매하여 살피지 못한 것은 매우 극히 놀라우니, 통제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8년(1743) 4월 13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金光世)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해(1743) 4월 12일

동래부사 정(鄭)이 4월 초4일 성첩한 장계.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1척이 돌아들어가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2일 사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이달 24일 나왔던 기미조 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 1척에 격왜 40명과 임술년(1742) 9월 28일 나왔던 임술조 부특송사왜 정관 굴칙(橋則)과 도선주 등상우(藤尙友)와 유선주(留船主) 등정관(藤政寬), 봉진상압물 1인, 시봉 2인, 반종 4명과, 임술년(1742) 8월 초3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2월 24일 나왔던 기미조 3특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과, 임술년(1742) 9월 28일 나온 임술조 부특송사왜 부관(副官) 평교효(平喬曉), 이선주(二船主) 등구경(藤久敬), 사복압물 1인, 반종 3명과, 임술년(1742) 8월 초3일 나왔던 소금도왜 3명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함께 2척이 돌아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8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박상순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는데, 전후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3척이 당일 묘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동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이라 하였고, 방금 바친 가훈도 및 별차의 수본에 “지난 달 초하루 동서 왜관과 선착 등의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살피라는 뜻으로 더욱 더 신칙한 일임.

계해(1743) 4월 15일

一. 경상우수사 이(李)가 4월 초5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술시에 옥포만호 박창윤(朴昌琬)과 지세포만호 김려징(金麗澄)이 한결같이 치보하기를, “왜인의 비선 2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옥포왜학 김려혁(金麗赫)의 수본에, “이달 초4일 해시에 왜인의 비선 2척에 즉시 가서 문정하였더니, 제1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과, 제2척에 두왜 1인, 격왜 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함께 타고 각기 은자 5,000냥을 실어 가지고 나왔으며, 그 도중(島中)의 사정과 바람에 표류한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 2척의 배는 이달 초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 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고 하며, 땀감과 물과 양식 반찬은 전례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뜻으로 지방관인 거제부사 이창중(李昌重)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고, 동 왜선을 다대포로 건너 보낸 실상은 추후에 치계할 일.

계해(1743) 4월 16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4월 초8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5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용에, “어제 유시에 구봉 봉군 박월백(朴月白)이 진고하기를, ‘신시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주변에서 표류하여 옥포로 향한다’고 하였고, 차례 차례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가훈도 박창순과 별차 이창기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2척에는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5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각 1인이 나누어 타고, 노인 및 은자 각 5,000냥씩 실어가지고 이달 초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2통은 받아 올려 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2통을 이전대로 동래부로 보낸다”고 하였음.

이제 이 2척의 왜선이 초4일 나을 때 부산과 다대 두 진에서 봉군이 진고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대충 평계하다가 초5일에 비로소 치보한 것은, 변방 정세로¹⁸⁰ 헤아리건대 매우 늦춘 것이라, 두 진의 변정 차지 감색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다는 연유임.

계해(1743) 4월 21일

전교에 이르기를 “생황과 피리를 부는 사람 및 생황과 피리를 배우러 갈 사람은 생황과 피리를 가지고 문정전(文政殿)¹⁸¹에 오라는 뜻으로 분부하라” 하셨음.

계해(1743) 4월 22일

전교에 이르기를 “어제 대령한 집사전악(執事典樂)을 다시 정원(政院)에 와서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음.

계해(1743) 윤4월 초4일

一. 동래부사 정리검이 4월 28일 성첩한 장계. 이달 20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에, “올해 2월 28일 나왔던 기미조 2특송사와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및 임술년(1742) 9월 17일에 나온 중금도에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17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의거하여,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내어 수호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은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간 일로 동 수호장이 치보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1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당일 미시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 이영휘(李永輝)를 정하여 보냈고, 왜인의 큰 배를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제16선에 격왜 20명과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

180) 원본의 ‘邊將’은 전후 사례로 보아 ‘邊情’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81) 문정전(文政殿): 창경궁 안에 있는 건물의 하나.

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22일 유시에 황령산 봉군 김귀역(金貴亦)과 간비오 봉군 한계한(韓戒汗)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23일 사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어제 유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 모포만호 우석구를 정하여 보내고, 왜인의 작은 배를 같은 날 해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각기 노인과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 및 별대관왜의 짐을 가지고 나왔으며, 노인 2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나온 왜선 대소 아울러 3척의 노인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21일 왜선 1척이 나올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 봉군이 모두 관측을 놓쳤기에 각기 그 소속된 곳에서 엄하게 다스려 징계하게 하였음. 당년조 제1선 2, 3선 송사왜의 원역이 이달 21일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그대로 하선연을 베풀어 행하였음. 방금 바친 임역 등의 수본에, “일본국 축전주(竺前州)¹⁸²에서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주어 회사하는 일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이 이제 이 비선 편에 나와서 관수왜에게서 받아 올려 보낸다”고 수본한다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서계 2통과 별폭 3통을 해조에 올려보내는 일임.

축전주(竺前州) 질빈포(姪濱浦)에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 준데 대한 회유서계 등본.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답장을 올림. 화첩(華帖)을 멀리 보내주셔서 이로서 귀국이 화평함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방(本邦)은 고루 음식¹⁸³ 걱정이 없습니다. 본방 축전주(竺前州) 질빈포(姪濱浦)에 사는 주민 육구가(陸口加)의 한 척 배가 지난해 표류하여 귀국 경상도 울산 염포진(鹽浦津)에 기착(寄着)하였는데, 다행히도 건져내어 구제하는 은혜를 입고, 또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우리 관사에 보내어 저희 고을로 돌려보내 주셨기에, 모두 동무(東武)에 알리니 지극히 감탄하였습니다. 실로 이

182) 원본에 ‘竺前州’라 하였으나, 이는 ‘竺前州’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임.

183) 음식: 원본의 성핍(盛乏)은 음식을 가리킨다.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봄의 약(祲) 제사와 여름의 체(禘) 제사는 양(陽)의 도리로 마실 것[飮]을 위주로 하고, 가을 제사인 상(嘗)과 겨울 제사인 증(蒸)은 음(陰)의 도리로 먹을 것[食]을 주로하여, 양의 도리는 항상 넉넉하고 음의 도리는 항상 모자라는데, 넉넉한 것은 여름에 비로소 성대하고 [盛], 모자라는 것[乏]은 가을에 이미 성대하다.’고 하였다.

웃나라의 우의에서 나온 것이라, 차사를 보내어 다시금 누누이 진술하며, 미미한 산물로 정성을 표하오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寬保) 3년 계해(1743) 2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별폭(別幅): 수랍대청명(粹籙大清名) 10개.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채화 오촌럼경(彩畵五寸匳鏡) 2면(面). 계(計). 관보 3년 계해 2월 일.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서찰을 올립니다. 조선국에서 표류민 6구(口)를 이미 외람되이 보내주시어 깊이 후의에 감사하며, 이에 남궁(南宮)¹⁸⁴에 답장을 올립니다.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

一.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대연갑(彩畵大硯匣) 1개. 채화대층갑(彩畵大層匣) 1비(備).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10개. 계(計).

一. 부산영공 별폭: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흑칠중층갑(黑漆中層匣) 1비(備). 적동중약관(赤銅中藥罐) 5개.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축전주에서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어 회유(回諭)한 일로 바친 서계에 대한 회답과, 동래 부산에서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에서 말을 만들어 지어 내게 하고, 별폭(別幅)의 회례(回禮)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별폭회례(別幅回禮). 인삼 1근. 범가죽 1장. 흰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흰무명 10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花席) 3장. 닥장 불인 유둔(四張付油氈) 2부. 참먹[眞墨] 20개.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기. 흰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흰목면 5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건륭 8년(1743) 윤4월 초5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해(1743) 윤4월 12일

윤4월 초4일 경상우수사 이우(李玆)의 장계 내용. 지난 달 초4일 왜인의 비선 2척에 옥포왜학 김진혁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초6일 유시에 성첩한 옥포만호 박창윤(朴昌琿)의 치보에, “이제 이 본진 강 입구

184) 남궁(南宮): 예조(禮曹)의 별칭.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2척은 이달 초6일 진시에 출발하여, 차례차례 영술 예인하여 이달 초7일 이미 다대포로 건너보냈다”고 하였는데, 위 사항의 왜인 비선 두 척이 당초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동 옥포의 만호 박창윤과 지세포만호 김려징이 한가지로 치통하기를, “이달 초4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로 나왔는데, 술시에 만나지 못하고 같은 날 해시에 옥포 강 입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치보하였음. 가덕첨사 성덕함(成德涵)과 천성만호 박만화(朴萬和)가 치보하기를, “초4일 신시에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바람 없이 표류하여 그대로 머물렀는데, 해가 저물어 그 향한 곳을 알지 못하고,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바라보니 동 배는 당일 밤 사이에 표류하여 좌도와 거제도로 표류하여 닿았다”고 전통하였기에, 탐문하러고 부산첨사 이시형과 다대포첨사 이보신(李輔臣)에게 치통하였더니, “초4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가에서 모습을 나타냈다가 구름이 어두운 먼 바다이고 날이 또한 저물어서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하였음.

동 왜선 2척은 이달 초4일 이미 옥포 강 입구로 향하였다가 해시에 정박하였는데, 천성 가덕 두 진에서는 ‘초4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 표류하여 머물다가 그대로 해가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한 것은 소홀함을 면치 못하고, 부산의 두 진에서 초4일 관측한 상태를 초5일에 비로소 성첩하여 치보한 것은 이미 극히 너무 늦었으며, 동 왜인의 비선 2척이 초4일 물마루에서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바다가 어둡고 날이 저물어 향한 곳을 모른다고 한 것 역시 매우 놀랍고 소홀하니,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더니, 가덕첨사 성덕함과 천성만호 박만화가 함께 조사 보고한 내용에, “제송을 받고 당해 연대(烟臺) 망장(望將)인 수군(水軍) 김태영(金泰永)과 말곶(末串) 망장인 수군 김윤(金允)을 잡아 와서 추문하였더니, 공초 내용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멀리 관측하는 한 가지 일에 불과한데 어찌 소홀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달 초4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되돌아 나오기에 즉시 진고하였고,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는데 그대로 날이 저물어 먼 바다가 캄캄하게 어둡고 또한 불을 든 것도 없으므로 향한 곳을 과연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동 배가 표류하여 향한 시각과 바다의 거리가 이미 멀고 날이 저물어 어두운 밤인지라, 가고 머문 곳을 관측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형편이 그럴 듯하나, 신칙하신 아래 엄한 제송을 받들고 보니 지극히 황송하여 조사 보고한다”고 하였음.

부산첨사 이시형과 다대포첨사 이보신이 조사 보고하기를, “변정(邊情)¹⁸⁵⁾을

단속함에 지극하게 마음쓰지 않음이 없었으나, 지난달 초4일 신시에 봉군이 진고하기를 물마루에서 되돌아 온 배 2척이 모습을 나타내었다가 때때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바다 안개에 가려 있었고 해가 또 저물어,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진고(進告)가 극히 상세치 못하였기에, 막중한 변방 보고¹⁸⁶⁾를 범연하게 치통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상세히 탐지하여 다시 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더니, 동 봉군이 진고하기를,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밤새워 살펴보았으나 원래 불을 들고 나온 일이 없어서 향한 곳을 모르겠고, 밝기를 기다려 바라보니 표류하거나 머문 일이 없다’고 진고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이제 이렇게 조사하여 물어보라는 제송이 있기에,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당해 봉군을 모두 잡아다가 그날 왜인의 비선 2척이 가고 머문 사연을 다시 조사 문초하였더니, 그들이 고하는 바가 당초 관측한 것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며, 초4일 나온 배를 초5일에 거론하여 보고한 것은 비록 봉군이 즉시 진고하지 않은 소치이나, 물어서 조사하라는 명령 아래 황공하여 죄를 기다리고 있으며, 망군(望軍) 등은 엄하게 징계한 뒤에 조사 보고한다” 하였음. 앞의 왜인의 비선 2척이 지난달 초4일 물마루에서 나올 때 지세포와 옥포 두 진에서 같은 날 유시에 관측하였으나, 부산과 다대, 천성, 가덕 네 진에서 같은 날 관측하여 치보하였는데, 같은 바다를 관측하면서 다름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지세포와 옥포 두 진은 바다의 거리가 조금 멀고, 부산과 다대, 천성, 가덕 네 진은 물마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관측한 것이 지세포와 옥포 두 진보다 시간이 앞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부산 다대 두 진에서 초4일 나오다가 표류한 배를 밤을 지난 뒤인 초5일이 되어서야 치보한 것은, 비록 봉군이 분명하게 진고하지 않은 데 연유하였으나, 변방¹⁸⁷⁾ 정세로 헤아려보건대 소홀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는 것은 불가하여, 동 부산 다대 두 진의 변정 차지 감색을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좌수사 심해(沈階)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위 사항의 곡절을 조사하여 묻느라 왕복하는 사이에 일자가 자연히 지연된 일임.

계해(1743) 윤4월 15일

동래부사 정리점이 같은 달 초8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1일 신시에 도부

185) 원본의 ‘還情’은 생각건대 ‘邊情’을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186) 원본의 ‘還報’는 생각건대 ‘邊報’를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187) 원본의 ‘還정’은 ‘邊情’을 잘못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에, “올해 3월 15일 나온 기미조 3특송사와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과, 임술년(1742) 9월 18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동년 10월 초3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의거하여, 본진 2선장 이영휘를 정하여 보내어 수호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이 오늘 인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수호장이 치보하였다” 함.

초5일 미시에 황령산 봉군 최치신(崔致信)과 간비오 봉군 김험남(金險南)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누어 나온다”고 하였고, 같은 날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5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누어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장으로 본진 2선장을 정하여 보냈더니, 그 중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데 술시에 먼저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그 나머지 4척은 절영도 바깥 바다에 머물고 있으므로 초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초6일 해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절영도 바깥 바다에 머물고 있었던 분간되지 않는 배 4척 중 1척은 우리나라 표류민의 배인데, 오늘 진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3척은 모두 왜인의 큰 배인데 사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전후로 와서 정박한 왜선에 아울러 문정하고, 표류민은 공초(供招)를 받기 위하여 배와 아울러 내보내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당일 신시에 도부한 동 임역의 수본에, ‘제1척은 당년조 1특송사와 1호선으로 정관 평상구(平常久), 도선주 등시서(藤時敍), 봉진압물 1인, 반중 4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3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2특송 3특송이 서계와 별폭 각 2통을 겸대(兼帶)하였고, 제2척은 경주(慶州) 표류민의 배인데 표류민 3명 및 영술하여온 중금도왜 2인, 사공왜(沙工倭) 1명, 통사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으며, 제3척은 동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의 배인데, 정관 등구원(藤久遠),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 및 표류민 2명을 증거로 잡아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폭과 별폭 2통을 가졌으며, 제4척은 위 사항의 1특송왜 2호선으로 이선주(二船主) 굴청백(橋淸白), 예복압물(禮卜押物) 1인, 반중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기용잡물(器用雜物)을 가졌으며, 제5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차왜의 배인데, 정관 굴창궤(橋昌軌), 봉진압물 1인, 반중 5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

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졌고, 정관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각기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여 등본 1통 및 표류민의 배 노인 1통만 올려보내며, 1특송사 2호선의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에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렸고, 표류민 5명과 배는 아울러 부장(部將)에게 명하여 올려보내는 일'로 수분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 및 노인을 전례대로 올려 보내고, 표류민의 공초를 받기 위해 계해년(1743) 윤4월 초6일 사공(沙工) 사노(私奴) 유남이(柳男伊) 나이 39세, 격군 사노 김팔선(金八先) 나이 35세, 양인(良人) 홍삼선(洪三善) 나이 24세, 양인 김자은노미(金自隱老未) 나이 15세, 역노(驛奴) 김서우(金西右) 나이 14세 등의 호패(號牌)를 각기 현납(現納)¹⁸⁸⁾하고, '저희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하여 어느 곳에 갔다가 이렇게 표류하여 다른 나라에 표류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는지, 그 사이 곡절을 숨김없이 곧바로 고하라'고 주문하였더니, '저희들은 모두 경주부 동해 바닷가의 지경리(地境里)¹⁸⁹⁾에 살고 있는 해부(海夫)로서, 본부의 일찬(日饌)으로 광어(廣魚)를 잡기 위해 옥산서원(玉山書院)¹⁹⁰⁾ 소속 김석벽(金石壁)의 배를 함께 타고 그물을 가지고 지난해 11월 24일 오시에 발선하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올 때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북풍이 크게 일어나서, 미목(尾木: 키)과 돛대와 노목(櫓木: 노)이 일시에 부러져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서 여섯 낮 일곱 밤을 경과한 뒤 12월 초1일 아침밥 먹을 때 비로소 한 섬에 도착하니, 곧 일본국 석견주(石見州) 빈전포(濱田浦)라 하였습니다. 그곳 왜인들이 이렇게 표류하여 온 모양을 보고는 즉시 살피 구급하여 매 끼니 때마다 음식을 공급하고, 날마다 술을 공급하고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띠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으며, 같은 달 13일 그곳에서 저희들은 각기 말을 타고 육지로 가고, 배는 왜인이 타고 와서 차례차례 교부하여 26일 나가사키[長崎] 섬에 도착하니, 매 끼니의 음식을 공급하고 5일마다 술을 공급하고, 무명 저고리 각 한 벌, 남비 2개, 중간 물통 2개, 작은 식통(食桶) 3개, 사기 중발 10넝, 사기 접시 5넝, 소반(小盤) 5넝 등의 물건을 내어 주고, 배의 삼판(杉板)을 다듬어 수선하고 미목(尾木)과 돛을 갖추어 주었으며, 올해 2월 28일 나가사키 섬에서 출발하였는데, 저희들이 탄 배는 왜인이 차례차례 영술하여 3월 27일 대마도 부중에 도착하니, 음식 공급

188) 현납(現納): 당사자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바침.

189) 지경리(地境里): 현재 경주시 감포읍(甘浦邑) 오류리(五柳里)에 있는 지경 마을.

190) 옥산서원(玉山書院):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모신 서원으로 지금의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다.

등의 일은 나가사키와 다름이 없었고, 단목(丹木) 각 2근, 지삼초(枝三草) 각 10갑씩 나누어 주었으며, 선체가 손상된 곳은 못을 박아 주어, 4월 16일 배를 타고 왜선 4척과 함께 출발하여 이달 초2일 한꺼번에 악포(鰐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초5일 이른 아침에 5척의 배가 일시에 발선하였는데, 저희들의 격군 가운데 김자은노미와 김서우 2명은 왜선에 옮겨 타고 나오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물살이 거슬러서, 왜선 1척은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고 그 나머지 왜선 3척과 저희들의 배는 바다 가운데서 밤을 지낸 뒤 차례 차례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호패는 당초 바다로 나갈 때 모두 집안에 두어 차고 있지 않았으며, 그 밖의 나머지 사정은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남은 무리가 무지하오니 상고하여 처치하여 주시라'고 하였음. 같은 날 다시 추고하여 말하기를, '이제 차왜가 가져온 서계 등본을 보니, 대마도 부중에서 양식과 옷을 지급 운운하였으나, 너희들의 공초 가운데는 대마도에서 갖추어 지급했다는 사연이 없는데 무슨 연고로 사실대로 고하지 않느냐? 다시 정직하게 고하라'고 하여 추문하였더니, '저희들에게 대마도 도중에서 비록 의복을 내어 준 일은 없으나, 이미 불견노(不見奴)와 나가사키[長崎] 섬에서 갖추어 지급했으므로, 서계 가운데 말을 한 듯하다'고 한 다짐에 의거하여 동 표류민 등을 전례대로 다시 취초하기 위해 도부장에게 명하여 압송하게 하고 그 성명 성책을 만들어 보낸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표류민에게 부산진에서 공초를 받은 뒤에 본부로 보내어 다시 질문을 내어 추문하였더니, 동 진에서 공초한 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위 상한(常漢) 등이 깊은 곳으로 표류하여 들어가서 별차왜가 이미 영솔하여 왔고, 대마도 도주가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고하는 차왜가 나왔으니, 아울러 접대해야 마땅하니, 접위관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고, 차왜가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한 뒤에 받아서 올려 보낼 계획이며,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 1통 및 표류민 배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고, 표류민의 직역(職役)과 성명 성책을 만들어 비변사로 보내며, 위 사항의 두 차왜에게 증정할 연례의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기 바라고, 1송사왜가 가져온 서계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하고 받아서 보낼 계획이며, 2호선의 격식에 어긋난 노인은 속히 고쳐 써서 바치라고 다시 임역 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각별하게 책망하여 타 이르게 하였음. 무릇 표류민이 함부로 바깥 바다로 다니다가 다른 나라로 표류해 들어간 죄는 이미 정식이 있으니 본부에서 엄하게 가두어 형벌을 시행하여 정배하는 한 조목은 도신에게 알려 거행할 계획이며, 당년조 이페이양 송사 제4

선 송사왜의 원역에 대한 하선연을 이달 초2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고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고 하여 다시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각 별히 신칙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리검의 장계를 보면 표류민 등이 깊은 곳에 표류하여 들어가 차왜가 이미 영솔하여 나왔고,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차왜가 나왔는데,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한데 접위관을 인근 고을 수령 가운데서 차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고, 두 차왜에게 증정할 잔치의 예단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기 바라고, 표류민들이 함부로 바깥 바다로 나가 표류하여 다른 나라로 들어간 죄는 이미 정식이 있으니 형벌을 시행하여 정배하는 한 조목은 도신에게 보고하여 거행한다 하였는데, 이제 이번 두 차왜의 접대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별폭의 회례 및 연례의 예단 잡물은 전례를 참고해서 마련하여 들이고, 표류한 사람들의 죄를 확정하는 한 조목은 본도에서 정식으로 거행하되, 무릇 배는 멀리 외양(外洋)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찍이 금령이 있었으나, 위의 상한(常漢) 등이 거주하는 곳의 관원이 평상시 신칙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류하여 다른 나라 경내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으니, 당해 원적(原籍) 관원인 경주부윤은 유사에 명하여 엄중하게 추고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음이 어찌할지? 건륭 8년(1743) 윤4월 16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金光世)¹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남와(南訛)의 계절¹⁹²⁾이 다가왔는데, 귀국에서는 편안하신지 우러러 걱정하는 마음 배로 간절합니다. 본방 역시 별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무(東武)에 조근(朝覲)¹⁹³⁾하러 갔다가 외람되이 은혜로운 대우를 받아 속히 휴가를 받고는 산과 물을 탈 없이 건너 이달 5일에 저희 고을로 돌아왔기에, 이에 궐창례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보잘 것 없는 물품을 갖추어 멀리 정성을 표시하오니,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오며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1743) 계해 4월 일.

191) 김광세(金光世, 1700-?): 상주김씨로 자는 제미(濟美)이며, 영조 계축년(1733) 알성시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형조참판과 강화유수, 대사헌,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92) 남와(南訛)의 계절: 농사철인 여름을 가리키는 말.

193) 조근(朝覲): 번신(藩臣)이 군주에게 뵈러 가는 절차.

별폭 : 채화용항(彩畵龍桁 : 채색 용무늬 옷걸이) 1각(脚). 채화대원분(彩畵大圓盆 : 채색의 크고 둥근 동이) 10매(枚).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구리로 만든 삼단 쟁반) 1부(部).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납으로 만든 가운데 크기의 쟁반) 20개. 정(整).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합하게 글을 바칩니다. 새로 오는 여름에 아득히 생각하면 각기 지내시기가 편안하신지, 쓸리는 마음 평상시보다 배로 더합니다. 저는 외람되이 휴가를 받아 이달 5일 저희 고을로 돌아왔기에 이에 굴창궤(橋昌軌)를 차출하여 남궁(南宮)에 서찰을 바치오니, 전달해 주시기를 청하오며, 미미한 물건으로 신의를 표하오니 바라건대 받아들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1743) 계해 4월 일.

동래부사공 별폭 : 수정립서(水精笠緒 : 수정갓끈) 1결(結).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 가죽으로 감싸 구슬을 드리운 벼루 갑) 1비(備). 수랍중명반(粹蠟中茗盤 : 납으로 만든 중간 크기의 차 쟁반) 10개. 정(整).

부산영공 별폭 : 흑칠중연갑(黑漆中硯匣) 1비. 수랍대명(粹蠟大皿) 10매.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정.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조선국 예조 대인 합하게 서찰을 올립니다. 첫여름에 아득히 생각건대 귀국이 맑고 태평하겠지요? 본방 역시 그러하니 기쁨을 어찌 건디겠습니까? 이제 귀국 경상도 경주의 어민 배 하나에 탄 5명이 지난해 11월 24일 바다에서 공무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바람에 떠내려가다가 12월 초1일 본방 석견주(石見州) 빈전포(濱田浦)로 흘러 들어왔기에, 영주(領主)가 보살펴 나가시키 청사(廳司)로 보내어 돌아가며 전달하여, 우리 유사(有司)에게 공문을 부치고 지난 달 27일 저희 주에 도착하였기에, 그대로 옷과 양식을 지급하고 배와 도구를 수리하여, 특별히 등구연(藤久連)에게 명하여 송환하게 하였습니다. 별록의 보잘 것 없는 물품은 웃으며 받아 주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삼가 이렇게 올리며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1743) 계해 4월 일.

별폭 : 채화침괘연(彩畵枕掛硯) 1비. 채화반탁(彩畵飯桌) 10매.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1위(圍). 계(計).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합하게 글을 바칩니다. 지금 계절에 모두 지내시기가 진중하시다니 위로되는 마음 한량 없습

니다. 귀국 경상도 경주의 어민 배 하나에 5명이 지난해 12월 초하루에 표류하여 본방 석견주 빈전포에 도착하였다가, 지난 달 27일¹⁹⁴)에 저희 고을에 도착하였기에 그대로 보살펴주고 수리하여 이에 등구연(藤久連)을 차출하여 호송하게 하오니, 남궁에 갖추어 보고하시기를. 다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잘 것 없는 물품은 신의의 표시이니 웃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1743) 계해 4월 일.

동래부사 영공 별폭: 채화화사갑(彩畵華篩匣) 1비. 채화중연갑(彩畵中硯匣) 1비. 적동소약관(赤銅小藥罐) 5개. 계(計).

흑칠중충갑 1비. 흑칠중원분(黑漆中圓盆) 10매. 적동소약관 3개. 계(計).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고하는 차왜 굴창래 및 경주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구연이 가져온 서계 회답 및 동래 부산에서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고, 별폭의 회례 잡물을 전례대로 마련하는 것을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대마도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의 별폭 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예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먹 20홀.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에서의 회례. 각기 흰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무명 5필. 황모필 1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경주의 표류인을 영솔하여 온 차왜의 별폭 회례. 인삼 1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화석 3장. 녁장 불인 유둔 2부. 참먹 30개.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기 흰 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20개. 본도에서 지급.

건륭 8년(1743) 윤4월 16일 동부승지 신 김광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94) 원본의 ‘兪’은 ‘念’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계해(1743) 윤4월 29일

동래부사 정리점이 윤4월 23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에, “올해 3월 초9일 나왔던 비선 1척 및 같은 해 4월 초4일 나왔던 비선 2척, 합계 3척에 두왜 각 5명과 임술년(1742) 9월 28일 나왔던 중금도왜 2인이 나누어 타고 관수왜의 사서 및 별대관왜의 짐을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에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3월 초10일 나왔던 기미조 부특송사왜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및 임술년(1742) 2월 8일 나왔던 소금도왜 2명. 동년 10월 19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초10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이 오늘 진시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음.

19일 진시에 황령산 봉군 이인석(李仁石)과 간비오 봉군 이귀복(李貴福)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해시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당일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두모포 만호 우석구를 정하여 초탐하러 보내어, 왜인의 작은 배를 같은 날 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뒤에, 즉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이 함께 타고 구리 13칭(稱)을 실었으며, 제2척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생동(生銅) 12칭을 실었으며, 제3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생동 12칭을 실어가지고, 합계 4척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있는데, 두왜의 말이 「별무(別質) 생동(生銅)이 오늘 오오사카성[大坂城]에서 차례 차례 나왔기에 5,000근을 먼저 실어 왔다」고 운운 하였으며, 노인 4통을 받아 보낸다’고 수본하였다”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노인은 이전대로 잔치를 베푼 뒤에, 동 왜인이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별폭 2통과 비선 노인 4통을 받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

계해(1743) 6월 초2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5월 21일 성첩한 장계. 이달 20일 도부한 기장현감 정수방(鄭壽邦)의 치보 내용에, “당일 기장현 남산 봉군 장귀생(張貴生)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기장현 경내로 향하는 듯하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보낸다”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이 치통하기를 “치통에 의거하여 가서 문정하기 위해 별차 이창기에게 전령하였다”고 치보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별차 이창기의 수본에는, “전령에 의거하여 당일 기장 경내로 달려갔더니, 과연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정박하였기에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19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시들하여 전진하기가 어렵기로, 밤을 지낸 뒤에 20일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상세히 문정할 계획이고, 동 별차 이창기는 임기가 차서, 대신 내려온 역관이억(李億)이 당일 도입하였다”고 치보하였음. 위 사항의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당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기에, 즉시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억에게 문정한 수본의 사연은 전별차 이창기의 문정과 한가지이며,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

계해(1743) 6월 15일

사역원(司譯院) 관원이 도제조(都提調)의 의도로 계품하기를, “부산의 훈도와 별차 등은 비록 낮고 미천한 사람이지만, 조정에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접대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의관(衣冠)의 반열¹⁹⁵⁾로 하였는데, 무릇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혹은 나포하거나 혹은 파직하거나 혹은 곤장을 치는 것이 모두 조정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은, 본디 체면이 구별되어서입니다. 방금 왜학(倭學) 역관 이억(李億)¹⁹⁶⁾ 등이 본원에 정장(呈狀)하여 말하기를, ‘경상 감영에서 돈을 주조하는데 사용되는 생동(生銅)¹⁹⁷⁾을 즉시 무역하여 들이지 않은 일로 부

195) 의관(衣冠)의 반열(班列): 관복을 차려 입는 관원의 서열.

196) 이억(李億, 1698-?): 정읍이씨로 자는 문숙(文叔)이며, 경종 계묘년(1723)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으며, 교회(敎誨)를 역임하였다.

197) 생동(生銅): 불리지 아니한 구리.

산 훈도 현덕연을 영문으로 잡아가서 형벌을 시행하여 위엄을 베풀었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훈도 현덕연을 먼저 사역원의 문서에서 제거하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대개 훈도와 별차는 본디 왜인을 응접하기 위하여 조정의 명령을 전달하여 통역하니, 그 체면을 살려주지 않아서는 안되므로, 비록 공무에 연계된 중대한 죄가 있더라도, 여러 영문에서 직접 스스로 죄를 다스리지는 못하고 반드시 장계로 알려져 처치하는 것은 의도가 우연이 아닌데, 이제 이에 각기 제 멋대로 통제하여 형벌과 심문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은, 훈도 별차의 유죄 무죄를 논할 것이 없이, 왜인이 훈도 별차를 하천(下賤)과 같이 경시할 것이니, 무릇 조정 명령을 전달하여 타이르는 데는 필시 존중하여야 믿고 따를 이치가 있는데도, 한 번 체면을 잃은 뒤로는 어그러지고 손상되는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이 뒤로는 설혹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두 장계로 알려져 처치하여, 저쪽 사람들이 보는데 체면을 존속 시키라는 뜻으로 경상 감영 및 통제영과 동래부사에 엄중하게 밝혀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계해(1743) 6월 18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의 낭청(郎廳) 및 각 능전(陵殿)과 묘(墓)와 사학(四學)의 동몽교관(童蒙敎官), 통례원(通禮院)과 귀후서(歸厚署), 봉상시(奉常寺), 도화서(圖畫署),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관원 등의 이번 계해년 춘하등(春夏等)¹⁹⁸의 포폄 등급은 들였으나,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장악원(掌樂院),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예빈시(禮賓寺), 동쪽과 서쪽 활인서(活人署), 동서 빙고(氷庫), 사역원(司譯院), 혜민서(惠民署), 관상감(觀象監),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의 관원 등의 포폄은, 각기 그 관청의 영사(領事)와 제조당상(提調堂上)이 유고(有故)하여 일시에 마감하지 못하고, 본조 및 소속 각 관청 관원의 임술년(1742) 추동등(秋冬等) 이상의 포폄도 마감되지 않은 것이 많으나, 그 때 관원이 혹 당상(堂上)으로 승진하거나, 혹은 모두 교체되어 바뀌거나, 혹은 일신의 사고가 있기도 하여, 증거를 갖추어 등급을 매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모두 근래의 사례에 의하여 논하지 말게 함이

198) 춘하등(春夏等): 한 해를 두 분기(分期)로 나누어 그 전반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후반기는 추동등(秋冬等)이다.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계해(1743) 7월 초7일

평안감사 김(金)이 7월 초3일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의주부윤(義州府尹) 남태량(南泰良)¹⁹⁹이 보고한 바로는, ‘본부의 훈도 신한상(申漢相)²⁰⁰이 봄 사이에 벼슬이 깎여 파직되었는데, 겨우 돌아간 사람을 꼭 다시 차출하여 온 것은 필시 선발하여 차출하는 의도가 아니고, 한상(漢相)은 본디 병을 안고 있는 허약한 사람으로, 내려올 때 묵은 병이 엄중하게 덧나서 도방(到防)한 지 몇 달만에 병세가 날로 점차 위태하여 오래도록 생사를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있기로, 전후로 봉성(鳳城)²⁰¹에 왕래하는 순검(巡檢)을 접대하는 모든 일들을 단지 역학(譯學)에게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으니, 일의 체면이 극히 구차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자관(咨官)을 맞이하고 사행(使行)이 책문(柵門)이 들어가고, 한 달 두 차례 순검(巡檢)과, 가을 개시(開市)의 관장 등의 일을 역학 1인이 감당할 길이 만무하고, 또한 황제가 순행(巡行)하러 나서는 것이 몇 일 뒤면 당연히 출발할 것인데, 혹시 불시에 탐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훈역(訓譯)이 반드시 있어야 기민한 일을 탐지할 가망이 있으니, 훈도 신한상을 즉시 태거(汰去:걸러버림)하고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라는 뜻을 장계하여 변통하여 달라’ 하였음. 만상(灣上:의주)에 두는 역관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봄 사이에 신(臣)이 택하여 보내는 일로 장계로 청한 바 뜻이 있었고, 또 그 병세가 위중하여 책임을 살피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이렇게 만상(灣上)의 응수가 날로 빈번한 시기를 당하여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니, 먼저 파직하여 내쫓고,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본부에 분부하여 제법 사무를 알고 역어(譯語)에 익숙한 자를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 보내달라는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평안감사 김(金)의 장계를 보면, 의주 훈도(訓導) 신한상의 병세가 위중하여, 이렇게 만상의 응

199) 남태량(南泰良, 1695-1752): 의령남씨로 자는 유능(幼能)이며, 영조 정미년(1727)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200) 신한상(申漢相, 1715-?): 고령신씨로 자는 자위(子威)이며, 영조 을묘년(1735)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청학(淸學)에 종사하였다.

201) 봉성(鳳城):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는 사절이 거쳐 갔던 만주의 고을 이름. 봉황성(鳳凰城). 봉성현(鳳城縣). 의주(義州)에서 압록강을 건너 있는 책문(柵門)에서 봉성까지 30리인데, 조선과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관장하는 중국측 관원들은 대개 봉성에서 파견되었다.

수가 날로 빈번한 때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먼저 파직하여 내쫓고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본원에 분부하여 각별히 가려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던 바, 장계의 청대로 역어에 익숙한 자를 급속히 가려서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8년(1743) 7월 9일 우부승지 신 이명곤(李命坤)²⁰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해(1743) 7월 17일

대신과 비국당상, 2품 이상과 본조의 참관이 청대(請對)하여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의 진연(進宴)을 확정함.

一. 이번 7월 17일 2품 이상이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교에 이르시기를 “택일(擇日)을 9월 내로 하되, 내연(內宴)에는 이미 번거로운 절차를 이미 없었으니 안에서 습의(習儀)²⁰³⁾할 일은 없을 것이고, 외연(外宴)은 어연(御宴)에 불과한데 어떻게 습의할지 이것을 분부하고, 내연 때 각도의 선상(選上)²⁰⁴⁾은 지방의 사정을 염려하여 그 수를 감하고, 먼 곳은 제(除)하라”는 일로 전교가 있었기에 이에 의하여 봉행함.

一.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이전부터 진연할 때 선상기생(選上妓生)은 실차(實差)와 예차(預差)²⁰⁵⁾ 아울러 52명을 사용하는 것이 사례인데, 이번에 진연할 때 각도의 선상은 지방의 궁핍함을 염려하여 그 수를 감하고 먼 곳은 제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으니, 기미년(1739) 진연 때 수를 감한 사례대로 45명을 각 도에 분정하여 밤낮 없이 올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하고, 장악원에서 말을 징발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35명으로 분부하라” 하셨음. 35명으로 계하한 뒤에, 행사에 임하여 차비(差備)가 부족하므로 진연청(進宴廳)당상(堂上)이 품신하여 10명을 더 정하고, 본원의 초기(草記)²⁰⁶⁾로 변통 운운.

202) 이명곤(李命坤, 1701-?): 연안이씨로 자는 국빈(國賓)이며, 영조 갑인년(1734) 춘당대시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203) 습의(習儀): 의식의 본 행사에 앞서서 절차를 미리 연습하는 일.

204) 선상(選上): 서울에서 필요한 노비를 지방 관아에서 뽑아 올려 보내는 일.

205) 실차(實差)와 예차(預差): 일을 진행하는 인원을 선발할 때, 실제 정식 참여 인원은 실차이고, 예비 인원은 예차이다.

206) 초기(草記): 각 관청에서 사소한 정무의 주요 사항을 간단하여 적어 상주(上奏)하는 문서.

계해(1743) 7월 20일

동래부사 김(金)²⁰⁷이 7월 13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 내용에, “올해 6월 18일 나온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과 올해 3월 15일 나온 당년조 이떼이양 송사 정관 궤정일(橋定一), 반종 2명, 종왜 1명, 제4선 정관 등풍고(藤豊高), 반종 1명, 올해 2월 24일 나온 중금도왜 2인과, 올해 6월 초3일 나온 당년조 2특송 수목선에 격왜 20명, 임술년(1742) 4월 초1일에 나온 삼대관왜 1인, 종왜 2명, 임술년(1742) 7월 12일에 나온 통사왜 1인, 올해 2월 24일 나왔던 중금도왜 2인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신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가훈도 정재유(鄭載維)²⁰⁸와 별차 이억(李億)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영휘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호송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황령산 봉군 이인석(李仁石)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오다가 1척은 관소로 향하고 1척은 물마루 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 사연은 황령산 봉군이 고한 것과 한가지인데, “관소로 향하던 배를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더니,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써 유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오늘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큰 배는 뒤처지고 저희들의 배는 먼저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고, 노인 1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치통하였음.

초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초4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1척은 관소로 향하고 1척은 뒤처졌는데, 구름과 안개가 바다를 덮어서 향하는 곳을 모른다 하였다’고 하였다” 하기에, 동 배가 가고 머문 것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더니,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어제 바다 가운데 뒤처졌

207) 김(金): 계해년(1743) 6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갑자년(1744) 12월에 교체된 김한철(金漢喆)을 가리킨다.

208) 정재유(鄭載維, 1698-?): 온양정씨로 자는 중강(仲綱)이며, 영조 정미년(1727)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고 총민(聰敏)을 역임하였다.

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밝기를 기다려 관측하였더니 표류하여 구서평포 앞 바다에 머물고 있어서 초탐하기 위하여 본진 2선장 문중발을 차출하여 보냈다'고 하여, 문정하기 위해 별차 이익을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에, "당일 배를 타고 구서평포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오늘 새벽머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기에 그대로 수호하고, 별차 이익과 소통사 김상덕(金相德)이 가서 문정한 뒤에 되돌아 왔는데, 그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고, 동 왜선 1척은 바람과 파도가 험악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 같은 날 미시에 출발해서 영술하여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기에,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별차 이익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구서평포 앞바다에는 왜선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기에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비선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해서 비선은 먼저 관소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는 형체가 크고 질이 둔하므로 통제하지 못하고, 밤을 무릅쓰고 바다 가운데 머물다가 오늘 새벽머리에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음.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과,

초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본진 앞바다에 옮겨 정박한 큰 배 1척은 당일 발선하여 문중발이 호송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호송장의 치보에 '동 왜선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한 사연은 당초 구서평포에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별차 이익이 홀로 가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술 3통을 또한 실어왔고,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7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6월 18일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2월 24일 나왔던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임역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황령산 봉군 곽자근노미(郭小斤老末)가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 이영휘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하기에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초10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6월 18일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왜 2호선 1척에 격왜 30명, 임술년(1742) 9월 18일 나온 도두금도왜(都頭禁徒倭) 1인, 임술년(1742) 9월 11일 나온 도금도왜(都禁徒倭) 1인, 올해 2월 24일 나온 소금도왜(小禁徒倭) 2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고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임역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보한다"고 하였음. 1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에, "올해 7월 초4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2월 24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임역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1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바친 임역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이 왜인들의 부조(父祖) 분묘가 구관(舊館) 뒷산에 있기로, 이제 백종절(百種節日)을 당하여 전례대로 14일부터 17일까지 가서 살피는 일을 이야기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왕래할 때 별차와 소통사 등이 데리고 영솔하여 왕래하여야지, 함부로 다녀서는 안된다는 뜻을 신칙하였으며, 방금 바친 임역 등의 수본에, '관수왜가 올해 77세의 쇠약한 노인으로 더위[暑濕]에 손상되어 병세가 침중하고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는 지가 달포가 지났는데, 이달 초6일에 또 중풍이 들어서 말이 막히고 전신을 거두지 못하여 방금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왜관 가운데의 일들을 모두 공간 일대관왜(一代官倭)에게 위임하였는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기에 연유를 수본한다'고 하였다" 함. 위 사항으로 나온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의 노인 1통 및 비선의 노인 2통, 함께 3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계해(1743) 8월 21일

동래부사 김(金)이 8월 1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역의 수본에, "지난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 및 선착장 등의 장소를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함께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

히 살펴보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척하였음. 이달 초2일 황령산 봉군 송금남(宋金男)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같은 날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에, “첨사가 이번 가을 수조(水操:수군 조련)에 참여하기 위해 수영에 와서 대기하는데, 방금 접한 본진 유진장(留鎭將) 김중태(金重泰)의 치보에,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하였다” 하였고,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번 가을 수조에 참여하기 위해 수영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초2일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고 유진장이 치통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같은 날 도부한 ‘이달 초2일 우도로 표류하여 향하던 배 3척 중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고, 1척은 같은 날 표류하여 천성 경내에 도착하였고, 1척은 표류하여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는 가덕 유진장의 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황령산 봉군 송금남과 간비오 봉군 전덕봉(田德奉)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앞뒤로 나누어 나온다”고 하였고, 209)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군관 장우재(張宇載)를 정하여 보냈다는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였음. 초4일 도부한 “나왔던 배 2척은 왜인의 작은 배로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액 분부하였더니, 유진장이 치보하기를, “방금 바친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억의 수본에, ‘왜인의 작은 배 2척이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별일대관왜 1인, 종왜 2명, 제2척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소지한 노인은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2통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윤4월 초5일에 나왔던 경상도 표류민을 영술하여 온 차왜의 배 1척에 정관 등구연(藤久連),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과 도주가 대마도로 되돌아왔다고 알리려 온 차왜 정관 굴창궤(橘昌軌), 봉진압물 1인, 반중 5명과

임술 6월 초8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임술년(1742) 7월 초3일 나왔던 별금도

209) 이 뒤에 ‘부산첨사가 치통하기를[釜山僉使馳通]’ 여섯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생략되었다. 이 전후의 문서에 이렇게 생략된 문장이 많으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다.

왜 1인, 올해 2월 28일 나왔던 중금도왜 2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초3일 수문 밖에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 유진장 이일원(李日元)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1척이 당일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유진장이 치보하였고,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에, ‘관수왜가 부조(父祖)의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어서 이제 추사일(秋社日)을 당하여 예전 사례대로 가서 살펴보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별차와 소통사가 데리고 영솔해서 내왕하여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다는 연유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2일, 분간되지 않는 배가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2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옥포 경내로 향하여 오기에 동 옥포의 유진장이 배를 타고 탐지하니 과연 왜인의 큰 배이기에, 같은 날 술시에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 본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만련(金萬鍊)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제1선 송사 1호가 재차 건너 온 배인데 격왜 40명,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生銅) 115칭을 실어가지고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자 바람이 불순하여 2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 1척은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옥포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하였음.

초5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초2일 천성 경내로 표류하여 도착한 왜선 1척은 예인하여 마거리(磨巨里) 앞바다에 정박한 뒤, 왜학 소통사 등이 이달 초3일에 달려가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왜(館守倭)의 배에 교대차 나온 새 관수왜 1인, 서기왜(書記倭) 1인, 의왜(醫倭) 1인, 반종 3명, 종왜 8명, 격왜 40명,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3척의 배가 대마도에서 같이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자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옥포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 1척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고, 가덕 닻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선 1척에 동 왜학 소통사 등이 이달 초4일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기미조 제17선에 격왜 20명, 소금도왜 1명, 공하대왜(公下代倭) 2명이 같이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오다가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동 왜선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뉘어 표류한 연유는 관수왜의 배에서 문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차례로 치통하였다” 하였음.

초6일 동 침사의 치통에, “천성 경내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4일 출발하여 동 보(堡)의 유진장 김명규(金明奎)가 영솔 예인하여 가덕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수호장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대 포침사가 치통하였다”고 하였음.

초8일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에, “닻거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달 초7일 출발하여 바다 반쯤에 이르러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전진하지 못하고 도리어 닻거리로 표류하였고, 옥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순풍을 만나 동 포구를 출발하여 유진장 김여광(金汝光)이 영솔하여 와서 초7일에 본진에 교부하였기에, 군관 박원필(朴願弼)로 하여금 영솔하여 보낸다는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치보하였고, 다대포침사와 동 군관이 치보하기를 ‘왜인의 큰 배 1척을 초7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기에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의 사연은 당초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왜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그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노인을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에, “왜인의 큰 배 2척이 이달 초7일 가덕도에서 출발하여 전진하다가 역풍을 만나 되돌아갈 즈음에 1척은 가덕 경내의 노전구미(蘆田仇味) 앞바다로 표류하고, 1척은 김해 경내의 송정 앞바다로 표류하여, 안골포 호송장이 탄 배는 향한 곳을 모르며, 동 왜선 2척은 초8일 출발하여 청천 유진장 배방석(裴方碩)과 신문 유진장 박세백(朴世伯) 등이 영솔하여 와서 다대포에 교부하다가 바람과 물길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본진 앞바다에 정박한 뒤, 수호장으로 서평포 유진장 전석주(全碩周)를 차출하여 보낸다고 차례 차례 치통하였고, ‘임술년(1742) 10월 19일 나왔던 관수왜 평여상이 풍병으로 달을 넘기도록 침중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에, 대마도에서 새 관수를 차정하여 이제 바야흐로 나왔으며, 구 관수왜는 오늘 죽었다’고 대관왜가 고한 말로 인하여 훈도 별차가 수본을 바쳤고, 다대 경내에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당일 출발하여 관소로 전진하여 서평포 유진장 전석주가 영솔하여 와서 관소에 부쳤는 바,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새 관수왜의 배로 교대차 나온 관수왜 평여량(平如亮), 반중 3명, 종왜 8명, 서기왜(書記倭) 1인, 의왜(醫倭) 1인,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4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 진상물건을 실어가

졌고, 제2척은 기미조 제17선으로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공하대(公下代) 2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3척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옥포에 이르렀다가 먼저 이미 돌아왔고, 저희들의 배 2척은 표류하여 가덕과 천성 경내에 도착했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했으며, 관수왜가 가져 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바칠 계획이라고 운운 하였으므로 서계 등본 및 노인 1통을 보낸다'는 수분에 의거하여 동 등본 및 노인을 보내어 치통한다" 하였음. 구관수왜가 이미 병으로 교체되었다가 미처 교대하기 전에 죽고, 새 관수왜가 이제 이미 나왔으니 마땅히 전례대로 접대하여야 하나, 서계와 별폭은 추후에 다례를 베풀어 행하고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며, 동 서계와 별폭 등본 1통 및 기미조 제17선이 소지한 노인 1통과 비선의 노인 2통은 먼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규정 외로 나온 경신조 제1선 송사의 재차 건너온 배는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왜선 3척이 나뉘어 우도로 표류할 때 간비오 봉군이 관측을 놓친 것은 소속된 곳에서 엄하게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고, 구 관수왜 평여상(平如尙)은 나온 뒤에 이미 다례를 베풀어 행하고 서계를 받았으나 진상 숙배는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죽었기에,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을묘년(1735) 관수왜 평방광은 다례를 행한 뒤에 진상 숙배를 미처 행하지 못하고 몸이 죽어서 무진(1688) 계유(1693) 갑진년(1724) 관수왜가 죽은 뒤에 거행한 사례에 의거하여 새 관수왜가 나와서 진상 물건을 받은 뒤에 회서와 별폭을 들여주었다고 운운하였는데, 이제 이 평의상도 다례만 행하고 교대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으니, 진상을 받고 회서를 들여주는 등의 일은 마땅히 을묘년 위로 각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되, 새 관수왜가 이미 나왔으니 그 다례를 베풀어 행한 뒤에 차례로 거행할 계획이고, 관수왜 평의상이 이미 죽었으면 당연히 전례대로 철공(撤供)해야 하는데, 초9일에 죽고 새 관수가 마침 같은 날 도입하였으니, 철공 한 조목은 이제 논할 것이 없고, 죽은 관수왜에게는 부물(賻物)을 지급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여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순치(順治)²¹⁰ 계사년(1653) 차왜 굴성정(橋成正)이 죽은 뒤에 부의 물자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고, 갑진년(1724) 재판차왜 등방창(藤方昌)이 죽은 뒤에 계사년(1713)의 사례에 의거하여 부의 물자를 지급하였으며, 관수왜에 있어서는 이미 온 왜관의 우두머리이니 다른 차왜와는 다름이 있어야 마땅할 듯하고, 관수왜가 죽은 뒤에 부의로 조문하는 한 가지 절차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감히 마음대로 전에 없던 규정을 개시하지 못하

210) 순치(順治): 청나라 세조(世祖)의 연호.

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一. 새 관수왜 평여량(平如亮)이 가져온 서계 등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대인 합하게 글을 받들어 올립니다. 가을 초에 었드려 생각건대 복록이 형통하신지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 매우 깊습니다. 이에 고하는 것은 관사(館司) 평여상(平如尙)의 질병이 점차 위독하여 사직을 구하는 일로, 이에 평여량(平如亮)을 차출하여 그 책임을 대신하오니, 평상시 사례로 말씀하지 마시고 잘 대접해주기를 바라며, 보잘 것 없는 생산물로 정성을 표하오니, 성대하게 살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가 이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1743) 계해 7월 일.

별폭 :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匱鏡) 1면(面).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備). 수랍중명(粹蠟中皿) 10매(枚). 정(整).

一.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여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공 합하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은 편하신지? 회포가 우러러볼수록 더욱 큼니다. 이제 평여량을 보내어 관(館)의 일을 이어서 관장하게 하오니, 청컨대 예전 규정에 따라 접대해 주시기 바라오며, 넉넉지 않은 별폭이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며, 삼가 이렇게 초초하게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 계해 7월 일.

一. 동래부사 별폭 : 채화삼촌렴경(彩畵三寸匱鏡) 2면(面). 흑칠누합연갑(黑漆累合硯匣) 1비(備). 황색괘연(黃色掛硯) 1비. 채화용항(彩畵龍桁) 1각(脚). 적동명로(赤銅茗爐:구리 차화로) 1위(圍). 정.

부산영공 별폭: 흑칠문갑(黑漆文匣) 1개. 적동목장화로(赤銅木粧火爐) 2위(圍).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청패간연기(靑貝竿烟器:푸른 자개장식자루 담뱃대) 20줄[握].정.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새 관수왜 평의량이 가져온 회답 서계 및 동래 부산의 답장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 : 별폭회례: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인삼 2근. 흰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검은 삼베 3필. 흰무명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떡 30개. 넉장 붙인 유둔 2부. 화석 3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각각. 흰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검은 삼베 2필. 흰무명 7필. 황모필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참떡 20개. 넉장 붙인 유둔 2부. 화석 3장. 이상 본도에서 지급.

건륭 8년(1743) 8월 23일 우승지 신 한사득(韓師得)²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해(1743) 8월 23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8월 12일 성첩한 장계. 지난 7월 23일 나와서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2척과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과 왜인의 작은 배 1척 합계 4척에, 왜학 김진혁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무릇 표류한 왜선을 차례차례 호송하는 것이 본디 전례이나, 이제 이 지세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차례차례 영솔하여 보내지 않고, 조라포에서 곧바로 영솔하여 좌도에 부쳤다고 하는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극히 소홀하기로,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로(沿路) 각 진에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더니, 방금 도부한 장목포(長木浦) 가장(假將) 허환(許環)과, 천성만호 박만화(朴萬和), 가덕첨사 성덕함(成德涵) 등이 한결같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이제 이 지세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7월 27일 그곳에서 출발하여 조라포에 도착하였는데, 순풍을 만나 돛을 달고 내해(內海)를 거치지 않고 좌도로 향하므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미처 먼 바다에 호송하지 못한 것은, 실로 일의 형세가 굳이 그러한 데서 나온 것이라, 사실대로 조사하여 보고한다”고 하면서, [조라포에서 순풍을 만나 돛을 달고 내해를 거치지 않고]²¹² “이제 이 지세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을 동 포구의 유진장이 영솔 호송하여 전진하다가, 그 때 동 왜선이 순풍을 만나 돛을 올리고 내해를 거치지 않았는바, 저들과 우리의 배는 빠르고 둔하기가 현격하게 달라서 바다 가운데서 만류하여 머물게 할 길이 만무하고, 또 동 왜선을 전로(前路)에서 교부할 곳인 장목

211) 한사득(韓師得, 1689-1766): 청주한씨로 자는 계능(季能)이며, 경종 임인년(1722) 알성시에 급제하여 대사간, 도승지, 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212) 이 구절은 원본에 ‘助羅浦逢順風掛帆不由內洋’ 12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문맥상 앞의 문장을 중복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포는 수로(水路)로 20리쯤에 불과하나, 바다 건너 다대포는 이제 200여 리의 거리에 이르니,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보통 인정인지라, 어찌 가까운 바다를 버리고 외해의 먼 바다 길을 취할 리가 있겠으며, 일개 유진장의 잔약한 힘으로는 실로 만류하여 붙들 형편이 아니었고, 수백 리 험한 바다에서 열 중에 아홉은 죽을 고비를 근근이 폐단 없이 다대포로 영솔하여 부쳤으니, 이는 중간에 뒤쳐진 것과는 다름이 있어, 만류하여 붙들지 못한 실책은 면하기가 어렵지만, 참작하여 헤아려 처치하시라”고 조사 보고하였음. 동 왜선 1척이 순풍을 만나 뜻을 올리고 내해를 거치지 않고 외해에서 곧바로 좌도로 향한 것을, 내해의 각 진에서 차례차례 영솔 호위하지 못한 것은 그 형편이 그럴듯하나, 조라포 진장(鎭將) 김승우(金承右)는 그가 왜선을 영솔 호송하는 장수로서, 끝내 만류하여 붙들어서 차례 차례 교부하지 못하고 저들이 임의로 오고가게 한 것은, 변방 정세의 일과 체면에 있어서 격식과 전례를 어김이 있으나, 이미 영솔하여 다대포에 부치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는 중간이 뒤쳐진 것과는 다름이 있어,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였음. 당초 7월 22일 왜인의 큰 배 1척과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분명히 일시에 나와서 지세포 강입구에 정박하였는데, 부산과 다대포 두 진에서는 앞뒤로 나누어 관측하였다고 치보한 것은, 변방 정세로 헤아리건대 소홀함을 면치 못하니, 위 사항의 부산 다대 두 진의 변정 차지 감색을 잡아 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경상좌수사 심봉양(沈鳳陽)에게 분부하였다는 일임.

계해(1743) 8월 28일

一. 동래부사 김(金)이 8월 19일 성첩한 장계. 이달 11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용에, “올해 7월 초7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올해 2월 28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억의 수본의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2일 도부한 통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21일 기미조 만쇼잉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임술년(1742) 10월 19일 나왔던 구 관수왜(舊館守倭)가 거느리던 반중 3명, 중왜 8명, 올해 3월 초9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구 관수왜 평여상(平如尙)의 시체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 유진장 박만석(朴萬碩)을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같은 날 황령산 봉군 문태봉(文太奉)과 간비오 봉군 이올미[李五乙未]가 진고하기를, “오늘 돌아 들어가던 왜선 1척이 물마루에서 바람을 만나 우도로 표류하였다”고 하였고, 같은 날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는, 오늘 돌아들어가던 왜선 1척이 바람을 만나 우도로 표류하였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 및 다대포첨사의 치통임. 15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12일 왜선 1척이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여 옥포 경내로 향하기로, 동 옥포의 유진장이 배를 타고 전진하다 신시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유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만련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기미조 만쇼잉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구 관수왜 1인, 반종 3명, 종왜 8명, 중금도왜 1인, 격왜 40명이 함께 타고, 우리나라의 노인을 가지고 관소에서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여기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치보한 뒤에, 초본을 살펴보니 「고 관수왜의 시체를 실었는데[屍體載持而]」라는 5자를 과연 누락하여 적었다는 옥포 유진장의 전통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하는 연유”라고 하였음.

1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5일에 출발하여 차례차례 영술 예인하여 해시에 본진에 교부하였는데, 물길이 거스르고 밤이 깊어서 전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본진의 앞바다에 정박한 뒤에 수호장을 정하여 수호한다’는 연유를 치통하였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배 1척은, 16일 출발하여 영술 예인하여 오시에 관소에 교부하였다는 다대포 2선장 문중발(文重發)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기미조 만쇼잉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반종 3명, 종왜 8명,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구 관수왜의 시신을 실어가지고 이달 12일 이른 새벽에 관소에서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기에,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며, “17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이 올해 3월 초3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했을 때, 관수왜의 시체를 싣고 있다는 한 조목을 당초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보고한 것은 극히 소홀한 일이니, 옥포의 유진장을 통영(統營)에서 추고하여 다스려 후일의 폐단을 징계하라는 뜻으로 동 통제영(統制營)

에 첩보하였고,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의 원역 등에 대한 다례는 이달 16일로 정하였는데, 부산첨사 이시형은 신병으로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신이 홀로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동 왜인이 바친 바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을 받아 감봉하여 올려보내는 일임.

一.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관벽산(鑛碧山) 만쇼잉[萬松院]에서 참으로 황공하여 공경하게 예를 표하며²¹³⁾ 서찰을 올리며 추앙하는 마음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세션에는 정관 평성령(平盛令)과 도선주 굴등주(橋滕周)를 차출하였으니, 평상시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굽어 살피시어 접대해 주시고, 인하여 보잘 것 없는 예물을 갖추어 멀리 정성을 표시하오니, 웃고 받아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진중하시기를 빌며, 삼가 이에 갖추지 못합니다. 관보 3년 계해 6월 일. 대마주 종산(鍾山) 만쇼잉[萬松院].

별폭 : 호초(胡椒) 500근. 단목(丹木) 700근. 명반(明礬) 200근.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적동루삼관반(赤銅累三盥盤) 1부(部). 계(計). 관보 3년(1743) 계해 6월 일.

一.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지금의 계해조 도서를 받은 만쇼잉 회답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라 하였는데, 별폭의 회례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8년 9월 초1일.

후록 : 연례(年例)로 무역하는 동철(銅鐵:구리)과 납철(鑛鐵:납)은 호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처지함. 별폭 회례: 인삼 2근. 범가죽 1장. 표범가죽 1장. 흰명주 3필. 흰모시베 3필. 검은 삼베 3필. 흰무명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 화석 5장. 참떡 20개.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건륭 8년(1743) 9월 초1일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함.

一. 예조의 계목. 이번 계해조 도서(圖書:도장)를 받은 만쇼잉 송사왜 정관 등의 공무역에서 증정하는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도록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8년(1743) 9월 초1일.

후록 : 정관 1인이 연례로 무역하는 구리와 납은 호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213) 원본의 ‘화남(和南)’은 범어(梵語)로 ‘경례(敬禮)’를 뜻하는 말이다.

처치함. 증정하는 물품. 인삼 1근. 황모필 1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응자(鷹子:매) 1연(連). 개[犬] 1마리[口]. 우산지(雨傘紙) 1권. 녁장 붙인 유둔(油屯) 1부. 화석 1장. 백지 3권. 참덕 10개. 다리미[火熨] 1개. 마성(馬省) 1개. 청밀(淸蜜:꿀) 5되. 법유(法油:들기름) 5되. 율무씨[薏苡仁] 5되. 녹두가루 5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밤[黃栗] 1말. 꽃감[乾柿子] 1점[貼]. 이상 본도에서 지급.

도선주 1인의 연례 무역 구리와 납은 호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처치하게 함. 증정하는 물건. 인삼 10냥. 황모필 5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 매 1연. 개 1마리. 우산지 10장. 녁장붙인 유둔(油屯) 1부. 화석 1장. 백지 3권. 참덕 5개. 다리미 1개. 마성(馬省) 1개. 청밀(淸蜜) 3되. 들기름 3되. 율무씨 3되.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밤 1말. 꽃감 1점. 이상 본도에서 지급.

압물 1인의 연례 무역 구리와 납은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대조하여 처치하게 함. 증정하는 물건. 황모필 5자루. 해조에서 마련함. 매 1연. 개 1마리. 우산지 10장. 녁장 붙인 유둔 1부. 화석 1장. 백지 1권.²¹⁴⁾ 참덕 5개. 다리미 1개. 마성 1개. 청밀 3되. 들기름 3되. 율무씨.²¹⁵⁾ 녹두가루 3되. 호두 1말. 잣 1말. 대추 1말. 밤 1말. 꽃감 1점. 이상 본도에서 지급.

건륭 8년(1743) 9월 초1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해(1743) 9월 27일

동래부사 김(金)이 8월 29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접위관 청하현감(淸河縣監) 임철(任轍)의 이첩(移牒) 내용에, “고성(高城)의 표류민을 영솔하여 온 차왜 등조친(藤朝親) 원역 등의 상선연(上船宴)을 이달 20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였다” 고 하였음. 이달 22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에, “올해 7월 초4일 나왔던 당년조 3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올해 3월 초10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이달 19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억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우석구를 정하여 보냈는데, 동 왜선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당년조 1특송사 왜 원역 등에 대한 상선연을 이달 23일 전례대로 베풀어 행하였음.

24일 황령산 봉군 강똥이(姜屎伊)와 간비오 봉군 박태순(朴太純) 등이 진고한

214) 원본의 ‘張’은 ‘卷’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15) 원본에 수량이 적혀 있지 않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3되’인 듯하다.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 2선장(二船將) 서후치(徐後穉)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25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오늘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비선 1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기로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졌다’ 하였기에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26일 도부한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올해 7월 21일 나왔던 당년조 만소잉 송사선에, 격왜 40명, 임술년(1742) 10월 19일에 나왔던 구 관수의 서기왜(書記倭) 1인, 의왜(醫倭) 1인, 올해 3월 초1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과, 올해 8월 초2일에 나왔던 경신조 제1선 송사왜 1호의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3월 15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3월 초10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함께 2척이 각기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의 2선장 서후치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위 사항의 나온 비선 1척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본부에서 계청(啓請)한 대솔군관(帶率軍官)²¹⁶⁾ 5인, 수성장(守城將) 대솔군관 2인 합계 7인에 대하여는, 본부가 이미 관방(關防)의 중요한 진(鎭)인데다, 허다하게 오가는 왜인들이 항상 한 경내에 모여 있기에, 만약 대솔군관이 아니면 친하게 믿고서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없고, 왜인의 연향(宴享) 및 5일 개시(開市)에 조사 검문하는 등의 일은 모두 군관을 시켜 거행하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중대하여 다른 각 영진(營鎭)의 군관과는 오히려 현격하게 구별되는 바 있음에도, 일찍이 요포(料布)²¹⁷⁾를 지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본부는 의주(義州)와 균등한 변방 고을임에도 의주에서는 군관의 요미를 군향(軍餉)의 유저(留儲)²¹⁸⁾ 가운데서 회감(會減)²¹⁹⁾하여 지출하고, 포(布)는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서 봉급(封給)하는 농방포(農防布) 중에서 매 사람마다

216) 대솔군관(帶率軍官): 관원이 부임하면서 임의로 데리고 가는 군관.

217)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무명 베.

218) 유저(留儲): 유치미(留置米) 또는 저치미(儲置米). 각 관아에서 식량으로 비축해두는 미곡.

219) 회감(會減): 주고 받을 것을 맞비기고 남는 것을 계산함.

3필씩 달마다 지급해 주지만, 본부의 군관에게는 유독 전례가 없는 것은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부사 신 정리검(鄭履儉)이 재임할 때 이미 이 일로 장계로 알렸지만 시행됨을 보지 못하였기에, 변방의 여론이 억울하다는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신이 사조(辭朝)할 때 이미 이 뜻을 묘당(廟堂)의 여러 신하들과 만나 의논하였습니다. 본부에 수성창(守城倉)과 산성창(山城倉)의 곡물이 있는데, 1년의 모손(耗損)을 취하면 지출해야 하는 이외로 남는 수가 적지 않으니, 여기서 남는 모미(耗米)로 매 사람에게 9말씩 식료(朔料)로 지급해주고, 1년 동안 받는 유황포(硫黃布) 7동(同) 48필 내에서 그중 지출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도 남는 수량이 많으니, 이 남는 포로써 매 사람에게 3필씩 지출하면 편리할 듯합니다. 훈도의 책임은 오로지 왜인을 접대하는 일을 관장하여 그 긴급하고 중요함이 다른 직책과는 다름이 있는데, 시임(時任) 훈도 현덕연은 사람됨이 정밀하고 자상하며 왜인의 실정에 익숙하여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실로 가상하나, 임기가 이미 차서 오래지 않아 교체되는지라, 변방 여론이 애석해 하지 않는 이가 없고, 호조(戶曹) 진흥청(賑恤廳)의 돈²²⁰을 주조하는데 사용될 동철(銅鐵)은 시급하게 수용되는 물자인데, 현덕연이 훈도로서 처음부터 담당하여 왜국에 무역을 요구하였다가, 마침 저 나라 철물(鐵物)이 매우 귀함으로 인하여 무역하여 온 철물이 겨우 반을 넘었지만 짐짓 다 무역하여 오지 못하여, 이제 바야흐로 엄히게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무역하여 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 교체하여 낯선 사람에게 부치는 것은 실로 우려됩니다. 최근 사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기유년에 훈도에게 그대로 맡기는 일로 청하여 윤휘를 받은 일이 있으니, 동 현덕연이 담당하는 철 무역 한 가지 일을 마치는 동안에 짐짓 그대로 책임을 맡도록 허락함이 어떠할지,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실 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한철(金漢喆)의 장계를 보면, “본부에서 계청한 바 대술군관 5인과 수성장 대술군관 2인이 있으나, 일찍이 요포를 지급하는 일이 없어서 변방 여론이 억울해 하는 탄식이 없지 않으니, 식료(朔料)는 수성창 및 산성창의 모미(耗米)로 사람마다 9말씩 지급하고, 포는 유황포(硫黃布)를 사람마다 3필씩 지출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고, 훈도 현덕연은 임기가 이미 차서 오래지 않아 교체되는데, 호조 진흥청에서 돈을 주조하는 데 사용되는 동철을 처음부터 담당하여 왜국에서 무역하여 이제 바야흐로 계속하여 무역하여 오고 있는 이때, 교체하여 낯선 사람에게 부치는 것은 우려가 많기로, 동 현덕연은 철 무역을 끝내는 사이에 짐짓 그대로 맡기는 것을 허

220) 원본의 이 부분은 ‘鑄鐵’이라 되어 있으나, 이 아래의 동일한 맥락에 ‘鑄錢’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鑄錢’으로 해석한다.

락함이 어떠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라” 하였는데, 감영과 병영의 군관 요포는 모두 영수(營需: 영의 수용비) 가운데서 헤아려 지급하니 본부 군관 또한 장계로 알려져 마련할 것이 아니지만, 본부가 근래에 매우 쇠잔하여 요포가 나올 곳이 없기에 전후로 수신(守臣)²²¹⁾이 그래서 누차 번거롭게 장계로 알렸으니, 군관의 요포(料布) 유무는 비록 변방 정세에 긴밀한 관계는 없지만, 또한 그 막부(幕府)에 인재를 얻도록 책망하는 방법이 아니니, 본부의 수성장 군관 함께 4인의 요포를 매달 쌀 9말과 포 3필로 마련하되, 수성창의 모미(耗米)와 유황포(硫黃布)로 계감(計減)하는 일로 규정을 정하고, 훈도 현덕연은 장계에 청한 대로 일을 마치는 것을 기한으로 하여 그대로 맡김이 마땅하니, 해당 사역원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건륭 8년(1743) 9월 27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해(1743) 11월 초7일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심(沈)이 10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왜인의 비선 1척이 좌도로 표류하여 향한 것은 위와 같은데, 이달 18일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우도로 표류할 때 부산과 다대 두 진의 봉군이 관측하여 과연 진고하였으면 마땅히 즉시 치보하여도 겨를이 없는 일임에도, 분명하지 않다고 핑계하여 전로(前路)에 탐문한 뒤 2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고하였으니, 안개가 비록 바다를 가렸다고 하나 변방 정세를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극히 소홀하여, 부산 다대 두 진의 병방군(兵房軍) 및 변정(邊情) 차지 색리(色吏)들을 모두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으로 후일을 징계한 일.

계해(1743) 11월 25일

동래부사 김(金)이 11월 1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1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에, “올해 10월 초4일에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8명, 올해 윤4월 초5일에 나온 소금도왜 3명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덕연과 별차 이익의 수본에 의거하여”

221) 수신(守臣): 지방 수령의 별칭.

라고 하였음.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3월 초10일 나왔던 하대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인하여 죽었으므로 왜관 뒷산으로 나가 매장하였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라고 하였음. 방금 바친, “지난달 동서 왜관 및 선창(船倉) 등의 장소를 부산진 감색과 더불어 같이 적간하였더니 짐짓 손상된 곳은 없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각별히 살펴보라는 뜻을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일임.

갑자(1744) 정월 초7일

동래부사 김한철이 계해년(1743) 12월 27일 성첩한 장계. 이달 12일 황령산 봉군 함만강(咸萬江)과 간비오 봉군 이만석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서후치를 정하여 보냈더니,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인지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 이에 의거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하였음. 1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접한 가훈도 김정태(金鼎台)와 별차 이억 등의 수본에, ‘어제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1척은 밤이 깊어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 고 하기에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서 올려 보내며, 올해 10월 초4일 나왔던 경신조 제8선에 격왜 30명과 올해 6월 18일 나왔던 도금도왜 1인, 올해 정월 초2일 나왔던 별금도왜 1인과, 올해 11월 30일 나왔던 관수왜의 재차 건너 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윤4월 초5일 나왔던 소금도왜 2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함께 2척이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호송장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고 하였다” 하였음.

14일 황령산 봉군 함만강과 간비오 봉군 이만석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임역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生銅) 13칭을 실어가지고, 어제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역풍을 만나 머물다가 오늘 새벽 근근이 노를 저어서 나왔다고 하였고, 소지한 노인 1통은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내는 연유로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11월 30일에 나온 경신조 제7선에 격왜 30명, 올해 조의 제7선에 격왜 30명, 올해 윤4월 초5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올해 11월 30일 나왔던 경신조 제10선에 격왜 30명, 올해 윤4월 초5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함께 2척이 돌아들어가고려고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본진의 2선장 서후치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신유 11월 17일 나왔던 종왜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로, 그쪽에서 나와서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황령산 봉군 김귀역(金貴亦)과 비오봉(飛鳥峰)²²² 봉군 한계하(韓戒夏)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가 가고 머무는 것을 상세히 탐지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18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정박한 곳을 탐문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올해 10월 18일 나온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7명, 올해 윤4월 초5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9일 도부한²²³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17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 경내의 옥포로 향하기에, 조라포만호가 배를 타고 탐지하였더니,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왔기에 그대로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원정(金原正)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

222) 비오봉(飛鳥峯): 간비오(干飛鳥)를 잘못 옮겨 쓴 듯하다.

223) 원본에 '未辨船付' 낙자가 있으나 이는 '到付'를 잘 못 써 넣은 듯하다.

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17일 대마도에서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여 차례 차례로 온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7월 21일 나왔던 당년조 만쇼잉 송사 정관 평성령(平盛令), 도선주 굴등원,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과, 올해 윤4월 초5일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 2호에 격왜 30명, 올해 윤4월 5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윤4월 27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5월 26일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올해 6월 18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올해 7월 22일 나왔던 소금도왜 2명, 임술년(1742) 12월 초10일에 나왔던 하대왜 1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함께 2척이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임역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장으로 개운포만호 김중려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비선 1척은, 21일에 동 옥포를 출발하여 만호 및 장목포 별장 등이 차례차례 교대로 교부하여 영솔 예인하여 천성만호에게 교부하였는데,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유시에 천성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2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천성 마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비선 1척은, 당일 동 포구를 출발하여 만호 및 청천별장이 영솔 예인하여 본진에 교부하였고,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하여 서평포만호 염처인(廉處仁)을 정하여 보낸다' 하였는데, 동 비선 1척은 22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문정하라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한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2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임역 등의 수본에, '어제 나온 비선 1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으므로 문정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초 표류한 연유는 옥포왜학(玉浦倭學)이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고, 소지한 노인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위 사항으로 나온 비선 3척의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공작미(公作米) 16,000섬을 금년 조로 대관왜에게 이미 다 들여주었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보하는 일.

갑자(1744) 정월 초10일

비변사의 감결(甘結) 내용. 동래부사 김(金)이 첩보한 내용에, “전 훈도 현덕연(玄德淵)은 이미 해당 사역원에서 사역원의 적(籍)에서 이름을 깎아냈다는 공문이 내도하였는데, 새 훈도 현태익(玄泰翼)이 이제 이미 서울로 돌아갔으니, 현태익을 재촉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한편으로 해당 사역원에 논보(論報)하였으며, 현덕연은 이미 직명(職名)이 없으니 억지로 책임을 살피게 하는 것은 불가하기로, 먼저 출사역관(出使譯官) 김정태(金鼎台)를 임시로 차출하여 책임을 살피게 하였는데, 당초 현덕연을 장계로 청하여 그대로 맡게 하였던 것은, 대개 생동(生銅)을 별무(別買)²²⁴⁾하는 일의 시행이 지체되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시종 담당하게 하여 그 효과를 이루도록 책망하고자 하였더니, 뜻밖에도 갑자기 교체되어 생동의 일이 낭패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건이 또한 많아서 민망하니, 동 새 훈도 현태익을 본사(本司)에서 성화같이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일각도 지체되는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이라 하였음. 제사(題辭) 내용. 해당 사역원에 분부하되 예조에서 첨부하여 사역원에 감결(甘結)함. 정월 11일 직장(直長) 박태근(朴泰根)²²⁵⁾.

갑자(1744) 2월 26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2월 16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형의 치보 내용에, “왜인의 큰 배 1척을 이달 초9일 미시에²²⁶⁾ 서로 만나 영술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동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과 소통사 김원정(金原正)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인조 제16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3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9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이하 생략됨].” [생략됨] “이달 12일 왜인의 큰 배 1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원정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

224) 별무(別買): 조선후기 대동작공(大同作貢) 시행 이후 원공(元貢)에 있으나 부족한 것과 원공에 없는 것을 국가가 특별히 시장에서 매상(買上)하는 것을 말함.

225) 박태근(朴泰根, 1721-?): 삭녕최씨로 자는 중晦(仲晦)이며, 영조 경신년(1740)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고 교회를 역임하였다.

226) 원본에 ‘未’란 말만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그 뒤에 ‘時’ 한 글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갑자조 제1선 송사와 수목선에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공간(公幹)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소금도왜 2명, 공간(公幹) 하대왜(下代倭)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12일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과 비가 불순하여 1척은 표류하여 지세포로 향하고, 저희들의 배는 이곳에 이르렀다'고 문정하였다" 하였음.

15일 도부한 동 첨사 이시형의 치보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지세포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을,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과 소통사 김원정 등이 이달 13일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17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생략됨]." 제1선 송사의 수목선의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이 격식에 어긋나기에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 하였음. 변방 정세가 얼마나 중대한데, 이달 12일 나온 왜인의 큰 배 2척을 부산 다대 두 진에서 봉군의 진고가 분명하지 않다고 범연히 여기고는 13일에 비로소 치보한 것은 극히 늦게 알린 것이기에, 두 진의 변정 차지 감색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뒤에[생략됨]. 나온 제1선 송사 수목선에 대한 옥포왜학(玉浦倭學)의 문정 가운데는, '공간(公幹) 3대관왜 1인, 공간(公幹) 하대왜 3명'이라 하였으나, 훈도 별차의 문정에는 '공간' 두 글자를 전연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극히 놀라우니, 훈도 별차에게 물어 조사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부산첨사 이시형에게 관문을 발송하였더니, 물어 조사하여 치보한 내용에, "공간 두 글자는 과연 군더더기 말인데, 옥포왜학(玉浦倭學)이 사례를 상세히 몰라서 공간 두 글자를 더한 것이나, 관소에서의 문정은 전례대로 수본한다"고 하였음. 막중한 변방 정세에 옥포왜학(玉浦倭學)이 군더더기 말을 범연하게 적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통제사에게 치보하였음.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제까지 여러 날이 되도록 아직도 돌아온다는 보고가 없어, 문정이 중간에 지연되고 있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갑자(1744) 3월 초3일

경상우수사 이(李)가 2월 23일 성첩한 장계. 위와 같은 일임. 이달 12일 나와

서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이 문정한 가운데 ‘공간 3대관왜 1인, 공간하대왜 3명’이라 하였으나, 부산의 훈도 별차의 문정에는 ‘공간(公幹)’ 두 글자를 전연 거론하지 않았는데, 공간 두 글자는 본디 군말임에도 옥포왜학(玉浦倭學)이 사례를 상세히 알지 못하여 군말을 범연히 적어 넣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기에, 동 왜학 김진혁을 신의 수영에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였고, 옥포 지세포 강 입구에 전후로 나누어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2척은 선후로 출발하여 교부하였는데, 뒤에 출발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날짜가 지연되었다는 일임.

갑자(1744) 7월 24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7월 15일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초탐장 서거²²⁷첨사 장시헌(張時憲)의 치보 내용에, “위 사항의 왜인 작은 배 1척을 당일 출발하여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대익(玄泰翼)과 별차 이명윤(李命尹)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용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당초 별차가 좌도 경내로 가서 문정한 가운데 이미 치보하였고,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한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동래로 보낸다”고 치보하였음. 이제 이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좌도로 표류한 사정을 기장현감은 즉시 치보하였으나, 부산에서는 즉시 치보하지 않은 곡절을 관문을 발송하여 물어 조사하라 하였더니, 회보에 “동 왜선은 바다 가운데에 미치지 못하여 곧바로 동해로 표류하였으므로 구봉 봉군 등이 미처 관측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동일한 바다를 관측하였으면 다름이 없어야 마땅한데, 부산진에서 봉군 등이 미처 관측하지 못했다고 범연하게 말한 것은 변방 정세에 있어서 극히 소홀하기로, 해당 변정 차지 감색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다는 연유를 치

227) 원본에 ‘西去僉使’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후기의 동남 연변 좌수사의 관할에 서거진(西去鎭)은 존재하지 않았으니 잘못 옮겨 적은 것이 분명한데, ‘西平’으로 보려니 서평포의 수군 장수는 첨사(僉使)가 아니라 만호(萬戶)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첨사(僉使)가 초탐장으로 나가는 사례는 없고, 또 부산진 첨사 관할 내에 관소로 왜선을 영솔하는 곳은 서평포(西平浦)와 두모포(豆毛浦)인데, 다음 8월조에 두 곳의 만호 성명은 모두 이와 다르니, 확인할 길이 없다.

계하는 일임.

갑자(1744) 8월 23일

동래부사 김(金)이 8월 15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6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洪泰斗)의 치통에, “올해 7월 초6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계해년(1743) 9월 초5일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과 왜인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현태익(玄泰翼)과 별차 이명윤(李命尹)의 수본의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이달 초2일 황령산 봉군 김귀역(金貴亦)과 간비오 봉군 한계하(韓戒夏)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앞뒤로 나오다가 우도로 향하여 표류하였다”하였고, 구봉봉군의 진고와 다대포첨사의 치통 사연은 한결같음. 정박한 곳을 속히 탐문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연유를 치통하라 하였더니,

초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 유한명(兪漢明)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첨사와 2선장은 수조(水操)에 참여하기 위해 통영(統營)에 달려갔는데, 이달 초2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1척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본도로 오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전진할 즈음에,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천성 경내로 향한다고 차례차례 치통하였다” 하였기에, 정박한 뒤에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음. 운운. 황령산 봉군 김귀역과 간비오 봉군 한계하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당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우석구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는 과연 왜인의 큰 배로 영술하여²²⁸⁾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1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 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므로 노인은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228) 원본에 ‘館付館所’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領付館所’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며,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초2일 나왔던 분간되지 않는 배 2척 중 1척은 표류하여 거제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본도로 향하기로, 탐지하기 위해 천성보 유진장 주정(朱精)이 배를 타고 동 천성보 경내의 말곶(末串) 동두리(東頭里)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와서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 마거리(麻巨里) 앞바다에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하였음.

동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다대포첩사가 치통하기를, ‘이달 초2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로 나오다가 1척은 표류하여 가덕으로 향하고, 1척은 표류하여 옥포 경내의 양주암(楊洲巖)으로 향하여, 탐지하기 위해 동 포의 유진장 이유휘(李有輝)와 조라포 유진장 이태주(李泰柱) 등이 배를 타고 본포(本浦) 경내의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와서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솔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에,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이영옥(李榮郁)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9명, 교대차 나온 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이달 초2일 대마도에서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이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큰 배 1척은 표류하여 가덕도로 향하고, 저희²²⁹⁾들은 겨우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옥포와 조라포 유진장 등이[생략됨]”라고 치보하였음.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천성 경내의 마거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과 소통사가 이달 초3일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이페이양 송사의 재차 건너 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종왜 4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비선 1척과 큰 배 1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비선은 옥포로 향하여 표류하고, 저희들의 배는 겨우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고, 동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3일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였다’는 천성보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초5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비선은 이달 초3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는 옥포 유진장의 치보

229) 원본에 ‘俺’을 ‘僚’ 등으로 잘못 옮겨 적은 글자가 더러 보인다.

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하였다’고 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서 즉시 속히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이달 초4일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초5일 동 보(堡)를 출발하여 유진장이 영솔 예인하여 전진한다고 전통하였다’ 하였기로[생략]”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도부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천성경내의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5일 출발하여 동 보의 유진장 및 안골포 유진장 김여중(金汝重)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며 영솔 예인하다가, 물살과 바람이 모두 거스르고 또 해가 저물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본진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고 하여, 속히 관소²³⁰)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초7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첩사의 치통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6일 출발하여, 호송장 안골포(安骨浦)²³¹) 유진장이 영솔 예인하다가 조여(鳥礮) 앞바다에 이르러 동풍이 크게 일어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같은 날 닻거리로 되돌아 왔고, 옥포에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이달 초6일 출발하여 조라포 유진장 이태주(李泰柱)와 장목포 유진장 김시정(金時鼎), 천성보 유진장 주정(朱精), 신문(新門) 유진장 박동량(朴東亮) 등이 차례 차례 교부하면서 영솔 예인하다가, 동풍이 크게 일어나 바다를 건널 형편이 만무하기에, 같은 날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하고 있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에, 속히 호송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동 첩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첩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경내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비선 1척은 당일 출발하여 호송장 신문 유진장이 영솔 예인하였기에, 본진에서 그대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는데, 2선장은 수조(水操)에 참여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본진의 군관 윤귀발(尹貴發)을 호송장으로 차출하여 보냈다고’ 하였고, 같은 날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한 내용에, ‘위 사항의 비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하였기에,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하였는데, 당초 옥포에 표류했을 때 왜학이 문정한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는 연유로 치통한다” 하였음.

230) 원본의 ‘關守’는 ‘館所’를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31) 안골포(安骨浦): 현재의 진해시 안골동.

초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 경내의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어제 미시에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다가 바다의 반에 못미쳐서 동풍이 크게 일어 전진하지 못하고, 유시에 표류하며 바다 가운데 머문다고’ 하기에, 가고 머문 곳을 탐지하여 보고 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고, 이번 가울 수조(水操)에 참여하러 가기 위해 여러 배를 거느리고 당일 발선하여 유진장으로 군관 김중태(金重泰)를 차정했다는 연유를 치통한다”고 운운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7일 그곳에서 출발하여 호송장 안골포 유진장이 영솔하여 오다가, 바다 반쯤 이르러 동풍이 크게 일어나 바다를 건널 형편이 만무하기에, 같은 날 닻거리로 되돌와 정박하였다’고 하였기에, 속히 호송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닻거리로 되돌아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초8일 출발하여 호송장 안골 유진장이 영솔 예인하여 바다 반쯤 이르러 동풍이 크게 일어나고 또한 날이 저물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본진 경내의 수락지(水落只) 앞바다에 표류하여 머물기에 수호하고 있다고 호송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예선(曳船)을 많이 정하여 함께 수호하라고 하였으며, 동 수호를 위해 서평만호는 수조에 참여하러 나가기 위해 발선하였으므로, 유진장 김시정(金時挺)을 차출하여 보냈다는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의거하여,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동 첨사가 치통하기를. “올해 6월 15일 나온 당년조 3특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과 올해 3월 19일 나왔던 이폐이양 송사의 정관 등혜중(藤惠中), 반종 2명, 종왜 1명, 제4선 정관 전도위선(烟嶋爲善),²³²⁾ 반종(伴從) 1명, 계해년(1743) 9월 14일 나왔던 중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는 수조에 참여하러 가기 위해 이미 발선하였기에 동 개운포의 유진장 최치경(崔致慶)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은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고 운운하였음.

초8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수락지(水落只) 앞바다에 표류하여 머물던 왜인의 큰 배는, 어제 출발하여 호송

232) 원본에는 ‘烟嶋爲善’ 뒤에 ‘件一名’이라 하였으나, ‘正官’을 ‘名’으로 표시하는 예가 없으니, 아마도 ‘件’은 ‘伴從’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장 서평 유진장 및 안골 유진장 등이 차례차례 영솔하여 와서 본진에 교부하거늘,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호송장 서평 유진장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보냈는데, 동풍이 잇달아 불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본진 앞바다에 정박한 뒤 동 유진장을 그대로 정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하였기에, 속히 관소로 영솔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연속하여 신칙하였다"고 함.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7월 초9일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8명, 계해년(1743) 9월 18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1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어제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여 서평포 유진장이 영솔하여 예인하다가, 본진 경내의 두송(頭松) 앞바다에 이르러 동풍이 크게 불어서 닻을 내리고 표류하여 머물다가, 바람과 파도가 매우 험한 가운데 표류하여 머물면서 지낼 길이 만무하고, 또한 바람을 무릅쓰고 예인하여 들이기 어려운 형편이라, 왜선과 호송하기 위해 보낸 배가 모두 신시에 바람 따라 전전하다 우도로 표류하였다'고 하였기에,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초10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하였는데, 이 배는 아마도 본진 경내 두송 앞바다에 표류하여 떠있다가 표류한 배인 듯하며, 동 배는 표류하기 시작한 곳에서 전전하여 표류할 때 떨어뜨려 잃은 물건이 없지 않아, 같은 곳에 버려두었기에 이것을 건져 왔으므로, 동 왜선이 되돌아 올 때 전하여 주기 위해 서평 유진 장교(將校)들이 있는 곳에 단단히 전해 주었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서평포만호 한세호(韓世豪)의 치보 내용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10일 관소로 전진하다가 동풍이 크게 일어나 두송 앞바다에서 떠서 머물었는데, 바람과 파도가 점차 모질어져서 동 왜선과 수호장이 탄 배가 모두 같은 날 전전하여 우도로 표류하였다'고 유진장 군관이 치고하였기에, 극히 놀랍고 두려워 탐지하기 위해 별도의 장졸(將卒)을 우도(右道)로 보내고 연유를 치통한다"고 하였음.

14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번 초10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좌도 경내에서 표류하여 옥포로 오기에, 유진장이 배를 타고 탐지하였더니 과연 왜인의 큰 배인지라, 술시에 서로 만나 해시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과 소통사 등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경신조 이떼이양 송사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명, 소금도왜 4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2일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비선 1척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는데,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비선은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하였다가 초7일 먼저 관소에 도착하였고, 저희들의 배는 초2일 천성 경내의 마거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가 초9일²³³⁾ 다대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초10일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다가 동풍이 크게 일어나 파도가 하늘에 닿아서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하였고, 동 왜선 호송장 서평포 유진장이 같은 날 해시 말에 한결 같이 추후에 도착하여 차례차례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왜선이 이미 무사히 표류하다 정박했으면, 이렇게 수조(水操)에 참여하러 가고 진이 비어 있는 때 중요한 곳을 비워두었으니, 동 왜선은 옥포 유진장에게 전하여 준 뒤에 되돌아오라는 뜻으로 전령하여 신칙하였다"고 치통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옥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2일 출발하여 차례차례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교부하였거늘,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서평 유진장을 차출하여 보내면서, 동 왜선이 버리고 갔던 철정(鐵楸) 줄 2장(張)을 왜인에게 전해 주라고 주어 보냈는데, 일시에 도부한 호송장 서평 유진장의 치보에, ‘위 사항의 왜선 1척은 13일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고, 철정 및 철정 줄 2장을 왜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 내의 사언은,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왜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술 3통을 실어가지고 나왔는데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기로 노인을 물리치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의 규정 외로 나온 왜선 등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임역들에게 다시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고, 비선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상역(商譯) 등의 물화 값으로 은화 9,000냥을 이달 초3일 개시에서 받아내었으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왜관²³⁴⁾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더니 이번 풍우로 손상된 곳이 많다고 하였기로, 곧 속히 보수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한 연유의 일임.

233) 원본에 ‘九日’ 아래 ‘四日’ 두 글자가 있으나 잘못 끼워넣은 글자인 듯하다.

234) 원본에 ‘館倭’로 되어 있으나, 이는 ‘倭館’을 잘못 옮겨 적은 것인 듯하다.

갑자(1744) 8월 28일

동래부사 김(金)이 8월 20일 성첩한 장계. 지난 달 17일 황령산 봉군 송금남(宋金男)과 간비오 봉군 문석똥(文石屎)이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 첨사 홍태두(洪泰斗)의 치통 내용에,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군관 이두성(李斗星)을 정하여 보낸다는 일로 유진장이 치통하였다” 하였음.

18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수조에 참여하기 위해 수영에 나갔다가 17일 진으로 되돌아왔더니, 어제 나온 분간되지 않은 배 3척 중 2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같은 날 먼저 영술하여 관수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훈도 현태익과 별차 이명운 등의 수본 내용에, ‘비선 2척은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 바, 수문을 이미 잠겼으므로 내일을 기다려 문정할 계획이라’ 하였다”고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오다가 뒤쳐진 배 1척이 조악(朝岳) 바깥 바다에서 전진하기에, 관소로 속히 영술하여 부치라는 뜻으로 초탐장에게 신척하였으며,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등의 수본 내용에, ‘관왜 등이 부조(父祖)의 분묘가 구관 뒷산에 있는데, 이제 추사일(秋社日)을 당하여 전례대로 살펴보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출입할 때 별차와 소통사가 영술하여 내왕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훈도 별차에게 신척하였고, 훈도 별차 등이 또 바친 수본 내용에, ‘어제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비선 2척에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7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나누어 타고 각기 노인 및 은화 5,000냥씩을 가지고, 어제 이른 아침에 큰 배 1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면서 바람이 잔잔하고 미약하여, 큰 배는 뒤에 처지고 저희들의 비선 2척은 노를 저어서 먼저 도착하였다」 운운 하였고 소지한 노인 2통은 받아 올려보내며, 계해년(1743) 8월 초2일 나왔던 관수왜 평여량(平如亮)이 중한 풍병(風病)으로 오늘 죽었기로 관중(館中)의 사무는 재판왜(裁判倭)가 전담한다’고 수본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조악(朝岳) 바깥 바다에서 관소로 전진하던 분간 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서, 당일 미시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1특송사 1호선이 재차 건너왔는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어제 이른 아침에 비선 2척과 더불어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다가 바람이 잔잔하고 미약하여, 비선 2척은 노를 저어서 먼저 관소에 도착하고, 저희들의 배는 조약 바깥 바다에서 표류하며 머물다가, 밤을 지낸 뒤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밖이므로 노인을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재판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분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9일 미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7월 20일에 나왔던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7명, 계해년(1743) 10월 초4일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재판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으로 나왔던 비선 2척의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규정 외로 나온 왜선 1척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관수왜가 나온 뒤에 진상(進上) 숙배(肅拜)를 미처 치르지 못하고 죽었으니 새 관수왜가 나오기를 기다린 연후에 진상물건을 받아 올리고 회서(回書)와 별폭(別幅)을 들여보내는 것이 본디 전례이므로, 전 관수왜 평여상(平如尙)이 죽은 뒤에도 이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였는데, 이제 이 관수왜 평여량(平如亮)은 이미 다례(茶禮)를 베풀어 행하고 서계를 바치고 진상숙배를 치르고 나서 죽었는데, 진상 물건을 받아 올리고 회서와 별폭을 들여주는 등의 일은 전례에 의거하여 새 관수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거행할 계획인 바, 공료(供料:음식비)인 쌀과 콩 등의 잡물은 이전대로 죽은 이튿날부터 제(除)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죽은 관수왜에게 부의와 조문하는 절차는 이미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는데, 지금 전례가 없는 규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며, 상역(商譯) 등이 피집(被執)한 물화(物貨)의 값으로 은화 12,150냥을 어제 별개시(別開市)에서 받아 내었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갑자(1744) 9월 초10일

경상좌수사 심(沈)이 9월 초2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4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당일 왜선 1척이 돌아들어갔다는 연유는 이미 치보하였고, 방금 구봉 봉군 윤청남(尹靑南)이 진고한 내용에 ‘당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했다’고 하

였다”고 치보하였음. 동 선박이 머문 곳을 상세히 탐지하여 급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하였더니, 도부한 다대포첨사 이보신(李輔臣)의 치보 내용에 “당일 응봉 봉군 추순태(秋順泰)가 진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다”고 하였음.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방금 다대포첨사가 치통하기를, ‘당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다’는 치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25일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24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거제도도로 향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치보한다’고 하였다” 하였음.

26일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 내용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24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옥포 경내의 양주암(楊洲巖)으로 향하기에, 탐지하기 위해 옥포 조라포만호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고 차례 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라고 하였음.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에, “방금 가덕도 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경내 양주암으로 향하여 표류하는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을 탐지하기 위하여, 옥포 조라포만호가 배를 타고 옥포 경내 능포(凌浦) 앞바다로 전진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2척이 과연 표류하여 왔기에, 24일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술시에 옥포 강입구에 정박한 뒤, 동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金震爌)과 소통사 이영옥(李榮郁) 등이 가서 문정하여,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만쇼잉 송사선으로 정관왜 1인, 도선주 1인,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통사왜 1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로 보내는 부서(副書) 1통을 가졌고, 제2척은 동 송사 수목선으로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증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이달 2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문정을 차례 차례 치통하였고, 지세포만호가 치통하기를, ‘동 배를 탐지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전진할 즈음에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24일 옥포에 정박하였다’고 전통하였다”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제송(題送)하였음. 28일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

인의 큰 배 2척은 이달 26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라고 하였음. 29일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에, “방금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이 이달 27일 출발하여 조라포만호 한정찬(韓井燦)이 영솔 호송하다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되돌아가 정박하였고, 28일 출발하여 조라포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장목포 별장 김세옥(金世穡)에게 교부하고, 영솔 예인하여 천성만호 이계실(李桂實)에게 교부하고, 영솔 예인하여 본진 경내의 울구미(栗仇味) 앞바다에서 호송장 본진 2선장 박지웅(朴枝雄)에게 교부하여, 그대로 영솔하여 보내다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본진 경내의 닛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라고 하였음. 도부한 동 첨사 홍태두의 치보에, “방금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가덕 경내 닛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당일 출발하여 가덕첨사가 호송장으로 본진 2선장 장진한(張振漢)을 차출하여 보냈는데,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고 못하고 당일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뒤에 수호장인 동 선장 장진한이 치보하였다’ 하였으며, 위 사항의 왜인의 큰 배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태익과 별차 이명윤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만쇼잉 송사선인데 정관 평구구(平矩久), 도선주 굴신윤(橘信尹),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 통사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과 동래로 보내는 부서 1통 및 진상물건을 실어가졌으며, 제2척은 동 송사의 수목선으로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2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지난달 24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옥포에 도착했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했고, 가져온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고, 수목선이 소지한 노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고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기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재판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이제 표류한 왜인의 큰 배 2척이 대마도에서 나올 때, 부산진의 봉군은 지난달 24일 관측하여 진고하였고, 다대포의 봉군은 관측하여 진고하였는데,²³⁵⁾ 변방의 정세로 헤아려 보건대 매우 소홀하여 부지런히 신척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에, 차지 감색 및 봉군은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

235) 원본의 이 문장에는 앞뒤로 두 개의 ‘不’이 빠진 듯하다.

계하고, 통영에서 조사 처치하라는 뜻으로 통제사에게 보고한 연유의 일임.

갑자(1744) 9월 29일

동래부사 김(金)이 9월 2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달 초4일 황령산 봉군 최일석(崔日石)과 간비오 봉군 최막산(崔莫山)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불을 달고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불을 달고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초5일 오시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왔던 분간되지 않았던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작은 배로, 같은 날 해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으며, 바쳐온 훈도 헌태익과 별차 이명운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밤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을 오늘 아침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기에,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초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8월 초2일에 나왔던 경신조 이때 이양 송사왜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계해년(1743) 11월 3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8월 17일에 나왔던 경신조 1특송사왜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계해 9월 초4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이달 초4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에 발선하여 들어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8일 황령산 봉군 문태봉(文太奉)과 간비오 봉군 박태순(朴太純)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동쪽 바다 가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 동쪽 바다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선인데, 당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당년조 부특송 1호선

으로 정관 평릉구(平隆久), 부관(副官) 등원아(藤元雅), 도선주 굴정직(橋政直), 봉진압물 1인, 시봉 2인, 종왜 4명,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졌고, 제2척은 동 송사 2호선인데 이선주(二船主) 등일총(藤一總), 유선주(留船主) 등청무(藤淸茂), 사복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기용잡물을 실어가지고, 어제 대마도에서 함께 발선하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서, 동해 바다로 전전하며 흘러가다가 오늘 해가 뜬 뒤에 물마루를 지나 나와서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정관이 가져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칠 계획이라 운운하였고, 2호선의 노인은 그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재판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수분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8일 황령산 봉군 문태봉과 간비오 봉군 박태순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선으로 같은 날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계한다"고 하였음. 초9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훈도 별차의 수본에, '어제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을 오늘 아침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2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4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나왔는데, 그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재판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 황령산 봉군 박태순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우도로 표류하여 갔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사연은 한 가지였음. 초10일 동 첨사가 치보하기를,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달 초9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고 하였다" 하기에, 정박한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고 신칙하였음. 11일 도부. [생략됨] "표류하여 향한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선으로, 옥포만호가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동 포구의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이영옥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2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로,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2명이 함

게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9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건너자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다는 옥포만호의 전통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한다" 하였음. 12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8월 24일에 나왔던 당년조 만쇼잉송사선 1척에 격왜 40명, 계해년(1743) 10월 초4일 나왔던 소금도왜 1명, 계해년(1743) 11월 30일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11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분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옥포 경내로 향하기에, 옥포 지세포만호가 배를 타고 탐지하였더니, 왜인의 큰 배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오기에, 같은 날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가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갑자기 부득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7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11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는 일로 문정하였고, 옥포에 앞서 정박한 왜선 1척은 같은 곳에 그대로 머무른다고 차차 치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속히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13일 황령산 봉군 정재민(鄭再民)과 간비오 봉군 한자음동(韓者音同)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좌도로 향한다"고 하였고, 추후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문정하기 위해 별차 이명윤(李命尹)을 정하여 보냄" 이라고 하였음. [생략됨]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 삼공형(三公兄)²³⁶⁾의 문장(文狀) 내용에 '현감님께서 울산부에 수감되어 추고(推考)하던 죄인의 시체를 복검(覆檢)²³⁷⁾하는 일로 나가셨는데, 당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기장현 경내의 무지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뒤, 땀감과 물을 전례대로 지급하여 들여준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4일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에 선후로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달 13일 출발하여 동 옥포의 만호와 장목포 별장이 영술 예인하다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1척은 같은 날 가덕 닻거리 앞 바다로 옮겨 정박하였고,

236) 삼공형(三公兄):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일컫는 말.

237) 복검(覆檢): 시체를 두 번 껴 검시(檢屍)함.

1척은 뒤쳐져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뒤에 본진 2선장이 수호한다' 하였다"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좌도로 표류한 왜선의 초탐장 감포만호(甘浦萬戶)²³⁸ 김만린(金萬麟)의 치보 및 기장현 삼공형(三公兄)의 문장 내용에,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 1척에 별차가 소통사 2명을 데리고 14일에 도착하여 문정한 뒤에 별차 및 소통사 1명은 되돌아가고, 1명은 왜선을 수호하여 영솔하기 위해 뒤쳐졌으며, 문정한 사연은 별차의 수본 가운데 있고, 양식과 반찬과 땀감과 물은 전례대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별차 이명윤의 수본에, "전령에 의거하여 기장현 무지포에 왜선 1척이 과연 표류하여 정박하였기에 가서 문정하였더니, '당년 조 만쇼잉 송사 1호선에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우리나라 노인 및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이달 12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돌아들어가다가, 물마루에 이르지 못하여 바람이 불순해서 동서로 표류하며 바다 가운데 출몰하면서 이미 하룻밤을 지내고 남풍이 점차 불어서 13일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소에 돌아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송사왜는 비록 1호 2호선의 이름이 있으나, 만쇼잉 송사는 항상 만쇼잉 송사선이라 하여 별도로 그 배의 호칭이 없는데, 이제 이 별차의 문정 가운데는 1호라고 써 넣은 것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나므로, 지금 바야흐로 조사하여 물어서 연유를 치통하라 하였음. 14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 닻거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오늘 출발하여 가덕첨사를 차정하여 호송하고, 안골포 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다대포에 교부하였기로, 서평포만호로 하여금 호송하게 한다' 하였는데, 호송장이 치보하기를 왜선 2척을 당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대익과 가별차 장인유(張麟維)가 문정한 수본의 사연은, 당초 옥포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왜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제 1척은 술 3통, 제2척은 어유 3통을 실어가졌는데, 2특송사 2호선은 그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게 하고, 부특송사 수목선의 노인은 전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라 쓴 것은 격식에 어긋나므로 물리쳐서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재판왜에게 아울러 책망하여 타일렸으며, 계해년(1743) 8월 초1일에 나온 공하대왜(公下代倭) 1명이 오늘 병으로 죽었기로, 그쪽 가운데서 나와 왜관 뒷산에 매장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5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8월 17일 나왔던 비선 1척에 두왜 1인, 격왜 7명, 올해 정월 초9일 나왔던 중금

238) 감포만호(甘浦萬戶): 감포만호영의 수장. 감포만호영은 원래 경주 감포에 있었으나 임진란 뒤 현재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으로 옮겼다.

도왜 2인이 함께 타고 재판차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훈도와 가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기장현 삼공형의 문장(文狀) 및 초탐장 감포만호의 치보에, ‘무지포에 정박하였던 왜선 1척은 당일 출발하여 본진 부사(副師) 대장(代將)이 영솔 예인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와 가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당년조 만쇼잉 송사선에 격왜 40명,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이달 12일 관소에서 발선하여 대마도로 돌아들어가다가 표류하여 기장현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는데, 동 왜선 1척이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며²³⁹⁾, 별차의 문정 가운데 ‘1호’라는 두 글자를 적어 보고한 것은 격식과 사례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곡절을 조사하여 묻는다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논보(論報)하였는데, 동 별차 이명윤이 문정한 뒤에 본부로 돌아왔다가 그 모친 상을 당하여 그대로 서울로 올라갔기로 조사하여 묻지 못한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20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6월 15일에 나온 재판차왜의 배에 격왜 40명, 올해 4월 15일에 나왔던 당년조 1특송사 정관 등척정(藤則正), 2선주 굴원신(橘元伸), 시봉 1인, 반중 4명, 계해 8월 초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계해년(1743) 12월 12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8월 24일에 나왔던 당년조 만쇼잉 송사 수목선에 격왜 15명, 올해 4월 15일에 나왔던 1특송사 도선주 평무친(平茂親), 봉진압물 1인, 사복(私卜) 1인, 반중 3명, 계해년(1743) 11월 30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이 나누어 타고, 함께 2척이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17일 수문 밖에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와 가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李日成)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2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의 당년조 만쇼잉 송사 2호선 및 수목선이 소지한 노인은 고쳐서 바치고, 경신조 2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는 속히 되돌려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아울러 재판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라고 하였으며, 11일 왜선 1척이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두 곳 봉군이 모두 관측을 놓쳤으니, 그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한 뒤,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의 원역에 대한 하선(下船) 다례(茶禮)를 이달 15일로 정하였고 부특송사의 원역에 대한 하선 다례는 19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신병(身病)이 낫지 않아 가서 참여하지 못하고, 부산첨사 홍태두가 홀로 연청(宴廳)에 가서 전례대로 베풀어 행한 뒤에 동 송사왜가 바친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받아 보냈

239) 이 한 구절은 앞뒤로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기에, 동 서계 2통과 별폭 2통 및 비선이 소지한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상역(商譯) 등이 피집한 물화 값의 정은(丁銀) 3,000냥은 이달 13일 개시에서 받아내었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갑자(1744) 11월 12일

一. 이번 11월 1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송인명(宋寅明)²⁴⁰이 입계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김한철의 장계입니다. 왜학 김진혁이 문정을 착오한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김진혁의 문정 착오는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이미 재변(災變)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자잘한 것이니 본부에 명하여 참작하여 곤장을 쳐서 징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一. 이번 11월 1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이는 경상감사 김상로(金相魯)²⁴¹가 장계한 동래부 사건 조사입니다. 원범(元犯) 전우장(田雨章)과 김윤하(金潤河), 박동석(朴東碩)은 이미 지만(遲晩)²⁴²하였으나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이 없지 않을 듯한데, 많은 사람에게 모두 일률(一律:사형)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수범 전우장은 효시(梟示)하고 그 나머지는 사형을 감하여 노비로 만들이 좋을 듯하며, 경군관(京軍官)은 비록 잘못된 사례로 주고 받았으나 부동(符同)²⁴³함이 있지는 않았더라도, 적발된 이후에야 엄중하게 마감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사형을 감하여 충군(充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감사의 장계에도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였다. 감관 전우장은 효시하고, 그 나머지 2인은 본도에 명하여 곤장을 50대를 친 뒤에 절도(絶島)의 노비로 삼고, 경군관은 형벌을 시행하고 그 자신에 한정하여 절도에 충군(充軍)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왜공미(倭供米) 처리 사건.

240) 송인명(宋寅明, 1689-1746): 여산송씨로 자는 성빈(聖賓)이며 호는 장밀헌(藏密軒)이다. 숙종 기해년(1719)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관찰사,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참찬,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241) 김상로(金尙魯, 1702-1769): 청풍김씨로 자는 경일(景一), 호는 하계(荷溪) 또는 만하(晩霞)이다. 영조 갑인년(173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갑자년(1744) 5월 13일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가 을축년(1745) 5월 초9일에 대사헌이 되었고,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242) 지만(遲晩): 죄인이 그 죄상을 뒤늦게 자백하는 일.

243) 부동(符同): 공모 또는 찬동하는 행위.

一. 이번 11월 12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송(宋)이 계품한 바, “왜공미 처리는 이미 잘못된 사례로 성립되었고 정리검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어서, 비록 참작할 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일이 중대한지라, 이미 적발된 이후로는 잘못된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용서하여서는 불가하여, 이 일은 엄중하게 죄를 확정하여 후일을 경계하게 함이 마땅하나, 여러 논의가 모두 도년(徒年)²⁴⁴의 율을 적용하여 죄를 정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찌할지?”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리검은 도삼년(徒三年)으로 정배(定配)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송(宋)이 말하기를 “이미 잘못된 사례라 하였으면 정리검만 홀로 죄를 입는 것은 억울하다고 일컬는 것이 있을 터이니, 전후 수령으로서 죄과를 범한 자는 전연 그냥 두는 것은 불가하고, 오래된 일은 비록 하나하나 추후에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듣자니 근년에 수령 가운데 간혹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본도에 명하여 연한을 한정해서 죄과를 범한 자를 조사해 내어 이름을 지적하여 고한 뒤에, 한가지로 죄를 확정함이 마땅하고, 혹은 5년으로 한정해야 한다 하고, 혹은 10년으로 한정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은 5년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10년으로 한정하여 적발하여 고하라는 일로 분부함이 옳겠다. 이 뒤로는 군관 감색으로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도신이 장계로 알려져서 이 법률을 적용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갑자(1744) 11월 19일

동래부사 김(金)이 11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지난달 26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올해 8월 초3일에 나왔던 경신조 1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2월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올해 3월 초7일 나왔던 중금도왜 4명과, 올해 9월 초8일에 나왔던 당년조 부특송사 2호선에 격왜 30명, 올해 4월 13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3명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실어서 돌아들어 갔다”고 하였음. 이달 초2일 황령산과 간비오의 봉군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등불을 달고 나온다”고 하였고, [생략됨] “차례 차례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에 두왜 1인, 격왜 6명,

244) 도년(徒年): 1년에서 3년까지 경중에 따라 연한을 정하여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벌.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어제 오후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이 시들하고 미약하여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린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낸다"고 하였음.

초3일 황령산 봉군과 간비오 봉군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나온다"고 하였고, [생략됨]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해 두모포만호 우석구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인지라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5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저희들의 배만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물마루를 지나지 못하여 바람이 시들하고 해가 저물어 떠다니며 머물다가, 밤을 지낸 뒤 오늘 날이 밝아서 물마루로 나왔다고 운운하였으며,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았다'는 뜻의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에서 선후로 나뉘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는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로(前路)에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초4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어제 2척의 배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했는데,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욱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 운운하였기에, 초3일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오다가 1척은 뒤쳐지고 1척은 거제도도로 향하였고, 동 배가 가고 머문 곳을 속히 탐지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하여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은 과연 왜인의 큰 배로 같은 날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후정(金厚正)이 가서 문정하여,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경신조 부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인데,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저희들의 배 1척이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하여 근근히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문정을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1척은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뒤 이미 문정하였거니와, 거제도도로 향하여 간 배 1척이 정박한 곳을 속히 탐지

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달 초3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은 또 왜인의 큰 배로 초4일 옥포강 입구에 정박한 뒤 왜학 김진혁과 소통사 김후정이 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1선송사가 재차 건너온 수목선인데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생략됨]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문다는 옥포만호의 치통에 의거하여 차례 차례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7일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 내용에, “올해 9월 11일에 나온 당년조 부특송 수목선에 격왜 20명, 올해 4월 1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을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이 당일 출발하여 돌아들어갔다’고 수호장이 치보하였고, ‘올해 4월 1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를 가지고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임역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9일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이달 초7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문다고 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면 속히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 왜선 1척이 곧바로 관소에 도착하였는데,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이 모두 관측을 놓친 것은 각자 소속된 곳에서 죄를 다스려 후일을 징계한 뒤, 위 사항의 왜선 2척이 소지한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고, 우도 옥포에 정박한 2척의 왜선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할 계획임. 방금 바친 훈도 별차의 수본에 “지난달 초하루에 동서 왜관 및 선창 등의 장소를 부산진 감색과 함께 적간하였더니 왜관 건물의 도리와 들보와 서까래가 간간히 썩고 손상된 곳이 있는데 각 진에서는 갑자기 수리하여 고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며, 밖으로는 창문 외벽의 판자와 마루[抹樓]와 선창 등 소소하게 손상된 곳은 각 해당 진에서 모조리 하나하나 보수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욱 신칙하였고, 상역(商譯) 등이 피집한 물화의 값으로 은화 7,500냥을 이달 초8일 개시에서 받아 내었으며, 신이 전에 본부에서 관장하는 봉군이 관측을 놓친 일로 황공하여 죄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유를 치계하였는데, 지난달 24일 승정원의 성첩(成貼)에 ‘대죄하지 말라’는 일로 유지(有旨)²⁴⁵를 경건히 받았기에 아울

러 치계하는 일임.

갑자(1744) 12월 초3일

一. 동래부사 김한철이 11월 24일 성첩한 장계. 우도의 옥포에 정박한 왜선 2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다시 문정한 뒤에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전에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13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던 왜선 2척이 이달 초8일부터 초10일까지 잇달아 그대로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였고, 11일 출발하여 조라포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전진하다가, 거제 경내의 외포(外浦)²⁴⁵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인력으로는 전진할 길이 없기로, 같은 날 옥포 강 입구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에,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욱 신칙하여 치통하였음. 1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첨사의 치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 내용에, ‘옥포 강 입구로 되돌아가 정박한 왜선 2척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역풍이 크게 일어나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15일에 출발하여 조라포만호가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장목포 별장에게 교부하고, 동 별장이 영술 예인하여 전진하다가 바람이 물살이 모두 거스르고 그대로 해가 저물어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같은 장목포 경내 저포(這浦)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차례 차례 전통에 의거하여 치통하였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보 내용에, “올해 10월 초5일에 나왔던 경신조 3특송사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계해 8월 초2일에 나왔던 구관수왜의 반중 1명, 종왜 8명, 의왜 1인, 올해 5월 18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과, 올해 10월 16일에 나왔던 경신조 부특송 1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40명, 올해 6월 초7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이 나누어 타고 각기 공작미를 싣고 돌아 들어가기 위해 당일 수문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재태(金再台)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鄭大濟)를 정하여 보냈다는 연유”로 치통하였음. 18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선 2척은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245) 유지(有旨):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국왕이 직접 조처 지시한 내용을 담은 문서.

246) 외포(外浦): 현재의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치보에 의거하여, 방금 접한 가덕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침사의 치통에, '장목포 경내 저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생략됨] 같은 곳에서 18일에 출발하여, 동 장목포 별장이 영솔 예인하여 천성만호에게 교부하고, 영솔 예인하여 가덕 경내의 울구미(栗仇味) 앞바다에 이르러 호송장 청천별장에게 교부하고, 영솔 예인하여 본진에 교부하였기에 2선장 장진한(張振漢)을 차정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하였음. 21일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에, "본진 바깥 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선 2척은 19일부터 20일까지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며 수호하기에,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고 운운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다대포침사의 치통에, 본진 앞 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선 2척은 당일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였는데, 호송장으로 본진 2선장 장진익(張振翼)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하였고, 일시에 도부한 동 호송장의 치보에, 위 사항의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경신조 부특송사 2호선으로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어유 3통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3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하여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고, 제2척은 신유조 제1선송사가 재차 건너온 수목선인데, 격왜 15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남초(南草) 1척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이달 초3일 대마도에서 추후에 발선하였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순하여 밤이 깊은 뒤에 또한 표류하여 옥포에 정박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며, 두 척의 배가 재차 건너온 것은 규정 외이기로 노인 2통은 물리쳐서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의 규정 외로 나온 배 2척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당년조 만쇼잉 송사와 원역 등의 하선연은 이달 11일로 정하고, 부특송사 원역 등의 하선연은 13일로 정하였는데, 부산침사 홍태두는 신병으로 참여하러 가지 못하기로 신이 홀로 초량 객사에 갔고, 동 송사와 등은 전례대로 진상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어 행하였다는 일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一.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왜물(倭物) 진상(進上)은 전례대로 간품(看品)하여 내입(內入)²⁴⁷⁾함.

금년 갑자조 제1선 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胡椒) 500근. 명반(明礬)²⁴⁸⁾ 300근. 단목(丹木)²⁴⁹⁾ 7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문지(紋紙) 300편(片).

동년조 제2선 송사왜가 바친 진상. 단목 30근.

동년조 제3선 송사왜가 바친 진상. 단목 300근. 채화칠촌렴경(彩畵七寸匳鏡) 1면(面).

동년조 이때이양 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200근. 단목 300근. 채화칠촌렴경 1면.

동년조 겸대(兼帶) 제4선에서 17선까지 바친 진상. 단목 각 30근씩 420근. 동년조 1특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500근. 명반 300근. 단목 700근. 대화진주(大和眞朱) 2근. 채화대대연갑(彩畵臺大硯匣) 1비(備).[네 다리가 부러져 상했음.]

동년조 겸대 2특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150근. 명반 300근. 단목 7근. 대화진주 2근. 채화중원분(彩畵中圓盆) 10매.

동년조 겸대3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500근. 명반 300근. 적동명로(赤銅茗爐) 1위(圍).

동년조 중절선(中絶船) 5척이 바친 진상. 호초 1000근. 계(啓).

갑자(1744) 12월 초4일

예조단자. 동래부사가 추후에 올려보낸 왜물 진상을 전례대로 간품하고 내입하는 일. 갑자조 부특송사 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400근. 단목 1,100근. 구관수왜 평여량(平如亮)이 바친 진상. 채화육촌렴경(彩畵六寸匳鏡) 1면. 채화서가(彩畵書架) 1각(脚). 흑칠화전갑(黑漆華箋匣) 1개. 혁과수주괘연(革裹垂珠掛硯) 1비(備). 수랍중명(粹鑑中皿) 10매. 수정립서(水精笠緒) 1결(結). 동년조 만쇼잉 송사왜가 바친 진상. 호초 500근. 단목 700근. 명반 200근.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1쌍(雙). 적동루삼관반(赤銅累參盥盤) 1각(脚). 계.

갑자 (1744)12월 초7일

경상우수사 이의풍(李義豐)이 11월 25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3일에 왜인의

247) 내입(內入): 대궐 안에 들임.

248) 명반(明礬):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의 복염(複鹽).

249) 단목(丹木): 콩과의 작은 상록교목으로 활 만드는데 쓰고, 속의 붉은 부분은 염색할 때 쓰며, 약재로도 쓰인다.

큰 배 1척과 초4일에 왜인의 큰 배 1척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한 연유 및 동 왜선 2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 김진혁이 문정한 사연은 이미 치계하였고, 추후에도 부하고 초7일 성첩한 옥포만호 박창윤(朴昌琬)의 치보에, “본진 강 입구에 앞뒤로 정박한 왜인의 큰 배 2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방금 도부하고 초3일 성첩한 천성만호 이계실(李桂實)과 가덕첨사 성덕함(成德涵)의 동일한 치보에는 “본 섬의 연대(烟臺)²⁵⁰ 망장(望將)이 일시에 진고하기를, 오늘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오다가 1척은 뒤처지고 1척은 거제도도 향한다” 하였고, 초3일 성첩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보에, “당일 1척의 배가 물마루에서 나오다가 우도로 향한 듯하나 해가 저물고 구름이 어두워 그 척 수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오늘 아침 왜인이 진고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당일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우도로 향한 듯하다는 연유를 방금 이미 치보하였는데, 구봉봉군이 다시 진고하기를, ‘당일 1척의 배가 또 물마루에서 전전하다 우도로 향하였는데, 해가 저물고 구름이 어두워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라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하고 초3일 성첩한 다대포첨사 최수기(崔壽基)의 치보에, “본진 응봉(鷹峰) 봉군 추순태(秋順太)가 진고하기를, ‘당일 미시에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표류하여 우도로 향한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라고 하였음. 동 왜선 2척이 앞뒤로 나누어 옥포 강 입구에 정박했을 때, 옥포와 조라포 세 진에서는 초3일 1척을 관측하고 같은 날 또 1척을 관측하였고, 부산진에서는 초3일 1척을 관측하고

같은 날 또 1척을 관측하였으나, 천가와 다대 등 세 진에서는 초3일에 2척을 아울러 관측했다고 치보하였는데, 하나의 바다를 관측하는 처지에, 혹은 시각을 나누어 관측하고, 혹은 동시에 관측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왜학 김진혁이 문정한 수본에는, 동 왜선 1척은 초3일에 발선하고 1척도 초3일에 발선하여 나왔다고 하여, 두 척의 배가 조금 앞서고 조금 뒤처졌음을 미루어 알겠는데, 위 사항의 세 진에서 일시에 나왔다고 관측하여 치보한 것은 매우 소루하니,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더니, 천가와 다대 등에 한가지로 치보하기를, “즉각 도부한 수사(水使)의 제송(題送) 내용의 ‘왜선을 관측하는데 차이가 난 곡절’을 봉군에게 물어 조사한 공초 내용에, ‘무릇 왜선이 비록 대마도에서 선후로 나누어 출발하더라도 바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즈음에는 그 관측하는 것이 간혹 봉군의 처한 곳이 멀고 가깝거나 혹은 관측하는 눈이 이르고 늦은 데 연유하는데, 초3일 바다 안개 가운데 2척이 일시에 나오므로 본 바대로 진고

250) 연대(烟臺): 봉홧불을 올리는 봉수(烽燧)의 높은 곳. 가덕도에 연대봉이 있다.

하였다'고 공초를 바쳤다고 하였으며, 동 왜선이 당초 나올 때 비록 선후로 발선 하였더라도 바다 가운데서 떠서 표류하다 일시에 관측하는 것은 그 형편이 그럴 듯하나, 물어서 조사하라는 말씀 아래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고, 당번 봉군 등을 먼저 엄하게 가두어 처분을 기다리는 일 및, 동 왜선 2척은 폐단 없이 다대포로 건너 보냈다" 하였음. 초3일 나온 왜선을 18일에 비로소 영솔하여 부치는 것은 비록 바람이 불순함에 연유하지만, 연로(沿路) 각 진에서는 시일을 늦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서, 위 사항의 왜선을 영솔하여 부침에 지체하였던 옥포와 조라포, 장목포의 당해 감색 및 또 나누어 나온 것을 동시에 함께 보았다고 치보한 천성과 가덕의 감색과 봉군 등을 신의 수영으로 잡아와서 엄중하게 곤장을 쳤고, 다대포 감색 봉군 등도 추고하여 다스려 후일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좌수사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였으며, 동 왜선의 관측이 어긋난 곡절을 왕복하며 물어 조사하는 사이에 일자가 지연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갑자(1744) 12월 15일

동래부사 김한철이 12월 초5일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 현태익과 별차 김재태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달 초하루 동서 왜관 여러 곳을 부산진 감색과 같이 적간하였더니 왜관 건물의 도리와 들보, 서까래가 대단히 썩고 손상된 곳은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고, 창호와 벽 판자와 마루의 소소하게 손상된 곳만 각 진에서 그대로 낱낱이 수리하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라는 뜻으로 다시 더 신칙하고, 당년조 공작미 18,000섬을 대관왜에게 모두 들여주었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

갑자(1744) 12월 17일

동래부사 심악(沈錫)²⁵¹이 12월 초10일 성첩한 장계 내용. 신이 이달 초8일 전부사 신 김한철과 본부 경내의 십휴정(十休亭)에서 교인(交印)한 뒤 그대로 도입하였더니, 전 부사가 재임할 때인 이달 초7일 도부한 부산첨사 홍태두의 치통

251) 심악(沈錫): 갑자년(1744) 1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병인년(1746) 8월에 교체되었다. 동래부지 가운데는 이 사람의 성을 비워놓거나, 간혹 김악(金錫)으로 표기한 곳도 있으나, 전객사등록 제4권의 문건 글자의 흔적은 심악(沈錫)임이 분명하다.

에, “초5일 구봉 봉군이 진고하기를 ‘아침에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려 지척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희미한 가운데 겨우 관측하니 1척 배의 형체가 물마루에서 번뜩 나타나는데 비와 눈이 종일 내리고 날이 장차 저물어서 그것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전혀 뚜렷이 분간할 수가 없고 또한 향한 곳도 모른다’고 하기에 봉군의 고한 것이 분명치 않아서 범연하게 치통할 수가 없어서, 혹 왜선이 우리나라 경내에 표류하여 도착하였는지 급속하게 탐지하라는 뜻으로 전로에 신칙하였더니, 즉각 도부한 어제 성첩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초5일 조선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 가에서 번뜩거리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이 있었으나, 비와 눈과 바람과 파도 가운데 날이 또한 어두어졌을 뿐 아니라 어선이 번갈아 왕래하기에 뚜렷하게 분간할 수 없어서, 전로(前路)에 탐문하여 그 배가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으면 그 정박하여 문정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세히 알겠다’ 하기로 연유를 먼저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신시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이달 초5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표류하여 거제도도 향하여, 동 선박이 정박한 곳을 속히 탐문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초5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호운도(呼雲島) 앞바다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지세포 경내 지삼도(只森島)로 향하기에, 옥포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동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을 탐지하기 위해 옥포 조라포만호 등이 배를 타고 전진할 즈음에 과연 왜인의 큰 배가 같은 날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였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라고 하였음.

초8일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첩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첩사의 치통에, ‘이제 이 지세포 경내 지삼도 앞바다에는 과연 왜인의 큰 배 1척이 표류하여 와서 이달 초5일에 서로 만나 영술 예인하여 같은 날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하여 수호한다’는 일로 차례차례 전통하였고, 동 왜인의 큰 배 1척에 옥포왜학(玉浦倭學)은 신병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소통사 김원정이 이달 초6일 홀로 달려가서 문정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6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통사왜 1인, 소금도왜 1명,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저희들의 배 1척이 이달 초5일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곧바로 관소로 향하다가 겨우 물마루를 지나 바람이 불 순해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했다’는 일로 문정하였다고 차례 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초10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7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한다는 전통에 의거하여 차례차례 치통한다’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의 우도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임. 초5일 도부한 동 왜선 1척이 나오다가 표류하여 우도로 향할 때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 등이 관측을 잘못함을 면치 못하였기로 황령산 봉군 등은 본부에서 잡아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고, 간비오 봉군 등은 관할하는 곳인 좌수영에서 마땅히 엄하게 다스릴 것임. 부산첨사 홍태두는 동 왜선이 초5일 나오는 사실을 봉군이 관측을 놓쳤기에 즉시 치통하지 않다가, 초7일 다대포첨사의 치통으로 인하여 비로소 전통하였고, 다대포첨사 최수기는 동 왜선이 나오는 사실을 초6일에 비로소 전통하였는데, 당초에 즉시 치통하지 않은 것은 역시 관측을 놓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나, 대개 초5일 눈이 종일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는데, 이 때 왜선이 곧바로 먼 바다 밖에서 표류하여 우도로 향하였으니, 봉군 등이 미처 관측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변방 정세로 헤아려보건대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봉군 등은 각기 그 진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두 진의 변정(邊情) 차지 감색은 본부에서 잡아와서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갑자(1744) 12월 28일

동래부사 심(沈)이 12월 20일 성첩한 장계 내용. 우도 지세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그 배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 다시 문정하여 장계로 정상을 물어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고, 이달 초10일 부산첨사 홍태두가 치통하기를, “올해 10월 17일 나왔던 경신조 3특송사 2호가 재차 나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6월 15일 나왔던 중금도왜 2인, 소금도왜 2명, 올해 5월 15일에 나온 소금도왜 1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초9일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현도 현태익과 별차 김재태(金再台) 등의 수분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본진 2선장 이일성은 신병이 있어서 대신으로 일병부장(一兵副將) 강태성(姜泰聖)을 차출하여 보냈더니, 동 왜인의 배 1

척은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수호장의 치보 및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1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지세포에 정박하였던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8일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한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다’고 해서 이에 의거하여 치통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지세포 강 입구에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9일 출발하여 동 지세포만호 및 옥포만호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고 영솔 예인하여 거제도 경내의 황서(黃嶼)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서 전진할 길이 없어서 같은 날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2일에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제 이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초10일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수호하고 있어서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3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1일 바람이 불순하여 출발하지 못하였는데, 조금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는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4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2일 출발해서 동 옥포만호가 영솔 예인하여 거제도 경내의 가덕 앞바다에 이르러 역풍이 갑자기 일어나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옥포 강 입구로 되돌아와서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5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이제 이 옥포 강 입구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3일 역풍이 잇달아 불어서 출발하지 못한다고 차례차례 전통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기에 바람이 시들하기를 기다려 속히 관소로 호송하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올해 11월 초3일에 나왔던 경신조 부특송사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 올해 4월 13일에 나왔던 별금도왜 1인, 올해 5월 16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4명, 올해 6월 1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2인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돌아들어가기 위해 어제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린다는 훈도와 별차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수호하기 위해 개운포만호 정대제를 정하여 보냈더니 동 왜선 1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호송장의 치보 및 구봉 봉군의 진고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옥포강 입구로 되돌아와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이 이달 14일까지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다가 15일 출발하여 옥포만호와 장목포 별장, 천성만호, 신문별장 등이 차례차례 교부하고 영술하여 오다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날 본진 경내의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7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가덕첨사의 전통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닻거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어제 출발하여 가덕첨사가 차출하여 보낸 호송장 신문별장이 영술하여 와서 본진에 교부한다’ 하였기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서평포만호를 차출하여 보냈더니, ‘역풍이 크게 불어 결코 전진하기 어렵기로 본진 경내의 고리도(古里島)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떠서 머물고 있어서 동 호송장이 수호한다’고 하기에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방금 접한 수호장 서평포만호의 치보에 의거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위 사항의 고리도 앞바다의 왜인의 큰 배 1척은 이달 17일 출발하여 영술 예인하다가 바람과 물살이 모두 거슬러 끝내 전진하기 어렵기로 같은 날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여 수호한다’고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19일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도부한 다대포첨사의 치통에,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한 왜인의 큰 배 1척은 바람이 불순하여

18일 같은 곳에서 그대로 머물다가 오늘 출발하였기로 영술하여 관소에 부치기 위해 호송장이 치보하였다’고 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문정하게 한 수본에 의거하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신유조 제6선에 격왜 30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3인, 소금도왜 1명, 통사왜 1인, 하대왜 1명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생동 100칭을 실어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이달 초5일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겨우 물마루를 지나자 바람이 불순해서 표류하여 지세포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하였으므로, 소지한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동 노인 1통을 이전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같은 날 도부한 동 첨사의 치통에, “이달 초5일에 나오다가 바람에 표류하여 오늘 돌아와 정박한 중금도왜 3인 중 1인이 우도에서 병을 얻어 실려와 육지에 내린 뒤 죽었기로, 왜관 뒷산에 매장하여 두었다

는 훈도 별차의 수본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위 사항의 왜인 큰 배의 노인 1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고, 당년조 만쇼잉 송사왜 원역 등의 상선연을 이달 19일로 정하여, 신과 부산첨사가 함께 연청(宴廳)으로 가서 전례 대로 베풀어 행하였다는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경성대 교수)
감 수 : 이원균(전 부경대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위 원 :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 :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 : 감강식(동서대학교 초빙교수)
" : 황경숙(부경대학교 강사)
"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 17

國譯 典客司別膳錄(Ⅱ)

발행인	부산광역시장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홍연진
발행일	2010년 7월 31일
인쇄	대원애드컴
발간등록번호	52 - 6260000 - 00076 - 10
ISBN	978-89-964675-1-9
	978-89-964675-0-2 (세트)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위원회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